

2013년도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총2권중 제2권

2012. 12.

#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3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및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2권 :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http://www.mifaff.go.kr)→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팀
  - 연락처 : 전화 031-460-8823, 8824~8825, fax 031-460-8838

# 차 례

## 제1권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b>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b> .....	<b>11</b>
1. 배경 .....	13
2. 주요내용 .....	14
3. 해설 .....	18
제1장 총칙 .....	18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	22
제3장 전문가위원회 .....	23
제4장 농림수산사업 .....	23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	31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33
제7장 보칙 및 부칙 .....	35
<b>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b> .....	<b>36</b>
<b>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해설</b> .....	<b>90</b>
1. 배경 .....	92
2. 주요골자 .....	95
3. 주요 변경사항 .....	99
4. 해설 .....	104
<b>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b> .....	<b>122</b>
<b>V. 기타 주요사항</b> .....	<b>156</b>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안내 .....	158

# 제1권 식량·유통·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 【식량분야】

<b>I. 생산기반 확충</b> .....	<b>164</b>
1. 농지규모화 사업 .....	166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	186
3. 농지매입·비축사업 .....	198
4. 배수개선사업 .....	209
5. 방조제개보수사업 .....	218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226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233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	244
9. 농업용수 관리사업 .....	258
10.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	267
11.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276
12. 해외농업개발사업 .....	286
13. 농기계임대사업 .....	293
<b>II. 생산 및 유통개선</b> .....	<b>306</b>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308
15.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	322
16.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	328

**【원예·식품분야】**

<b>I. 생산 및 유통개선</b> .....	<b>334</b>
17.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336
18.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	342
19.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	356
20.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	377
21. 인삼·약용 계열화사업 .....	393
22.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404
23.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지원 .....	417
24. 소비지유통활성화지원 .....	427
25.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	443
26.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453
27. 첨단온실 신축사업 .....	468
28.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484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499
30.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	504
3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509
32. 외식산업 육성사업 .....	518
33.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사업 .....	527
34.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 .....	542
35.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사업 .....	554
36.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사업 .....	564
37.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570

<b>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b> .....	<b>578</b>
38.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	580
39.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	590
40. '13년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600
41.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611
42.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619
43.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	630

**【산림분야】**

<b>I. 생산 및 유통개선</b> .....	<b>638</b>
44.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640
45.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648
46. 산림소득증대사업 .....	661
47.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	694
48.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	704
49. 임산물 수출사업 .....	713
<b>II. 산림자원조성</b> .....	<b>724</b>
50. 조림·숲가꾸기사업 .....	726

**제2권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농촌개발분야】**

<b>I. 생산 및 유통개선</b> .....	<b>738</b>
51.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740
52.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752

53. 농업자금 이차보전 .....	777
<b>II. 기술개발 .....</b>	<b>834</b>
54. 농림수산물 연구개발사업 .....	836
55. 신기술 보급사업 .....	846
<b>III. 인력육성 .....</b>	<b>854</b>
56.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	856
57.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	864
58.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874
59.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	897
60.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908
<b>IV. 소득보전 .....</b>	<b>922</b>
6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924
6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963
6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976
64.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1004
6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1018
66.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사업 .....	1030
<b>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b>	<b>1034</b>
67.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1036
68. 한계농지정비사업 .....	1049
69.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	1058
70.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 .....	1068

## 【축산분야】

<b>I . 사육기반확충</b> .....	<b>1076</b>
7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1078
72.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	1107
73.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 .....	1113
74. 축산분뇨처리시설 .....	1120
75. 말산업육성사업 .....	1138
76.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1148
<b>II . 생산 및 유통개선</b> .....	<b>1156</b>
77.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	1158
7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1164
79.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	1191
80.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	1211
81.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사업 .....	1221
82.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1227
83. 동물의약품산업 종합 지원사업 .....	1235
84.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	1245

## 【수산분야】

<b>I . 생산기반 확충</b> .....	<b>1254</b>
85. 자율관리어업 육성 .....	1256
86.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연안바다목장사업) .....	1266



**II. 생산 및 유통개선 ..... 1274**

- 87.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1276
- 88.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 1282
- 89. 친환경어구보급 지원사업 ..... 1292
- 90.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1304
- 91. 수산물물류표준화지원 ..... 1310

**III. 기계화 및 인력육성 ..... 1316**

- 92. 고효율 어선유류비절감장비 지원사업 ..... 1318
- 93. 수산장비 임대사업 ..... 1329

**IV. 소득보전 ..... 1340**

- 94.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1342

**【광특회계】**

- 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1354
- 96.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1368
- 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1379
- 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1396
- 99.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 1417
- 10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1424
- 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1435
- 102.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1456
- 103.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지원 ..... 1463



## 농촌개발분야

### I. 생산 및 유통개선



<b>51</b>	<b>녹비작물 종자대 지원</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박상희	044-201-1871 044-201-1875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팀 장 신영호 차 장 최윤만	02-2080-6401 02-2080-6408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유향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녹비작물(綠肥作物)이란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을 위해 꽃피는 시기에 생체(生體)로 농경지에 넣어주면 서서히 분해되면서 녹아 나온 양분이 농작물에 비료로 이용되고, 분해가 덜된 녹비 식물체 조직은 유기물로 남아 지력을 보강해 주는 일종의 비료식물을 말한다.

###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제1항, 제2항

###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농경지내 유기물함량을 2.7%까지 확대
- '15년까지 녹비작물 재배면적 100천ha 지속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녹비작물 실재배면적(천ha)	97	108	97	103	익년 3월	∑(품목별종자파종량 단위면적당 파종량)
▪ 농경지내 유기물 함량 증가량(g/kg)	0.45	-	-	-	익년 10월	시행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시행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57,018	24,400	26,000	23,400	10,400
- 국 고	28,509	12,200	10,400	9,360	10,400
- 지방비	28,509	12,200	15,600	14,040	10,400
- 용 자	-	-	-	-	-
- 자부담	-	-	-	-	5,200

\* '10년 까지 : '09~'10년의 합계 / '14년 이후 : '14년도 단년(국고40%, 지방비40, 자담20 적용)

## II. 2013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유희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수혜자(해당 농지)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다만,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단지)에게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 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추가적으로, 상기 우선순위에서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우선 지원

#### ○ 재배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 3. 지원대상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등 5개 품목으로 녹비 효과가 있는 지자체 수요 녹비용 작물 종자

\* 들묵새는 작물 특수성과 지역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대상품목으로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국비 40%, 지방비 60%)
- 지원기준 및 공급단가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크림손클로버 25kg/ha, 들묵새 20kg/ha
  - 품목별 공급단가는 종자공급 완료 후 제반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별도 통보(사업년도 11월중)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농가(법인)당 품목별 종자 최소 신청량(지원량) : (녹비(청)보리·호밀) 20kg, (헤어리베치·크림손클로버) 5kg, (들묵새) 1kg
- 보증종자 우선 구매·공급 및 발아율 80%이상 녹비종자 대상 공급 원칙
  - \* 품목별 종자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름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사업전년도 10월중)
- 수요조사 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1월중)
  - 수요조사는 농가(법인) 현황(성명,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경작대상농지

- 현황(지번, 지목, 지적), 친환경·단지 여부(유기·무농약·저농약, 광역·지구, 일반), 초종별 파종신청면적(m<sup>2</sup>), 파종예정시기 등을 파악
- 각 시도에서 AgriX에 입력한 사업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마감 처리(사업전년도 12월중)
-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통보(사업전년도 12월중)

###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수요조사 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농가(법인)의 사업참여 수요조사 실시(사업전년도 11월중)
  - 수요조사(사업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가(법인)의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사업전년도 11월~12월중)하고, 그 결과를 AgriX에 입력 처리(사업전년도 12월중)
  -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친환경농가>친환경농업단지>기타)를 고려하여 친환경 농가·단지 및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농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 당초 신청과 달리 적정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농가는 차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안내
- 시도에서는 AgriX에 입력된 시군구의 사업신청 내역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마감 처리(사업전년도 12월중)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전년도 12월초)

### 농가

- 농가에서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업전년도 11월초~12월중순)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녹비종자 품목별 공급량을 조정해 확정 사업량을 AgriX에 등록하여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녹비종자 품목별 사업량은 최종예산 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 시도별 확정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확정 사업량(예산 포함)을 바탕으로 시군구별 사업량 조정·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 지시(사업년도 1월중)
  - \* 시군구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읍면동별·농가별(품목별, 필지별) 사업량을 조정·확정(AgriX 등록)하고, 그 결과를 각 일선농협(시군농정지원단) 및 사업대상자에게 통보(사업년도 2월중)
  - \* 사업량 확정결과가 일선농협 및 사업대상자에게 기한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통보 등 사업관리 철저

### 농협중앙회

- 확정 사업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사업전년도 12월~사업년도 1월중)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각 시군구로부터 읍면동별·농가별 확정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농협 전산시스템에 등록(사업년도 2~3월중)
  - 시군구 확정 사업량과 관내 일선농협별 사업량과의 이상 유무 확인 철저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된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통보 및 지자체에 계획(자금배정계획 포함) 통보(사업년도 2월중)

##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당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구로 하여금 농가 대상 사업계획(초종별 공급량, 공급일정,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등), 녹비작물 효과 및 재배·이용방법 등을 교육·홍보토록 지도·관리(사업년도 1~2월중)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기술원, 기술센터),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농촌진흥청

-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파종 및 월동관리요령 교육 및 홍보
  -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적기수확 및 퇴액비 시용방법 등 기술지도
  - 녹비 시용량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
- 녹비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홍보 확대
  - 녹비작물 재배 시범포 운영 및 재배기술 보급
  - 녹비작물 재배 필요성 및 효과 홍보(영농교육, 리플릿, 언론보도 등 활용)
- 녹비작물 품종 개발 및 국산종자 재배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행정처리
- 토양 양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녹비작물과 유기질비료의 합리적 혼용방안(혼용방법, 시용기준량 등) 연구 및 보급

## 농협중앙회

-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 및 보고(사업년도 1~2월중)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 구매 전환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은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에 따라 사업 실시 및 사업 추진상황 수시 보고(사업년도 2~11월중)
  - 녹비종자 품목별 구매(입찰)결과 및 도입량(종자검사 및 검역결과 포함), 공급 준비 및 추진 실태 등 상황 수시 보고
  - 농가가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단위 공급은 사업년도 10.10일까지 완료)
- \* 품목별 공급기간 :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

-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개산급(또는 선급) 교부가 필요하거나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배정계획 또는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고 연 2회(6월, 11월) 자금 교부(당월 10일까지)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녹비작물 종자별 공급단가 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사업년도 11월중)

#####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녹비종자 도입·공급 계획 또는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개산급 포함)를 제출받아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자금배정계획을 고려하여 연 2회(5월, 10월) 농림수산물식품부(시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당월 20일까지)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연 2회(6월, 11월)에 걸쳐 국비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교부(당월 15일까지)
- 시군구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사업실적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6월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

- 하기 위해 개산금(시군구별 집행계획 총사업비의 60% 상당액)으로 지급
- 시군구에서는 재원별 지원비율에 맞춰 기 교부된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에 연 2회(6월, 11월) 자금 교부(당월 20일까지)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연중)
- 시도(시군구)에서는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신청된 녹비종자 도입·공급에 필요한 자금(개산금 포함)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지방비 확보 및 자금교부 철저(연중)
- 시군구에서는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농가별 녹비종자 최종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녹비종자 확정 공급가격이 반영된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한 후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에 자금 집행(사업년도 11월중)
- 시도에서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당해년도 사업량 확정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과거 녹비종자 도입실적(자금집행 시기 및 규모) 및 녹비작물별 적정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시도별/월별/작물별 녹비종자 도입·공급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사업년도 1~2월중)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의 도입여건과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녹비종자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매월 소요되는 자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자 도입·공급 계획 또는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개산금 포함)를 작성하여 연 2회(5월, 10월)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요청(당월 15일까지)
- 다만, 5월에 요청할 수 있는 보조금액(개산금)은 시군구별 총사업비(계획)의 60%로 한다.

\* 자금배정신청서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종자공급이 완료되면 물자대, 수입 부대경비 등 수입원가 항목을 고려하여 농비종자별 최종 공급가격 책정 보고(사업년도 10월중)
- 농협중앙회(시군농정지원단)는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에는 농비종자공급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 지급 신청(사업년도 11월중)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적기에 해당 농비용작물 종자가 농가에 공급되는지(물량확보 및 공급상황, 초종별 농가 공급시기 등)에 대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농협(NH무역 포함)에 대하여 년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 후 7일 이내)
- 필요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국 조사를 통해 정선, 소독 및 선적사항 등을 점검하여 적기에 안정적 공급토록 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점검완료 후 7일 이내)

#### 자금관리주체(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상·하반기 연 2회(4월, 12월) 일제점검(정기) 계획을 수립하여 농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농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및 자금 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점검 완료후 7일 이내)
  - 실제 농비작물 재배·토양환원 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 점검결과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등 관리 철저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일제점검시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등 타사업과 중복 지원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타 사업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하여 점검 실시
  - 타 사업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농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정보 제공
  - \* 단, 제공하는 정보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정보로 제한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가별 대상필지(지목, 친환경·단지 여부 등), 재배 품목, 파종면적, 파종시기, 농비작물 생육 및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대장(전자파일 형태도 가능)으로 관리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필지를 철저히 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일선농협, NH무역)에 대해 녹비용작물 종자 구매·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일선농협, NH무역)
  - 점검시기 : 연 2회(4월, 12월)
  - 점 검 반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녹비용작물종자 구매·공급·파종 상황,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 타 농림사업(경관보전직불제,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등)과 중복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지 점검시 타 사업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하여 실시

### 〈제제〉

####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용 작물 종자 구매·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종자가 부당하게 구매·공급된 경우에는 자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자금관리주체(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현지점검결과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부에 판매하거나, 파종 후 생육 전에 벗짚과 같이 소각하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부터 3년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녹비종자 공급시기에 적정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지표(I)인 녹비작물 실 재배면적은 녹비종자를 최종 공급한 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일제점검(4월, 12월) 및 정산(12~2월) 보고결과를 통해 검증된 과종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사업성과지표(II)인 농경지내 유기물함량 증가량은 사업시행 익년도(4~5월, 시용전)와 익년도(9~10월, 시용후)를 기준으로 ‘녹비 시용 전·후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을 표본 조사하여 산출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유기물함량 증가량(g/kg) = 시용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시용전 논·밭토양 kg당 유기물 함량(g)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녹비시용 필지의 논·밭·과수원 토양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시행 익년도 10월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보고(AgriX 입력)
  - \* 토양유기물함량 측정 대상은 시도별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하되, 시군구당 지목별(논·밭·과수원) 2필지 이상 표본필지(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지 우선)를 선정하여 측정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13년도 녹비사업 성과(토양유기물함량) 측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13년도 사업대상필지 중 표본필지를 우선 선정하여 ‘14년도 4~5월중 토양유기물함량(시용전)과 ‘14년도 9~10월중 토양유기물함량(시용후)을 측정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는 농가, 일선농협(NH무역 포함) 등 사업관련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당해 추진사업(녹비종자 생산·구매·공급) 평가 및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익년도 2월중)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유공자를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연말 장관표창 수여
  - 대상 : 해당분야 5년이상 근무자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공이 있는 자

### 《환 류》

- 녹비종자 생산·구매·공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익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시 예산총괄부서는 차년도 예산확대 우선 반영 검토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13년 11~12월중 각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 수요조사 실시
  - 각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일선농협과 협조하여 서면으로 수요조사(별지 1호 서식 참조)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 시군구는 해당 시도에 보고
    - \* Agrix가 구축됨에 따라 개별농가에 대해 서면으로 수요조사하고, 그 결과는 Agrix에 등록 및 보고
  - 각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수요조사 내역(Agrix 등록 결과)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추진일정 : 수요조사 실시(시·군·구, '13.12.15일한) → 수요조사 결과 보고(시·도, 12.20일한) → '14년도 녹비사업량 확정(농식품부, '13.12~'14.1월중)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4년도부터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과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자부담 부과(20%) 계획에 따라 녹비효과 등 경제성, 농가 수요, 국산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녹비작물 대상품목을 제한적으로 운영 예정
- 지원받은 녹비용 작물종자 파종 및 이용·관리가 불량한 농가(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부에 판매하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적정 사유 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 등은 '14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이정형 사무관 박윤식	044-201-1871 044-201-1881
농협중앙회	자재부	팀 장 신영호 과 장 윤철희 차 장 최윤만	02-2080-6401 02-2080-6408 02-2080-6410

### ① 유기질비료지원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8.5%로 확대(주지표)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부지표)
  - '99~'01년 사용량(375kg/ha) 대비 '13년(225)까지 사용량 40% 감축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생산 면적(%), 주지표</li> <li>* 무농약 이상</li> </ul>	7.5	6.4	6.7	7.0	매년 3월	전체 농산물생산량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무농약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 사용량 (kg/ha), 부지표</li> </ul>	225	233	249	236	매년 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물량	12,450	2,500	2,700	2,900	3,000
국고(보조)	587,550	125,000	135,000	145,000	150,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대상 농가 필지는 후순위 부여
- \*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 지원
-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 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이라 함)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업체 1개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 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	1,400		
부산물비료	1,200	1,0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 \* 품질등급이 좋은 부산물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산물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협중앙회(조합)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 포함)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 생산비종·제형·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구입희망 업체, 비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부산물비료에 한함), 사용시기(해당 월), 수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합에 신청
  - 사업신청 시기 : 사업 전년도 11월 하순~12월 하순
- 신청방법은 농협(엽연초 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협중앙회(조합)

- 시·군 농정지원단은 시·군·구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농업인에게 공지 및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 또는 사업대상지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농정지원단에서 조합별로 일괄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실제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협중앙회(조합)

####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 또는 읍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 제외 대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별표 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
    - \* ‘13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부숙도 기준에 적합 율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로써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 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보조대상 참여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과 협의한 후 공지

##### ○ 선정절차 등

- 보조대상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읍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읍연초조합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산물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
    - \* 농가당 300포(20kg기준) 이상 또는 3등급 부산물비료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3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 공급업체가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완료 후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내에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구획·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함
    - \* 자체계량기는 연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산물비료 공급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하고,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기준으로 구분·산정

-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를 의무 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4. 자금배정단계

#####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 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산물비료에 한함.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3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에 즉시 통보
    -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 또는 읍연초조합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3. 유기질비료사업 신청·지원을 위한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발

-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인의 사업신청을 현재의 지역농협에서 읍·면·동(마을 이장)으로 변경할 계획임



[별표1]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 부속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1년 - 2회 : 2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항 적용
6.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한 경우 - 위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사용한 경우	- 2년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 (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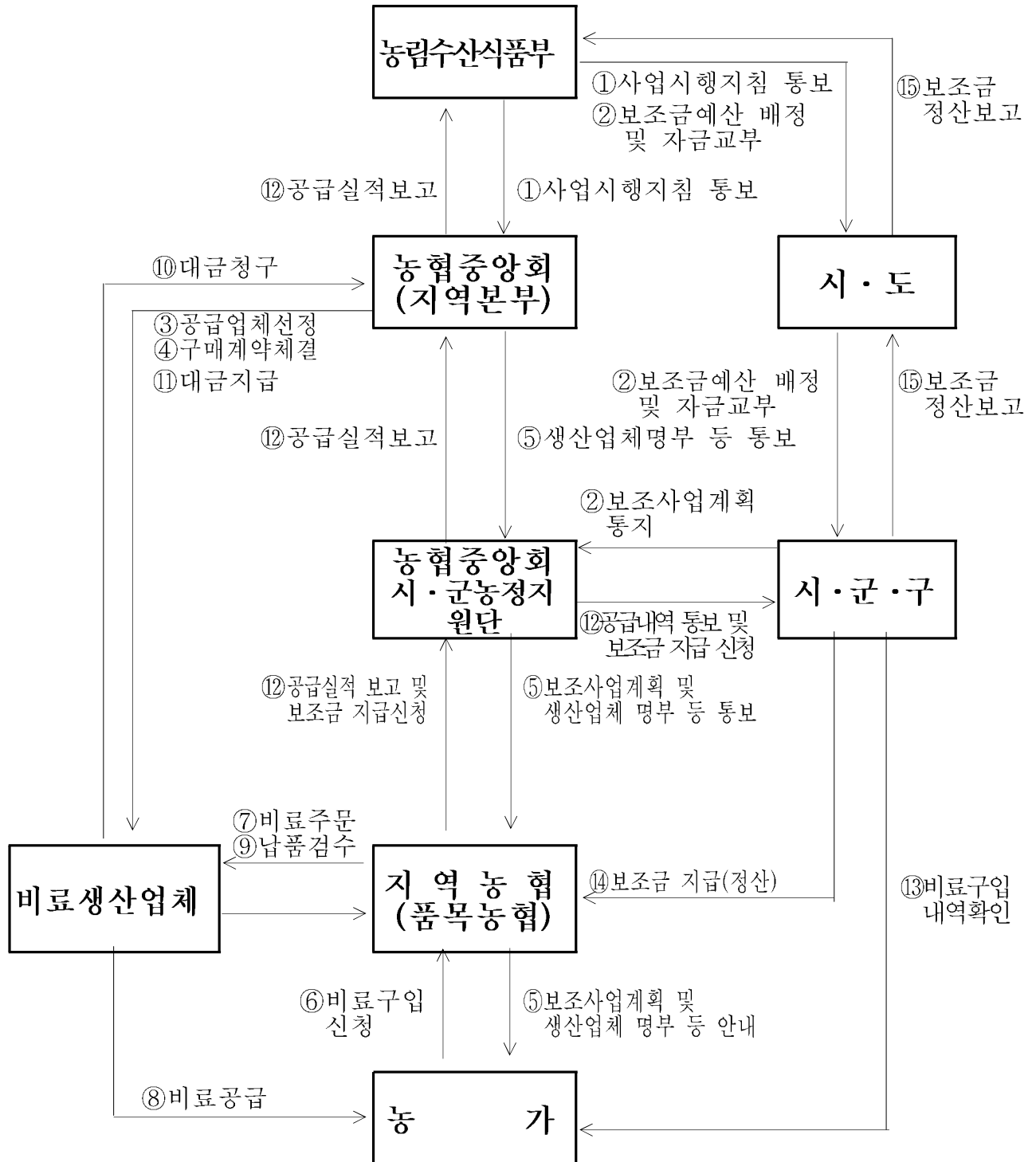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밭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2년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1등급 → 2등급, 2등급 → 3등급) 격하할 경우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1등급 → 3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 6개월 - 2년	
14. 1등급톱밥 이외의 톱밥(MDF 등 혼입 톱밥)을 퇴비공장 에서 보관 또는 원료로 사용한 경우	- 2년	
15.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 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년	
16. 판매대장, 원료수불대장 - 동 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동 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동 대장을 성실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7.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8.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 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9.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 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부산물비료(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부산물비료(또는 유기질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 참여 제한은 2가지 이상 부산물비료(또는 유기질비료)에 모두 적용함

[별표2]

## 지원사업 시행체계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 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2호 서식]

##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생산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출하단가	출하량	출하금액		
	톤	포							
'13.8.14	7	350	11월 20일	20kg	3,000원	100	300,000원	○○농협	250포
월 계									
누 계									

-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량(생산일자)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시 포란에 20kg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별지 제3호 서식]

### 비료의 제조원료 기재 장부

비료의 종류별	원료 구입 (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 수량 (kg)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 장부 기재방법

1. ‘비료의 종류별’은 구입(수입)일자에 구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종류를 기재한다.(예 :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
2. ‘구입(수입) 연월일’은 일자별로 원료를 구입할 때마다 기재해야 한다.(예 2013.1.1)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한 원료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4. ‘원료 구입처’는 구입(수입)일자에 따라 공급 업체명,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5. ‘원료 수량’은 구입(수입)일자에 구입(수입)한 원료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보관

## ② 토양개량제지원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무농약 이상)을 8%로 확대(주지표)
- 2015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	-	157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휴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	-	6.5	매년 2월	시용년도 다음 해에 토양검정결과를 측정(농과원 휴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 '09~'11년까지는 농과원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 평균치로 산출하였으나, '12년부터 시용필지에 대한 다음 년도 검정결과로 지표 변경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10,141	111,346	106,759	111,802	111,802
국 고	88,113	77,823	74,731	78,262	78,262
지방비	22,028	33,523	32,028	33,540	33,540
물 량	826	823	799	826	826
제주도(국고)	(1,700)	(2,211)	(2,900)	(2,650)	(2,650)
제주도(지방비)	(425)	(948)	(1,243)	(1,135)	(1,135)
제주도(물량)	(15)	(23)	(31)	(26)	(26)

-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 지원
  -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농가 자부담)

###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폐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지역농협 또는 시비(施肥)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비 비용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음(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 토양검정 대상은 토양개량제 살포한 농경지이며 검정시기는 살포한 다음년도에 실시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가

- 농가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에서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 또는 우수단체 표준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군농정지원단 에서 통보받아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공급확인서(농협중앙회장이 마련)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세부 착지별 2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2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 대한 인수확인인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인수 및 살포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 4. 자금배정단계

#####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 포함) 및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를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의무 부여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농정지원단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인수 및 살포 집계표(농가별 인수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5. 이행 점검단계

### 《제재》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및 방치한 농가는 다음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년도 시용필지에 대하여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로 측정
  - \* '13년도는 '12년도 시용필지를 대상으로 시·군·구별로 3%를 무작위로 선정 한 후 토양검정결과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 또한, '14년도 시용예정 필지에 대하여도 시·군·구별로 3%를 토양검정함으로써 '14년 이후에는 살포예정 필지와 살포필지와의 시용전후 토양개량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농협중앙회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13.1~4월 중 '14~'16년 사업신청 접수(3년 1주기)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충성분량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16조 제 2항 적용
5.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 이상 : 3년)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지역 : ○○시·군·구 ○○읍·면·동 ○○마을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고토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 패화석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 토양개량제 인수 및 살포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 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⑧	살포 확인⑨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 【작성 요령】

-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  
으로 확인
-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 ⑤ 신청량 : (③×④)÷1,000
-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  
할량 기재
- ⑨ 살포확인 : 읍·면·동장이 지역조합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살포여부 확인  
(서명은 조합직원 또는 이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축산경영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박범수 사무관 서영주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부장 서기봉 팀장 류계하	02-2080-7560 02-2080-7581
농업종합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박범수 사무관 서영주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부장 서기봉 팀장 송재영	02-2080-7560 02-2080-7571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장 김기훈 사무관 문석호	044-201-182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득섭 사무관 이재식	044-201-1551 044-201-1554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부장 서기봉 팀장 류계하	02-2080-7560 02-2080-758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박범수 사무관 유재형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부장 서기봉 팀장 류계하	02-2080-7560 02-2080-7581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식량산업과, (담당자) 이범섭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40~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kamico.co.kr](http://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관광농원·농어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어촌산업팀, (담당자) 김춘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8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강호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2~3

- 귀농귀촌정착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황규광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8~9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담당자) 서금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3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박홍식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36

\*\*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재해복구용자금, 협동조합합병자금, 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외 부채대책자금(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관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없음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에서 지급함

##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영농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극대화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적기지원율(%)	74.0	74.7	71.1	73.0	매년말	(6월까지 집행액/지원계획×100)

\* 6월말까지 집행액은 농업경영자금 지원액임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 농축산경영자금(융자)	15,350,000	2,700,000	2,500,000	2,42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 나. 지원제외자

① 해당사업 외에 아래의 직업보유자 또는 자영업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li> <li>▪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li> </ul>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li> </ul>

- ②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④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다만, 대환대출, 기한연기 및 재해대책영영자금은 가능)
  -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⑥ 신규 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농업인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⑦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다만 '13년도는 제도기간으로 미등록 경영체도 지원하되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신청 접수시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14년부터 미등록 경영체는 지원 제외)
  - ⑧ 대출대상자는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 ⑨ 만 85세이상 신규 대출신청자(단, 대환대출 및 기한연기는 가능)
  - ⑩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⑪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 2. 지원자격·요건 및 한도

### 가. 공통사항

- ①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 원 임
- ②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조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2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을 한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젓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가축)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b>&lt;법령에 의한 재해&gt;</b> ㉠ 재해 신규자금 i)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

	<p>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p> <p>ii) 지원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p> <p>iii) 지원조건: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용자지원지침'에 따름</li> <li>*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ul> <p>㉠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p> <p>i) 지원대상: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p> <p>ii) 지원조건: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li> <li>- 피해규모가 50% 이상인 경우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li> </ul>
	<p><b>&lt;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gt;</b></p> <p>㉡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li> <li>*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li> <li>*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li> </ul> <p>㉢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요청할 경우 재해를 입지 않은 가축(농작물) 규모에 대한 1회전 소요경영비</li> <li>* 재해발생 후 복구 및 신규입식이 완료된 후 지원 요청할 경우 입식 후 가축(농작물)규모에 대한 1회전 소요경영비</li> <li>*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li> </ul> <p>㉣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1년 연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li> </ul>

### 3. 대출방법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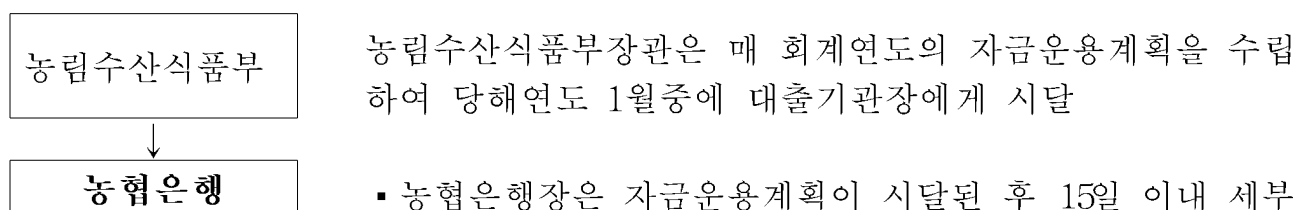
#### 가. 공통사항

- 농협(조합)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 나. 자금별 세부절차

- ①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
- ②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농·축협 등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일선조합)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 3.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 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농협은행  
(일선조합)

농업/축산  
경영자금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일선조합에 재배정
- 일선조합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 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조합용자협의회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대상자별로 재배정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별 일선조합에 재배정
- 일선조합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일선조합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일선조합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농축산경영자금 적기지원율을 지표로 함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현장 농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 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시행지침과 같음

##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사업구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특작·축산</li> <li>◦ 농산물가공산업육성</li> <li>◦ 고품질수량종자개발</li> <li>◦ 천적생산</li> <li>◦ 수출 및 규모화</li> </ul>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박범수 사무관 서영주	044-201-1751 044-201-17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농원</li> <li>◦ 농촌민박</li> </ul>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 장 신성암 사무관 유재중	044-201-1851 044-201-15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기계구입</li> <li>◦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li> </ul>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이범섭	044-201-183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02-2140-7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기술사업화 지원</li> </ul>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박순연 연구관 안형근	044-201-1631 044-201-163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센터	센터장 강경하	031-8012-7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가공산업 육성</li> </ul>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심재규 사무관 유영수	044-201-1811 044-201-1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꿀·녹용가공산업육성</li> </ul>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 최규철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부 장 김광선	02-587-4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종합자금 지원</li> </ul>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송재영 차 장 김종인	02-2080-7571 02-2080-75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가공산업육성 지원</li> </ul>			팀 장 류계하 차 장 이덕기	02-2080-7581 02-2080-75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기술사업화 지원</li> </ul>			팀 장 류계하 차 장 전현진	02-2080-7581 02-2080-7587

## I. 사업개요

###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종합자금 신청 경영체의 사업계획을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종합자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체율을 지표로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대출연체율(%)	0.70	0.54	0.41	0.70	매년말	(연체금액/대출잔액)×100

## 4. 연도별 제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6,536,400	1,500,000	1,821,000	2,021,000	
융자(농특자금)					
융자(농협자금)	6,536,400	1,500,000	1,821,000	2,021,000	

-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 년도 예산중 농기계 생산지원 1,3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천적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00억원, 수출 및 규모화사업 1,000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1,00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시 내역 변경 후 집행
-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촉 지원
-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 창고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자가유통저장업자, 농산물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우수기술사업화 업체·농업법인
- \* '자가유통저장업자'란 자체 생산기반을 갖추고 그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축산물을 자체 유통시설을 통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①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농어촌민박), 농산물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수출 및 규모화,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② 시설자금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천적산업육성
- ③ 개보수자금 : 농기계수리용장비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연구·시험장비 구입)
- ④ 운영자금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농기계수리용부품확보, 꿀·녹용가공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 ⑤ 농기계구입자금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나. 지원자격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① (원예특작·축산 재배·생산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 ②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③ (수출 및 규모화사업) 수출확대, 생산·가공 규모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농업법인 중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채무제표가 없는 경우 제외)
- ④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개인육종가 포함)
- ⑤ (천적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생산공급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⑥ (관광농원·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개발승인을 받았거나, 사업자 신고를 한 자

※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소관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세부시행지침에 따름

## 다. 지원제외

① 해당사업 외에 아래의 직업보유자 또는 자영업자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 기관 재직자 등</li> <li>▪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li> </ul>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li> </ul>

\* 각서제출 : 대출 신청시 전업적 직업보유 사실확인을 위한 자필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② 농업경영체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등록여부 확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으로 같음하고 그 내용을 화면프린트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③ 사업실적 1년미만인 농업법인(관광농원사업의 경우에는 예외)

- 사업실적 1년 미만 여부는 최근 결산재무제표상의 사업기간으로 판단

④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자체 생산기반은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부족 등으로 일부 위탁하는 경우 예외

⑤ 상위 경영체에 완전계열화된 농업인·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

⑥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사업을 착공한 자(단, 운영자금은 지원 가능)

- 사업착공 초기단계로써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예외

⑦ 최근 결산재무제표상의 사업기간 기준 1년 이상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법인 및 관광농원사업자

- 관광농원 신규사업자(개인 및 법인)의 경우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미만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

\*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은 재무제표 제출 생략

⑧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⑨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경우

⑩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가능)

- ⑪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⑫ 축산발전기금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농기계는 대출 제외
  - 단, 농기계구입과 관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의 구분 없이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액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용자 가능
- ⑬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분쟁이 진행중인 종자개발업자
- ⑭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 단,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종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⑮ 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축산업미등록 경영체(신규사업자는 사후등록)
- ⑯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

### 3.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①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 가. 시설자금

- ① 사업기간 : 1년(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년차 사업추진 가능)
- ② 지원조건 : 연리 3.0%
  - 원예특작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자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 ③ 지원용도
  - 생산·재배시설, 자가생산시설과 연계된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자금 및 온실기능 향상 시설자금, 농기계보관창고, 자가배합사료 시설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기존 시설구입자금 등
  - \* 2014년부터 원예특작 자가생산시설과 연계된 저장·유통시설 신축(소규모선별장 등) 및 증축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임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 \* 매입 후 생산시설 설치 또는 작목재배 등 당초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야 함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해소시까지 축사 신·개축 및 증축에 대한 지원 제한(단, 기존축사구입, 축사내부 시설 개보수 및 퇴비장 등 축사외부 시설은 지원 가능)

④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지원금액이 20백만원 미만의 소액 시설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 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3.305㎡(평)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시설설치, 작목재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다년생 사료작물 생산용 토지 지원제외)
- 노지 992㎡미만, 시설부지 331㎡미만 지원 제외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시설농업기재재생산지원, 천적산업육성,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경매물건은 지원제외

나. 개보수자금

① 지원조건 : 연리 3.0%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자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②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금액이 20백만원 미만인 시설자금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수리용 장비 지원자금

③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다. 운영자금

①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②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가축입식, 농산물 매취(수입농산물 포함)자금은 지원 제외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을 운영자금으로 지원

- 가축입식비는 제주도의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시에 한해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농업종합자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에 대하여 공통 적용. 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농업종합자금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서인 경우에만 가능)

③ 지원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름)

#### 라. 유의사항

① 저온저장시설은 331㎡ 이내에서 농가의 자가생산 규모를 감안한 범위내에서 지원 (타인 생산물 저장을 위한 시설은 지원 불가)

② 생산시설과 관련된 집하장·수송차량 등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③ 시설자금(개보수로 지원하는 20백만원 미만 시설자금 포함) 지원시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에 의뢰하여 시설자금 지원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④ 원예·특작분야의 시설물 설치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의한 일정규격 이상의 자재 이용

- 원예특작 내재해기준 적용시설에 대한 대출 시 대출취급기관은 시설완공 후 시·군·구에 내재해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여 적합한 것으로 회신되었을 경우에 지원

⑤ 축산업등록제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단, 등록기준 이하 농가도 등록



- 후 지원하되, 등록대상 축종이 아닌 경우는 예외)
- ⑥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⑦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②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가. 지원대상자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가공사업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승인한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주원료를 국산농산물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축산물관련 가공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나. 시설자금

- ① 사업기간 : 1년(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년차 사업추진 가능)
- ② 지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이자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 ③ 지원용도
  - 가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사업부지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지원제외)
  - \* 지원금액이 2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④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다. 개보수자금

- ① 지원조건 :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 ② 지원용도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③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라. 운영자금

- ①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이내 상환
- ② 지원용도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농산물매취자금 포함)

③ 지원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름)

#### 마. 유의사항

○ 농산물매취자금은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③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가. 지원대상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를 대상으로 지원가능. 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나. 시설자금

① 사업기간 : 1년(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년차 사업추진 가능)

② 지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이자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③ 지원용도

-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에 필요한 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지원. 단, 사업부지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 지원제외

\* 지원금액이 2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④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다. 개보수자금

① 지원조건 : 원예특작, 축산분야 채배·생산사업 개보수자금과 동일

② 지원용도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③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라. 운영자금

① 지원조건 : 연리 3.0%, 2년 이내 상환

② 지원용도 : 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인건비, 시험비 등)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③ 지원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름)

#### ④ 천적산업육성사업

##### 가. 지원대상자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에 한함

##### 나. 시설자금

- ① 사업기간 : 1년(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년차 사업추진 가능)
- ② 지원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이자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 ③ 지원용도
  - 천적생산시설, 연구개발기자재 설치비에 필요한 시설자금. 단, 사업부지에 필요한 토지매입자금과 기존시설 개보수 및 운영자금은 지원 제외
  - \* 지원금액이 2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④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업체당 8억원 이하)

#### 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가. 지원대상자

- ① 수출확대, 생산·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특작·축산분야 재배·생산 및 농산물가공사업(축산물가공 제외)을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 ②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나. 시설자금

- ① 사업기간 : 1년(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년차 사업추진 가능)
- ② 지원조건 :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해당 사업별 지원조건과 동일.
  - 단, 금리는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 : 3.8%      ▪ 10억이상에서 30억미만 : 3.3%
- 30억원 이상 : 2.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 이자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③ 지원용도 : 원예특작, 축산 생산·재배 및 농산물 유통·저장·가공에 필요한 시설설치 등(단, 축산물가공사업은 제외)

④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다. 개보수자금

① 지원조건 :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사업 등 해당 사업별 지원조건과 동일

② 지원용도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③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라. 운영자금

① 지원조건 : 시설자금 지원조건과 동일(3년이내 상환)

② 지원용도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비, 농산물매취자금 제외). 단, 농산물가공업체 및 식품가공업체의 농산물매취자금은 지원 가능

③ 지원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름)

#### 마. 유의사항

① 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② 농산물매취자금은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③ 지원업체는 대출기관과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MOU)을 체결

- 경영진 변경, 자산의 처분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대출사무소 고지

- 경영체 영업활동 관련 주거래 계좌는 대출취급기관 계좌 이용

- 적정 채무비율 유지 등 지원업체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협력사항

※ 농촌관광분야(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세부 시행지침은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

#### 4. 기 타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 가.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에 제출하고, 취급사무소는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및 각서를 확인한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자는 대출마감일(12월 31일, 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대출해야 함
  - 대출마감일(당해년도 12월말)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 익년 6월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 나. 시설자금 취급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 해당 지역 농정시책 합치 여부, 당해 시설설치 제한 여부, 인·허가 사항, 토지매입자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 당해 시설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계획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고, 행정기관은 대출취급기관에 검토 결과를 회신
- 다. 원예·특작분야 시설물 설치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 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시설물의 내재해 기준 적합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함
-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농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마. 세부 운영사항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시행
- 바.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2.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대출연체율을 성과지표로 측정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 불편사항 등 농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및 불합리한 요소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 제고

## 3.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20조에 의거 투자의향조사 실시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RPC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벼 유통량 대비 RPC 처리능력을 70%로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벼 유통량대비 RPC 처리능력(%)	64%	56%	61%	67.6	익년 2~3월	농관원에서 원료벼 매입실적 조사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이후
합 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매년1,200,000
○ 벼 매입 자금(용자)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매년1,200,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 Storage Center) 사업자
  - RPC 또는 DSC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도정업체, 영농법인 등과 경영평가 미참여RPC 및 RPC 인정취소된 업체는 제외
  -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 2. 지원자격

- 정부 인정 RPC 사업자(통합 RPC 포함)
- 정부인정 DSC 사업자

## 3. 지원자금 용도

- RPC 및 DSC의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금융기관 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2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총 지원액 및 조건 : 연간 12,000억원, 용자(1년 이내 상환)
  - 민간RPC의 수탁매입 대행농협에 지원된 자금은 수탁매입 벼 인도 후 15일 이내 상환(최장 10월말까지 인도, 10월15일까지 상환)
- 의무사항
  - RPC별 수확기에 지원자금의 1.5배 이상 농가벼 매입(단, 통합 RPC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 매입)
  - 지원자금 30% 이상 수탁매입
    - \* 수탁사업 시행요령은 우리부 홈페이지 및 Agrix에 게시
- 의무사항 미 준수시 벌칙(통합RPC 포함)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0배 이상 1.5배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지원액의 1.5배 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을 차기에 차감지원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수확기에 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벼 매입액의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금액만큼 더하여 회수하고, 향후 1년간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
    - \* 통합RPC 우대자금은 1.0배 미만일 경우 차액과 차액에 정책자금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액을 합하여 회수하되 벼 매입자금 지원중단은 제외



- 수탁매입시 동일 품종매입 가격과 수탁매입량을 곱한 금액이 지원자금의 30% 미만일 경우 미만 금액만큼 차기 지원시 차감하여 지원하고 수탁실적 등을 허위보고한 경우 차기 지원 자금의 20% 삭감 조치
- RPC사업지역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사업지역 면적의 30% 이상 피해발생), 화재 등 사고로 인한 RPC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벼 확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1.0배 미만일 때만 회수하고, 차기 차감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탁대행농협이 대행 지원 금액만큼 수탁선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해 1월말까지 미사용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수탁요청 RPC에는 상환자금만큼 차감하여 지원
- \* 정해진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농협은 1~5년간 사업자금 지원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2년 연속 상환한 수탁대행업체는 자격 박탈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RPC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금 및 금리(0~2%) 차등지원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각 RPC는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 등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한국 RPC 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수확기 농가벼 확보에 참여하고, RPC 경영평가 등에 참여한 업체중 선정

### 3. 사업시행 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RPC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은 경영평가 결과 및 수확기 벼 매입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벼 매입자금 배정
  - 우대지원 : 통합 RPC 사업자, 수확기 확보·수탁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 등
  - 대출기간 : '13.12.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용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RPC(DSC) 사업자의 농가 벼 매입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장 입금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지급 하되, 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함

### 4. 자금배정단계

- 농식품부는 경영평가 결과 등 자금 배정기준을 농관원에 통보
- 농관원은 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중앙회 등에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 등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등 합동현지 방문점검
- 시장·군수는 RPC 운영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감독 철저

- RPC의 농가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수탁판매  
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
- 시장·군수는 벼 수확기 이전에 RPC(DSC)의 호퍼스케일(수분·중량)과 제현  
을 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농관원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  
공)을 수시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원료 벼의 확보(수확기 자체매입포함)·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  
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수확기 농가 벼 확보관련 증  
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  
여 비치
- 농협중앙회 등 대출기관은 RPC별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  
일까지 보고하고,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보고
- 농관원장은 당해연도 원료벼 매입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포함)을 익년 1  
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사무소→지원 →본원→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  
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
- 농관원장(사무소장)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 보고양식은 우리부홈페이지 및 Agrix 참조
  -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경영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벼 확보실적(수확기 자체매입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장원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사무소→지원→본원→농식품부)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미곡유통관련 법규위반 및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고내용 : 관련법규(양곡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양곡관련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판결)일시 및 결과, 처분기  
관 등

- RPC사업자는 경영평가를 대비하여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을 입증할 호퍼스케일·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은 선도금을 동일 품종매입 가격의 80% 이하로 지급하고, 수확기 이후 판매한 경우에만 인정(단, 쌀로 판매하여 정산하는 경우 수확기 판매물량도 인정)
  - 계약채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사업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대표가 변경된 경우, 농협중앙회, 소속협회를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요청
  - 승인 조치 이후에만 대출금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농협중앙회 등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 6. RPC(DSC) 사업자에 대한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

###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제재기준의 2분의1까지 가중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법규위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RPC·DSC의 법인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RPC·DSC 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도 해당 RPC·DSC에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b>금고형 이상 처분</b> ,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 <b>원산지표시위반</b> , 시판용 수입쌀을 국내산쌀과 혼합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모든 자금 2년간 중단	지원 제외(영구)	-
나. <b>선고유예</b> ·기소유예처분, 미곡유통 문란행위 등 사고업체		경영평가 자금 25% 감액	경영평가 자금 5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다. <b>벌금(벌금형 선고유예 처분 포함)</b>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경영평가 자금 2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라. 과태료 처분	100만원 미만	경 고	경영평가 자금 10%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100만원 이상	경영평가 자금 5% 감액	경영평가 자금 15% 감액	모든 자금 1년간 중단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예시: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경영평가자금 15% 감 적용).

③ 제재조치 시기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DSC는 법원 1심 판결일부터 잠정 지원 제외(추후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지원 또는 영구지원제외 결정)
  - 벌금 및 과태료는 처분확정일 기준 다음연도에 적용
-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불가

7.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원료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측정
  - 농관원은 RPC 원료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실시
  - 평가결과 경영우수 RPC는 정부 지원을 우대하고, 경영이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자금 우대 조치

#### IV. '13년 RPC 경영평가 계획

- 평가기관 :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 정부지원(경영평가)을 희망 RPC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 민간협회에 속하지 않은 RPC 사업자는 2월말까지 농식품부 식량산업과로 직접 신청

#### V. 통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 1. 통합 RPC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 통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참여 개소수에 따라 보정가중치를 부여하고 통합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붙임2참조
- 기타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자 선정시 가점,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통합 RPC 우선지원 등
- 통합RPC 참여자의 지분탈퇴시 탈퇴농협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벼 매입자금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RPC에 대해서 향후 2년간 벼 매입자금 등 정부지원 중단
- 2년차 이상 통합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여부(잉여가공시설의 폐쇄 후 DSC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이행할 때까지 벼 매입자금을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
  - 가공실적이 본소 가공능력의 80%미만일 경우 시설통합 미이행, 그 이상이면 부 가공시설 인정
  - 미이행RPC가 이행계획 제출·이행시 1년간 자금지원 삭감 유예

##### 2. 통합 RPC의 원료곡 매입 및 판매 등 경영지도 강화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해당조합에서 지급)
- 통합 RPC의 고품질쌀 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농협중앙회·지자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우수브랜드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모델 제시, 통합 RPC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붙임 1>

## 정부지원 대상기준 세부내용

### 신규 RPC 사업자 인정기준

#### 1. 신청자격

-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괄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 2. 심사기준

##### 가. 시설기준

- 원료투입구 시설 : 2개소 이상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 건조·저장시설 기준미달 RPC가 시설보완계획서 제출·이행시 지원제외 1년간 유예

##### 나. 운영 실적기준

- 가동기간 : 일괄처리시설 설치 후 2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6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최근 1년간 취급물량 : 벼 5,000톤 이상 매입 및 쌀 3,500톤 이상 판매
- \* 수확기 벼 매입실적이 3천톤 이상인 업체가 원료투입구시설과 저장능력을 기준능력의 50% 이상 갖춘 경우는 해당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료벼 계약재배 물량 : 1,000톤 이상
-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2,000ha 이상 확보
  - 정부인정 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이미 설치된 읍·면의 RPC 신규 선정은 제외
  - \* 예시1)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3개소와 정부인정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RPC 1개소 인정 가능
  - 예시2) A군 논면적 10,000ha이고, RPC 3개소이며, RPC중 1개소는 2개RPC와 1개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신규 RPC 인정 불가
  -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 3. 심사절차

- 신규 RPC 인정 희망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매년 3월까지)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4월까지)
- 해당 시·군의 쌀농업 현황 및 RPC, DSC, 임도정공장 등 미곡 산지유통업체 상황 등을 종합검토 후 시·도에 신청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RPC 설치·운영협의회)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5월까지)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경영평가 수행기관(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 후 RPC 신규 인정여부 결정
- 기준 충족시 해당 시·도(업체)에 신규인정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년도에 경영평가 실시하여 등급산정하여 해당년도 하반기부터 벼 매입자금 등 지원

## RPC 인정취소 기준

### 1. 인정취소 기준

- 다음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정부 지원 중단
  - ① 연간 벼 5,000톤 미만 매입('12년은 3,000톤 적용), ② 쌀 가공실적이 없는 경우, ③ 시설기준 미달, ④ 부도 RPC, ⑤ 경영평가 미 실시 RPC, ⑥ 통합탈퇴 RPC, ⑦ 해산된 통합 RPC
  - \* 시·군의 모든 RPC가 인정취소 기준 해당시 2년간, 통합계획서 제출시 1년간 적용 유예
  - \* 시설기준을 미달한 경우는 보완을 전제로 1년간 적용 유예 가능
  -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했으며, 해당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인정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지원 제외 RPC는 1년간 정부 인정RPC로 재진입 불가

### 2. 절차

- 농관원 매입실적 확인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 중단여부 결정



## 신규 DSC 사업자 인정기준

### 1. 신청 자격요건

- 벼 건조·저장 시설을 일괄 설치한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2년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업체(RPC가 없는 시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 심사기준

#### 가. 시설기준

- 건조능력 : 800톤 이상
- 저장능력 : 800톤 이상
- 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제현을 측정기 등을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

#### 나.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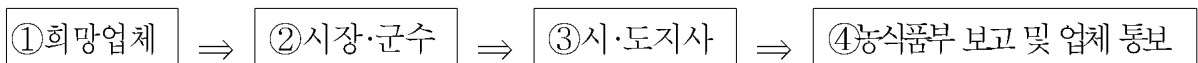
- 가동기간 : 일관 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수확기 매입물량 : 벼 800톤 이상(매입실적은 농관원에서 조사)

#### 다. 지역기준

- RPC가 없는 시·군의 신규 DSC 개소당 논면적 : 1,000ha 이상 확보
  - 해당 시·군내 기존업체 등과의 경합관계 등을 종합 검토하되,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3. 심사절차

-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여부 결정(농식품부 보고)



(신청서제출) → (1차 검토, 심의) → (2차 종합검토)

### 4. 신규 DSC 사업자 인정시 지원사항

- 신규 DSC 사업자는 벼 매입실적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 여부 결정

## DSC 인정취소 기준

1. 부도 DSC, 2. 시설기준 미달
3. 당해연도 수확기 벼 800톤 미만 매입
4. 통합 탈퇴 DSC, 해산된 통합 참여 DSC

\* 단, RPC가 없는 시·군의 DSC 모두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제한 2년간 유예

## <붙임 2>

# 통합RPC 우대 지원 세부내용

## 1. RPC 통합 인정범위

- 농협RPC : 농협RPC간(비RPC농협 포함)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2개 이상 농협RPC간 합병하거나 연합하여 잉여 가공시설을 폐쇄한 경우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통합RPC로 승인
  -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연합RPC를 구성한 경우에는 통합RPC 불인정
- 민간RPC : 2개 이상 RPC가 통합(자산인수 또는 합병)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 희망업체 → 시장·군수(검토의견 첨부)→시도지사→농식품부(최종승인)
- 농협 및 민간RPC간 통합 :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하거나, 자산인수(민간DS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승인
  - \* 통합 대상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

## 2. 통합RPC 별 매입자금 지원 세부내용

$$\diamond \text{통합RPC 지원액} = (\text{경영평가 등급} \times \text{참여RPC 개수} \times \text{보정계수}) + \text{우대자금}$$

- 경영평가 개소수 자금
  - 보정계수
    - ▶ 산정방법 : (통합RPC 매출액 ÷ 참여RPC개수) ÷ 당년 RPC 평균 매출액
    - ▶ 적용범위 :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0~1)내에서 적용하되, 통합초기 3년간(광역 5년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1로 적용
    - \* 1RPC 통합의 경우는 미적용
  - 지원금리 : 경영평가 등급금리(시·군통합), 무이자(광역통합-5년간)
    - \* 기존 통합RPC('09.9월까지 인가신청된 RPC)는 이전 기준대로 5년간 무이자 지원
- 우대자금
  - 지원기간 : 5년(시·군통합), 8년(광역통합)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된 RPC 개소당 5~1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 3. 2년차부터 통합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
- 평가방법 : 경영평가지 별도 평가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이행시까지 베푼 매입자금 감액 배정(매년 지원자금의 20%씩 가산)

\* '13년도 통합 RPC부터 적용

#### 4. 기타

- 우대지원기간 경과 후 지원금액 = 경영평가 등급 × 참여RPC 개수 × 보정계수
- \* 우대자금만 지원 중단
- 통합탈퇴 RPC(DSC 포함), 해산된 통합RPC 등을 정부인정 RPC에서 제외하고 우대자금 지원기간동안 재진입 금지('13년부터 재진입 금지기간 적용)
- 광역통합은 동일 도내 또는 연접 시·군(2개도 이상 행정구역을 달리하나 시·군이 연접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에 소재한 RPC간 통합만 인정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에는 미통합RPC 기준으로 정책자금 지원

#### 5. 통합 유형별 우대자금 지원액

통합유형	인정범위	우대자금(억원)
① 통합 I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1개 이상 농협RPC와 1개 이상 DSC·비RPC농협 포함)가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b>&lt;동일 시·군 통합&gt;</b> i) 1 RPC 통합 : 5억원 + (1억원×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ii) 2 RPC 이상 통합 : (10억원×RPC수)+(2억원×DSC·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② 통합 II (농협+민간)	농협과 민간RPC간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거나 자산인수(DSC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③ 통합 III (민간+민간)	2개 이상 민간RPC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 <u>우대자금은 통합농협RPC와 동일하게 적용 지원</u>	
④ 통합 I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합병되어 1개 농협RPC로 통합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b>&lt;광역통합&gt;</b> ○ (10억원×합병·연합농협 RPC 수) × 50% * 2개 이상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연합하여 통합한 경우 DSC·비RPC농협에 대한 우대자금은 제외
⑤ 통합 V (농협+농협)	2개 이상 농협RPC가 연합하여 1개 농협RPC로 통합된 경우 * 1개 RPC에 DSC·비RPC농협이 합병된 경우는 통합 불인정	

※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의 경우 광역통합으로 인정하고, RPC가 타 시·군의 DSC와 통합하는 경우는 시·군단위 통합으로 인정

##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

####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21년까지 20만동 119,650억원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으로의 도시민 이주 촉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불량주택 정비(%)	82	79.7	80.9	81	2014.2	불량주택 정비 실적(12월 말 기준) (용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주민 만족도(%)	78	72	74	76	2014.2	용자금 지원대상 주민 만족도(12월 말 기준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407,586	410,014	520,000	630,000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00,000	400,000	500,000	600,000
- 용 자	320,000	320,000	500,000	600,000
- 지방비	80,000	80,000	-	-
○ 빈집정비	7,586	10,014	20,000	30,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용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洞) 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지원요건

- **(시장·군수·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시 포함 내용>
  - ① 주택개량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 ② 빈집정비 : 빈집철거 및 활용, 빈집정보센터 운영·관리
- \* 주택개량에 대한 생활환경정비계획 미수립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세제 감면혜택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농협과 사전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주택법·건축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 이행, 건축양식·지붕경사·색채 등 농어촌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 \* 지붕형태 : 가급적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등)으로 하고, 평지붕은 표준설계도서 활용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지원형태

- 용자지원
- 대출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재 원 : 농협자금(정부이자보전) 500,000백만원
  - \* '13년부터 지방비 매칭 없음
- 사업량 : 10,000동

#### 4. 용자조건

##### ○ 대상주택

- 건축물 면적 150㎡ 이하(단, 창고 및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 면적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 근거로 하되,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중 하나라도 150㎡를 초과할 경우 용자 지원 불가
-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용자대상에서 제외
-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의 범위 : 근린생활시설, 층간 분리, 동간 분리 등 한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건축 행위

##### ○ 대출한도 및 지원범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의 건축물 평가 및 사업대상자(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대출금 지급

- **(농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 신청시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대출, 잔금은 건축공사 완료시 관련서류 검토 후 대출
- \* 농협은 선금 수령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 통보
- \* 농협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를 받을시, 즉각 자금 회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대상자의 선금대출을 위해 대상자 확정 명단을 농협에 통보하고, 용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서식7)
-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농협에 용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철회 대상자가 되었을 시,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지원 자격 상실 공지
- **(사업대상자)** 대출 가능여부(개인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를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준비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대상자) 시·군·구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전년도 12월 1일~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됨을 반드시 공지
- (대상자 선정 기준) 당해 연도 농어촌주택자금 운용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 대해 아래의 기준으로 선정·확정

##### □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특별배정) 특정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배정하는 물량(환경부 연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우선배정)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배정물량(특별배정 물량 제외)의 25% 범위에서 선정가능(①다문화 가정, ②한옥 건축자, ③도시지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④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자 등)
- (지역개발지역배정) 신규마을조성,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지역개발지역에 우선 배정(①마을(자연마을, 행정리)에서 5호 이상 집단으로 경관주택 개량 희망자 ②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 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배정으로 전환)
- (일반배정) 일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배정(①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②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③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④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⑤가족 구성원 수(가족 구성원 많을수록)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자 선정)

- (추가 선정 기준)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 항목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단,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사업방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 (선정결과 제출)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3. 2) 구체적인 선발 기준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 이를 취합하여 제출(매년도 3월 15일까지)
- (예비후보 확보 및 대상자 변경)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대상자 변경시 시·도 및 농협에 직접 통보

- **(환경부 연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특별배정으로 배정된 명단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부서에 통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
- **(대상자 통보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변경되면 해당 대상자 및 대출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 등을 파악하여 관리
  - \* 사업대상자에게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첨부)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특이사항 표기)** 사업대상자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특별한 조건으로 선정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관에 사업대상자 통보시 이 사실을 표기하여 관리
- **(사업설명회 및 홍보)** 사업대상자에게 주택규모, 대출한도, 대출조건, 농협의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표준설계도 활용,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세제, 풍수해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실시 및 사전 홍보 철저
  - \* 사업대상자가 주택 완공 후 시행지침 위반, 신용불량, 부지 미소유 등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
  - \* (풍수해보험 가입)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재난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수혜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
- **(시·도)** 시·도지사는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과 함께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월 15일까지(서식1))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어촌주택개량〉

- **(사업대상자)** 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농협과 협의하는 등 대출 가능성 확인
  - **(대출 상담)** 사업대상자는 공사 착공 전 융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해당 농협과 상담 후 사업 시행
  - **(규정 준수)**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개량 추진
  - **(마을경관 고려)**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 **(구옥 철거)** 기존 노후주택 철거 이행(무주택자 등 철거대상 주택이 없는 경우 제외)
  - **(대출신청)**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과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 가능

\* 사업대상자는 중도금 대출시 시·군·구청에서 사업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서식7)

- **(제제)** 사업대상자는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거나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시에는 대상자 선정 취소, 대출기관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향후 2년간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발급

\*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신청을 위해 건축공사 기성고 증명을 요청할 경우,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서식7)

-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물 대장 「비고 또는 특이사항」란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표기 의무화

- **(구옥 철거)**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의 구옥 철거 등 당해 주택에 대한 개량 여부 확인

- **(특이사항 관리)** 한옥건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특정 조건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관련사항 실행 여부를 사전 확인

- **(대상자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협으로부터 통보받은 선금 수령자 명단에 대해 이행여부(기한 내 착공 및 전용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되, 읍·면·동 기능축소 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 **(실태 관리)** 기존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주택 품격 향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지자체별 기술 지원반 구성,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도에 보고)** 주택개량사업 읍·면·동 추진상황 및 대상자별 대출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매분기말 기준)

○ **(시·도)** 시·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서식4)

○ **(농협)** 해당 농협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 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 실행)** 융자금 대출은 사업실적에 따른 확인서류를 제출받고 시행하되, 착공 또는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가 융자금 대출을 요청할 경우 대출한도의 50%

내에서 선금 또는 중도금 대출 가능

- \* 최종 잔금 대출시 '건축물 대장' 확인, 「비고」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명칭 표기 여부 확인 후 대출 시행, 미 표기시 융자금 대출 제한
- \* 사업실적 확인서류

대출종류	선금	중도금	잔금	
			신·개·증축	부분개량
확인서류	사업대상자 선정공문	사업실적 확인서(서식7)	건축물대장	사업실적 확인서(서식7)

- (선금수령자 명단통보 및 관리) 농협은 선금 수령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 통보하여 이행여부(기한 내 착공, 전용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자금 회수 조치
- (지역개발지역 대출) 신규마을조성사업,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택건축 담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가능
- \* 주택건축 완공 후 입주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가대출을 실행
- (대출상황 통보) 해당 농협은 융자금 대출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농식품부에 보고) 농협은 월별 대출실적과 년도말 대출실적, 대출대기 이차 발생, 융자금 결산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농어촌 빈집정비》

#### 가) 빈집 철거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방비 확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집행('13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방비 매칭이 없어짐에 따라 빈집정비자금 확대)
  - \* 지방비로 집행할 경우, 대상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
  - \* 빈집 철거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포괄보조사업비 확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포괄보조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대상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인 117개 시·군으로 한정
- \*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집행할 경우,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340만원 이내, 일반 주택은 동당 150만원 이내로 사업비 확보하고, 철거시 추가 소요 비용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집행
- (시·도) 시·도지사는 빈집정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매년 3월 15일까지(서식3-1))
- (실태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철거시 시행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관리

#### 나) 빈집 활용 : 『농어촌빈집정보센터』 운영

- (지방비 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빈집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
  - 빈집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빈집조사원 1인 이상 채용(일용·계약)
  - 광역시는 자율적으로 운영
- (정보 공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
- (운영·관리) 빈집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www.onbid.co.kr)와 연동하여 관리하며, 수시점검 및 자료 관리에 철저
  - 빈집 조사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빈집정보 업데이트
- (결과보고)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서식6)

#### 4. 자금배정단계

##### 〈농어촌주택개량〉

- (농협) 농협은행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지원기관(농림수산식품부)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자금 교부) 농협은행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협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 (복지정보 연계) 농협은행장은 농협(회원조합 포함)에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대출 시행시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식8)의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취합하여 2013.12.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대출을 위한 담보 및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 농협에 자금 대출 신청
  - **(필수 제출서류)** 준공확인서 또는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비고 또는 특이사항’란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표기 확인, 미 표기시 대출 제한)
  - **(자진 사업포기)** 사업대상자는 기한 내 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대출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 대출기한 : 2013.12.31(2013.11.30일까지 착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장신청자에 한해 2014.6.30까지 대출 연장)

### 《농어촌 빈집정비》

- **(시·군·구/시·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지방비 및 포괄보조사업비로 확보하여 지원
  - 지원액은 빈집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하되, 포괄보조사업비로 지원할 경우 슬레이트 주택은 동당 340만원 이내, 일반주택은 동당 150만원 이내로 하고, 철거시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 추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① 대상 : 시·군·구, 사업시행자
    - ②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③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농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④ 점검항목 : 사업실적, 집행내역, 자금 운영·관리현황 등
    - ⑤ 점검결과 개선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침,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시·군·구/시·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융자조건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 매년 12월 15일까지(서식5-1, 서식5-2)
  - 연장 기간 :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 말까지

- \*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인행위(착공, 대출신청 등)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시키되 대출을 포기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 일괄연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군·구는 농협의 시·군지부에 사업대상자별로 대출 실적을 파악한 후 정확한 연장수요를 제출하되, 변경된 대상자는 '비고'란에 표기

- **(농협)**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농협은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예산의 결산》

- **(시·군·구/시·도)** 매년도 빈집정비 등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농협)**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제 제》

- **(시·군·구/시·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개량한 경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융자금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
- **(농협)** 대출기관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대출대상에서 제외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13) : 불량주택 정비 82%, 주민 만족도 78%
- 성과지표 측정
  - 측정 방법
    - 불량주택 정비 : (융자지원 대상주택개량 실적누계치 / 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지자체의 추진 실적 보고서, 12월말 기준
    - 주민 만족도(%) :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100, 12월말 기준
  - 성과지표 측정 시기 : '14년 2월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시·도지사는 융자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시·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상 물량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 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구(권역) 내에서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빈집정비실적,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사업평가 실시

### 《환류》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 8. 사업완료 이후 융자금 사후관리

○ **(시·군·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완료 이후 융자금 거치기간(5년) 동안 당해 주택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속적 관리

- 사업대상자가 증축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시 관련지침에서 정한 대출대상 주택 규모를 초과한 경우, 농협 및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 회수 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

\* 2009년 이전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와 2008~2009년 농촌주택정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

- 매매, 상속 등으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가능자를 구별·확인하여 농협에 통보

○ **(시·군·구/농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은 사업완료 후의 융자금 사후관리 사항을 적극 홍보

○ **(농협)** 농협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융자금 잔액을 회수

- 농협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회수대상 융자금 잔액을 일반자금으로 전환조치 가능

- 농협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금 회수대상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사용사유를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건축한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 제11조에 따라 조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2013. 5. 15까지)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13. 5. 30까지(서식2, 서식3-2))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2013.12.1~2014.1.31까지)

나.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신축·부분개량, 증축 등 포함)

○ (대상지역)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조건)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신·개축 세대당 5,000만원,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500만원

###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 박범수 사무관 유재형	044-201-1751 044-201-1756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부장 서기봉 팀장 류계하	02-2080-7560 02-2080-7581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에서 지급함

## I. 사업개요

###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보다 1.5%p가 높은 95.6%를 '13년도 목표치로 설정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p		
농업경영회생자금 상환율 (%)	95.6%	93.1%	94.3%	95.0%	익년도 1월말	(상환기일 도래금액 - 연체금액) / 상환기일 도래금액 ×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1040,000	60,000	60,000	60,000	매년 60,000 수준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 《지원제외 대상》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7백만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과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경영평가 실시》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3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협은행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은행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세부지침 시달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3억원 이하
    - \* 시·군지부에서 신청받은 경우에도 3억원 이하일 시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 내외 위촉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가 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연계지원 대상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만, 경영평가위원회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반드시 포함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자금지원 단계

#### (1)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3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 ② 대출기관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3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군 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한 후 시·군 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 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 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협은행·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금융 컨설팅」 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일선조합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 《제재》

### 농협은행·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6. 성과측정단계

- 농협은행 자료를 통해 실적 등 확인을 거쳐 성과지표를 측정(익년도 1월)
-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PCRМ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 등 설문조사(12월중)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 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b>미 곡</b>	1.5ha이상	
<b>밭작물(식량류)</b>	1.5ha이상	
<b>채 소</b>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b>과 수</b>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b>화 훼</b>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b>특용작물</b>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삼	1.5ha이상	
<b>축 산</b>		
- 한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b>산 림</b>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농촌개발분야

## II. 기술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박순연 연구관 안형근	044-201-1631 044-201-1637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본부	본부장 남궁형 실 장 최양석	031-420-6750 031-420-6761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생명산업기술개발 : 동식물, 미생물 등 생명자원의 생산·응용·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 ‘생명산업’ 육성에 기여
- 첨단생산기술개발 : 주요 시설자재의 국산화 및 생산비 절감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안전성 제고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용 농축산물 개발 및 저장·유통·검역 기술개발을 통한 농산품 수출 기반 구축 및 수출 확대 촉진
- 기술사업화지원 :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이를 통한 농어가의 신소득원 창출
- 농림수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림수산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식품산업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등 기술개발

### 2. 근거법령 및 규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제1항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목표)		
▪ 실용화 성과(지수)	79.35	-	69.6	76.34	익년 2월 중	세부사업 성과지표 점수의 합 × 가중치
▪ 산업화 성과(지수)	20.55	-	19.2	19.59	익년 2월 중	세부사업 성과지표 점수의 합 × 가중치
▪ 과학적 성과(지수)	22.74	-	20.46	21.52	익년 2월 중	세부사업 성과지표 점수의 합 × 가중치
▪ 산업기반구축 성과(지수)	57.61	-	53.43	53.04	익년 2월 중	세부사업 성과지표 점수의 합 × 가중치

\* 각 성과지표별 가중치 적용 후 산정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년이후
○ 생명산업기술개발	74,989	52,181	50,976	44,282	
- 출 연	74,989	52,181	50,976	44,282	
○ 첨단생산기술개발		17,571	19,500	18,750	
- 출 연		17,571	19,500	18,750	
○ 수출전략기술개발		17,475	18,425	16,026	
- 출 연		17,475	18,425	16,026	
○ 기술사업화지원	6,000	8,000	8,000	7,200	
- 출 연	6,000	8,000	8,000	7,200	
○ 농림수산물연계지원	3,000	3,000	3,000	4,000	
- 출 연	3,000	3,000	3,000	4,000	
○ 교부가가치식품개발	18,294	24,808	28,172	31,327	
- 출 연	18,294	24,808	28,172	31,327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9,900	10,868	11,911	13,547	
- 출 연	9,900	10,868	11,911	13,547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4,000	4,000	
- 출 연			4,000	4,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중소기업, 기타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 3. 지원대상

- 생명산업기술개발 : 녹색기술개발, 천연의약 신소재 개발, 민간육종지원, 생명자원 활용기술개발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생산기술개발, 동물 U-health care 시스템개발, 농업정보시스템구축기술개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지원, 제품규격화 기술개발, 저장·유통·검역기술개발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핵심기술·역량을 보유한 혁신연구기관 지원 등
- 농림수산식품연구센터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 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강화 식품, 전통웰빙식품, 식품안전·품질관리, 시가품핵심소재, 식품 기자재 고급실용화 및 저탄소·신가공 기술 개발 등
- 수산실용화기술개발 : 수산생물실용화기술, 친환경 수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기술개발 등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예방, 검역, 진단, 방역, 확산방지 등 기술개발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률(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 당 10억원 이내(당해년도 정부출연금 기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13년 3월
  -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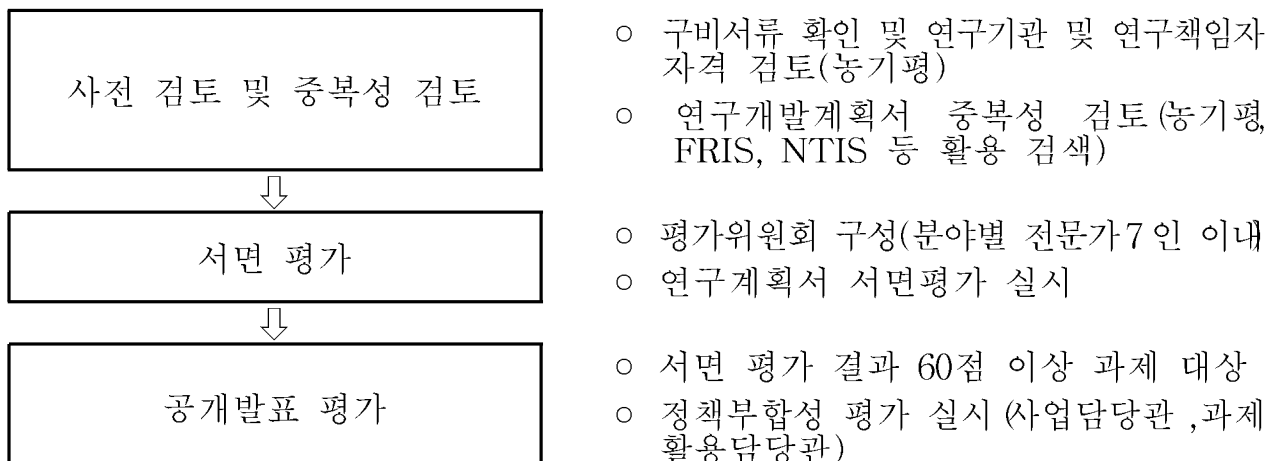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13년 3월 중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ipet.re.kr)접수
  - 과제관련 3P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화
    - \* 3P : Product(산업제품), Patent(특허), Paper(논문)의 동향분석
  - 참여산업체가 중소기업(농수산업경영체)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031-420-6761~70 (FAX. 031-425-6443)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우선순위
  - 녹색성장, 종자산업 육성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과제 선정평가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기술개발과제 최종 선정 : 2013년 5~6월
  - 농림기술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2013년 5~6월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주관연구기관

- 연구협약서 제출 : 선정통보 후 15일 이내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단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연구협약 체결 :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배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협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또는 협동, 위탁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중간평가 실시
  - 평가시기 : 당해연도 협약종료 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수행 결과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15%의 과제에 대해 과제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관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술실용화기업 등
  - 점검시기 : 당해연도 협약 종료 시점 실시
  - 점검사항 :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 산업화노력, 기업재무, 애로사항 등
  - 점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으로 연구 및 사업화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 및 실사

#### 〈제제〉

-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정산)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 회수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요약)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1~3년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 2년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5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성과를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등록·출원하는 경우 : 1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 그 밖에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 6. 성과측정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수행한 연구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까지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연구성과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과제 종료와 함께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연구성과 활용실적 사후추적평가》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각 과제별 연구성과를 측정
-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사후추적평가
  - 평가대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중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
  - 평가사항 : 연구성과 도출 및 산업화실적, 농림업 연계효과 등
  - 평가방법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우수(불량) 연구자에 대해서는 신규과제 제안시 가(감)점 등 부여

### 《사업(R&D프로그램) 성과평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연계하여 사업 성과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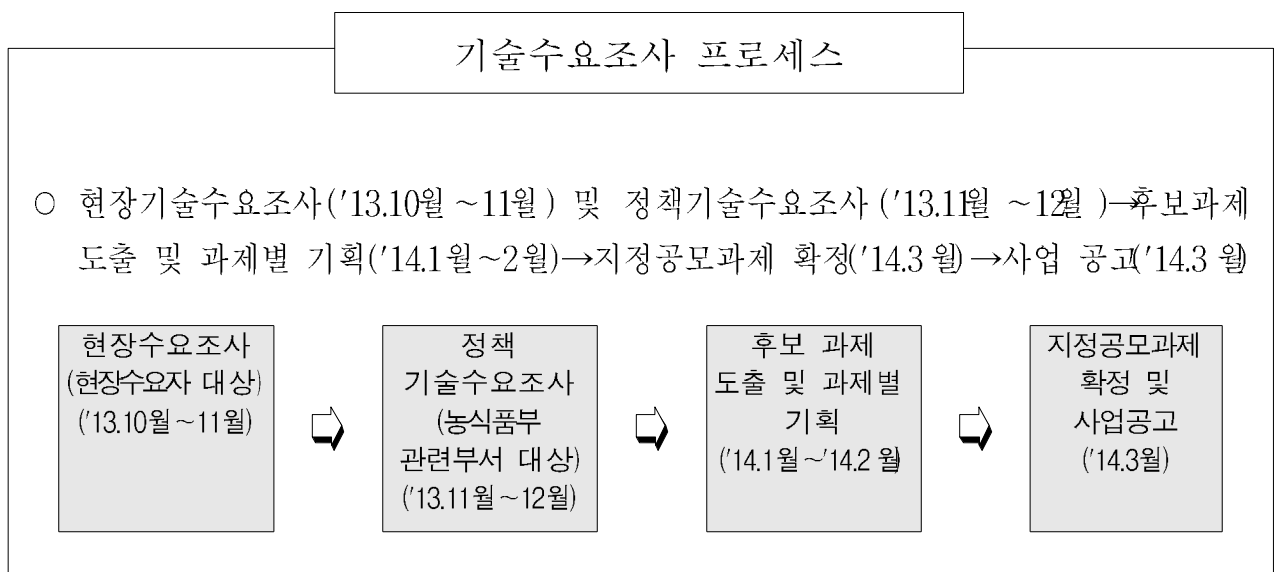
### 《환 류》

- 매년 실시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반영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기술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13년 10~12월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기획실(031-420-6742~4)
- 조사대상 : 농림수산식품분야 산·학·연 전문가 10,000여명(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인명DB등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소속 연구자와 농식품부 정책 부서 및 산하기관 등
- 조사방법 : 수요조사서를 첨부한 E-mail 발송 및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접수토록 함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분석하여 신규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 2. 201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 선정평가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3월)	<b>연구팀 → 농기평</b> - 일반과제, 기획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사업단, 수출연구사업단 : 연구사업단 사업계획서
접수결과 보고	<b>농기평 → 농식품부</b> - 접수결과 농식품부 보고
사전검토 (4월)	<b>농기평</b> - 주관연구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유무, 중복성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을 실시 - 공개발표평가시 기업체가 주관기관인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사전검토 결과는 평가위원단에 제공 평가에 활용
평가단 구성	<b>농기평</b> - 평가위원 구성 : 현장전문가 포함, 이해관계자 배제 (7인 이내)
서면평가 (4월~5월)	<b>농기평 (평가위원회)</b> - 인터넷 서면평가 진행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공개발표평가 (4월~5월)	<b>농기평 (평가위원회), 농식품부</b> - 서면평가 통과 과제 대상, 정책부합성평가 동시 실시(과제활용담당관, 사업담당관) -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제 탈락
선정결과 심의 및 연구기관(책임자)확정	<b>농식품부</b> -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 정책부합성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선정통보 (5월~6월)	<b>농기평 → 주관연구기관</b> - 전문기관은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에 선정 통보함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수정	<b>주관연구기관 ↔ 농기평</b> -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계획 수정·보완된 협약 관련 서류 일체를 전문기관에 제출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6월)	<b>주관연구기관 ↔ 농기평</b> - 선정일 1개월 이내에 연구 협약 체결 -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지급

\* 세부일정(공고 등)은 예산상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5	<b>신기술보급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지도관 정충섭 지도사 안정구	031-299-2880 031-290-2879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신기술의 농가실증 시범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제4조, 제1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확산
  - 최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시범농가 생산성 향상률(%)	13.6	11.9	12.4	13.2P	12월	시범농가 단위생산량(kg/10a) - 인근농가 생산량(kg/10a)/ 인근농가 생산량(kg/10a)×100
▪ 농가기술수준 향상도	76.7	76.2	80.4	73P	12월	최고품질 생산농가 기술수준 점수의 합/조사농가수
▪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율(%)	17.9	-	-	17.0P	12월	Σ(시범농가 최고품질 포도, 복숭아, 수박, 참외, 멜론 생산량/ 시범농가 포도, 복숭아, 수박, 참외, 멜론 총생산량)*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852,288	54,600	59,900	64,684	199,200
국 고	426,144	27,300	30,000	32,687	100,800
지방비	426,144	27,300	29,900	31,997	98,400
용 자	-	-	-	-	-
자부담	-	-	-	-	-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농업인,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
- \*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생산자 단체 및 농가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본 사업은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공통적용사항인 농림수산물실시규정 제48조, 별표4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1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범요인 투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1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10백만원~250백만원(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 농가의 자부담금은 없음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이 다름(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 세부사업내역은 붙임 참고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촌진흥청에서 2013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시달(전년도 12월)
-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2013년 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신청서 양식 : 사업신청서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비치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포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신청서 등을 평가
    -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연도 3월 이전에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확정하여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 농업인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시·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 제4조(사업의 실시 및 조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한다.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사업추진을 “201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따름

### 4. 자금배정단계

- 사업 시행자는(농업인 등)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시설 장비	취득일 취득일	4~6년 3~5년	양도, 용도변경 양도, 폐기	시설은 비닐하우스 등임

### 《제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6. 성과측정단계

### <기술수용율 조사>

- 사업 대상농가의 시범사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새기술 수용율 조사
  - 평가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농가 기술수준 향상률, 생산성 향상률 등
  - 성과측정(11월~12월) :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

###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11~12월중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 참여농가
  -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3년 이상 계속 추진되고 있는 세부사업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 《환 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치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 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붙임>

## 2013년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사업량	지원단가
계		729	10 ~250
국책지원 기술	소 계	228	15 ~150
	- 기능성 쌀재배기술보급 및 생산비절감기술	55	50 ~150
	- 고품질 잡곡생산유통기술	13	50 ~100
	- 생산비 절감 가축사양기술	29	25 ~75
	- 농업 에너지절감 기술시범	25	20 ~35
	-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기술	80	15 ~50
	- 수출경쟁력향상기술	26	25 ~50
소득기술	소 계	302	10 ~250
	- 최고품질 생산기술	91	15 ~100
	- 특화품목 차별화 기술시범	84	10 ~50
	- 발작물 경쟁력 제고기술	26	50 ~200
	-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	57	20 ~100
	- 농산물 가공기술	44	12.5 ~250
친환경농업 기술	소 계	101	10 ~100
	- 가축사육환경개선 기술	26	24.5 ~50
	-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42	15 ~100
	- 농업환경개선 기술	33	10 ~50
생활농업 기술	소 계	98	10 ~35
	-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80	10 ~35
	-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	18	15



농촌개발분야

### Ⅲ. 인력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장 박경아 사무관 김병준	044-201-1571 044-201-1574
한국장학재단	여신관리부 상환운영부 신용지원부	팀장 남성길 팀장 강준호 팀장 박운하	02-2259-2241 02-2259-2211 02-2259-2071

## I. 사업개요

### 1.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2.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학자금 융자를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90% 수준을 목표로 만족도를 매년 1%p 높임(조사 : 전문조사업체에 의뢰)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수혜자 만족도	90%	86	89	89	2013.10	-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계	408,849	60,482	35,507	31,100	31,100
융자(출연)	408,849	60,482	35,507	31,100	31,1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지원자격 및 요건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중 다음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 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②와 ③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가. 부모
나.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① 조부모
② 형제자매
③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다.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 ②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 직전학기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③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하고, 신입생은 적용 제외

### 2.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은 매학기 용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신입생은 세부신청요강에 별도 공지). 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 대상에서 우선적용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 특별추천자

○ 선정방법

- 학기별로 전 용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순위에 의거 용자대상자로 선정

○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내 심사를 통해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신청 사유 및 선정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용자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3. 용자대상 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통해 용자 가능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용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 한국장학재단은 농식품부 산하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역을 파악하여 매 학기 용자대상 금액 신청시 반영(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잔액은 용자 가능)

**4. 용자조건 : 무이자 용자**

-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용자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참조

**5. 용자학기 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4년제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공학계열 등 정규 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용자 가능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용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용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교)을 졸업한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 용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용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용자학기 수에 포함

## 6. 거치 및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 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단, '10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는 거치기간 1년('10년 졸업자부터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09년도 이전(~'09.12월)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용자받은 자가 대학(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

-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직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대상자

## 7. 상환방법

- 상환은 월별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조기상환은 언제든지 가능

\* 단, '11년까지의 학자금을 용자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분기/반기/연/일시로 상환할 수 있음

## 8. 상환유예

- 상환유예는 그 해당사유에 따라 상환연장 신청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단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

하여 연장승인서를 발급함(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융자지원 세부 신청요강에 참조)

### 9. 상환 불이행시 조치

○ 연체자 관리 기준

- 연체자의 정의 :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

○ 시효기일 관리

- 상환기간 만료 및 분할상환금 미납 등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할 경우 소멸시효 이내 제소(독촉절차 포함)하여 시효기일 관리

#### < 상환 불이행시 절차(한국장학재단) >

구분	연체기간	내 용	발송매체			발송주기
			통지문	SMS	유선	
1단계	연체 1개월 이내 ~ 연체 3개월 경과시	연체 및 상환안내	-	발송	-	월1회
2단계	연체 4개월 경과시 ~ 연체 7개월 경과시	연체 및 상환안내	“ 연체정리 안내 통지문”	발송	-	월1회
3단계	연체 8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안내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정통지문”	발송	-	월1회
4단계	연체 9개월 경과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 안내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정통지문”	발송	유선 안내	월2회 이상
5단계	연체 10개월 경과 시	신용유의정보 등록 및 등록 결과 안내	“신용유의정보 등록 통지문”	발송	-	월1회

### 10.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 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 항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계획수립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 승인

##### 한국장학재단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신청요강」 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
-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 신청요강에서 정한 신청기한내에 신청

#### 2. 융자대상자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 세부시행계획」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제시

##### 한국장학재단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신청학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순위별로 융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융자금은 각 대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신청자의 등록금으로 대체

####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 한국장학재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한국장학재단은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월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 \* 회계 및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13년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용자) 반납금)

#### 4.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 용자가 종료되는대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 및 용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한국장학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 용자가 종료되는대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 및 용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대학 및 용자금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 〈제 제〉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용자 부당수혜자는 본 지침에 의거 해당학기 용자금을 회수하고, 부당 수혜회수에 따라 향후 신청자격을 제한

#### 4.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학자금 수혜자(용자이용자)의 만족도임
- 한국장학재단은 연말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학자금을 용자받은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 지침 작성시) 반영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용자신청자 인원수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3년도 하반기 및 '14년도 상반기에 학기별 「세부신청요강」 공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 장 박경아 사무관 김병준	044-201-1571 044-201-1574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농촌사회팀	팀 장 이갑주 차 장 이경숙	02-2080-5627 02-2080-5635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제③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영농·가사도우미를 지원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91%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만족도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수혜자 만족도	91%	90%	91%	90%	2013.10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만족도조사는 농협중앙회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4,106	9,314	9,000	10,200	10,200
보 조	23,875	6,520	6,300	7,140	7,140
농가부담	8,025	2,340	2,340	2,700	2,700
농협부담	2,206	454	360	360	360
○ 영농도우미	26,751	7,800	7,800	9,000	9,000
- 보 조	18,726	5,460	5,460	6,300	6,300
- 농가부담	8,025	2,340	2,340	2,700	2,700
○ 가사도우미	7,355	1,514	1,200	1,200	1,200
- 보 조	5,149	1,060	840	840	840
- 농협부담	2,206	454	360	360	36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사업 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1933.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사도우미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 \* 지원대상 경로당은 경로당 소재 주소지가 읍·면 지역만 지원

### 2. 지원금액 및 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목적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60,000원 이내에서 지역농협이 정하는 금액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5~9일)5일 지원, (5일이상 재입원시) 5일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3~9일)입원일수 만큼 지원, (3일이상 재입원시) 입원일수 만큼 추가 지원 (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명 기준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6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2,000원만 지원 (차액 자부담), 6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70% 지원(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
- 목적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 비용으로 1인당 10,000원을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경로당 포함) 연간 12일 이내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1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가사도우미를 2인 이상 파견한 때에는 농협·이장·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서식 4> 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 서식 4는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서식1> 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 전화신청 시는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진단시 : 진단기간 내
  - \* 진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
  - \* 동일한(사고·질병) 사유로 인한 영농도우미 지원은 연간 1회만 가능
  - \*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서식 1> 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영농도우미
  -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를 이미 지원 받은 가구(상이한 사유라도 미지원)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가사도우미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 65세이상 단독가구는 복지부 서비스 이용토록 안내

#### 4. 지원대상 선정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는 상호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보
-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가사도우미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가사도우미는 상호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회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 영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칙적으로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희인력, 영농도우미로 활동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 영농도우미(가사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가사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 가사도우미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

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가구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가사도우미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가사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 가사도우미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서식 2〉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서식3〉를 작성하여 제출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 서식 2, 3은 농협중앙회에서 전 지역 농협으로 별도 배부

##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9. 기 타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 영농·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 및 지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 중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가사도우미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기준 제시

**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가사도우미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13. 익년 2월까지 완료)

###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의거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 《제재》

-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

##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 수혜자 만족도임
- 농협중앙회는 '13.10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측정방식은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지역농협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서식 1>

## 영농·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도우미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사고질병 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가사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역 (본인 추천시 신청인 기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p>○ 상기와 같이 (영농, 가사)도우미를 신청하며 위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음</p> <p>○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대리인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OO농협조합장 귀하</b></p>				
<p>※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p> <p>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p>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강효주	044-201-1531 044-201-1532
농협은행	농협은행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이덕기	02-2080-6785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 I. 사업개요

### 1. 목적 및 추진방향

####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 추진방향

-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농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률	96%	93.3%	97.7%	96%	12월말	(선정한 후계농업인수 영농미종사자수) / 선정한 후계농업인수 x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784,630	88,000	88,000	101,200	101,200
용 자	2,784,630	88,000	88,000	101,200	101,200
○ 후계농업경영인 - 용 자	2,784,630	88,000	88,000	101,200	101,200

## II. 2013년 사업시행요령

###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1)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li> <li>*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li> </ul>
시설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 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li> <li>*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li> </ul>
가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li> <li>*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 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li> </ul>
운영자금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li> <li>◦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li> <li>*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li> </ul>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li> <li>*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li> <li>*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li> <li>*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li> </ul>
시설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 기반 시설의 설치</li> <li>*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li> </ul>
운영자금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li> <li>◦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li> <li>*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li> </ul>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1) 농림수산물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융자제외 대상사업**

-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 구입자금. 다만, 형제자매라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2) 한(육)우 구입자금(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육우 자금은 지원
-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용 시에는 기 지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보증지원

#### 4. 지원형태(융자, 보조) 및 사업의무량

#####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 (1)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2)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 (3)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4) 대출금리 : 연리 3%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 단,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당 해 년도에 사업계획의 자금 40% 이상 대출하여야 함(사업량 40% 이하 추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1) 재원 : 농업교육 및 농어업경영컨설팅 예산
- (2) 지원내용
  - 교육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농업생산 기술·경영·마케팅 등 관련 교육 이수 시 교육비 일부 지원



- 컨설팅 : 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신청시 컨설팅비용 일부 지원
- \* 교육, 컨설팅 지원절차 및 방식 등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 안내

## 다. 융자방식

### (1) 사전 융자

- 대상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구입
- 제출서류 :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 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 증빙서류
- 사전 대출 규모 : 전체 대출금의 70% 범위 이내
-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거래 금액을 확인·정산한 후 대출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사업추진 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2) 사후 융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융자)

- 대상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묘목·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 제출서류 : 사업추진실적확인서(시·군·구 발급)
  - \* 사업대상자가 사업진행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 자료들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함
  - \*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식품 가공·제조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제출로 사후 대출 가능
-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 ①담보물 증빙서류(단, 담보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②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

- 사후 용자 대상사업의 경우도 ①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②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 등) 발급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전 대출 가능
-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1)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
-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3) 보증제한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예 : 농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등기를 완료한 경우)와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대환 포함)
  - \* 행정기관에서 확인서 발급을 위해 소유권이전 서류를 요청할 경우, 농신보 대출 계획 시에는 주의 필요
- (4)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5. 대출 취급기관

- (1) 농협은행(지역조합 포함),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등
  - 농협 : 농협은행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일선조합에서 수행 가능(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변경 가능)

○ 농협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 각 금융기관 본점 등에서 총괄하되, 실제 대출은 지점 등에서도 수행가능

(2)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지급·회수 및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일선 조합이나 지점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조치

## 6.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 종료 및 자격 취소 등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적용종료

(2)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 제한

(3) 사업신청 당시 자금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유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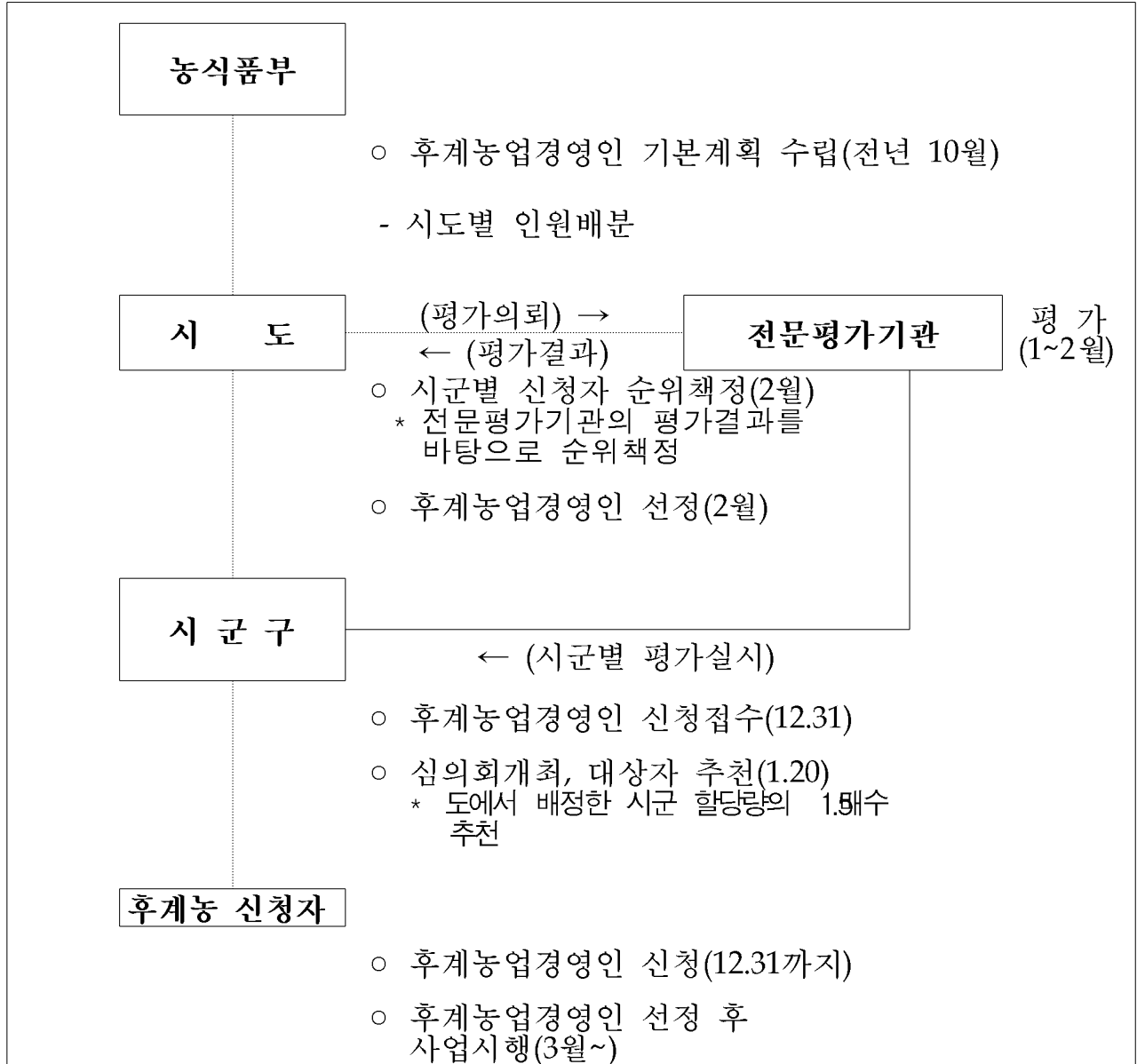
(1)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2) 사업시행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사업추진 절차

※ 사업일정 : ①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시군 : 사업신청접수(“12.12.31까지) → ③시군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20까지) → ④시도 : 평가의뢰(1.25) → ⑤평가기관 평가실시(1.25~2.24) → ⑥ 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5) → ⑦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5)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9까지)

<사업추진 체계>



## 2.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기존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사업량(후계농업경영인수, 사업비)을 확정 통보
- (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추진 계획 마련, 사업신청접수 홍보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 관리
  - \* 시도에서는 과거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정

- ( 시군구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성검토, 신용조사의뢰 등
  - 시군은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 ※ agrix에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 제출
- ( 신청자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소지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 : '12. 12. 31까지
  -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단,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 단,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는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1부,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읍·면·동장 추천서 1부(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 3. 사업자 선정단계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시군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시도에서는 시군의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에 송부
-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2월(1개월간)
  -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 제출(도, 농식품부)
- ※ 기타 도별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 선정·운용은 평가 주관기관에서 세부 운용계획 수립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2월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자체기준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 다만,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하여야 함
  - 시군별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별 할당량 변경가능

#### 〈읍면동〉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장·군수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 명단을 대출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규모에 대하여 확인 요청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시군〉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추천자 결정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추천
- 구성 : 10인 이내(시군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추천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 20조 내지 제 23조에 따라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에서 배정한 사업량의 150%를 추천
  - 농학계 대학교 및 농학계 대학(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 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우선 추천
  - 추천 인원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및 35세 미만인 자를 우선추천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천
- ※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추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 <시도>

- 시군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농업인재개발원)에 평가를 의뢰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배정한 사업량 범위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농업계학교 졸업자 및 만 35세 미만인 자, 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여성 농업인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 ※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에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사업량 조정 가능

### 《전문평가기관》

-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방법, 일정이 포함된 「후계농업경영인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부분 현장조사 실시
-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필요시 시도 농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가능)
- 평가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예산으로 지원 가능
-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 지표는 별도 통보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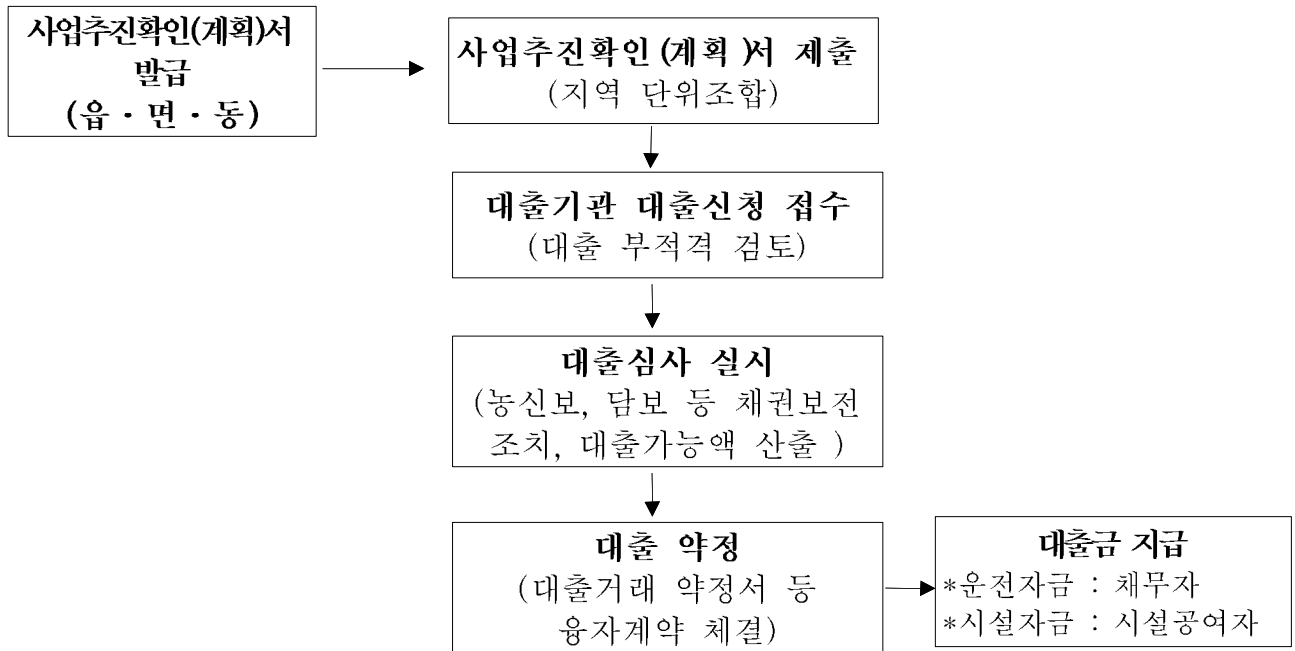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지원계획 전달
- (시도 및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현지실사 후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 전 소요자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의 사업추진 일정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수료증 제출받아 수료 여부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 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수료증은 제출년도로부터 최근 3년 내 발행된 수료증까지 인정
- (대출취급기관)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해당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함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 시행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신청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 전 대출 :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 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받고자 할 경우 대출희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신청

### <사업자금 대출 체계>



## 5. 교육 및 컨설팅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자율교육방식에서 의무교육 방식으로 변경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금 대출 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지 후 자금수령 토록 의무화
- 경영컨설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활용하되, 사업대상자의 경영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은 국고, 지자체, 자부담의 분담방식으로 지원
  - 교육비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영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 교육과정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경영, 품목, 실습,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자율성 부여
  -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명단을 통보받으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지침, 사업추진 및 대출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경영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조치

## 6. 이행점검단계

##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 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의 전·유용, 사업장 이탈, 농지 및 시설 매도 등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는 농·축협, 컨설팅업체와 합동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 및 취소 시 처분사항을 고지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의 사후관리카드에 입력 조치
- 후계농업경영인은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별지 제3-4호 서식)하여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에게 제출(익년 1월까지)하여야 한다.

## (2) 제제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8호 서식)
  - ①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다만,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융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당초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일부상환 조치 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②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③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
    - 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 보전 부업형 취업인 경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인 경우,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인 경우,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인 경우 제외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가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④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경우
- ⑤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⑦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는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토록 문서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2년 경과시까지 지원자금을 용자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취소 조치

### (3)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대출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기관간에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함)

### (4)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의 승계

- 후계농업경영인이 사업자금 용자 후 사망·신병,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승계시킬 수 있으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관계기관(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될 경우 용자금 회수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에 대해 교육 실시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 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 (5)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 시·군은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 발급

#### (6)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 가능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 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알선 등을 적극 지원
-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경영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 (7)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를 '13.2.29일까지 Agrix에 등록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을 반기익월 20일까지 Agrix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은 별지 3, 4호 서식 또는 Agriedu.net의 「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자금상환일까지 매년(익년 1월 말)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기관의 방문 및 확인, 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5년 주기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해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겸직·겸업여부, 농지임의 매도 여부 등을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8월 중)

## 8. 성과측정단계

### (1) 성과지표 측정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

### (2) 만족도 조사

- 후계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정책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 '13년도 사업평가

- '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 (2) 환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 10. 기타사항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추진요령에 의함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 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 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 2. 신청자격 : '13년 대상자와 동일함

### 3. 신청기한 : 연중

### 4.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5. 기타사항

- 사업신청접수는 지자체의 업무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사업신청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정보(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신규 , 농업인 )

청 자	성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 ) -
	주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차분 각 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b>59</b>	<b>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 종 구 사무관 황 규 광	044-201-1531 044-201-1538
시도/시군	농정총괄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3. 성과목표 및 지표

- 도시민농촌유치사업 참여 시군을 '15년 50개소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사업참여 시군 확대	40개소	22개소	25개소	27개소	'13. 3	사업참여 시군 개소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사업량	22개소	25개소	27개소	40개소	43개소
합 계	11,000	4,600	5,200	8,000	9,200
국 고	5,500	2,300	2,600	4,000	4,600
지방비	5,500	2,300	2,600	4,000	4,6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 지역의 정주권 개선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정주공간 조성사업 등 기존에 도시민 유치활동을 추진 중인 시·군이나 시·군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 순위 부여 가능
- 시·군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 3. 지원대상

-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비용
-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 소요비용(홍보행사, 귀농귀촌교육, 멘토링, 연구용역 및 조사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10%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 기존 농업인들과 융화·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 하드웨어부문은 귀농인의 집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체험·교육·상담 등)의 귀농·귀촌에 필요한 직접적인 연관 부문으로 제한

\*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 1)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재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농가주택(빈집)을 매입·임대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대비 집행은 불가)

- 2)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귀농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대비 집행은 불가)
  - 3) 도시민 농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 사업비(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단, 부지매입비는 자부담
  - 4)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귀농센터 마련 및 예비 귀농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제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부문 사업비의 지원 범위(총 사업비의 30%) 내에서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도시민 유치 자체 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업은 제외)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 지원
- 소프트웨어부문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준수하여 집행
- \*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및 지원 가능(단, 주체별 위탁범위는 참고하되 시·군 자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1) 시·군/읍·면 : 귀농·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인사 D/B 구축, 귀농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 가능 지역에 대한 농사·농촌정보 및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클럽)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와 연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귀농·귀촌 선배, 지역개발전문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 지원 가능(일회성 지역 행사비 집행 불가)
  - 2) 농어업회의소·지역사회단체·농협 : 시·군, 읍·면, 마을단위 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 텃밭제공, 귀농인 대상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사회적 기업 참여 및 일자리 알선·제공, 성공 귀농인 멘토 및 귀농·귀촌인의 농사·농촌체험지(地) 안내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
  - 3) 교육기관 : 전원생활체험·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농촌정서 등 인문 교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 예) 최대 7일 이내(1박2일 ~ 2박3일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4) 마을·선도농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농지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귀농·귀촌인 사전 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농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째 전체사업비의 10%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과 신규 시·군의 경우는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제외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50%)

- 지방비(50%) 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25%:25%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비 연차별 지원

▪ 신규 및 계속 추진 시·군(6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2억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계획은 첫 1주기(3년간)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에 6억원 지원, 1주기 사업성과 평가결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추가 지원(1주기/3년)하되, 6억원 내에서 지원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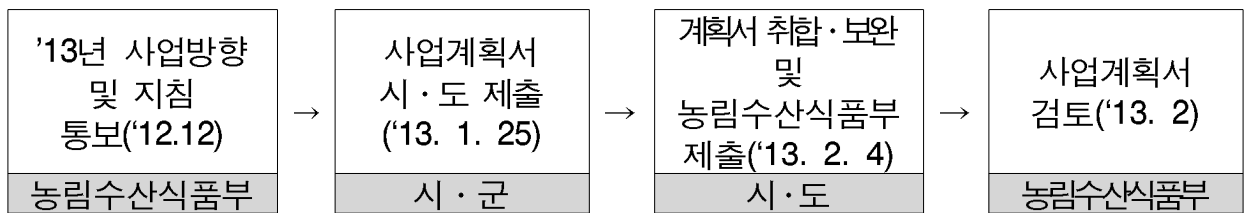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시·군은 「별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13년 1월25일까지 도에 제출하고 각 도는 이를 검토·보완 후 취합하여 2월4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제시 가능

\* 시·군은 신청 전 사업 계획서를 도지사로부터 광역 귀농·귀촌계획과 지역 특성, 실천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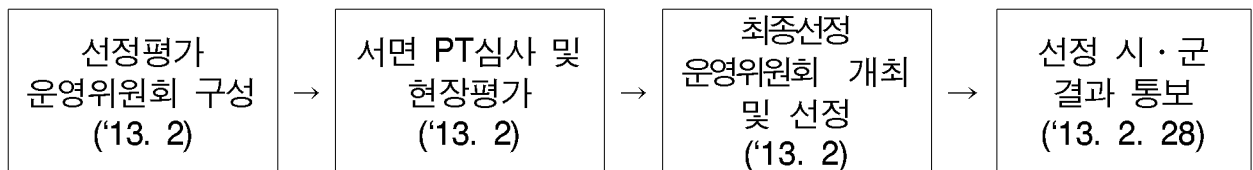
○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회의소, 농촌마을, 지역단체, 귀농인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계획은 첫 1주기(3년간)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에 6억원 지원, 1주기 사업성과 평가결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추가 지원(1주기/3년)하되, 6억원 내에서 지원
  - 사업계획은 단계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1년차, 2년차, 3년차)로 수립하되, 분야별·항목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수립
    -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 사업완료(첫 1주기) 결과, 사업성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의 추가 계속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서 제출은 신규 사업자 신청에 준하여 다시 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군에서 신청한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예산 확보 등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준비성, 단계별 세부사업(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체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통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계획’의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시·군을 2월28일까지 선정
-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시·군 등 기존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가점 부여 가능
  - \* △귀농귀촌업무와 도시민농촌유치사업을 단일부서로 통합 운영 △지자체 단위(도단위 및 시·군단위)로 지자체별 '13년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귀농귀촌계 등 전담조직·인원을 확보·운영하는 시군은 최대 5점 이내에서 가점을 우선 부여할 수 있음
- 사업평가결과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역량 및 성과가 높은 상위 80% 시·군의 경우에는 1회(1주기)에 한해 추가 지원



\* 시군 신청 여건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등 계획은 변경가능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 수립)**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의거 관심 있는 관내 마을, 지역농협,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귀농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제시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
- ※ 선정된 시군은 상기 사항을 보완 및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도의 검토(협의 등) 및 보완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3주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제출(별도 공지)
  - 사업대상으로 통보받은 시·군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보완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주력
  - 시·군의 일반현황(여건 변화), 인구변화 추이 등 분석 반영
  - 도시민 농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재 상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달성 여부 정기적 파악 등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의 로드맵 작성 및 달성 정도 체크
    -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등 연속성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른 시·군 전담기구(귀농센터 등) 설치 및 운영, 각종 하드웨어용 및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연차록 여부
      - \* 시·군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업무 부서일원화,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정착 귀농인 활용 실태 등
      -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 계획(추진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구성비율)이 실제 지침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프로그램 이행 여부
    - 연도별 투자계획(총사업비 의한 사업추진 내용) 대비 달성 정도
  - 사업 계획에 반영된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자료(출향인사 등) 관리·운영
  - 시·군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각종 협약 이행 여부
  -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여부
  -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 활용 실태

- 마을,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정도
- 지역 내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사업추진 현황(“예” 전원마을조성 등) 실시간 정보제공 등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의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재풀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종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지역 내의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귀농인협의회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다만, 지역 내 인재풀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업체 등에 위탁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나 총 사업기간 중 1년 이내에서 가능
    - \*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간 동안에 지역 내 선도 귀농·귀촌인, 지역 사회단체 등의 지역주민 역량 제고와 인재풀 확대 기회로 활용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으로 안정적인 운영·발전이 바람직함.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단, 변경결과는 도에 보고 : 별지2-1서식)
  -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각 항목의 프로그램 간 사업비 변경·조정
  - 사업계획 중 추진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단, 당해 연도 총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세부사업간 변경(연구용역비는 변경 불가)가능하되 사업예산 배분비율 내에서만 가능함.(추진기구 10%, 하드웨어 30%, 소프트웨어 60%)
  - 기타 사업(프로그램 등)의 당해 사업 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2-1호 서식)

## 《사업정산》



- 시장·군수는 참가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
  - 시·군에서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중 일부를 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거나, 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한 경우의 최종 사업비 정산은 시장·군수가 실시
- 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전년도 사업비를 검정·정산하고, 정산결과는 당해연도 3월29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3호 서식)
  - 도지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군의 사업의 실적에 따라 예산 집행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차기 연도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

- 시장·군수는 계속사업대상 시·군의 전년도 사업추진결과 성과 및 문제점, 매년 확보된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도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친 후 당해 시행연도 1월 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별지2호 서식), 시행계획 수립 등 별도 공지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에서는 도시민유치 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관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 반기별 익월 10까지 제출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도별 추진실적’(별지 제3호 서식)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을 거쳐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에 참가한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농어업회의소,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 시장·군수는 도시민 농촌유치계획에 참여하는 마을 및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 시장·군수가 사업내용 이행, 점검·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자체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단체, 교육기관 등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 도지사는 시·군의 자체 시행계획서에 의거 추진 중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취지와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 지원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지원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시·군별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점검(반기 1회)
  - 필요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6. 성과측정단계

- 익년도 3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 측정
  - 사업참여 제출된 시·군 중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 개소수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진척도(예산집행, 전담기구설치·운영 등), 귀농·귀촌시책과 연계추진실적, 세부 사업(프로그램) 유형별 추진실적, 귀농·귀촌실적, 프로그램 참여실적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여 서면·현장평가를 11월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음
  - 매년 10월 중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평가 대상 시·군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도 취합)
- 계속 사업 추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하위 20% 내의 시·군의 사업비(국고 기준)에 대해, 평가결과 우수 상위 10%의 시·군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의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분위기 확산 등의 계기 마련
  - \* 국고기준으로 하위 시·군당 10% 내에서 감액
- 3년차 사업 추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1주기 3년차 시·군은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는 향후 1년간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차하위 10% 시·군의 예산 10% 범위 내에서 최상위 10% 시·군에 대해 차등 인센티브 지급
    - \*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받는 시·군은 지방비 매칭의무 없음
  - 2주기 3년차 시·군은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20%는 향후 1년간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나머지 80%는 '13년 신규 사업 신청 가능
- '13년도부터는 사업성과 평가 시 지자체단위(도 단위 및 시·군단위)로 지자체별 '13년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신규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화 유도
  - \* 귀농귀촌종합대책에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업무총괄 부서(귀농귀촌 업무전반,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교육, 상담센터 등 기획·총괄기능 부여 및 역할 분담), 전담자 및 지원센터 운영 등 지자체의 참여의지 등을 포함 해야하며 신규 선정 및 향후 성과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별도 시행)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3.3월)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안 검토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14년도 사업시행지침 최종 확정시에는 일부 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b>60</b>	<b>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조은지	044-201-1531 044-201-1537
	수산개발과	과 장 김종실 사무관 이명준	044-201-2631 044-201-2641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평가인증팀	팀 장 장철이 주 임 김태후	031-460-8915 031-460-8918
시·도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시·군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다양한 분야 민간전문가(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
  - 회계·재무·인사관리 등 경영컨설팅, 재배 및 양식·가공·유통 등 전문분야의 기술·경영컨설팅, 특별한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등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컨설팅 전후의 소득(매출액) 증가율 27% 달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컨설팅 전후의 소득(매출액) 증 가율(%)	27%	25.7	22.7	25	12월 말	{(평가연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실시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82,882	9,720	5,200	5,200	-
국 고	36,566	2,916	1,560	1,560	-
지방비	16,409	1,944	1,040	1,040	-
용 자	-	-	-	-	-
자부담	30,149	4,860	2,600	2,600	-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중 일정 경영규모(지원자격기준 참고) 이상의 농어업인
  -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상기조건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농어업법인 중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농어업법인
- 다수의 농어업경영체, 협동조합 등이 구성·운영하는 조직경영체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직화된 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시군유통회사, 마을단위 농업법인(색깔있는 마을 등), 농어촌공동체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받는 농어업경영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필수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농촌진흥청의 컨설팅 및 강소농지원 선정농가 및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직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분야 컨설팅으로 특화하여야 함

가. 지원자격

지원분야	지원자격기준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예·특작 : 3,000㎡이상(화훼·양잠[오디, 누에 등] : 3,000㎡이상)</li> <li>○ 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li> <li>○ 소 : 50두 이상</li> <li>○ 돼지 : 1천두 이상</li> <li>○ 말 : 20두 이상</li> <li>○ 닭(오리) : 2만수 이상</li> <li>○ 꿀벌 : 200군 이상</li> <li>○ 쌀 : 6ha이상</li> <li>○ 농촌관광 : 농어촌정비법 의거 지정사업자, 도농교류법 의거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사업자</li> <li>○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li> </ul> <p>* 여성농업인의 경우, 상기 자격기준의 50% 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p>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어업 :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a 이상, 정치성 구획 7ha 이상, 이동성 구획 3톤 이상, 내수면 0.9톤 이상</li> <li>○ 양식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수조식 : 어류 등 800㎡ 이상, 패류 660㎡ 이상</li> <li>- 육상축제식 : 2ha 이상</li> <li>- 해조류 : 10ha 이상</li> <li>- 패류 : 수하식 5ha 이상, 바닥식 7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li> <li>- 어류 : 축제식 2.5ha 이상, 가두리식 1.5ha 이상, 우렁챙이 5ha이상</li> <li>- 복합 : 수하식·바닥식·혼합식 10ha 이상, 축제식 2.5ha 이상</li> <li>- 내수면 : 수조식 20명 이상, 저수식 40명 이상, 유수식 40명 이상, 조방식 40명 이상</li> </ul> </li> <li>○ 종묘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수조식 : 어류 800㎡ 이상, 패류 660㎡ 이상, 해조류 1600㎡ 이상</li> <li>- 육상축제식 : 2ha 이상</li> <li>- 해상 : 2.5ha 이상</li> </ul> </li> <li>○ 어촌계(자율관리어촌계 및 어촌체험마을 포함)</li> <li>○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li> </ul> <p>* 여성어업인의 경우, 상기 자격기준의 50% 이상 충족 시 자격 부여</p>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고 있는 농업경영체</li> <li>○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어업경영체</li> <li>○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작목전환을 한 농어업경영체</li> </ul> <p>* 반드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결정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p>

나.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이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점수가 높은 경영체를 우선으로 선정함

선정분야	우선선정기준
농업	1. 컨설팅 및 경영관련 교육(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이수농가 2. 현장실습교육장(WPL) 교육이수농가 3. 조직경영체 회원농가 4.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농가 5. 자원순환농업농가 6.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
어업	1. 경영 및 컨설팅관련 교육(수산정책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2. 친환경수산물 생산 경영체

○ 공통 적용사항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농림수산물부에서 선정한 색깔있는 마을의 농가 및 법인
- 시군별 여성농업인을 사업비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시군별 어업분야 컨설팅을 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 비용의 일부(30%) 지원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 비용의 일부(50%)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업체의 지문비용 (그 외 기타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불가)
  - \* 다만, 법인 및 조직경영체에 한하여 회의비 및 자료조사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지출 내용은 원가계산서(별표4)를 작성하여 증빙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아래 총사업비 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 1년차/2년차/3년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50% 이상
  - \* 다만,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계약의 경우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며 초과부담에 대해서는 지방비 및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가능
  - \* 지방비는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 가능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이상, 자부담 20% 이상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 어 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만원)
  - \* FTA 피해 농어가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500만원)
- 법 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만원)
  - \* FTA 피해 법인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1,500만원)
-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7,000만원(국고보조 한도 2,100만원)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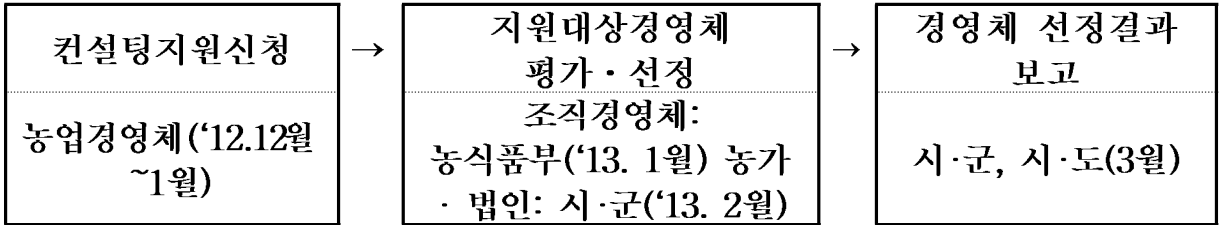
### 1. 사업신청단계

#### 《농어업경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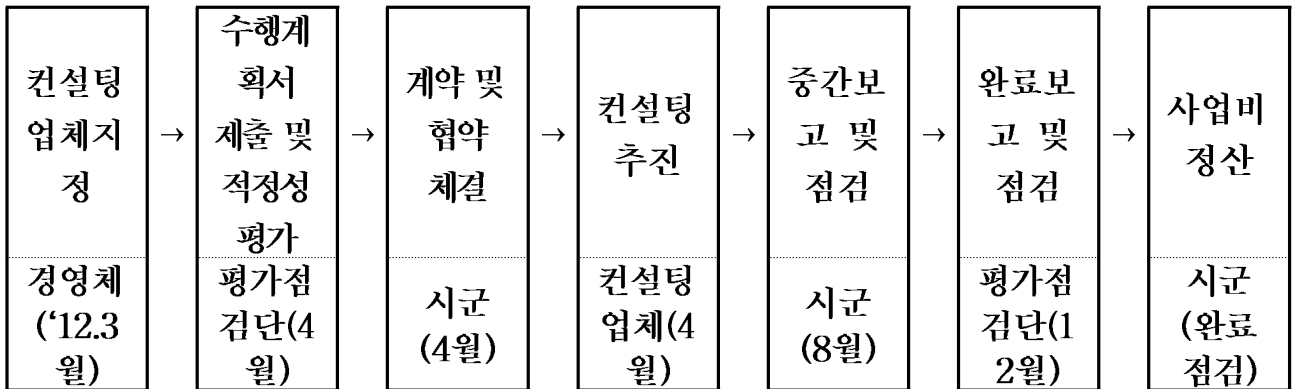
- 농어업경영체(이하 경영체)는 다음의 신청서 접수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 접 수 처 : 농어업경영컨설팅 시·군·구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 접수기간
  - 개별 농어가 및 법인 : '12.12.10(월)~'13.1.31(목)
  - 조직경영체 : '12.12.10(월)~'13.1.11(금)
- 구비서류 : 접수처 시·군·구 사무소에 비치(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재)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윤리강령서약서(별지 제2호의 1 서식)
  - 최근 1년간 작성된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사본
    - \* 개별농가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작성된 생산일지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전진단서 또는 추천서
    - \* 2년차 또는 3년차 신청자의 경우 컨설팅업체의 전년도 진단결과서로 대체 가능함
  - 신규 1년차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과정 수료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농어업인력포털(<http://www.agriedu.net>) : 전체교육과정 → 농업경영교육 → 경영교육(혼합) → 온라인교육 → 과정명 : 농어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로 신청 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 및 폐업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지급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개별농가 및 법인은 평가순위에 따라 시·군에서, 조직경영체는 심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 컨설팅업체 지정

#### 〈컨설팅업체〉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어업인이 알기 쉽게 게시하여 안내

####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13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지정 - 업체 Pool은 농어업인력포털(<http://www.agriedu.net>)에 게시

### (2) 컨설팅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및 평가

####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업체와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컨설팅업체가 시·군·구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 〈컨설팅업체〉

- 경영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Agrix에 등록하고, 시·군에 제출

#### 〈평가점검단〉

- 수행계획서의 컨설팅 내용 및 일정, 내·외부 투입인력 등을 종합 점검하고 컨설팅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성 심사 및 Agrix 등록

### 《시·군·구》

- 시·군은 컨설팅업체에서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Agrix를 통해 7일 이내 확인 및 접수 후 평가점검단에 전달
- 지원대상 경영체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등)없이 수행계획서를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 경영체에 통보
- 평가점검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행계획서 심사결과를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에 통보

## (3) 계약 및 협약체결

###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점검결과 ‘정상’을 확인 후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시·군에서 받은 자부담 지급확인서와 자부담금을 업체에 지급

###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지급확인서, 경영체의 계약금 입금증명서 사본, 컨설팅 수행계획서 최종본(기제출된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생략), 경영체 경영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협약 승인 요청

### 《시·군·구》

- 컨설팅업체로부터 계약서, 지급확인서, 자부담입금확인서 등을 접수받아 ‘농어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별표 2)’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협약 승인
-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농어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체결

### 《시·도》

- 시·군별 계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보고

## (4) 컨설팅 추진

### 《경영체》

- 경영체는 컨설팅사업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관리

###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

- 컨설팅업체는 경영체의 요구에 따라 기술 및 경영분야를 구분하여 컨설팅 추진

#### (5) 중간점검

#####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중간보고일 기준(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으로 농어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 요약(별지 제7호 서식) 및 원문(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경영체 및 시·군에 제출하고 중도금 지급확인서를 신청

##### 《농어업경영체》

- 컨설팅업체에서 작성한 농어업경영컨설팅 중간보고서 원문(별지 제8호 서식)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중도금 지급확인서를 업체에게 지급하고, 중간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 《시·군·구》

-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컨설팅업체가 중도금을 신청하면,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사항, 미제출서류 등이 없고 중간점검결과 ‘정상’인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 (6) 완료보고 및 점검

#####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종료(수정·보완 및 재작업 종료 기간 포함)후 15일 이내 경영체 및 시·군에 제출(Agrix에 등록)

##### 《시·군·구》

- 시·군은 경영체에서 제출한 컨설팅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후 7일 이내 Agrix를 통해 평가점검단에 전달하고 결과를 컨설팅업체에 통보

##### 《평가점검단》

- 평가점검단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사업 완료확인서 제출과 시·군에서 경영체 별 완료보고서 등을 Agrix를 통해 제출받은 후 점검 실시

#### (7) 사업비 정산

##### 《시·군》

- 컨설팅업체가 잔금을 신청하면, 시·군에서는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평가점검단의 ‘정상완료’ 판정인 경우 컨설팅업체에게 잔금 지급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별 자금 배정(2월 중)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 자금 배정(2월 중)

## 5. 이행 점검 단계

- 중간점검 : 컨설팅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에서 시·군에 중도금 지급확인서 신청 시 시·군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컨설팅 추진경과 등을 중간점검 평가표(별지 제9호서식)으로 점검
- 완료점검 : 컨설팅 완료에 따라 완료보고서 등을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하고 평가점검단은 1개월 이내 현장점검 실시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정상완료' 판정

### 《사후관리》

- 사업담당 공무원 또는 평가점검단은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Agrix시스템에 결과 입력)
- 평가점검단은 컨설팅완료점검과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실시
- 평가점검단은 경영체와 컨설팅업체(컨설턴트)간의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 《제제 및 처벌내용》

#### 《농어업경영체》

- 경영체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경영체로부터 회수
- 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현장실사 및 점검 후 완료결과가 미흡시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향후 컨설팅사업 지원 제한
- 경영체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경영체와 컨설팅업체 모두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농림사업의 컨설팅부문 참여 3년간 배제
- 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인증대상에서 배제

### 《보고사항》

- 각 수행기관(경영체, 컨설팅업체, 시·군, 시·도, 평가점검단, 농식품부)은 컨설팅사업 추진단계별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를 Agrix 시스템에 입력(세부 자료는 첨부)해야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 체결, 컨설팅사업 추진 상황 및 컨설팅 결과,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결과를 품목·조직별 상황을 감안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보고(별지 제16호 서식)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수시), 중간점검 결과, 완료결과를 Agrix에 입력하여 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 농식품부 보고
- 시·군은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분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실적을 시·도에 보고

##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 대상 경영체 중 10% 수준을 지원차수· 품목·매출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후 컨설팅 전·후의 소득 증가율 산출
- 경영체는 기술 및 경영의 변화관리 측정 조사 참여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는 년 1회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제공
  -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평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대해 사업비 우대지원(실적에 따라 전년대비 10~20% 증액)
  - 종합평가결과 우수 컨설팅업체에 대해 컨설팅업체 재인증 심사 면제
  - 우수 경영체에 대해 4차년도까지 컨설팅 연장 지원
    - \* 종합평가결과가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 삭감, 컨설팅업체의 경우 인증 취소를 통한 사업참여 제한
- 농식품부는 시·도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실태 점검 및 개선 실적 파악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

-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은 2014년도부터 일몰사업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컨설팅 지원 신청서

경영체 구분 (해당란에 ○표)	농어가( )	법인( )	조직경영체( )
농어업경영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재지		컨설팅 지원년차	1 / 2 / 3
설립일	년 월 일	영농어(운영)경력	년
전화 (휴대전화)	( )	FAX	
홈페이지		E-mail	
주사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어획양식품 목)	부 대 사 업	재배작목 (경영업종) 사육축종 (어획양식품 목)
경영규모	농장 : (전 :            m <sup>2</sup> , 답 :            m <sup>2</sup> ) / 선박 :        척,        톤		
	시설/양식면적 : (하우스 :            m <sup>2</sup> , 축사 :            m <sup>2</sup> , 양식 :            m <sup>2</sup> )		
	공장 : (대지 :            m <sup>2</sup> , 건물 :            m <sup>2</sup>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재무상황	조수익(매출액) :            백만원,            소득액 :            백만원		
조직 규모(법인, 조직경영체 해당)	소속 경영체 수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영농어경력, 주사업 (재배작목) 첨부		

	년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 분야)
컨설팅경험 (정부 지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년도	자금종류	금액	비고
정책자금 지원현황 (FTA 피해경영체 신청시 경우 필히 명기)			백만	
			원백만	
			원백만	
	계		원백만	

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생산기술( )	경영( )	경영+생산기술( )
세부컨설팅 분야 (해당란에 ○표)	■ 생산성향상( )	■ 경영혁신( )	※생산기술과 경 영분야의 세부컨 설팅 분야를 선 택하여 기재
	■ 생산품질관리( )	■ 사업계획( )	
	■ 사양관리( )	■ 브랜드화( ) - 브랜드 개발, 육성, 관리	
	■ 시설장비관리( )	■ 조직화( )	
	■ 농자재이용방법( )	■ 조직관리( )	
	■ 토양, 전기( )	■ 마케팅( )	
	■ 위생, 안전, 환경( )	■ 경영일반( ) 방침 및 목표 관리, 재무· 세무·노무·판매·인사·내 부조직관리 등	
	■ 방역, 방제( )	■ 경영분석( )	
	■ 자연순환농업( )	■ 테마(상품) 개발( )	
	■ 친환경(유기)농업( )	■ IR, 투자유치, 특허출원 ( )	
	■ 규격인증 및 규격화 ( )		
	■ 신제품(가공)개발( )		
	■ 작목(품종)전환( )		
	■ 에너지, 비료 등 투 입재비용 절감( )		■ 귀농(후계농, 가업승계농)
	■ 기타 :	■ 기타 :	■ 기타 :
컨설팅 목표	*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 (해당란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습득( )</li> <li>■ 생산비용 절감( )</li> <li>■ 자료 및 정보 활용( )</li> <li>■ 수익모델 창출( )</li> <li>■ 경영규모 증대( )</li> <li>■ 효율적인 조직화 및 조직원 관리( )</li> <li>■ 기타(구체적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 또는 시설장비 운용( )</li> <li>■ 성공적인 작목 전환 및 신제품 생산( )</li> <li>■ 판매 촉진( )</li> <li>■ 경영비 절감, 재무관리 등의 경영 개선( )</li> <li>■ 조직규모 증대( )</li> <li>■ 직무능력 향상( )</li> </ul>
경영체 문제점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술	

컨설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컨설팅 총 비용	* 자부담 비용, 정부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여 작성
기타(우선 순위 해당 사항 등)	
신청서 검토의견 (시.군 기재사항)	

농림수산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농어업경영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별첨 : 최근 1년간 경영장부 기록사본 1부 또는 회계결산서 사본 1부  
 경영진단표 1부 또는 기술센터 추천서 1부



농촌개발분야

## IV. 소득보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과장 장승진 사무관 최수아	044-201-1851 044-201-1859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농가소득지지율(%) (변동직불금)	97.5	97.2	104.5	-	2014.3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 (수확기 쌀값 직불금 율 백분율 회
▪ 신청 대비 적격비율 (%) (고정직불금)	98.6	99.9	99.6	-	2013.12	신청자 수 대비 최종 적격자 수를 백분율화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47,912,406	1,418,823	680,130	1,222,200	1,697,641
보 조	47,912,406	1,418,823	680,130	1,222,200	1,697,641
○ 고정직불금	45,620,957	619,500	618,100	611,100	1,353,300
- 보 조	45,620,957	619,500	618,100	611,100	1,353,300
○ 변동직불금	2,291,449	799,323	62,030	325,230	630,211
- 보 조	2,291,449	799,323	62,030	325,230	630,211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임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 다만, '05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2.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자가 화성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화성시 6천㎡, 평택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농지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3. 신청 자격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5. 지원형태 및 기준

###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단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64호)
    -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746천원(m<sup>2</sup>당 74.6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ha당 597천원(m<sup>2</sup>당 59.7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m<sup>2</sup>) × 대상농지면적(m<sup>2</sup>),
    -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2013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text{목표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frac{\text{변경 목표가격}}{\text{산출 직전 목표가격}}$$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 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이하 “절단평균”이라 한다)으로 한다.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 1일~다음 연도 1월 31일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61가마(80kg)  
× 벼재배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cdot \text{ha}(10,000\text{m}^2)\text{당 생산단수} = \frac{\text{비교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times \frac{\text{변경 단위생산량 산출 직전 단위생산량}}$$

※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 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 지급시기 : 2014년 3월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3.6.1 ~ 2013.6.30일(잠정)

※ 신청기간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할 때에는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제출토록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하여야 함(법 제7조)

- 아울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관리 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급여부란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급후 지급여부를 표시하여 누락자를 관리할 것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11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농지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민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등 제출

※ '12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전년도 지급면적 및 필지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제출서류는 추후 변경 가능함)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 ① (신규 신청인)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AgriX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10~'11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12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전년도 지급면적 및 필지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제출서류는 추후 변경 가능함)



㉔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하여 사망자(뇌사자)의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사망 또는 뇌사판정 확인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치료로 인하여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 : 이장 확인서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

㉔-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시행규칙 제2조의2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㉔-1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㉔-2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전년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② (기존 수령자)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1 (농촌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자치구 기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10~'11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별지 제1호의 2·3 서식)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로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 2개 이상 서류 : ㉠, ㉡, ㉢, ㉣, ㉤ 등 5개 중에서 2개를 의미
-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 《기타 서류》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로 인해 법 제8조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신고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② (타인 소유 농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종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 \* 2011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임대권·임차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2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3.6.1 ~2013.6.30일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3.6.1~7.12일까지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구비 여부

##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여부

-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대상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
-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이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 (5년 이내)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 다.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 ①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 \* 2009년도 이후 신규진입자는 2013년에도 신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반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사망(뇌사 포함)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는 확인 불요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여부

-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

☞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 여부 확인

###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

#### ②-1 다만,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은 제외한다)

-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

### <농산물의 개념>

-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및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③ 쌀직불금 제외 대상자 확인

- ☞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 ② (영농기록)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③ 기타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정보공개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2.7.31일까지
- 현지조사 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2.7.31일까지 제출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가.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2013.8.23일까지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들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 나.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3.9.30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 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 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변경등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 ① 발급된 등록증
-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3. 10. 18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 보고는 **AgriX**시스템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1호 서식

##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는 세부점검기준 및 계획 수립·시행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2개월간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 대상 농지를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 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 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현장조사 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11월 상순
- 검사대상 농지 :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1년도, '12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mg/kg)	치환성칼리함량 (cmol <sup>+</sup> /kg)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2.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 13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 지침을 수립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3년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
  - 농업진흥지역 746,000원/1ha, 농업진흥지역밖 597,000원/1ha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된 후 자금요청 (별지 제 16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17호 서식)
- 재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수산물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 × 1만 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3가마(잠정)) × 벼재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3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잠정))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수산물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금
  - \*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들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제 제18호 서식)
- 시·도지사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제 제19호 서식)

## 농협중앙회 : 기금관리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림수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수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자치구), 등록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상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 농림수산물부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자금배정, 시·군·구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기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이득금 회수 :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법 제13조제1항제2호(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증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7. 보고 사항

###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3.8.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13. 10.31일까지
  -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11호 서식) : '13.10.18일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3.12.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13.12.31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14.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4.4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 '13.12.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13.12.31일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17호 서식) : '14.2.15일까지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3.11.15일까지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3.12.6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13.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 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 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8.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물식품부

구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신청자 수)×100	- 당해 연도 12월 -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 익년도 2월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 인터넷등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9. 사업평가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구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신청자 수)×100	- 당해 연도 12월 -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기준 연도 목표가격)×100	- 익년도 2월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4.4.15 ~ '14.6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신청자격이 없음

###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b>62</b>	<b>경영이양직접지불제</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장승진 서기관 박영근	044-201-1851 044-201-185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팀	팀 장 최병윤 차 장 정병준	031-420-3361 031-420-3385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 등에 대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영농규모화 촉진

###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등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경영이양대상자 소유농지 179천ha의 41.3%인 74천ha를 이양시켜 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쌀전업농 6ha 수준, 7만호 육성에 기여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경영이양 목표 면적 달성율(%) (경영이양면적 ha)	100			100	2014.1	(당해연도 경영이양 달성면적 ÷ 당해연도 경영이양 계획 면적(2,500ha)) ×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51,209	58,786	65,907	63,920	-
보 조	251,209	58,786	65,907	63,920	-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13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1943년 1월 1일~194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경영이양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매도한 농업인
  -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2. 지원대상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지사장이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밭·과수원은 3년 이상 소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위 지급대상 농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약(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예정지(지역·지구·단지·구역 등)로 지정(결정)된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 「관광진흥법」·「도로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원개발촉진법」·「철도건설법」·「택지개발촉진법」 등

### 3. 지원자격 및 요건

-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약정 체결 이후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 상 임대하여야 함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농업법인,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어야 함
- \* 양수 대상자의 연령은 양수일 기준 만나이로 산정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천제곱미터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 경영이양자는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3천제곱미터 이하 소유농

지 외의 농지를 초과하여 경작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예정지역(지구·단지·구역 등)의 농지는 제한을 받지 않음)

\* 경영이양후 경작이 계속 허용되는 농지 내역을 지급약정서에 첨부하고, ‘경영이양직불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보조금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동일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 보조금을 받음 없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이양했거나 개인간 임대로 이양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현재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대상자의 요건인 연령(65~70세), 영농경력(최초 임대이양 시를 기준), 대상농지, 양수대상자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공사와 임대 또는 임대수탁으로 보조금 약정을 체결(지급면적도 개인별로 적용하여 미지급분 약정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단, 보조금 지급은 약정체결 이후부터 지급하며, 보조금 수령기간보다 임대(수탁)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임대(수탁)기간 종료 전에 보조금 수령 잔여기간 이상으로 재이양하여야 한다.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 이양 후 고령농업인의 생활자금 등으로 이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나. 지급단가 : m<sup>2</sup>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다.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m<sup>2</sup>)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함

라. 보조금 지급약정 기간 동안에 약정내용 위반 시에는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지급 상한면적 : 2.0ha(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각 적용)

나.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신청 연령별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연 령	66세 이하 (47~48년생)	67세 (46년생)	68세 (45년생)	69세 (44년생)	70세 (43년생)	비 고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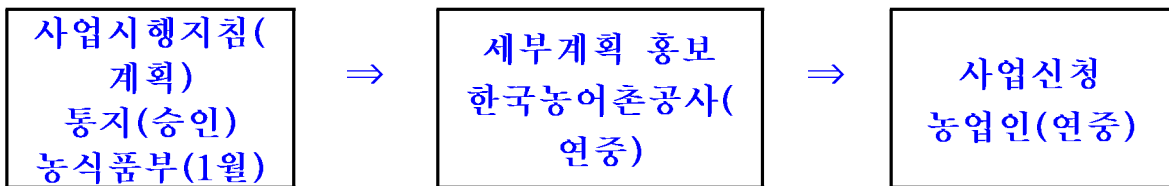
※보조금 지급기간은 75세까지 최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함.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  
라.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경영이양 지급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
- \* 단, 배우자가 보조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도 임대(임대위탁)농지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상속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상속완료시까지 지급을 일시 중지)하며, 또한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
- \* 보조금 지급약정자(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공사 해당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장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 읍·면·동 및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2월중)
  - 보조금의 규모, 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 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포함)는 사업내용을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1~12월)

#### 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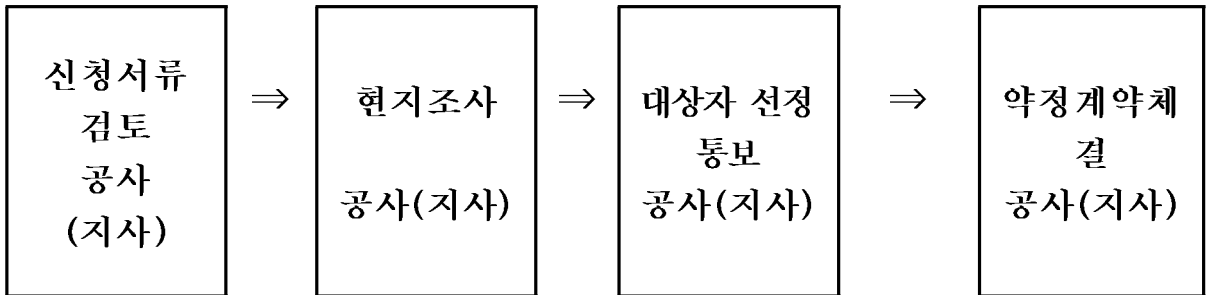
-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지원부등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경영이양하려는 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신청시기 : 2013년도에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연중 신청 가능

## 2. 사업자 선정단계



###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사 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제외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검토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 현지조사는 신청인의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 경작 허용대상 농지의 농지 경작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 유무, 그 밖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현지조사서”를 작성 비치
- 공사 지사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한국농어촌공사(본사)

- 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3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3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함

###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본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지역본부는 본부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지사는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 본사는 사업의 시행에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규정·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4. 자금배정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사(사업주관부서)에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사에 배정하며 지사는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5.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와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지역본부)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기(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본사·지역본부·지사)

- 공사는 경영이양자가 약정 내용(지급요건 등 아래 사항 포함)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
  - 경영이양자의 사망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의 경작에 방해되는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그 밖에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 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공사 사장이 정하는 사항
- 공사는 위 조사결과 경영이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 및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공사는 경영이양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제 제〉

### 한국농어촌공사(지사)

- 지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① 경영이양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 경영이양자가 임대이양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기타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보조금 지급약정 계약 체결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③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④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⑤ 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 해지/해제 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및 변경조치를 할 수 있음
  -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 임대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전용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 경영이양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상기 ㉠,㉡,㉢ 관련으로 지사장이 승계 또는 변경조치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가 승계 또는 변경조치 완료 후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 지사장이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 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지사장은 확인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

$$\text{※ 환수금액} = \frac{\text{기지금}}{\text{보조금총액}} + \left( \frac{\text{월별 기지금}}{\text{보조금}} * \times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365\text{일}} \times 10\% \right)$$

- \* 가산금은 매 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지급약정을 해지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
-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지사장은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 6. 성과 측정단계

- 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2014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3년 1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공사는 2013년 사업평가결과를 2014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환 류》**

- 농림수산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수요는 농지원부 전산자료상의 65세~70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농지 소재지			지번	공부상지목	면적 (m <sup>2</sup> )	농업진흥지역	소유자	경작구분	경영이양방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급신청 농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 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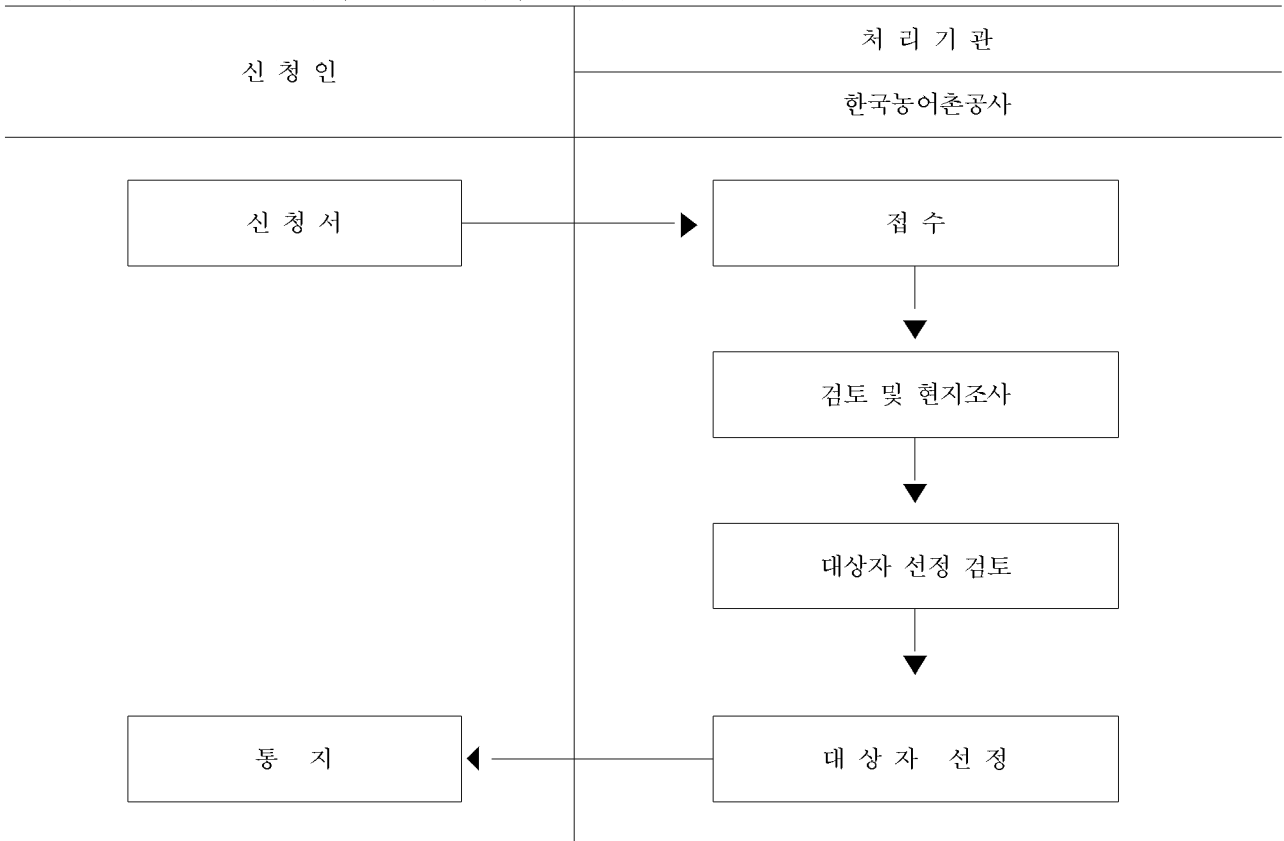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농지임부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법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 방법**

1.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 밖은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은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경영이양 방법
  - 가. 소유농지인 경우
    -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 공사임대위탁으로 구분
  - 나. 임차농지인 경우
    -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또는 경작권포기로 구분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m( 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급대상 농 지	농지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m <sup>2</sup> )	농업진 흥지역 여부	경영이 양방법
			공 부	실 제			

지급약정 체 결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장 소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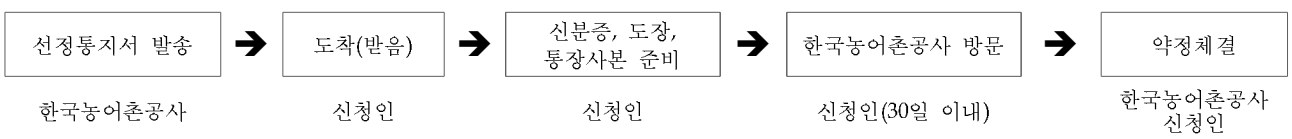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 m(재활용품)]



**6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및 방역총괄과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 이정형 사무관 박원태	044-201-1871 044-201-1879
	시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과장 김태용 사무관 나인지	044-201-2351 044-201-23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장 송태복 사무관 김정환	031-445-9366 031-463-1572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I.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무농약 이상) 비율을 '15년까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8.5%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계획)		
▪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비율(%)	7.5	6.4	6.7	7.0	'14.3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무농약 이상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b>181,169</b>	34,912	43,595	37,574	계속사업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b>181,169</b>	34,912	43,595	37,574	계속사업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13.6.2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10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 3. 지원대상

- 2013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 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의 경우에는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하되, 유기 인증의 경우에는 총 5년간 지급. (단, 기존 인증단계(저농약, 무농약)에서 유기재배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직불금 수령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횟수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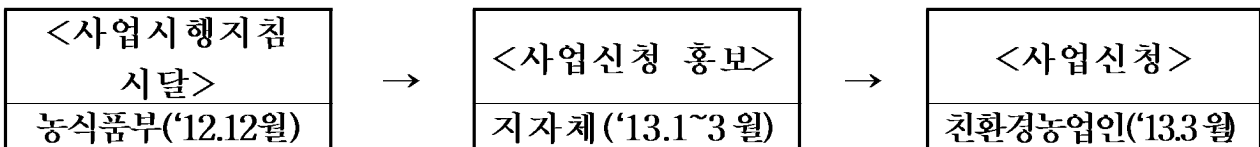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2년 12월~'13.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3년 1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М 발송 등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3년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 '13년 중 인증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만료 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미연장 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인증기간 연장 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 즉시 인증기관변경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불금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3.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4년에 사업신청 가능

## 2. 사업자 선정단계

###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13. 5. 10까지)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 읍·면·동 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 나. 신청내용 변경

### <대상자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변경신청 기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

### <인증기관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
- 변경신청 기간 : 인증서(인증기관 변경)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변경된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
  -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를 인증기관에 통보 후 이행 점검을 요청('13.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 '13. 5. 21 ~ 10. 31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최소한 연1회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13. 10. 31까지)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 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인증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13.11.15까지)

####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수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3. 11.16~12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3. 12월)

### 5.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

####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 해당연도 내 인증취소, 인증만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나. 제재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 × 100
  -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4.3.1~3.31)

[별표]

## 사업 추진체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2.12월 ~ '13.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li> <li>·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li> </ul>
② 사업신청	(3. 1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li> </ul>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li> <li>·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li> </ul>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1 ~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 20)</li> <li>·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li> </ul>
⑤ 이행점검	(5. 21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5. 21까지)</li> <li>·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li> <li>·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li> </ul>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5까지)</li> </ul>
⑦ 보조금 지급	(11.16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li> <li>·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li> </ul>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 1.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명(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	-------	------

### 2. 농업인별 명세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보조금 예상액 (원)
					인증 종류	재배 품목	재배 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1월중 인증이 만료예정인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b>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b>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당초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신고인 (법인)	법인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법인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당초 사업대상자 (법인)	법인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법인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 지 현 황							변경일자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공부상)	재배 품목		
합 계							
201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가 (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b>시장·군수·구청장 귀하</b>							
※ 첨부서류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인증기관 변경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법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법인전화(대표)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설 립 일		년 월 일								대표자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등등 보작물체 대상여부 (O,x)	면적 (m²)	과거 지형 (현황)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변경															
<p>본인(법인)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 필지의 인증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잡 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p>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②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
- 환경보전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 주요 축산물의 생산 비중을 2015년까지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의 15%로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10	'11	'12		
·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율(%)	13.0	10.0	11.0	12.0	3월말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비중 *친환경 주요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4,000	3,000	7,000	10,025	계속사업
보 조	4,000	3,000	7,000	10,025	계속사업
응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13.6.2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년간만 지급
  -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년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2.11.1 ~ '13.10.31
  - 동 기간동안 HACCP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농가에서 입증하여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란계는 출하량 입증이 어려울 경우 인증 마리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산출서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 '13.11.1~'14.10.31까지는 '14년 사업예산에서 지원 추진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액 : 20백만원/연간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지급
- 지급 단위 : 천원(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지급 방법
  - '12.11.1~'13.4.30 실적 : 6월에 지급
  - '13.5.1~'13.10.31 실적 : 12월에 지급
    - \* 다만, 산란계의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 (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 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 시에는 변경된 인증 종류로 지급
  - 직불금은 친환경인증과 HACCP 지정 유효기간에만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 인증 취소, HACCP 지정 취소, 유효기간 종료 이후의 기간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음
  - 하반기 분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예산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지급비율(%) : (예산액/신청액)×100

### ※ 사업예산 과부족액 발생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 사업대상자의 선정순위는 아래와 같이한다.
  - ① 인증 종류에 따라 유기축산농가 우선 선정
  - ②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일자가 빠른 농가
  - ③ “2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 ④ “제2항~제3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포기하거나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대기자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 통보('12.12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도, 시·군·자치구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함) 등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을 축산농가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3.1.15까지)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게재, PCRM 발송, SMS문자 전송 등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13.1.16~1.31,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사업희망 농가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 교부한 HACCP 지정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2. 사업자 선정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13.2.15)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하 “관련기관”이라 함)에게 보고(통보) (농관원→ 관련기관 '13.2.20)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 (농관원 → 사업대상자, '13.2.29)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 ~'13.1.15)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홍보(농관원)
② 사업신청 (친환경축산농가)	(1.16~1.31)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선정 신청 (농관원 지원, 사무소)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2.1~2.29)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농관원 → 농식품부·관련기관·사업대상자, 2.29)
④ 이행상황 점검	(연 중)	· 이행여부 확인(농관원,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⑤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 (1차)	(5.1~5.20)	· '12.11.1~'13.4.30까지(6개월간) 실적자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농관원 5.1 ~5.10) · 소요예산액 신청(농관원 → 농식품부, 5.20)
⑥ 보조금 지급 (1차)	(6월)	· 보조금 지급(농관원 → 사업대상자, 6월)
⑦ 보조금 지급신청 및 소요예산 신청(2차)	(11.1~11.20)	· '13.5.1~'13.10.31까지(6개월간) 실적자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농관원, 11.1~11.10) · 소요예산액 신청(농관원 → 농식품부, 11.20)
⑧ 보조금 지급 (2차)	(11~12월)	· 보조금 지급(농관원 → 사업대상자, 11~12월)

#### 4. 자금배정 단계

##### 사업 대상자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신청
  - 1차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농관원, 5.1~5.10)
  - 2차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대상자 → 농관원, 11.1~11.1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별 지급액 확정
  - 지급기간, 농가당 지급한도, 축종 및 인증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지급액 확정
- 1차 보조금 소요액 지급 요청(농관원 → 농식품부, 5.20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2차 보조금 소요액 지급 요청(농관원 → 농식품부, 11.20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1차 보조금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농관원, 6월)
- 2차 보조금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농관원, 11~12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무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품관원장에게 위임함
- 농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지급(농관원 → 축산농가, 6월, 11~12월)
  -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을 계좌에 입금
- 집행 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정산 현황은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
  -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 자금 지급시에는 HACCP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속 여부를 확인
-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단계별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여 농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판매실적을 확인
- 사업 포기자 발생시 추가 대상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비 불용 최소화

#### 관련기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지급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또는 농관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제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ACCP지정이 취소되거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다음년도 3월 중 인증 실적에 의거 농식품부 사업 담당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 안전 주요축산물 생산비중(%) : (친환경 주요축산물 생산량 / 전체 주요 축산물 생산량) ×100
  - \* 주요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오리고기, 오리 알
  - \* 농관원은 친환경 주요 축산물 등의 인증실적을 상시 파악 협조
- 만족도 조사는 농식품부 사업 담당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14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14.1월)

[별지 제1호 서식]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자택 전화						
	주 소		휴대 전화						
			e-mail						
농장 상황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명						
	Fax		대표자생년월일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구성원수	명	대표자 e-mail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축종	인증 종류	농장소재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 출하량 (단위)	예상 금액 (천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계									
<p>농림수산식품부의 '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 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p>									
※ 구비서류 : 1. HACCP 지정서 사본 1부. 2.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1. 축종별 현황

축종	친환경축산물인증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 생산량	소요예상 금액(천원)	비고
	계	유기	무항생제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오 리								
합 계								

### 2. 축종별 세부현황

축종	친환경축산물인증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생산량	소요예상 금액(천원)	비 고
	계	유기	무항생제					
한 우								
육 우								
젖 소								
돼 지								
산란계								
육 계								
토종닭								
합 계								

### 3. 전체 사업대상자 현황

번호	축종	성명	주 소 (농장명)	유기·무항생제		HACCP 지정일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생산량	예 상 금액 (천원)	연락처
				인증 종류	인증 일						
1											
2											
합계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고서식은 변경 가능(농식품부 협의)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 1. 신청인

신 청 인		농장명		대 표 자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 2. 세부대상 명세

축종	유기·무항생제 인 증		HACCP 지정일	사 육 수	인 증 수	예 상 생산량	보조금 예상액 (천원)	비 고
	인 증 종 류	인 증 연월일						

농림수산식품부의 '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증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최종 사업비가 확정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직인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휴 대 전 화					
				e-mail					
농 장 상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명					
	Fax			대표자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대표자 연락처				
	구성원수			명	대표자 e-mail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량 (단위)	금액 (천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201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지원 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 서식]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차) 보조금 소요예산액

### 1 시도별

시도	신청농가수 (호)	사육두수 (마리)	인증두수 (마리)	예상생산량 (마리,ℓ,개)	연간소요액 (천원)	소요액(천원)		
						1차	2차	계

\* 닭, 오리 : 천마리, 우유 : 천 ℓ, 계란 : 천개

### 2 축종별

축종	인증종류	농가수 (호)	사육두수 (마리)	인증두수 (마리)	예상생산량 (마리,ℓ,개)	연간소요액 (천원)	소요액(천원)		
							1차	2차	계
한우	유기								
	무항생제								
	소계								
육우	유기								
	무항생제								
	소계								
젖소	유기								
	무항생제								
	소계								
돼지	유기								
	무항생제								
	소계								
산란계	유기								
	무항생제								
	소계								
육계	유기								
	무항생제								
	소계								
토종닭	유기								
	무항생제								
	소계								
총계	유기								
	무항생제								
	합계								

\* 닭, 오리 : 천마리, 우유 : 천 ℓ, 계란 : 천개

## 2013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 1. 주요추진 내용(사업추진평가 등)

주요내용에 대해 개조식으로 기술

###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천원)

축종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유기	무항생제	
합계					
○○					

### 3.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축종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소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계	유기	무항생제	계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														
○○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대상자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번호	축종	성명	주소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1													
2													
3													
합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득섭 사무관 김경두	044-201-1551 044-201-156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방문객 증가율(%)	3				2014.1	당해년도 방문객수/전년도 방문객수×100-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43,093	19,840	10,783	20,058	116,376
국 비	30,165	13,903	7,579	14,072	81,644
지방비	12,928	5,937	3,204	5,986	34,732

\* 2014년 이후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 5개년간의 추정치이며, 국비에는 행정지원비가 포함됨

## II. 2013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지원 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에 한하며, 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작물은 제외함(식용·약용·조사료용은 불가, 녹비용은 가능)
  - 대상 작물간의 혼파나 사이재배, 여러 작물로 구성된 단지 조성도 가능
  - 대상 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갯,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등	밀, 보리(걸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호밀 등

### 3. 지원 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 4. 지원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불금 지원 대상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법인)

### 5. 지원 대상농지 등

#### 가. 직불금 지원 대상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 집단화된 농지 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경관작물 집단화 판단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필지의 농지 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격리되어 있는 농지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3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으나 그 집단화 된 면적이 0.5ha 이상인 농지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 ① 밭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 ②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 ③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
  - ※ 다만, ①~③의 경우 해당 년도에 직불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지원 가능
- ④ 경관작물 집단화 농지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 ⑤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녹비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 ⑥ 경관 형성·유지·개선용이 아닌 식용·약용·조사료용 등으로 재배하는 경우
- ⑦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 ⑧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 ⑪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⑫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 다만, ⑦~⑫ 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단계

농업인

#####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경관직불금 신청 대상자 3~5명 포함
  - 경관직불금 신청대상자 외 마을주민 1~3명 포함
  - 그 밖에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 교류의 전문가 1~2명 포함
-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대상자인 추진위원 중에 호선
  -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상기 ①②③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 ④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제경작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고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 세부추진계획서에는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 대상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만 해당)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서의 경관작물 식재계획에 작물명·식재면적·식재시기를 기재하고, '7. 특이사항' 란에 해당작물의 특징과 식재사유 및 식재방법(단작, 혼작, 간작) 등을 기재
-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적법여부, 실경작확인서 등으로 대조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3월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와 사업신청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시·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선정 주요 점검표(별지 제8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 등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30일까지)
  - 사업수요에는 대상작물 이외의 작물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작물의 식재 계획과 특이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액을 배정(1월)

**시·군(시·도)**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및 통보

- ①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우리부가 배정한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지구 중 WTO의 보조금 지원 조건 적합여부
    - \* 보조금 지원 조건 : 정부의 계획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추가 또는 소득 손실이 없는 경우는 지원제외)
  - 지자체(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구,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경관마을 콘테스트 우수지구, 축제·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및 「색깔 있는 마을」 등은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②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면적을 확정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 통보

### 3.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 하계/동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정보공개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그 현황을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대상자 변경

-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구 전체 사업대상에서 제외
- ② 읍·면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 변경된 농지의 경영을 이양 받은 자는 당초 대상자의 자격과 의무조건을 승계
-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지구 이행사항 ❖

**□ 경관작물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인 지구는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시비 및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용배수로, 마을 숲과 주변 정리 활동 등
- 마을길 정리, 꽃길 조성, 마을 안내판 등 정비 등
- 축제, 도농교류 등을 위한 마을 정비, 행사 준비물 구입 등

4. 사업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농가와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이행점검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나. 이행점검

-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경관작물 재배관리와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 시·군 : 마을경관보전활동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에 관한 사항

② 점검시기 : 마을별로 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점검방법

- 경관작물재배관리 : 담당직원 또는 조사원이 작물별 개화기에 직접 사업 대상지구를 방문하여 현장확인, 마을대표자 등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조사표를 작성
- 마을경관보전활동 : 사업대상지구의 주민대표(위원장)이 제출한 근거서류를 토대로 현장 확인 후 조사표를 작성

⑤ 점검사항

가) 경관작물 재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경관작물 식재

- (가) 협약서, 신청서와 실제 필지, 경작자와의 일치 여부
- (나) 대상지구 전 필지의 집단화 정도
- (다) 경관작물 생육 및 개화 상태
- (라)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2) 경관작물 재배관리

-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인 지구는 탐방로 설치
- (나)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관리·보존 기한 전에 경운·폐기·멸실 등이 필요한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 일자의 조정을 요청하여 반드시 이행점검을 받아야 함(이행점검을 받기 전에 임의적으로 멸실한 경우는 미 파종으로 간주)

나) 마을경관보전활동(시·군)

- (1) 작물 수확 후 경관유지를 위한 구역 내 수확물과 농지의 정비 상태
- (2) 경관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내역
-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재 관리 상태
- (4) 마을활동비 관리 및 활용 적정 여부
- (5) 지역축제를 포함한 도농교류 연계 사항
- (6) 협약서, 추진위원회 구성 등 경관보전활동 관련서류 확인

⑥ 점검시 제출자료

- (1)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필지별 경작자 명단 및 지적도
- (2) 재배관리 또는 마을경관활동을 증명하는 촬영 날자가 표시된 현장사진
- (3) 마을경관활동 관련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등)

⑦ 점검결과 처리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은 별지 10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지급금액도 산출하여 통보
- (2) 시·군은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 (3)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⑧ 이의신청

- (1) 사업참여 농가는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를 거쳐 경관작물재배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마을경관보전활동은 시·군에 이의신청
- (2) 이행점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점검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AgriX에 재입력

####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직불금을 지급
  - 동계작물은 완료시 1회 지급(착수시와 완료시 2회 분할 지급방식 폐지)
  - 농가가 종자대 소요 지급 요청 시 파종확인 후 익년도 1월중에 50% 범위 내에서 선 지급 가능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 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②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

- 마을경관보전협약내용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동계작물 마을경관보전활동 보조금의 분할지급 제도는 폐지
-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 정산

① 증빙자료의 첨부

- 경관작물재배 전·후 사진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영수증 등)

② 보조금 정산 및 체제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등에 따라 다음 체제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된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및 제재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 미 파종 면적이 2년이상 10%를 초과한 경우 3년차부터 3년간 사업 참여 배제
	③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보조금 30% 이상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④ 필지규모가 0.5ha 이상임에도 탐방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10% 감액지급
	⑤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마을경관 보전활동	① 협약내용 미이행	○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② 마을활동비 집행 부적정	○ 부정 집행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③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증빙자료 없는 금액 회수 및 다음년도 사업 참여 배제

**5. 행정사항**

농림수산식품부

① 성과측정

- 1) 평가지표 :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 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 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 2) 평가일정 :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② 사업평가

- 1) 평가원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대화에 노력
- 2) 평가내용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 환경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

③ 환류

- 1)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2)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 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 등

④ 보고

- 1)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2)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 3)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1)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 2)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 3)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과 그 종물(건축물, 장비 등) 등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IV. 2014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나.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30.)
- 다.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마을주민
- 라.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 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가.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경관보전활동의 유형별 범위(예시)

협약방식	구분	활동내용	활동범위 등
마을경관보전계획(S/W)	개인활동	경관작물재배	○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경관작물 재배관리
	마을공동활동	수로변경관관리	○ 마을과 경관작물 재배지 주변 용/배수로 정비 관리(퇴적토제거, 수초 제거, 사면보호)
		마을팻말설치	○ 마을안내판 또는 체험, 관광에 필요한 표지
		하천주변경관	○ 홍수위 이상 부지를 활용한 경관수와 화초 재배관리, 하천 내 오물제거와 정화활동
		마을숲정리	○ 공원 또는 숲의 전정, 병충해방제, 경관수 식재 등
		향토문화재관리	○ 마을의 역사성 있는 장승, 성황당, 고목, 전망대, 무형문화재 계승을 위한 재료구입 등
		축제지원	○ 축제를 위한 경관개선비, 축제 용품 구입비 등(음식료비, 여행비, 홍보용품 구입비 등은 지원 제외)
시설경관(H/W)	개인활동	농촌주택경관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대문교체(도색)
		창고관리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축사관리	○ 리모델링, 지붕교체(도색), 벽면교체(도색), 차폐수목 식재 등
	마을공동활동	커뮤니티시설	○ 회관, 노인정의 리모델링 및 지붕, 벽면교체(도색) 등
		공동체험시설	○ 마을공동체험 또는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지붕벽면교체, 도색 등
		담장경관	○ 기존담을 헐고 생울타리 조성, 전통담장(돌담, 흙담) 설치, 보수 등

※ 사유시설 및 공동시설은 자부담 또는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 · 군 읍 · 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m <sup>2</sup> (농가수 : 호) (논 m <sup>2</sup> , 밭 m <sup>2</sup> , 과수원 m <sup>2</sup> , 기타 m <sup>2</sup>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 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m <sup>2</sup>	~	
		m <sup>2</sup>	~	
		m <sup>2</sup>	~	
	계	m <sup>2</sup>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7.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6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 장 박경아 사무관 김병준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차 장 이장희 대 리 나석준	02-3276-7862 02-3276-7863

**I. 사업개요**

**1. 목 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되도록 추진
  -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 ('10) 10% → ('11) 10% → ('12) 10%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	10	10.3	10.0	-	2014. 2.	(당연도 사회안전망 사업별 1인당 지원액합계 전년도 1인당 지원액 합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보 조	841,129	171,815	166,861	172,121	172,121
합 계	841,129	171,815	166,861	172,121	172,121

\* '11년은 세수부족으로 이월 집행된 '10년 예산 110억원 포함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농어촌보건복지증진특별법 제2조, 제33조)

#### 1. 농어촌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2. 준농어촌

① 농업진흥지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④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별첨 1 참조)

###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3.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4.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신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붙임1)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지사 비치」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현지 확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 지자체(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2차 확인시 반드시 최종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 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별도계획 수립

####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예산배정

#####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분기별 예산 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10년 지침 참고)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에게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 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익년 1월까지 별지 제3호 서식('10년 지침 참고)에 의거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및 익월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 \* 회계 및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13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반납금)

## 4.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전산조회 등을 통해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지원여부 판단

#### 농림수산식품부

-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당집행 사전방지
- 상·하반기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지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건 강 보 험 료 확 인 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신 청 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농어업인 대상자				
	농어업인 해당일 <sup>1)</sup>	년	월	일	
	주소	시	구 시(군)	읍(면·동) 리	마을 번지
청	종사 직종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어업인	영농(어)규모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지 야 선 지 양 지	
	농수산물 판매액	원/년	영농(어) 및 법안 <sup>2)</sup> 종사일수	ha ha ha ha	
<p>○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신청인 성명 :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1 차 확 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읍(면·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농 어 업 인 확 인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불일치	
	②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미거주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미종사	
	④ 농어업인 해당일			맞음·아님	
	2 차 확 인	㉠ 읍·면지역			맞음·아님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녹지지역			맞음·아님
		㉢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아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사면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맞음·아님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존치·비존치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 장 박경아 사무관 김병준	044-201-1571 044-201-1574
소속기관/단체	국민연금공단	차 장 채수현 대 리 유성수	02-2240-1242 02-2240-1245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건강보험료와 동일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 계	696,704	98,425	92,428	103,505	103,505
보 조	696,704	98,425	92,428	103,505	103,505

\* '11년은 세수 부족으로 이월 집행된 '10년 예산 79억원 포함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붙임1참조)



## 2.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3년 최고 35,5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790,000원)
  - \* 지원기준 변경 : ('07까지) 등급제 → ('08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4.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붙임 2)에 의한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는 농가주가 아닌 농어업인 세대원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 이·통장

- \* 1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 읍·면·동장

- \* 2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 (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

### 국민연금공단(지사)

- 제출받은 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지원 대상 적격여부(부적격자는 사유 명시)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신청시점부터 지원, 다만 신청직전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
  - 소급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별도계획 수립

##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 및 예산 배정

###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및 월별집행실적에 따라 분기별 예산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
  - 국민연금공단은 익년 1월까지 농식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별지3호서식) 및 익월 2월까지 사업 관련 통계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 \* 회계 및 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13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반납금)

#### 4.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민연금공단(사업관리주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연금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 등 부당집행 사전방지
- 상·하반기 일제조사와 연계하여 지사 위주로 점검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측정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농어업의 범위

###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 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나항

###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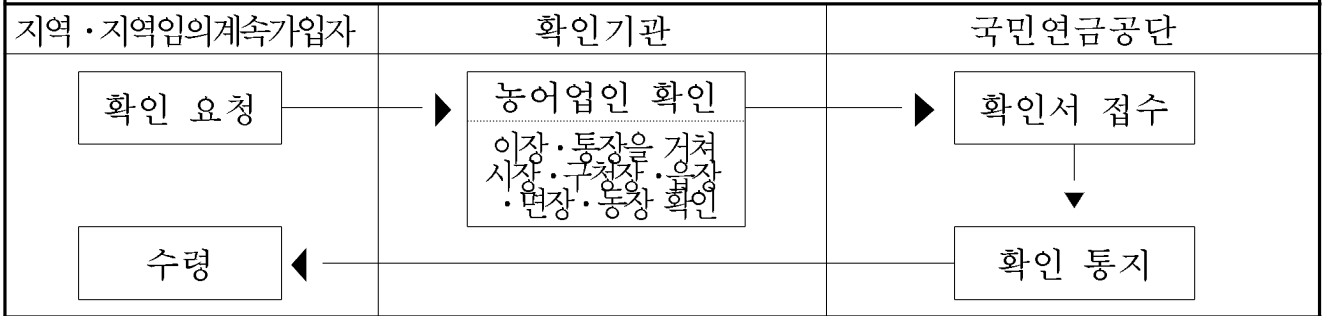
<붙임 2>

[ (앞면)

<b>국민연금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b>			처리기간 3일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다만,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자는 법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ha
<p>○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붙임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어업인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붙임3</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인)	
<p>「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이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구청장/읍장/면장/동장 (인)</p>			
<b>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b>			

210mm×297mm(일반용지 60g/ m)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2.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농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과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어업과 관련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li> <li>○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ul> <p>* 농업·어업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p> <p>※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li> <li>▪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li> <li>▪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li> <li>○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li>○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li> </ul> <p>※ 어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li> </ul>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 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b>66</b>	<b>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과장 박경아 사무관 김병준	044-201-1571 044-201-1574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 연구 및 질환·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농어업인의 건강한 삶 유지

###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 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2014년부터 10개소로 확대 지정·운영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농어업안전보건 센터 지정 운영 개소	5개소	-	-	-	2013.12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 정·운영 개소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	-	-	1,655	13,360
국 고	-	-	-	1,505	12,160
자부담	-	-	-	150	1,2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각 지정 센터(종합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합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

### 3. 지원대상

- 인건비(용역성 경비),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활동비, 센터 운영경비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용역성 경비), 조사연구비, 예방교육 활동비, 센터 운영경비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민간경상보조, 각 센터별 3억원 범위내 국고 지원, 국고지원액의 10% 이상 자부담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각 센터별 3억원 범위내 국고 지원

## III. 사업 추진체계

1. 현재 추진중인 주요 변경사항 : 해당 없음

2.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 상황 : 해당 없음

## IV. 주요 지적사항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회 등 외부 지적사항 등 : 해당없음

2. 다수인 민원, 지속적인 민원 중 주요 민원사항 : 해당없음



## V. 사업 추진체계





농촌개발분야

##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 장 신성암 사무관 유재중	044-201-1581 044-201-1588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 2.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등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 제한 없음

###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이상~100만㎡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비 지원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없으며, 전액사업자가 부담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한다.

#### 2. 사업추진단계

##### (1) 지정·개발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2) 개발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승인 후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 (3)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3. 사업시행단계

-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이 가능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신고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 4. 사업운영단계

###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준공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 함

####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정비법 제85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름

### 5. 이행점검단계

####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투자를 억제 하고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사후관리

#####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및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 기관에 승인 및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및 제116조(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 다.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 ② 관광농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장 신성암 사무관 유재중	044-201-1581 044-201-1588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도시민 등에게 농업·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

####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 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등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2,000㎡이상~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승인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유키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시설

###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 용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용자한도 : 15억원이내(신규 및 재무제표 미제출 사업자는 금융기관총대출금 포함 7억원미만)
  - 용자금액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후 결정
- 용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에 따라 개발승인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 국토관리계획 관련법·농지법 등의 용도변경 등 뿐만아니라 재원조달계획 및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지원자격(농업종합자금 지원자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며, 개발승인후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농업종합자금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승인 직전에 사업자로 하여금 용자를 신청토록 안내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인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 용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개발승인 받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용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2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80호, 1권) 등 관련규정을 참고
  - 자금조달계획은 거래은행 통장사본,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결과 등으로 확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추진체계
  - 농식품부 : 제도운영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군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도·감독 등
-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 2. 사업추진단계

### (1)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 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2)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자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식당·숙박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발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 4. 사업운영단계

-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 사업자의 신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정을 준용함

#### 5. 이행점검단계

#####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명을 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등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투자는 억제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농원의 승계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관광농원을 승계받은 자는 관광농원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

#####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후관리와 관련 사업자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하고 제반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관련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 지정 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 **라.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마. 기 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 ③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팀 장 신성암 사무관 유재중	044-201-1581 044-201-1588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 증대

###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6조(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2-144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 판매 등 (다만, 음식제공은 불허용)

### 3. 지원자금 및 요건

- 주민이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신축은 미지원)
- 용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수·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용자(농업종합자금)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 사업자가 농업종합자금 제도를 활용하여 용자를 받고자 할 경우 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용자관련 참고자료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2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80호, 1권) 등 관련규정 참고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고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비지원 신청(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 2. 이행점검단계



##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시장·군수는 민박사업자가 불건전·퇴폐운영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내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업장 폐쇄시 관계기관에 사업장 폐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을 파악하여 다음해 1.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세부지침에 의해 추진상황 등을 정해진 시기에 제출하여야 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득섭 서기관 박종훈	044-201-1551 044-201-1558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및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

###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91조 내지 제100조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

### 2. 지정대상

가. 한계농지의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7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권」에 따른 광업권의 기간만료 또는 취소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이하여야 함(단,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20%미만으로 한다)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시설, 업무시설

**4. 지원형태 등**

- 제도사업으로 운영(국고 보조 또는 용자 등의 지원 예산은 없음)

**5. 사업추진 절차**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추진주체 및 내용
한계농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 및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한계농지를 조사</li> </ul>
↓	
한계농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조사한 지역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li> <li>※ 시장·군수외의 자가 조사한 한계농지는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정비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li> </ul>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고시한 지역 중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li> <li>※ 시장·군수(조사)→시장·군수(지정)→시장·군수(고시)</li> <li>※ 시장·군수외의 자로부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li> </ul>
↓	
사업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내 시설설치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li> </ul>
↓	
사업계획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신청)→시장·군수(승인)</li> </ul>
↓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52조 별표 2에 의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한계농지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li> <li>※ 산지관리법시행령 제 23조 제 1항 별표 5에 의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서 한계농지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00%감면</li> </ul>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및 임대 등 시설관리</li> </ul>

## 1. 사업 신청단계

-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사업지구의 필요성,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사업 지정단계

### 가.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한계농지의 이용 상황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를 조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
  - 고시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또는 집단화도)
  -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이상의 지적도)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 고시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 변경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 정비지구의 명칭, 목적, 사업의 종류
  - 정비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사유(변경 및 해제의 경우만 해당)
  - 정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 내용(해제의 경우 제외)

### 다.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해제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 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시 시장·군수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정비지구로 지정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호응도
  - 사업내용(시설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 부문 개발계획 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 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경사지의 산사태 등 주변경관의 훼손과 발생가능성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함

### 3. 사업계획 수립

#### 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내의 사업계획 수립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외의 자는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시행 가능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 할 경우 다음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계획 면적의 증감

####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 포함), 종류,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 그 밖에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4. 사업계획 시행

### 가. 사업시행원칙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정비사업 시행 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등 공사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 다.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 라.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과 규모에 관한 서류, 사업비 명세서, 시설물 배치와 시설 현황도
  -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서,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용도별)
  -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

### 마.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 및 농지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하지 아니함

### 바.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 5.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 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과 그 부대 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 나. 보고(연1회 : 요청 시)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2. 자격 : 지자체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신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지정)
  - 지구지정·고시 : 시장·군수(지정) → 시장·군수(고시)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승인)



[별지 제1호서식]

<b>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b>			
신청자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명)		
지구현황	지구의 명칭		
	위치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외 ○필지	
	지구면적 (㎡)	계 ○○㎡(한계농지 ○○㎡, 기타 ○○㎡)	
지목별		논 ○○, 밭 ○○, 임야 ○○, 기타 ○○	
지정목적 및 사업종류	지정목적		
	사업의 종류		
사업비		사업기간	~ 년
지구 지정의 필요성 (사업 시행 효과)			
주요사업내용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구비서류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다만 축척 1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축척 1천 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		
<p>농어촌정비법 제95조 제1항의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인</p> <p>○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한계농지등 정비사업 추진동의서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익 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보 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년 월 일

승락자 주소 :  
성명(한자) :

인

<b>69</b>	<b>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득섭 사무관 김운기	044-201-1551 044-201-1552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이바지
  - 농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마을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 2. 기본방향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개량, 마을기반시설정비 및 경관 개선에 중점
- 기존 건축물의 공동생활주택 및 영유아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소득, 교육, 복지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
- 주택개량이 필요할 경우 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융자 3%, 5년거치 15년상환)
- 시범사업이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지구를 우선 지원
- '13년~'14년(2개년)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 '15년부터 본 사업 본격 추진

### 3.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 기초생활여건개선) 제38조(농어촌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농어촌정비법 제52조(생활환경정비 계획의 내용)내지 제71조, 제108조(자금지원)

#### 4.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 ~ '24년 (12년간) 1,004지구 조성  
 - '13년~'14년 시범사업 4지구, '15년 이후 본사업 1,000지구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계획수립(개소)	4	익년도 2월	당해 연도 사업 계획수립 여부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13년~'24년(12년간) 사업규모 : 총 1004지구, 1.9조원(국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계
합 계	-	5,713	10,052	3,688,192	3,703,957
국 고	-	4,000	4,050	1,915,388	1,923,438
지방비	-	1,700	1,800	842,462	845,962
용 자	-		4,000	881,400	885,400
자부담	-	13	202	48,942	49,157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시범사업 추진개요

- 사업량 : 4개마을(개소당 약 50호규모)
- 사업기간 : '13년 ~ '14년(2년)
- 재원소요 : 158억원(국비 81억, 용자40, 지방비 35억, 자부담 2억)

### 2. 주요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등
- 공동이용시설 설치 : 공동생활형 홈조성, 영유아보육시설 등
- 마을 경관정비 : 담장,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 태양광, 태양열, 목재펠릿보일러, 지열 등 설치
- 농어촌주택 정비 :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재 개량공사, 노후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 효율화 개보수공사, 농어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주택 에너지 및 구조 진단

###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
  - ※ 마을기반정비 및 주택개보수는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가능
- 용자대상자
  -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주하여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한요인이 없는 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중 아래 요건을 갖춘 지역은 우선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 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중 행정리 1개 이하 지역
  - 마을전체에서 노후·불량주택이 주택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인 공동 개발에 동의하는 마을
  - 마을 전체 가구중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주택 가구가 3분의 2이상인 마을 우선 지원
  - 마을 중심점 기준 반경 200mm 이내 주택 30호 이상 지역
    - ※ 노후·불량주택은 건축물 준공경과 년수 20년 이상 주택(건축물관리대장기준)을 말함

### 5. 지원 형태

- '13~'14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약 주택 50호 규모 1개 마을에 국고 20억원 범위에서 지원함
- 국고보조 70%, 지방비30%인 경우

- 마을기반시설 : 기본계획수립·시행계획수립·공감·사업관리비 등 제경비, 주택 에너지 및 구조 진단비,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마을내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고령자 공동생활형 홈 조성공사비)
- 마을경관정비 : 담장정비·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 농어촌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공사(지원조건 7,000천원/동 한도), 빈집철거 (슬레이트 빈집 포함, 일반빈집철거 : 1,000천원/동, 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 : 2,500천원/동 한도)

※ 계획수립 및 공사감리 위탁시 대가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 49조 「별표5」 준용

**○ 국고보조 50%, 지방비30%, 자부담 20%인 경우**

-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지붕재 개량공사(지원조건 8,400천원/동 한도)
-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조건 2,000천원/동 한도)
-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패널 (3KW×3,913천원)/동 기준)

**○ 국고 용자(3%, 5년거치 15년상환)**

- 농어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 용자(주택신축 : 세대당 50백만원/동, 주택개보수 세대당 25백만원/동)

**○ 지방비 또는 자부담 100% : 공공시설 부지확보**

-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 자부담으로 추진함.
- ※ 농어촌주택 용자조건 :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침에 따름)
- ※ 농어촌주택 개보수공사는 주택의 에너지 및 구조 진단하여 개보수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후 효율적인 난방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
- ※ 공동생활형 홈 조성 후 운영·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 ※ 마을기반시설, 경관정비 및 농어촌주택정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경관가이드 라인에 충족하여야 함.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제안서작성 및 사업신청(시·군 또는 정비조합) → 사전 사업성 검토

(시·도) → 대상지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수립(시·군) → [필요시 :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시·도)] → 시행계획수립(시·군) → 사업시행(시·군) → 준공확정(시·도지사) → 운영 및 유지관리(마을) → 사후관리(시·군)

※ 세부 추진체계 : 덧붙임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사업제안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공모지침 시달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제시

##### 시·군(시·도)

-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사업 신청
- 관련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주택건축, 복지, 지역개발, 고령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사업계획수립, 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등 협의추진 및 자문
-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 등 의제처리사항 협의

##### <협의체 구성안(예시)>

- 의 장 :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
- 구성원 : 건설, 도시, 주택, 농지, 농정, 복지 등 부서 담당자 및 사업추진위원회 대표
- 자문단 : 지역계획, 건축, 농촌경제, 조경, 복지 등 관련 전문가

- 시·군에서는 제안서작성에서부터 시행계획수립까지 전과정에 걸쳐 총괄계획가를 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

##### 사업추진위원회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강구

-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주민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

- 주택 철거, 개보수 및 공동생활형 홈 입주 등 신청자 조사

## 2. 대상지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상지 선정방침결정 후 시·군(시·도)에 시달

○ 시·도지사가 제출한 공모제안서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선정결과 통보

### 시·도

○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사전 조사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한 시·도지사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3. 계획수립 및 시행

### 가. 기본계획수립 (필요시 정비구역지정·해제)

#### 시·군

○ 지역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 노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및 구조 진단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 개보수 방안 계획 수립



-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 사항 발생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
- 시장·군수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계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계획,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함.
- (필요시)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계획 수립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마을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시·도

- 시장·군수의 기본계획수립을 시·도의 승인 후 추진
- (마을정비구역 신청시) 시장·군수의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 나. 시행계획수립

### 시·군(시행자)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면(마을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행계획수립
  - 노후 농어촌주택 철거 및 개보수 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공사 중 임시 거처 마련 계획수립 포함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고시 및 열람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후 변경

## 다. 사업시행

### 시·군(시행자)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한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가능
  - ※ 자부담이 있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주민 자부담 금액을 사업시행자에 이체하고 사업시행자가 집행함
  - ※ 농어촌주택 신축(융자금지원)은 주민이 직접 시행함.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름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을 따르며,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 보상 우선 추진
- 공사감독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위탁시행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계지원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을 마을기반 시설 및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관련부서, 기관 등과 사전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추진함.

####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

##### 시·군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
  - 계약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필요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실시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
  - 위탁시행자는 준공 검사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 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

- 시·도지사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위원회(주민)

- 공동생활형 홈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 하여 운영
  -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및 마을 전체 경관 이미지 유지

#### 5. 예산편성 및 집행

- 시장·군수는 타부문 연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6. 보고사항

- 기본(시행)계획수립 결과보고(수립즉시) : 별지 1
- 사업추진상황보고(매분기기준 익월 5일 이내) : 별지 2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결과보고(변경즉시) : 별지 3
- 사업준공결과보고(사업준공 즉시) : 별지 4
- ※ 각 사항에 대해 조치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7. 이행점검단계

### 시·군(시·도)

- 분기별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매분기 1회 사업추진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 필요시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 8.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범사업기간동안 매년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이득섭 사무관 김경두	044-201-1551 044-201-156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문화의 계승 등)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초기('13~'15)에는 사업 진도(예산 집행율)를 평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사업 진도(%)	100	-	-	-	2014.1	사업실적/사업계획 ×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까지	'11년	'12년	'13년	'14년 이후
합 계				1,600	34,000
국 비				1,150	24,100
지방비				450	9,900

\* 2014년 이후는 2018년 까지 5개년간의 사업비이며, 국비에는 행정지원비가 포함됨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 다원적 자원 및 농어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 보유 지역
  - 국가 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문화재(명승)로 지정된 곳,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곳
  - \* 자원이 소재한 마을(행정리) 단위로 지원하되, 자원이 여러 마을에 산재해 있거나, 걸쳐 있는 경우는 여러 행정구역(시·도, 시·군, 읍·면, 리) 단위로도 지원 가능

### 2. 지원 요건

- 예비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 3. 지원 형태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4. 사업 기간 및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3년
- 지원한도 : 유산자원 지정 지역 1개소당 3년간 1,050백만원(국비 기준)
  - 사업타당성, 산출근거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가·감 가능

### 5. 주요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정비 개발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농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로·접근로 정비 등
부지구입	자원 정비를 위한 토지구입비(예산의 30% 이내)	
환경 개선	환경정비	디자인 농업, 경관 조경, 폐 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농로 전신주 지중화,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향상	팜 파크, 식물다양성 식생장, 전시관, 탐방 데크, 등
가치 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물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축제장 등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13.12월말)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4.1.2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주민협의회 동의서
-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30)

####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
-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2.25)

#### 《심사·평가절차》

##### 가. 현장실사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주민의 의견 등을 조사
  -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역(예산규모)의 2배수 이내를 선정

##### 나. 공개 발표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구성
  - 주요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규모 및 예산 투입의 적정성, 사업비 확보 및 관리계획 등
  - 평가기준 : 별도로 정하며,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대상지역 선정

시·도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을 시·군에 통보(2.28)

###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기본계획수립》

시·군

- 시·군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일관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일괄위탁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보완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6.30)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에 일괄위탁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기본계획을 수립함
- 기본계획수립시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평가, 경관영향평가 등을 별도 실시할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

- 제출된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통보(7.31)

#### 《기본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군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검토·승인한 후 변경 (시·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 시·군

- 시·군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일관성을 위해 일괄위탁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정산 등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여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은 후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 시공업체 자격 및 선정방식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 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통신·소방·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공사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시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시공업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추진한 사업은 자체 감리 불가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 공무원이 수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시·군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배정된 자금 중 필요 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정 후 사업완료시 검정·정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집행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을 시·군에 보고
-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기준을 엄수

####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감독 실태 등

#### 《제 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 6. 성과측정단계

- 동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사업기간이 3년이므로 '13~'15년은 사업진도(예산 집행율)로 성과를 측정하고, '16년 이후 부터는 방문객 증가율로 측정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가. 원 칙

- 사업평가는 사업기간('13~'15)에는 사업 진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 나. 2013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을 시행중인 지역 전체
- 평가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협조 : 한국농어촌공사)
- 평가 기간 : '14. 1~2월
- 평가 기준 : 사업 진척도, 예산집행 실적 등
- 평가 대상기간 : '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기 : '13. 6월 이내 실시('14년도 예산 신청시 반영)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13. 10월말
- 현지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 '13. 11월말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13. 12월말



축산분야

## I. 사육기반 확충



<b>71</b>	<b>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김 규	044-201-2371 044-201-2379
농협중앙회	축산자원부	부 장 류기만 팀 장 전남현	02-2080-6700 02-2080-6691

## I. 사업개요

###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젓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4년 37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p)		
▪ 조사료 자급율(%)	88	82	83	86	2013.12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 / 조사료 총공급량)×100
▪ 사료작물 재배면적 (천ha)	350	244	260	330	2013.12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20년까지
합 계	100,200	106,546	123,964	153,984	1,028,100
보 조	89,800	71,711	91,346	106,697	767,300
용 자	10,400	34,835	32,618	47,287	260,8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
  -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총채버 등(목초 포함)
  -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계획서(농림수산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 사전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개별> : 본 요건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 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사후관리 비용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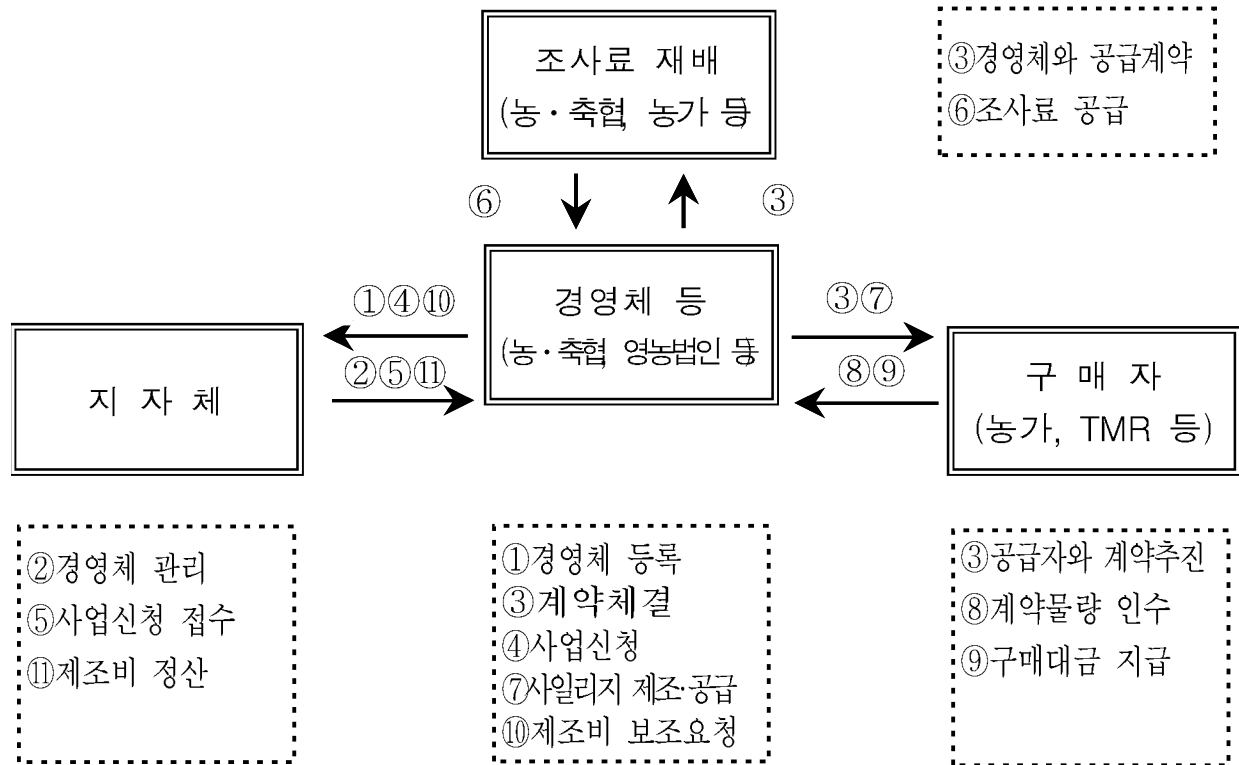
##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기준 : 60천원/톤
- 지급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추출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표본추출 :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 적용하며 1일 제조량(5ha 기준 200개)의 10% 예시) A 경영체가 하루 약 7ha 작업을 하여 280개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표본추출량은 28개, 3ha 작업을 하여 100개 제조한 경우 10개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TMR 및 TMF, 이하 같다) 가공장 (이하 'TMR 업체'라 한다)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유통주체를 통해 1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공급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구매
    - \* 유통주체는 공급자(지역 농·축·낙협, 경영체)와 구매자(지역 농·축·낙협)
  - 조사료 공급 또는 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중앙회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TMR 업체 : 농·축·낙협의 TMR 업체, 사료협회 또는 단미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업체로서 시·도에 등록된 업체

###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100km 이상 유통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유통	5천원/톤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10천원/톤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 1>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 세부추진요령은 별도 지침으로 통보

<별표 1>

### 생산실명 표기(양식)

상 품 명	(곤포, 소포장)사일리지	중 량	계근 증명서 참조
생산일자	년 월 일	첨 가 제	사용, 미사용
생 산 자	도 시(군) 경영체명	연 락 처	000-0000-0000
공 급 자	도 시(군) 경영체명	연 락 처	000-0000-0000
품질등급		주의사항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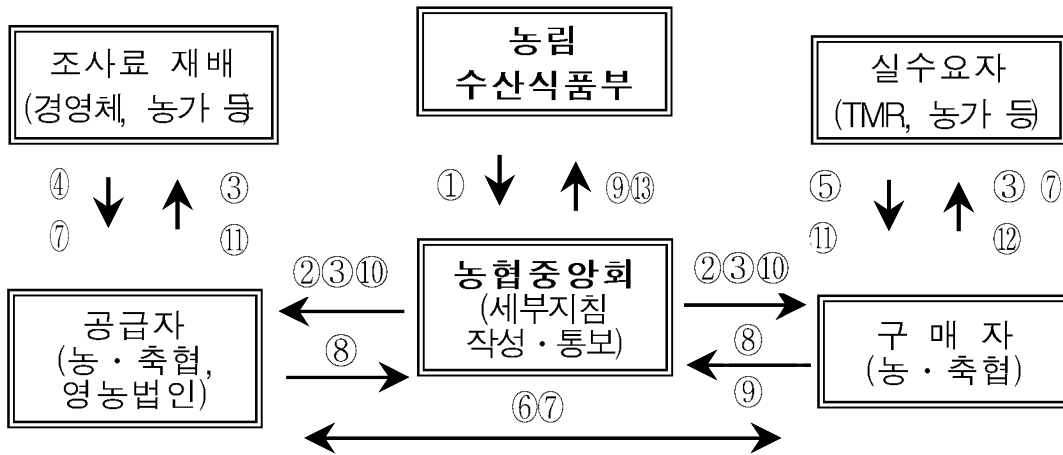
\* 규격 : 가로 20cm × 세로 10cm, 재질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별표 2>

### 조사료 품질 등급 표기(양식)

구 분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부족	적 정	다소과다	과 다
수분함량(%)	50 내외	55~65	70 내외	75 이상
중 량(kg)	450 내외	500~600	650 내외	700 이상
등 급(A~C)	A	A	B	C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③사업안내
- ④재배계약
- ⑥공급계약체결
- ⑦조사료 공급
- ⑧실적제출
- ⑪대금지급

- ①세부지침 승인
- ②세부지침 통보
- ⑧실적취합
- ⑨보조급 보조요청
- ⑩대금정산
- ⑬사업결과보고

- ③사업안내
- ⑤구매계약체결
- ⑦조사료 공급
- ⑧실적제출
- ⑨대금지급
- ⑫모니터링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축·낙협, TMR 업체, 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등
- 유통주체
  - 생산주체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시·도 추천)
  - 구매주체 : 지역 농·축·낙협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3. 지원대상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

<별표 3>

###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업명	기계·장비명	규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	135HP내외	
경운	플라우	4연	
정지	로타베이터리	80HP이상	
시비	퇴비살포기	4톤	
파종	파종기	12조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	4톤	
예취	모우어	2.4m	
	하베스트	1~3조	
집초	레이크	3.0m	
곤포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	드럼폭174cm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	100cm*100cm 내외
	적재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 ○ 농업인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m<sup>3</sup>)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진압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경영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시·군은 트랙터를 지원할 경우 기본적인 곤포장비(별표 3 참조)를 구비한 경영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

- 용자지원 :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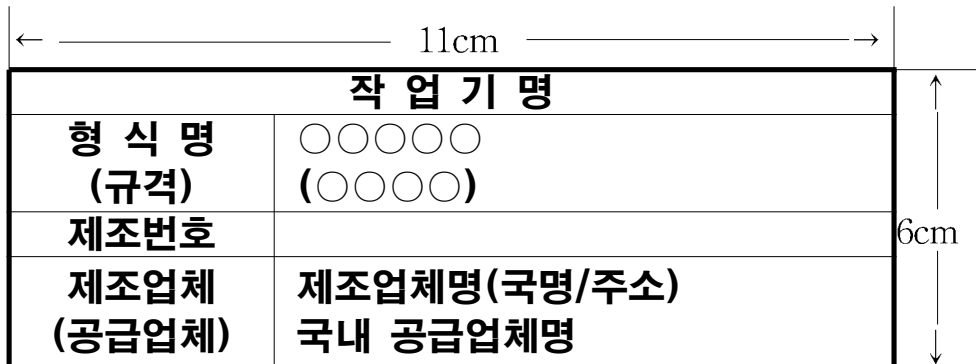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용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용자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용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기계·장비 구입가격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별표2]에 등재된 용자지원 한도액을 참고한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 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관리카드)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 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별표 4>

##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랙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라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종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우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베스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이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일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범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 ④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젓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
  -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 농가에 한정

### 3.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비”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기준 : 총 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를 설치하고,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용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⑥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총채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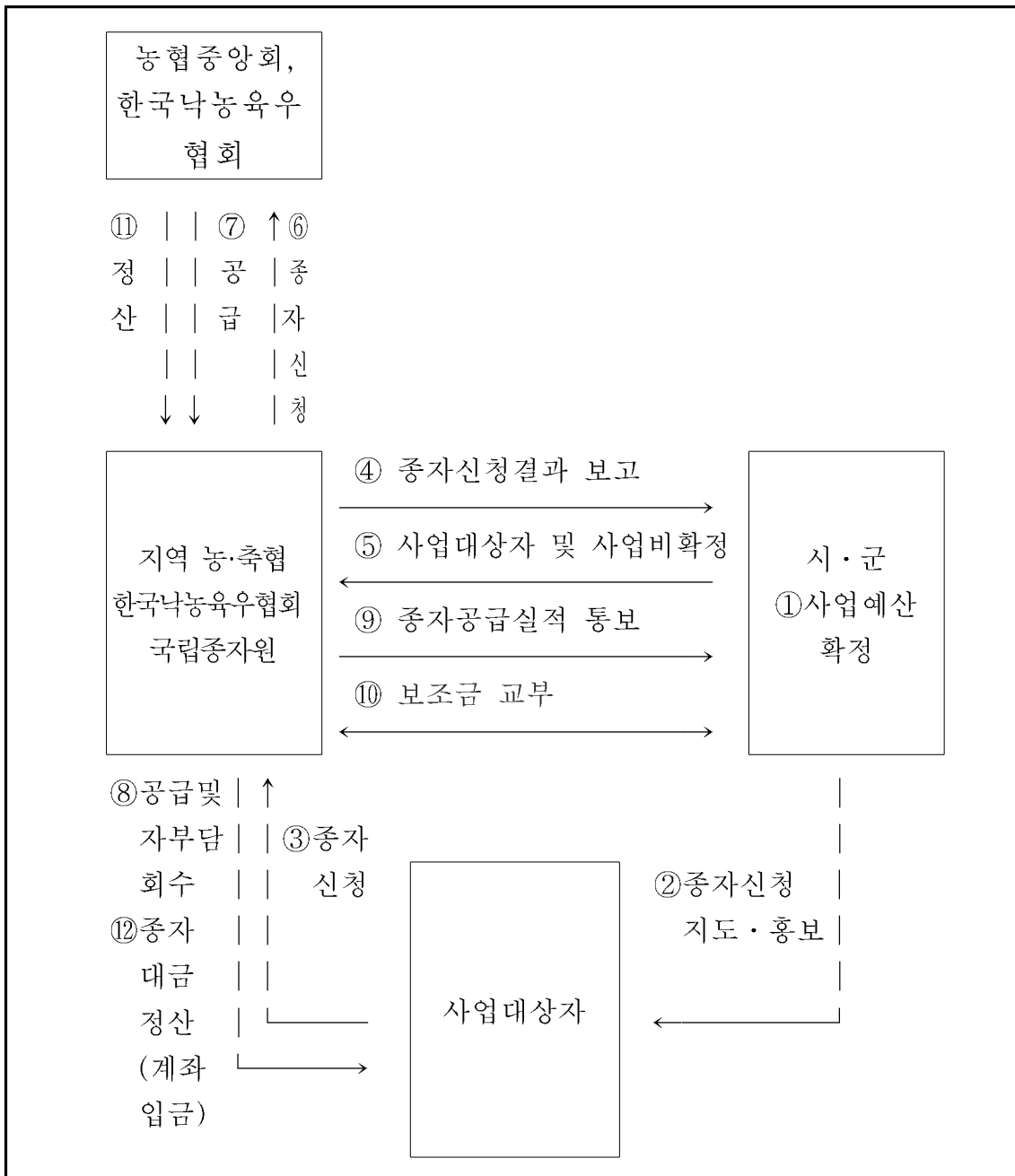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 농·축협조합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
- 보조분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종 자 공 급 체 계 도



※ ⑪은 지역 농·축협만 해당

## ⑦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조사료 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TMR 업체 :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자격과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조사료 생산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를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3. 지원대상

- 조사료(사일리지) 저장시설
- 조사료(사일리지) 소포장 제조설비
- 조사료(사일리지)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 계근시설, 방역시설, 사무시설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조사료 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9억원 이내(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2012년부터 연간 4개소 내외에서 총 40개 지원

##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 ⑧ TMR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 1. 사업대상자

- 신규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TMR 가공시설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⑦ 조사료 유통센터 운영사업'의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고,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운영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고,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3. 지원대상

- TMR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 TMR 가공시설 건축비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 기존 TMR 업체의 가공장 운영자금
- 기타 조사료 가공시설 설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TMR 가공 기계·장비 구입비
- TMR 가공시설 건축비(토지 구입비는 제외)
- 기존 TMR 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 기존 TMR 업체의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할 경우 운영자금 추가지원 가능
- 기타 설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5. 지원형태

- 신규 및 보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보완지원은 개소당 6천만원 이내(총사업비 20천만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 연간 25개소 내외를 대상으로 지원

##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 ⑨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 1. 사업대상자

- (광역단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대규모, 집단화된 지역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중소단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지형, 기후 등이 조사료 재배조건에 불리한 지역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경영체, 생산자단체 : '①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의 '2. 자격 및 요건 중 <개별>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5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
- (중소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단지(또는 생산특구)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시·군
  -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 조사료용 종자
- 조사료 재배용 퇴비(분뇨, 액비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퇴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단지로 활용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
  - 광역단지는 개소당 최고 500ha 범위, 중소단지는 개소당 최고 10ha 범위

###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6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거리 운송비 지원
  - 종자 구입비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지원 등
  - \* 조사료 유통센터 및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기준서에 포함할 사항 : 사료단가,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 경영개선노력, 사료의 위생안전성 관리, HACCP 지정 등

##### 시·도(시·군)

####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 접수보고
  -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 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서식 4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3월)
- 농식품부에서 가내시 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 ~ 10월말
  - 경영체는 농가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사업희망자는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 계획(연차별 물량, 사용비율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를 작성, 시·군·구에

### 제출(1월말까지)

- 신규지원 및 보완지원 신청자는 우수업체 평가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생산자단체 현황,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공급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 능력, 부지확보 여부 등 기재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군·구 보조)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계획 검토시 특히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이행계획, 부지 확보 여부, 생산자단체 현황, 원료 확보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계획을 수립
- 시·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시·군 및 사업 희망자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을 거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지방비(시·도 보조) 확보 및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 시·군·구 및 시·도에서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사업비(제조시설 규모, 시설·장비 단가 등)가 과다 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농협중앙회는 세부시행요령을 수립한 후 각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통보(2월말)
  - \* 시·도(시·군)은 경영체 및 한우회·낙우회 등 생산자단체에게 홍보
  - 세부시행요령 :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중앙회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 생산주체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 구매주체 : 지역 농·축·낙협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물부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 시·도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서 검토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시·도(시·군)

###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실시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 확정후 <서식 5>, <서식 6>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추진(보고기한 : 전년도 11.10)
  -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대상자 확정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

-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 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

### 《개별농가 기계·장비, 볏짚 등 부존자원, 종자구입비,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 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집행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을 종자공급실적과 함께 <서식1>, <서식6>에 따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12.1.31까지)

###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에 대한 사일리비 제조비 및 기계·장비》

- 시·군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경영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식품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 시·군은 사업비 집행(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후 그 결과를 <서식 1>, <서식 2>, <서식 5>, <서식 6>, <서식 7>에 의거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서식 1>, <서식 5>, <서식 6>, <서식 7>은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www.agrix.go.kr)에 입력(동계작물 대상 7월, 하계작물 대상 10월)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 사업추진 종료시 추진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시 농식품부에 제출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

- 농협중앙회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 수립하여 사업시행

###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조사료 유통비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료작물 파종 후 1개월 이내 및 수확·사일리지 제조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재배농가가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 자원 확보·이용 계획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매년 2회(반기별)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신규지원의 경우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국내산 조사료를 소요량의 80% 이상 사용토록 지도관리하고, 미준수사항이 지적될 경우 자금 회수 등 조치 (기 지원한 TMR공장의 경우도 적용)
  - <서식 8>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신규초지조성 -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준용 처리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 융자금 교부일	5년	기계·장비 양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일	10년	시설·기계· 장비 양도	

○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중앙회
· 조사료경영체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계획·실적 보고 * <서식 5>, <서식 6>	(하계) 당해연도 10월 (동계) 당해연도 7월	시·도
·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 촉진비) 지원실적 * <서식 1>	(동·하계) 당해연도 12월	농협중앙회
· 사료작물·목초 종자 공급실적 보고 * <서식 7>	(하계) 당해연도 7월 (동계) 당해연도 11월	시·도, 농협중앙회
·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 조사결과 * <서식 4>	(하계) 당해연도 3월 (동계) 당해연도 10월	시·도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제재》

시·도(시·군),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조사료용 기계·장비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 경영체에 대하여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용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
    -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용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의 경우 시·도(시·군)에서는 연 2회 이상 원료사용 실적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미준수 할 경우 보조사업비 회수 등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관계 규정에 따름

##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조사료 자급률, 사료작물 재배면적 등의 전년도 성과를 측정
  - 조사료 자급률 : 국내 조사료 수요량 대비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
  - 사료작물 재배면적 : 종자공급실적(정책지원량 및 자가 확보량) 및 파종·수확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3월) : 시·도별 사료작물 종자 공급실적 집계, 파종 및 수확실적 등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측정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4.1.20)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4.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 2013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지원내용 : 2013년도 지원내용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4.1.20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공동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4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13.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 ('13.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4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사업자 선정후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4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13.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 ('13.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4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사업자 선정후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2014년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보고기한 : '13.3월말)
- 농식품부는 예산(축산발전기금 보조)을 확보하고, 시·도별 예산 가내시 ('13.9월)
- 시·도(시·군)에서는 2014년도 지방비를 농식품부 가내시에 따라 확보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를 시·도(시·군)에 통보 : 사업자 선정후

<b>72</b>	<b>쇠고기 생산성 향상사업</b>
-----------	---------------------

<b>① 초음파 진단료 지원</b>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 장 권영웅 팀 장 이일규	02-2080-6550 02-2080-6553

## I. 사업개요

### 1. 목 적

-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을 통해 쇠고기의 생산성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		50.0	56.2		매년 1월 중	'13.1~12월까지 한육 우 1등급 출현율(축산 물품질평가원)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9,600	8,580	7,517	5,376	5,376
국 고	4,000	2,980	2,533	1,613	1,613
지방비	-	-	2,136	1,613	1,613
융 자	-	-	-	-	-
자부담	5,600	5,600	2,848	2,150	2,150
○ 초음파 진단료 지원	9,600	8,580	7,517	5,376	5,376
- 국 고	4,000	2,980	2,533	1,613	1,613
- 지방비	-	-	2,136	1,613	1,613
- 융 자	-	-	-	-	-
- 자부담	5,600	5,600	2,848	2,150	2,15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인증한 기초한우사업단

### 3. 지원대상

- 기초한우사업단(농림수산식품부 인증)
- 기초한우사업단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한 기초한우사업단에 지원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29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2~3개월 간격으로 2회 초음파 진단한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 진단한 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를 제공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지원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정액 지원
- 조 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량 : 연간 256천두(128천두\*2회 초음파진단)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 21,000원/1회/두
  - 국고보조 : 6,300원, 지방비 : 6,300원, 자부담 : 8,400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생후 21~29개월령 한우에 대하여 2~3개월 간격 진단 2회 한함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기초한우사업단 인증결과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확정 발표('12.12월)
  - 농협중앙회, 기초한우사업단, 지자체(시·군 및 도)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13.1월)
  - 기초한우사업단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심의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시·군 및 도)

-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도)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자기 부담금을 농가지원 예산에 반영

####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소속농가의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협중앙회에 참여 신청('13.1~2월)

## 2. 사업자 선정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기초한우사업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대상 선정결과와 함께 세부사업실시요령을 해당 기초한우사업단에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승인 요청한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심의한 후 농협중앙회에 결과 통보('13.2월)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승인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는 원활한 사업홍보와 초음파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운영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제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거세 비육우에 대한 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 및 초음파영상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초음파영상정보에 대한 판독결과와 효율적인 비육우 관리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

- 출하성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운영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실적 보고(분기, 연말)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전산관리시스템 체계도>

####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초음파육질진단 관련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기초한우사업단은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와 소속농가에게 정보제공
  - 초음파영상자료와 사양관리정보를 조사하여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판독결과와 비육우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기초한우사업단은 분기별 실적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자부담 및 지방비를 별도 계정과목(또는 별도 회계)으로 정리하여 관리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분기별 추진실적에 따라 기초한우사업단의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에 배정하고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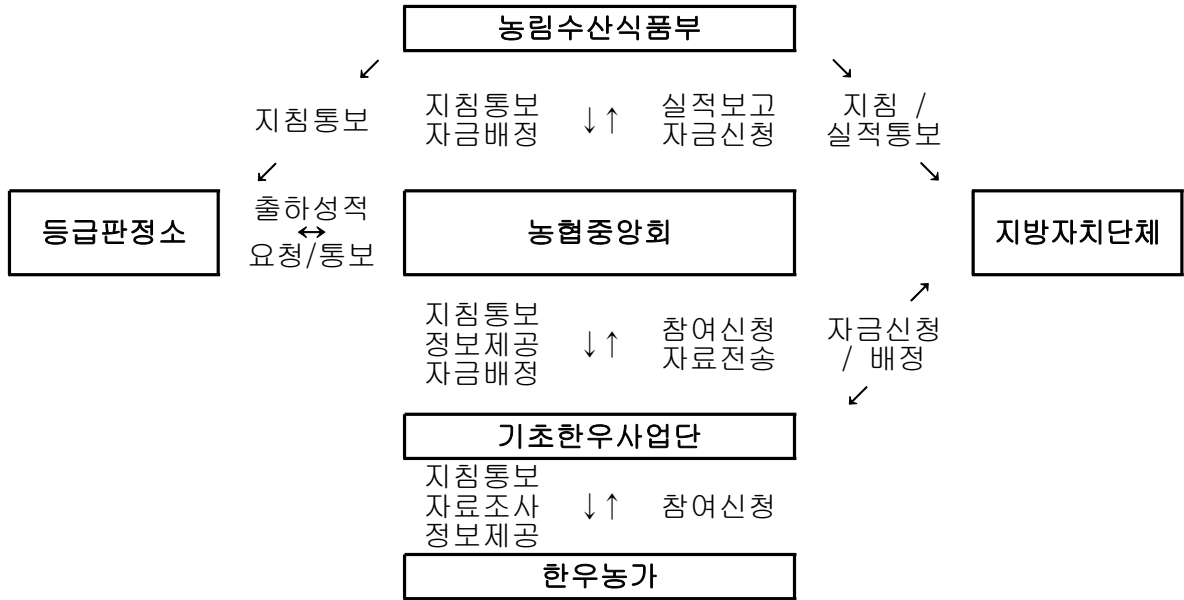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는 기초한우사업단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면서 보조금 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추진실적과 함께 기초한우사업단에 지급
- 농협중앙회는 사업관리비와 정보 제공료를 기초한우사업단에게 청구

##### 시·군 및 도(지자체)

- 시·군 및 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지자체 부담금을 추진실적과 함께 기초한우사업단에 지급(지방비 지원 지자체에 한함)

**기초한우사업단**

- 기초한우사업단은 자기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에 대하여 초음파진단료 청구
  - 지자체부담금 및 농가부담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기초한우사업단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배정받은 보전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및 농가부담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별 항목관리



<업무 흐름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규모 : 연간 2회 이상
- 점검내용 : 자금관리와 농가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
- 결과활용 :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등에 반영

**사업관리주체(지자체, 농협중앙회)**

- 점검규모 : 연간 4회 이상(기초한우사업단)
- 점검내용 : 자금관리와 농가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
- 결과활용 : 점검결과와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명령

**사업관리주체(지자체, 농협중앙회)**



- 기초한우사업단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중지 및 회수조치
  - 대상축의 개체식별번호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여받지 않은 조작됐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기타 관련자료가 허위이거나 본 사업 대상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측정》

- '13년도 1~12월까지의 한우고기 1등급이상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 품질평가원 등록실적)

### 《만족도 조사》

- 시 기 : 사업년도 12월 중
- 담 당 : 농협중앙회
- 대 상 : 사업참여 기초한우사업단 소속 참여농가(100여명 내외)
- 방 법 : 설문조사(팩스 및 우편)
- 내 용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 기 : 사업년도 12월 중
- 담 당 : 농협중앙회
- 방 법 : 성과지표항목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 고 : 평가결과는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초음파진단료 지원사업』의 성과미흡시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개선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이상수 서기관 문태섭	044-201-2331 044-201-2342
농협중앙회	축산자원부	부장 류기만 팀장 김종민	02-2080-6700 02-2080-6681
한국사료협회	기획팀	부장 홍순찬 과장 이유희	02-581-5721 02-581-5722
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팀	전무장 최열순 팀장 권현부	02-585-2223 02-585-2223

\* 사료제조시설자금 담당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 I. 사업개요

### 1. 목 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2.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물 생산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의 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3		
▪ 사료가격 안정 (원/kg 이내 변동)	90	79	13	78	'13.1	월별 최고가격 - 최저가격 (AGRIX)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48,056	40,400	60,857	97,143	152,143
보 조	-				
용 자	246,4711	40,000	60,000	95,000	150,000
지방비	-				
자부담	1,585	400	857	2,143	2,143

\*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비는 '06년부터 종합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 개보수를 희망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원료구매자금을 운용하는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3. 지원대상

-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사료제조를 위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 부지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정부지원 및 자부담)에서 제외
- 사료원료구매자금 :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및 국내 조사료 구입 자금
  - \*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사료원료의 구매 용도로만 사용·관리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연간 사료원료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규모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시달(1월)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료산업종합지원자금의 업체별 지원평가서식(지원신청업체의 사료품질, 위생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시달
  - 사업주관은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에서 주관
-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자원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제조업체에 대하여 사업신청서와 지원평가서등을 제출토록 조치(1월까지)

#### 신청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별지 사업신청서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평가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1월까지)
  -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업자 현황(대표자 인적사항 등), 사업계획(시설 현황, 사료원료 구매계획 및 신청액 산출근기 자료,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사료제조 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공동구매 계약관련 자료(해당업체에 한함)
- \* 사업신청자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금리 3% 적용)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서에 첨부

## 2. 사업자 선정단계

###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지원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사업대상자를 추천(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주관기관에서 보관)(2월까지)
- \* 제조시설자금과 원료구매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서류는 통합 제출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이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지원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확정·통보(3월까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시 다음 사항에 대해 우대할 수 있음
  - 사료제조시설자금의 경우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자, 자부담액(또는 비율)을 확보 또는 계획한 자,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 및 사료원료 공개경쟁 입찰 구매 실적이 높은 자
  -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경우 사료공장 HACCC적용 및 계획 중인 공장, BSE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제조라인 분리가 되어 있는 공장, 사료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체 등
-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에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당 주관기관에 보고(별지 1, 별지2 서식)

####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월별 지원계획(지원액, 대출취급기관 등)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사업의 포기 등 발생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업체별 자금집행 실적, 원료구매실적 등)을 사업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지1, 별지2 서식)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을 통해 보고받은 월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을 실시
  - 자금배정 내역은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주관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내역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사업자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따른 효과(사료 품질·안전성 향상 또는 사료가격 안정)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수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
  - 특히,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중점 관리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등 확인
- 자금지원시 사업담당자는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된 자부담의 집행 여부 확인 철저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

#### 사업자(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에는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청약일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입찰할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시·군·구) 관계관이 공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 《제제》

####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 사유와 변경코자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6. 성과측정단계

- 차기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까지 사업자별로 제출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비 운용계획”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평가내용 : 사업비 운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대상 사업자별로 실적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주관기관별 평가 결과로 대체

###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우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4년도 사료산업종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료제조업 등록자는 사업계획(사업비 포함) 등 수요를 해당 주관기관(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에 제출('13.2월까지)
- 주관기관은 사업참여희망자가 제출한 2012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수요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13.3월중순)
-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12.4월)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b>74</b>	<b>축산분뇨처리시설</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 장 최정록 사무관 김정주 주무관 이덕진	044-201-2371 044-201-2375 044-201-2376

## I. 사업개요

### 1. 목 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처리
  -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07년 83%에서 '13년 9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 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주지표)	90.0	86.6	87.6	-	2013.2	○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0,410	127,890	114,660	139,564	139,564
국 고	53,142	50,524	42,244	46,029	46,029
용 자	25,950	27,600	27,075	37,745	37,745
지방비	42,812	41,646	38,841	44,170	44,170
자부담	8,505	8,120	6,500	11,620	11,62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 전문유통주체
  - \*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속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개별시설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정착촌구조개선
  -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이 경우 우선 지원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코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에 지원
    -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를 부착하도록 지도·관리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과 부속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 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속도판정기

- 액비부속도 측정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속판정 관련 기본방향>**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판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속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 ※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이용 및 관리지침 별도 통보

○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13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따라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1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젓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정화방류시설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축산농가 지원 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준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 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 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유통센터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속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속도판정기 : 액비부속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 정착촌구조개선	50	30	20	-	
· 액비저장조시설	20	50	-	30	
·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 액비살포비	50	50	-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 자원회조직원리평가	100	-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sup>2</sup>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m<sup>2</sup>)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젓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sup>2</sup>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07.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sup>2</sup>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sup>2</sup>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대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자원화시설					
- 액비화시설		3,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70%이상 처리)			
- 퇴비화시설		4,5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퇴비화 70%이상 처리)			
- 에너지화시설		7,000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 액비살포비		200천 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24			
· 액비부속도판정기		30			

-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70톤이상,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
- 액비화시설은 액비화 70%이상, 퇴비화시설은 퇴비화 7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퇴비·액비 비율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단, 약취방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액비화시설의 경우 농경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 내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사용
-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80백만원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에너지화사업에 대한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가 수행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보조사업자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 사업자 및 공법사 선정 기본방향 시·도에 통보
- 에너지화시설 : 시·도 신청 → 농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 중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 다만,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지침은 별도 시달

### 시·도(시·군)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 시·군·구 추천 → 시·도지사 선정
  - 선정방식 : 대학, 연구기관 등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 사업자 선정 : 2012.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 시·도 : 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구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 3. 세부계획수립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군)의 농정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의 협조를 받을 것
- 단, 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식품부의 축산환경컨설팅 사업에 의한 세부사업 4단계(세부계획-설계전-설계후-준공전) 컨설팅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

- 공동자원화시설 : 보조사업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 **4. 사업시행**

### **시·도(시·군), 감리기관**

####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3천만원(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 방식을 적용
  - 다만,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공법업체 선정시 농식품부에서 기 통보(방역관리과-556, '11.7.14)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법선정 요령」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보조사업자(사업주체)

###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자는 공법업체에게 토목·건축부문 등을 일괄 발주할 수 있음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보조사업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보조사업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보조사업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5. 자금배정단계

###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 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공동자원화시설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보조금의 20%수준은 2~6개월 수준(정상운영 확인기간 포함) 시험가동 후 1개월 이상 정상가동(시설 용량의 90% 이상 유입)을 확인하고, 시설 준공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가 대상자 선정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 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보조사업자가 '12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공동자원화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제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2013	2017	○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블록조·콘크리트조)	2013	2022		
○ 가축분뇨처리시설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013	2032		

《제 제》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농가, 감사결과 처분대상 농가,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 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3월

##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평가 실시

####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평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평가기간 : 2013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평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평가기간 : 2013년 1월 ~ 12월
- 평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평가방법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위원중에서 평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추가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10개소 선정, 인센티브 자금(개소당 2억원) 추가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 등급화 : A등급 : 25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5만원/ha
    - \*\* 평가결과 '09년부터 3년 연속 "C등급"을 받은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비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3.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3. 4월)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은 지자체별 보유한 저장조 보관능력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
  - 신규로 액비저장조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내 보유한 저장조내 축척된 슬러지 제거 등 이용을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장 남태현 사무관 하옥원 주무관 백승인	044-201-2311 044-201-2324 044-201-2325
한국마사회	승마활성화팀	팀장 강연수 차장 유성언	02-509-2672 02-509-299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말산업을 FTA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말산업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10	'11	'12		
▪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20개소	-	-	-	매년 1월	○ '13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2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40,467	15,450	12,350	미정	미정
보 조	23,451	4,000	4,000		-
용 자	100,289	4,525	2,745		-
지방비	23,451	4,000	4,000		-
자부담	93,276	2,925	1,605		-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공공승마시설 : 지자체, 대학
- 민간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승용마구입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 승용마구입 사업대상에 공공시설 운영자는 제외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시범) : 지자체, 농축협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도(축산진흥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공공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 민간승마시설

-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정함)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 승용마 구입

- 중장기 승용마 사육계획 및 승마시설 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자
- \* 공공승마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승용마 구입자는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을 구입해야 함

####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또는 농축협이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은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말에 한정함

####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동안 추진 성과를 제시하여야 함

○ 공통 요건

- 신규 설치 지원된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육성법 제15조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3. 지원 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공공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자, 편의시설 (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 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외승주로 개설 및 설치, 승마길 조성 등  
\* 부지 구입비, 외승주로 및 승마길 조성을 위한 땅 구입비는 제외
- 민간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승마길 조성은 지원 제외
- 승용마구입 : 승용마(등록된 말에 한정함) 구입비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제주마 혈통보존 : 제주마 혈통보존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등

4. 지원형태

(단위: %)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용 자	자부담	용자조건
○ 승마시설	공 공	40	40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리 4%(농업인 3%) * 용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부담
	민 간	20	20	30	3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50	50	-	-	
	농축협	50	-	-	50	
○ 제주마 혈통보존		50	50	-	-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함

## 5. 개소당 총사업비 및 지원 한도액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총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	용 자		
○ 승마시설	공 공	2,000	800	800	400	-	* 총사업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추진
	민 간	700	140	140	210	210	
○ 승용마(번식용 포함) 구입		100	-	-	70	30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500	1,500	-	-	
	농축협	3,000	1,500	-	-	1,500	
○ 제주마 혈통보존		500	250	250	-	-	

\* 승용마 구입은 개소당 5마리 이내, 마리당 2천만원(용자 1천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가 초과분은 자담으로 추진

\* 공공승마시설은 지자체가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비 및 용자 부문은 매칭할 수 있음

※ 예산 확정 과정에서 상기 지원 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비 미확보 시 사업자의 자부담 가능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

○ 농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1.5.)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다음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11.10.)

\* 시·도는 지역 여건 및 아래 시·도별 신청 총량 등을 감안, 시·도별 자체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신청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단, 사업신청자의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 하고, 12월말까지 농식품부로의 제출 일정은 변경 불가)

#### <시·도별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 총량>

구분	농어촌형 승마시설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승용마 구입
	공공형	민간형		
신청 총량(개소수)	1	2	1	2

\* 내역사업별 신청 총량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희망자 수요조사 실시(11월말)

○ (시·군·구)

- ①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
-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판단
- ③ [별지 제3호 서식]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시·도에 제출(12.15.)

○ (시·도)

-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시군구 평가 결과 및 추천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등을 검토
- ②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관계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 ③ [별지 제3호 서식]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  
\* 자체 평가시에는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평가표는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자체 평가 결과 및 추천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12월말)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시·도는 '1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예정

○ 공통 사항

- ▷ 추천서에는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농어촌형 승마시설로의 신고 가능 여부(신규 설치 지원 시), 신청자의 자부담 능력,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
- ▷ 말산업 육성 추진계획 제출 시,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기 수립한 말산업 관련 정책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와 추진 실적을 제출
-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지원 신청 지자체는 별도의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11월말)
  - \*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 사업신청 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수요조사 계획”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13.1월)
  - (서면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목적, 지역 내 필요성, 입지 여건, 최종 선정 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등을 평가
  - (현장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 등 검증
  - (최종심사) 사업신청자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대면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역량,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승마활성화 기여도 등을 최종 평가
  - 서면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점수 및 순위 산출
  - \* 세부 심사 지침은 별도 수립·시행 예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심사 최종점수(순위)와 예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13.2월)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신청자
  -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 지자체의 신청자
  -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의 신청자
  - 생태체험장, 관광농원, 농어촌체험마을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신청자
  - 지자체·교육청·관내 학교 등과 체험승마 계약이 체결된 신청자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 사업별 사업주관기관

구분	농어촌형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승용마 구입 등
주관기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자

- ① 최종심사 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 기관에 승인 신청
- ②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 사업대상자는 관련 시설 발주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자체시공을 제한하거나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토록 조치하면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주관기관

- ①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나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림수산 식품부에 각각 보고
  - \* 사업대상자가 연간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
  - \*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조치

### 4. 자금 배정 및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 시·도(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 자금 수요를 파악하고, 시·도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 식품부에 요청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 대상자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승마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승용마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 지방자치단체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승마시설,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 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 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승마시설 등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자금 운용현황, 시설물 활용 여부 등

## 《제재》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대출중지, 자격취소 등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마사회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 지표
  - 신규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 '13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12년말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개소수
- 성과지표 측정 : '14. 2월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관리·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고 기한	서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형 승마시설, 혈통보존 등 모든 사업의 이행내역</li> <li>-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li> </ul> </li> </ul>	시·도 시·군·구	매 분기 말까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이행내역 및 평가</li> <li>- 완료, 완공, 신고, 영업 여부</li> <li>- 사업추진 지연시 그 사유</li> </ul> </li> </ul>	시·도 시·군·구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 《환 류》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련 규정의 저촉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시·도는 '14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과

## IV.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본 시행지침은 향후 예산 확정 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4년 시행지침은 '14년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 시달시 안내
- '14년에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지원대상 및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 대학의 경우 그 간 지원된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후 '14년 지원 여부 결정

##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주소는 동·리, 번지까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단체·기관(명칭: _____ )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비농업인 <small>* 농업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이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small>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〇〇 )					
	관련경력	분야, 년		자격사항 (사본첨부)	구분 : <input type="checkbox"/> 국가자격 <input type="checkbox"/> 민간자격		
관련교육 이수사항	과정명: 기간: 시행처:		자격명 : 발급처 :				
신 청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승마시설 <input type="checkbox"/> 승용마 구입 <input type="checkbox"/> 제주마 혈통보존					
	세부사업	승마시설	구분 ① : <input type="checkbox"/> 신규 설치 <input type="checkbox"/> 개보수·정비 * 신고 승마시설에 한정함 구분 ② : <input type="checkbox"/> 공공승마시설(지자체, 대학) <input type="checkbox"/> 민간승마시설				
		승용마구입	<input type="checkbox"/> 일반 승용마 <input type="checkbox"/> 번식용 승용마				
		제주마혈통보존	총 ( )개년 사업중 ( )년차 사업				
	사업예정지	주 소					
사 업 비 (천원)	지 목	부지면적    m <sup>2</sup>			사업예정면적    m <sup>2</sup>		
사 업 비 (천원)	총사업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사 업 내 용 구 모 ( 량 )							
20 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교육이수 실적 또는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부담 능력 판단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 장 권영웅 팀 장 이일규	02-2080-6550 02-2080-6553

## I. 사업개요

## 1. 목 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3. 성과목표 및 지표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12년도에는 사육규모가 초과단계로 송아지생산안정제도 성과목표 미설정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입율(%) (주지표)		93.5	90.0		'13.12.	(계약암소수 연초 가임 암소수) × 100(%) * 가입암소수는 통 계청의 가축통계 자료 이용
▪ 가입두수(천두) (부지표)		1,007	1,066		'13.12.	'11년도 송아지생산안 정사업 계약기간 전년 도 12월 ~ 당해연도 5월 종료 후 가입두수 확인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83,567	14,227	13,702	24,598	24,598
국 고	115,103	6,840	6,315	4,286	4,286
지방비	34,079	3,656	3,656	10,156	10,156
용 자	-	-	-	-	-
자부담	34,435	3,731	3,731	10,156	10,156
○ 송아지생산안정	183,567	14,227	13,702	24,598	24,598
- 국 고	115,103	6,840	6,315	4,286	4,286
- 지방비	34,079	6,730	6,730	10,156	10,156
- 용 자	-	-	-	-	-
- 자부담	34,435	6,730	6,730	10,156	10,156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지역 : 전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 마리당 보전금 한도 및 가임암소수 단계별 보전금 지급 조건은 추후 공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2012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13.2.1~2013.5.31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 시·군(지자체)

- 사업 주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3.1.1(계약일)~2013.12.31(1년간)

##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압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함



#### 4. 자금배정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 보전금 소요액 산출

- 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금액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같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 1표부착 완료 카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 보전금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1.5.31일 이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점검 추진(연2회, 2012.8.31일 이후)
  - 계약신청기간(2012.5.31)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 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등의,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 《제재》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의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기간(2013.2.1~2013.5.31)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수 및 가입 두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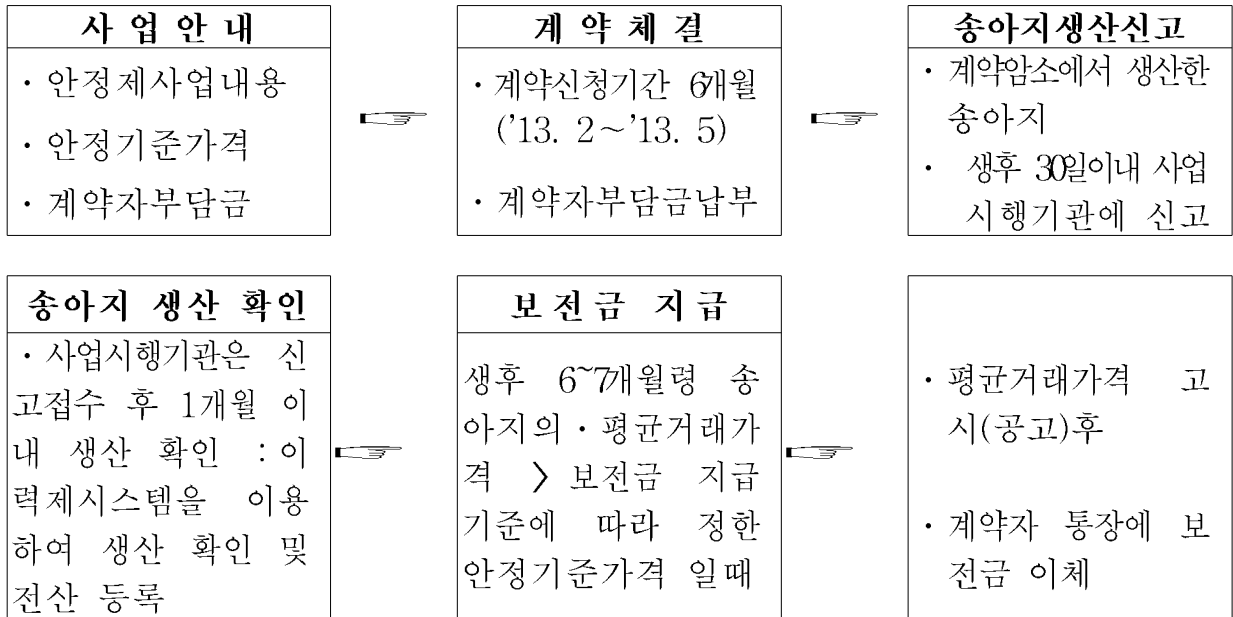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 참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문조사 추진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중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50~100여명 대상)
  - 조사방법 : 사업시행기관 등을 통해 팩스, 우편으로 설문취합·정리
  - 조사주관 :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 업무추진절차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내용 참고

축산분야

## II. 생산 및 유통개선



**77 |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8

**I. 사업개요**

**1. 목 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장차량 수송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가축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 수송 물량 /연간 도축량
▪ 계란수송 점유율	5%	-	-	-	2월 중	특장차량 수송 물량 /연간 계란 생산량

\*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 연간 도축량은 검역검사본부 자료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950	1,200	760	1,520	1,288
○ 가축수송특장차량	1,625	1,000	450	920	688
○ 계란수송특장차량	325	200	310	600	6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 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 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3. 지원대상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 동물 운송과 관련된 시설 및 운송밀도 기준 등은 “동물운송세부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적용
- 계란 수송 차량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운반 규정”을 적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8. 보존 및 유통기준”에 의거 식용란의 보관 유통 온도(0~15℃) 등의 권고사항을 준수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주요 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계란
- 조건 및 금리 : 축발기금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2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지원
-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업체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별첨1)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신용조사서(별첨2) ④ 기타 자격 증빙자료 등
-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예산을 배분한 후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배분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 특히,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에 우선 지원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가축·계란 수송을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 자금영수증 등 구입증빙자료를 비치
- 사업대상자는 차량구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야함.

##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함

## 4. 자금배정단계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를 경유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요구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자금집행 세부요령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을 구비할 것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가능기관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 또는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한 후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출기관(축발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표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94호, '12.2.23))에 의거, 자금 집행요건·절차 및 증빙서류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따름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기간중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1서식)에 사업완료 보고서(사진 등 첨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차량구입 완료)후 사업자는 가축수송 내역이 나타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별첨 3)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함(다만, 폐기 시에는 연간 수송 물량 등 총괄표는 용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관)

### 《제제》

- 처분제한기준 : 용자금 상환 완료시 까지
  - 불가피하게 조기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차량 확보를 전제로 하되, 대체가 불가할 경우 용자금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에 의함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전담율로 성과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도축물량 대비 특장차량 운송물량 비중
    - 특장차량 운송물량은 사업주관기관에서 취합·작성하여 제출(매년 1월까지)
    - 연간 도축·도계실적은 안전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자료활용(연초)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은 차량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계획은 2013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2013.3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044-201-2331
	축산경영과	서기관 박홍식(총괄, 양돈, 꿀벌)	044-201-2336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한육우)	044-201-2332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성구(가금, 흑염소)	044-201-2338
	축산경영과	사무관 우만수(낙농, 양육)	044-201-2340
	축산정책과	사무관 서재호(종축)	044-201-232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젓소, 흑염소, 꿀벌, 양육 축종의 축산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구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9	'10	'11		
한육우	▪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	60.0	46.5	51.9	54.1	매년 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	▪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6.0	15.2	15.1	14.5	매년 월중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 가축통계 활용
양계	▪ 일당증체량(육계)	43.5	41.3	43.5	43.2	매년 월중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 연간회전율	5.8	5.7	5.7	6.0	매년 월중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 두당 산유량(l/년)	8,560	8,350	8,350	8,379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통계청)
흑염소	▪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월중	흑염소전업농협회 조사
꿀벌	▪ 꿀벌 생산량(kg/년)	15	14	14.2	13.8	매년 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양육	▪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9.6	9.5	9.5	10.0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육협회)
	▪ 꽃시슴두당 녹용생산량(kg)	1.0	0.9	0.9	1.2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이후
합 계	198,068	610,625	616,125	2,437,000
보 조	59,011	103,500	104,750	412,750
용 자	98,244	172,500	175,250	687,250
이차보전(용자)		212,500	212,500	850,000
자부담	40,813	122,125	123,625	487,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지원개요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특히,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축사 부지에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용자)과 이차보전방식(용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용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용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 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m)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 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60천원/m <sup>2</sup>	300	112~1,050m <sup>2</sup>	400	1,050m <sup>2</sup> ~	
양 돈	660천원/m <sup>2</sup>	1,250	264~2,400m <sup>2</sup>	5,000	2,400m <sup>2</sup> ~	
양계	산란계	720천원/m <sup>2</sup>	1,150	460~4,140m <sup>2</sup>	5,000	4,140m <sup>2</sup> ~
	육 계	360천원/m <sup>2</sup>	850	460~4,140m <sup>2</sup>	3,000	4,140m <sup>2</sup> ~
	육용종계	450천원/m <sup>2</sup>	1,150	3,300~6,600m <sup>2</sup>	3,000	6,600m <sup>2</sup> ~
	부화장(육용종계용)	1,500천원/m <sup>2</sup>	1,35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600천개~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m <sup>2</sup>	800	408~3,690m <sup>2</sup>	3,000	3,690m <sup>2</sup> ~
	종오리	450천원/m <sup>2</sup>	1,100	1,665~3,300m <sup>2</sup>	5,000	3,300m <sup>2</sup> ~
	부화장	1,500천원/m <sup>2</sup>	1,350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200천개~
낙 농	260천원/m <sup>2</sup>	400	173~1,620m <sup>2</sup>	500	1,620m <sup>2</sup> ~	
흑염소, 꿀벌, 양록	180천원/m <sup>2</sup>	220	전업규모	전업규모 의 2배~		

-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의 지원 상한액은 400백만원까지
-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m<sup>2</sup>로 함
-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m<sup>2</sup>로 함
-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 지원 제외 >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8 및 제 82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

<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젖소 육종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



## 2.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내용 철저 안내(지자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지자체)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 축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농가 우선 선정

##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 '모든번식전문농장 사업은 추후 별도 통보
  -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단 모든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 모든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물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12.12.1까지) - <붙임 서식 1>
  -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 시·군·구, 한우사업단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12.12.20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12.12.30까지) - <붙임 서식 2>
  - \* 시·도지사는 사업수요 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농가에 충분히 알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 소지가 없는 농가 수요를 파악·신청
  -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가 농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가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조치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13.1.5일까지)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 '축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한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희망자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13.1.15)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지원(축종별 지원 농가를 변경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 승인한 사업 총액의 10/100를 초과할 수 없음)

## 2. 시행단계

###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 <지자체>
  - \* 축사설계시 농협(조합) 및 (사)축산컨설팅협회 등의 자문을 받도록 안내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 우선)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4.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 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 지도·감독 철저

○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 지원농가 관리기록부(엑셀표로 관리, 칸크기는 변경가능하나 칸수는 아래양식 준수)

성명	생년월일	농장주소	지원당시 측사 현황				지원후 측사현황				
			건축년도	전체면적	무허가 시설내역 및 면적	금번지원 면적	전체면적	자체증축 면적	무허가 시설여부 및 면적	장비 등 지원내역	정부지원 총 금액 (보조+융자 구분)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농장경영기록부 작성(양돈·양계는 전산경영기록 의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물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 필요한 경우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3. 8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물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 **2 축종별 세부 지원 내역**

- 축종별 세부지원내역은 별도 시달

##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 I. 사업개요

#### 1. 목 적

- 한우사업단에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회원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 \* 단, 육우의 경우 브랜드경영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포함

####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육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한육우 1등급 이 상 출현율(%)		50.0	56.2		매년 1월중	'13.1~12월까지 한육 우 1등급 출현율(축산 물품질평가원)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 계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국 고	3,000	2,000	2,000	2,000	2,000
지방비	3,000	2,000	2,000	2,000	2,000
융 자	6,000	4,000	4,000	4,000	4,000
자부담	3,000	2,000	2,000	2,000	2,000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지원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 국 고	3,000	2,000	2,000	2,000	2,000
- 지방비	3,000	2,000	2,000	2,000	2,000
- 융 자	6,000	4,000	4,000	4,000	4,000
- 자부담	3,000	2,000	2,000	2,000	2,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 등

- 한우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 등

###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단(경영체)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민간경상보조 및 국고융자 정책지원
- 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 '13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지원기준 : 보조 20%(400백만원), 융자 40%(800백만원)
-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지자체)

- 사업 주관 시·도는 사업광고 및 홍보 추진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 사업희망자는 '13.1.20일까지 시·도에 사업 신청

#### ※ 사업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 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보고서) 및 심의
  - 별지의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2.1.30일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도지사가 보관(농림수산식품부 미제출)
  - 검토 및 추천을 위한 실사시 시·군·구 또는 지역축협과 협조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3.2.20일까지)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작성 발표

### 시·도(지자체)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협조 가능)

### 브랜드 운영주체, 농가조직체, 영농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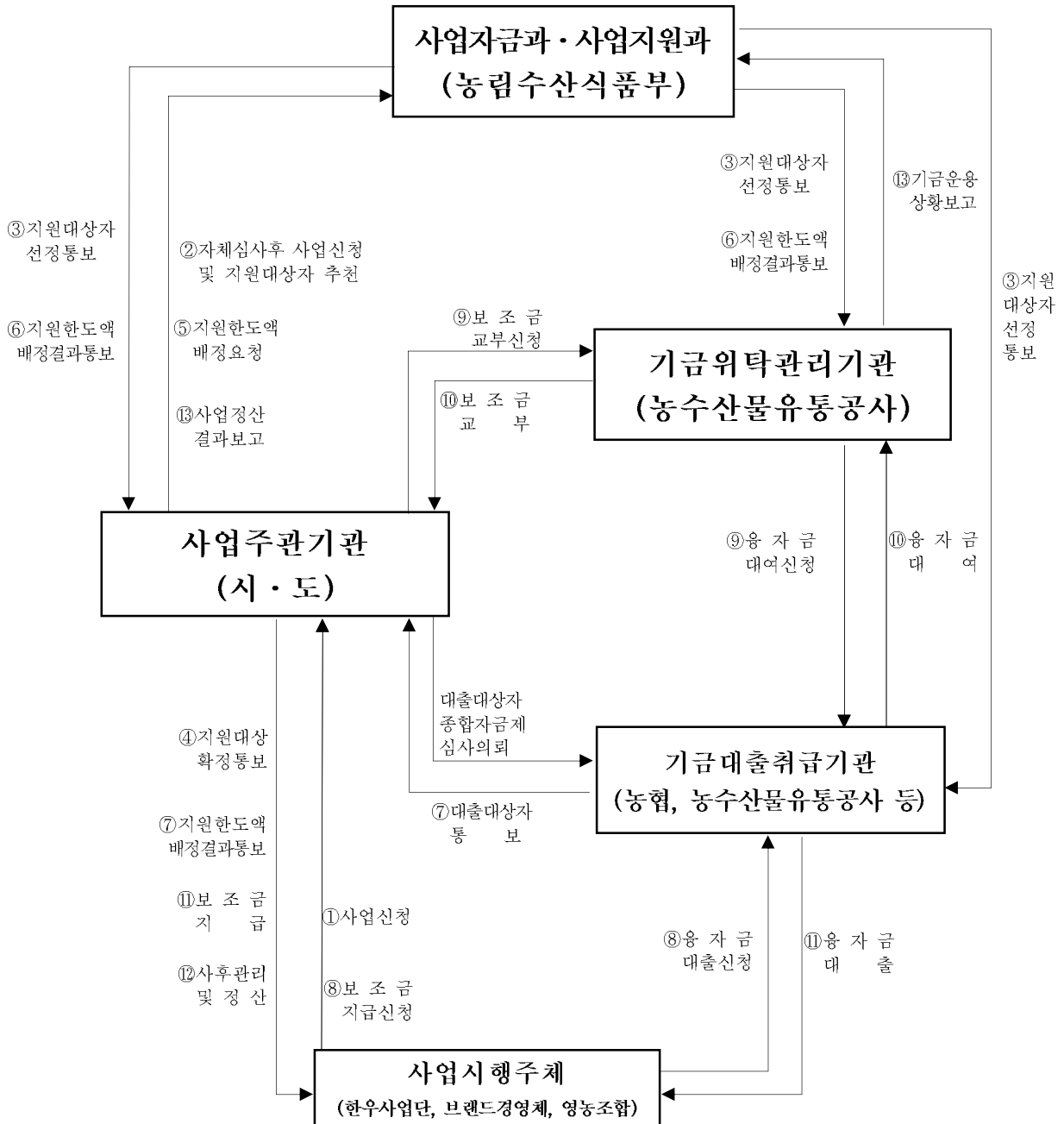
- 시공업체 선정·착공,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4.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
- 융자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시·군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의거, 자금집행요건, 절차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요청 신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배정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구역 사업추진 경영체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자금 배정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금지원 한도액 이내(1년차 50%)에서 자금배정

# 【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사업완료 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별지 제4호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별지 제4호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 《제제 및 처벌내용》

#### 사업관리주체(시·도)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하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8852호, '08.2.29),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291호, '07.12.28),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221호, '05.12.22) 및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운용규정(농림부 훈령 제1164호, '04.5.31)에 따름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12년도 1~12월까지의 한·육우고기 1등급 출현율을 파악하여 측정(축산물품질평가원 등록실적)

### 《만족도 조사》

- 해당 시·도에서 익년 1월말까지 사업자로 선정된 한우사업단(브랜드 등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설문지 조사)
  - 조사문항(4개) : 정책 만족도, 사업체제 만족도, 사업의 효과성, 사업추진시 개선필요사항(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평가주관기관 : 시·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13.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12년도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률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11년도 사업진행이 2년차로 진행됨에 따라 '12년부터 성과 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3.1.20)</li> </ul>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li> <li>· 농림수산식품부 추천 ('13.1.30)</li> </ul>	추천 → ← 지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실사(농림수산식품부 자체 실시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li> <li>·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3.2.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li> </ul>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li> </ul>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li> </ul>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개소당 지원액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 동시 지원(2년차 사업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참고

【별지 제1호 서식】

## 2013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계획서

###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분	'07	'08	'09	'10.1~11
고등 등록우 두수				

###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12					'13					계				
		보조	융자	자별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별	자담	계	보조	융자	자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 내용	'13년도(1년차)												'14(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 화 번호	(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신 출 청		자 담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2013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 참여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1.9.30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1.9.30일까지 실적만 인정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 ×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 두수			*'11.9.30일 이전 기준에 한함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 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추진 가능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li> <li>○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li> <li>○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li> <li>○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li> </ul>	30  20  1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11.15시점</li> <li>*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li> </ul>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li> <li>*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li> </ul>
브랜드 출하두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00두 이상</li> <li>○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li> <li>○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li> <li>○3,000두 미만</li> </ul>	20 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9.30일 기준 현재</li> <li>*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li> <li>*연간공급능력 고려</li> <li>*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li> </ul>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 2013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 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 드 출하두 수 (20)	계 (200)
1									
2									
3									
4									
5									
;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반드시 Excel로 작성하고,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m<sup>2</sup>)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B/A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계 획 (A)	보 조	용 자	지 방	자 담	계 획 (B)	보 조	용 자	지 방	자 담			
		○ 축사시설 : ○ 퇴비사 : ○ 관리사 : ○ 전기시설 :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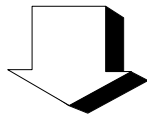
##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 구 분

### 작성 및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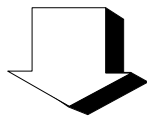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



농림수산식품부

##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044-201-2331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2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6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부 장 김홍원	02-2080-6510
		팀 장 최병하	02-2080-6534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 한우 60%, 돼지 80% 이상 달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하우 브랜드 연가 출하물량(평균두주)	2,592	2,251	2,517	2,481	2013.1	정부자금지원 하우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주
▪ 돼지 브랜드 연가 출하물량(평균두주)	90,861	103,652	75,611	87,685	2013.1	정부자금지원 돼지브랜드 경영체의 연간 출하물량 평균두주

\* '12년 실적은 목표치임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553,348	134,200	142,839	137,125	137,125
용 자	1,261,100	106,000	113,100	109,100	109,100
	(130,500)	(15,000)	(15,000)	(15,000)	(15,000)
자부담	292,248	28,200	29,739	28,025	28,025
○ 브랜드 운영지원	1,506,205	120,600	131,125	131,125	131,125
- 용 자	1,228,100	96,480	104,900	104,900	104,900
	(130,500)	(15,000)	(15,000)	(15,000)	(15,000)
- 자부담	278,105	24,120	26,225	26,225	26,225
○ 브랜드 판매시설	47,143	13,600	11,714	6,000	6,000
- 용 자	33,000	9,520	8,200	4,200	4,200
	14,143	4,080	3,514	1,800	1,800

※ ( )내 금액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으로써 ( )외 금액에 포함됨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 ②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자금용도별 지원항목>

- 생산지원자금(브랜드 회원농가에 지원)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 선급금, 가축경영비(번식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사료통일비. 경영체 소유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체가 자금 운용 가능, 지원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등록농가이어야 함(등록대상인 경우에 한함)
- 브랜드운영자금(브랜드 경영체가 운영)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비용(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브랜드육 매취, 원료육 매입, 외상매출금 운영 등 판매와 관련된 판매운영비
  - 사료구매선급금 운영으로 회원의 사료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사료구입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 (융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 등

### 3. 지원형태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①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②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30%

####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 지원한도

- 농·축협조합 : 자기자본의 500% 이내(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단,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사업 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자금에 한하여 직접지원(참여조합 연대보증)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 : 50억원 이내 또는 해당사업 연간 매출액의 20%이내
  -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브랜드 판매시설은 개소당 사업비 20억원 이내

##### 2)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생산지원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출하선급금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위탁사업비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20%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2회전)
  - 경영비 : 회원농가의 번식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회원농가 번식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2회전)
  - 사료통일비 : 전년도말 회원농가의 사료 미통일 두수 이내
    - 전년 9월말 사료미통일 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2회전)
- 브랜드운영자금(산출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브랜드비용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15만원, 돼지 1.5만원)
    -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산출액이 1억원 이내일 경우 1억원까지 지원)
  - 판매운영비(매취자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등) : 기준기간 출하실적두수 이내
    - 기간중 출하두수 × 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육우 200만원, 돼지 20만원) × 회전율(한육우 30%, 돼지 10%)
  - 사료자금 : 전년도 사료통일두수 이내
    - 기간중 사료통일두수 × 마리당 단가(한육우 80만원, 돼지 8만원) × 10%
  - 시설개·보수 자금 : 브랜드 비용 산출금액이내(1억원~3억원)
    - ※ 금년 신규신청 경영체는 금년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브랜드 판매시설 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 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체계

경영체		시·도		농림수산물부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 “붙임 1”)	지원신청 → ← 지원/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확인 (농·축협조합에 대해서는 농협 지역본부 협조)	추천 → ← 지도/조정	·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 품목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추진심의회 심의 선정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사후관리	·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사후관리	· 농협에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요청 · 사업추진심의회 심의·평가결과 확정

####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전년 10월초)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12월)
  - 전년 사업실적평가와 금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지역축협, 농협 시군지부, 일반 금융기관(축발기금 취급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 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브랜드 판매시설 지원 희망 경영체는 사업대상 부지매입 완료 후 사업신청,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판매장 위치, 공사기간, 운영주체, 운영방법, 용도별 자금소요액 등 명시)
    -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할 경우 지원 심사 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추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 작성 후 농식품부에 추천

#### 2. 사업자 선정단계

##### 가.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금년 2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우선지원 대상 및 현지실사 대상 결정
  -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식품부는 필요시 참여)

##### 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금년 3월)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평가기준표(서식 3)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
-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내용 검토 및 지원안 마련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
  -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육규모, 지역여건, 경영체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
  - ※ 우선지원 : 재지원 경영체(3년 만기도래), 전년 사업평가 우수경영체(A등급), 통합 광역화브랜드 경영체,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하는 경우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가 축산물 수급상황 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사항에 의거 변경
  - 용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내 세부항목간 변경시 자율 변경(‘자금용도’에서 정해진 용도내에서만 변경 가능)
  - 용도간 변경시 50%범위내에서는 자율변경 후 시·도에 보고하고,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도의 사전승인(지역본부 협의) 후 변경

※ 단, 브랜드 운영지원과 판매시설 간 사업비 변경 불가(농식품부 승인사항)

- 변경내역 보고
  - 경영체의 자율 변경사항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년2회 시도로 보고
  - 시·도는 경영체 보고사항 및 사전 승인사항을 취합하여 년2회 농협중앙회로 제출

#### 《기타행정사항》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세부사업계획 수립 지도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하고,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브랜드 운영지원
  - 농식품부는 대상자 선정후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상자별 대출취급기관 현황 자료를 받아 사업비 배정·집행
  -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은 브랜드 경진대회 및 사업추진실적 평가가 종료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비 배정·집행
- 브랜드 판매시설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협조)에서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은 6~7월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필요시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 경영체의 경우 공사진행상황을 필히 점검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자금운용에 따른 제재》

###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제재

- 자금의 허위, 목적외 사용 등 부당 사용할 경우에는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촉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사업평가지 위약금 징수

$$\text{※ 위약금} = \text{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times (\text{연체금리} - \text{정상금리}) \times \text{사용일수}/365$$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용도별(생산지원자금, 브랜드운영자금)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용도별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해당 용도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 지원금 전액 회수

$$\text{※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 이외의 브랜드경영체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 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촉발기금 반납

###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text{※ 위약금} = \text{【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 \times 125\%) - \text{출하실적금액】} \times (\text{사용일수}/365) \times (\text{연체금리} - \text{정상금리})$$

###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해 상환기일에 전액회수토록 하되 최종 상환일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자금운용내역은 사업평가지 확인하여, 확정된 후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 결과확정 1월이내에 촉발기금에 납부

#### - 위약금 면제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 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text{※ 지원 브랜드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 기간(30일 이내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3개월 이내 상환시 중앙회 1년만기 정기 예금 금리, 3개월 경과후 상환시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에 대하여 부담}$$

## 《사업비 관리기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  
약정물량(또는 금액),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약정물량(또는 금액)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경영비

-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번식가축에 대한 경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1.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3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단, 매년말 기준 번식두수  
변동시 지원금액 조정)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농가 지원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사업을 위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료비 등을 말하여 지원금리는 출하선급금 금리를 준용  
하고, 지원기간, 조건 등은 경영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함
- 경영체 운영자금 : 경영체가 브랜드 개발비, 마케팅 등 브랜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타 축종은 제외)
  - 브랜드주체는 가맹점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음식점 겸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 실시

○ 일시운용수익금에 대한 용도 및 집행기준

- 일시운용수익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
- 농협중앙회가 일시운용수익금에 용도 및 집행기준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도·감독
  - ※ 사용용도(例) : 홍보·판촉 등 마케팅비, 유통종사자 교육, 국내외 자료 수집, 선진사례 견학 등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매년 국내 축산물 브랜드(한육우, 돼지) 현황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조사기간 : 매년 10~11월
  - 주요조사내용 : 브랜드 수, 브랜드 사육두수, 출하두수 등
- 성과지표 측정(11월~익년도 1월) : 브랜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의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모수로 각 지표별 성과지표를 측정

### 《만족도 조사》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및 애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사업추진실적평가지 함께 실시)
  - 조사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주 최 : 농협중앙회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대상 : 사업지원 브랜드 경영체
- 평가기준기간 : 전년 10.1. ~ 금년 9.30.
- 평가시기 : 익년 사업신청에 따른 서류·현지실사와 병행 실시(금년 10~11월)
- 평가기준
  - 주요 평가항목
    - 품질균일성 수준 : 종축통일, 사양관리 통일, 사료 통일 등
    - 공급능력 : 사육두수 및 출하물량, 브랜드 소매판매물량
    - 위생안전성 : 이용 도축장 및 가공장 위생 수준
    - 사업실적 : 사업목표 달성율, 사업 성장률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식품부(또는 농협중앙회)는 평가계획 수립하여 통보(금년 9월초)
  - ※ 익년 사업신청안내와 함께 통보
- 평가대상 경영체는 “사업실적보고서(붙임1, 익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에 제출 (금년 10월)
- 시·도는 평가대상경영체의 실적을 검토·확인후 농식품부에 제출(금년 11월)
- 사업실적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마”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식품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 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금년 12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금년 12월)

####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지원금액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내역을 관련 정책사업 담당부서(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사업추진시 우선지원 혜택 부여
  - ※ 관련 정책사업 :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HACCP컨설팅(농가),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농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부진경영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차년도 사업지원 제한
  -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 회수금액
    -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4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차년도 지원제한 : E등급 받은 경영체
- 다만,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 지원제한대상에서 제외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대상 연찬회 실시
  - 참가대상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 주요내용 :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 정책방향 설명, 우수경영체 시상, 브랜드 발전방향 토론, 익년도 사업수요 파악 등
  - 시 기 : 매년 12월경
  - 주최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2. 홍보

-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벤치마킹 정보 제공
  - 브랜드 경영체 연찬회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사례발표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과 연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현황 홍보책자 발간
  - 홍보내용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현황 홍보
  - 홍보매체 발간 : 매년 2월경
  - 제작주최 : 축산물등급판정소
  - 자료배포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브랜드 경영체, 지자체 등

## 3.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자금용도 : 금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전년 10월)
    - ※ 금년 사업실적평가와 익년 사업신청을 함께 실시하므로 사업신청시 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전년 11월)
  - 농식품부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서류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식품부에 추천(금년 2월)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 확정(금년 3월)

## ② 축산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사무관 김성구(가금) 서기관 박홍식(양돈)	044-201-2331 044-201-2338 044-201-2336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축산계열화 참여율 제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축산계열화 비율					'12.2	축산계열화사업자 도축 두수/총 도축두수×100
- 양돈	22	20	20			
- 양계	95	85	94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20,000	18,000	16,500	16,500
용 자	20,000	18,000	16,500	16,500
○양 돈	10,000	8,000	7,300	7,300
○가금(양계·오리)	10,000	10,000	9,200	9,2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식품부 고시)”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계약사육농가
- 제한사항
  -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닭은 500천수, 오리는 200천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 계약사육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 사업을 통해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단, 시설비는 지원가능)
- 우선지원 요건
  -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가 계열화사업 주체인 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 포함)
  - 육계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가 활성화된 업체
  - 생산성 지표(MSY, 생산지수 등)가 우수한 계열화사업자
  - 육계 계약사육농가 시설자금 대상자 선정시 자조금 납부 참여농가에 인센티브 부여
  - 대형닭 생산 계약체결 및 출하실적이 있는 계열화사업자
  -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 3. 지원대상

- 돼지, 닭(육계, 산란계),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장비,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1**에 명시된 지원대상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기금융자율·자부담율, 융자기간, 금리 등은 **별표1**(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
- 사업추진 기간내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함
  - 돼지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 기반시설(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오리 :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닭(산란계) : 연간 계란 생산·처리능력 150백만개(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가 5호 이상(사육마리수는 축종별로 비례)

### 7. 준수 사항

-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는 계열화사업자(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수입이 필요한 경우 모든 계약사육농가의 동의서를 받을 것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육시설은 계속 지원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원금의 용도,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업체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계약사육농가가 사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추어 줄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계열화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약사육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 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화사업 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민원발생 및 법적 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 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약사육농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에게 통보

## 지 자 체

-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정·통보한 사업 대상자에게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 <①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계열화사업 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주체의 사육·출하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액 결정

### <② 계약사육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 계약사육농가 선정은 해당 시·도지사가 해당농가의 생산성 및 경영노력, 추진가능성, 정책방향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자금은 대출은 농가가 직접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실행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받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해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 (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도 계획에 포함
- 계열화사업 주체로 지정된 자는 계약사육농가 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화사업 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육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다만, 시설비와 계열화사육비 간의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 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 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화사업 주체는 계약사육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약사육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 양돈계열화사업자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화사업 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사이에 축산계열화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의 계약 등 주요사항을 계열화사업 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지도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자금을 배정·통지하고, 정책자금 대출취급금융기관에도 통보

### 시·도(지자체)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 후 자금집행 통보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 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기성고에 따라 소요 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요청
- 지자체에서 자금배정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정책자금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실행을 위한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 대출 실행
- 계열화사업 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유)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2), 분기별 1회 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2)  
\* 별표 2 서식은 2010년도 사업지침 참고
- 사업주관기관은 '91년 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별표3)  
\* 별표 3 서식은 2010년도 사업지침 참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취급기관 통보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포기토록 유도 하고 민원해결 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 보고사항 및 시기 >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고일	서식
○ 2013 사업추진 계획	'13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대상자 선정 후 1개월이내	별표2
○ 2013 사업추진 실적	'13사업대상자→시·군·구→시·도 (상·하반기 연2회 농식품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5일까지	“
○ 계열화사업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식품부	1월 말까지	별표3

###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계열화사업 주체를 중심으로 축산계열화 지원자금의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업추진정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계열화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월, 9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의 적정성,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 《제제》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 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생산·처리 물량의 비중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와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전체 생산물량 대비 계열화사업자를 통해 생산·처리되는 물량비중
    - 계열화사업자의 생산·처리물량은 지자체에서 작성·제출(매년 3월까지)
    - 전체 생산량은 안전위생과에서 제공하는 연간 도축실적 기준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 추진 시 점검·평가 등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 후 지침 개정 시 반영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신청(사업대상자)→관할 시·군·구('13.1.10일까지)  
→시·도('13.1.20일까지)→농식품부에 예산신청('13.1월말까지)

<별표1>

축산계열화사업 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 계열화사업 주체 사육시설	○ 계열화사업 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2. 계약사육농가 생산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 연 3%(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과 동일
3. 가공시설(육가공 공장, 난가공장, 계란집하장 등)	○ 「도축·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과 동일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유통시설	○ 유통에 필요한 판매장· 시설·장비 등	"	
5.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화사업 주체 등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년이내 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b>80</b>	<b>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과	과 장 남태현 사무관 서재호	044-201-2311 044-201-232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로 일반가축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문종축장(원종돈장 10개소, 원종오리장 2개소, 원종계장 3개소) 육성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돼지 산자 수	11.2	11.0	11.6	11.1	년말	농장검정 참여 종돈장 검정성적 기준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1,211	11,542	25,000	15,000	3,600
국고보조	300	300	300	300	300
지방비	300	300	300	300	300
용 자	35,775	10,942	24,400	14,400	3,000
자부담	14,976	-	-	-	-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종축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업인
  - \* 축산업 허가제 시행 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농업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전문종축장
  - 중소규모 종축장이 별도로 연합하여 원종축장(GGP, GPS)과 종축장(GP, PS)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중소규모 종축장(GP, PS)과 장기계약 등으로 연계하여 전문종축장 체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원종축장(GGP, GPS)이 위험 분산 및 규모화를 위해 추가로 원종축장(GGP, GPS)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 기타 방법으로 전문종축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종축장
    - \* 사업지원 신청 시 신규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예정지역에 대한 부지확보 증명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 3. 지원대상

- 전문종축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 축사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비 포함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
  -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보조(제주도 축산진흥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종축장 : 용자 100%(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담), 연리 3%
- 지원기준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 전문종축장은 시설완료 후 사업계획대로 추진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금 상환 시점을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사업기간(시설자금) : 2~3년차 지원(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
  - \* 단, 사업이 1년차에 완료시 대상자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전액 지원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시설자금 : 전문종돈·종계장 5,000백만원/개소, 전문종오리장 2,800백만원/개소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 단,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 종계장은 5만수 이상, 종오리장은 1만수 이상
    - \* 개별 종축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1,000백만원/개소
- 지원한도액(시설자금)은 용자금 지원 기준임
  - 총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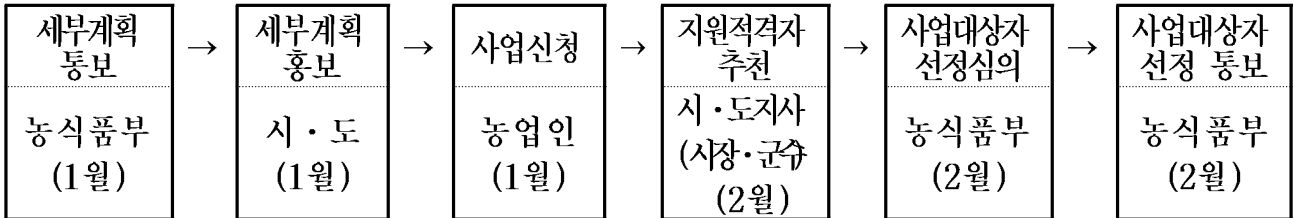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축산발전기금사무국)

### 1.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제주도(축산진흥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전문종축장 사업 참여희망자는 사업계획(붙임 1)을 수립하여 전문종축장이 설치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별도 구성)를 거쳐 대상자 및 지원액 확정 통보

- 시·도에서는 시·군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요구 및 배정통지(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사업자)
- 사업비 검정·정산 및 확인(시·군·구 및 시·도)



## 2. 시행 단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건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계획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상자 변경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3.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 시·도(시·군·구)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자금집행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장 현지 확인 후 자금배정 조치
- 시·도(시·군·구)는 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자할 때에는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실제 대출심사과정에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출 실행



#### 4.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융자금 상환 시까지)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자금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4. 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4년도부터는 사업을 폐지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 지원
  -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은 하지 않고, 기존 사업대상자의 2년차 사업비만 지원

<붙임 1>

##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등록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			모돈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인력	축산업등록번호
			종축	기타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용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돈)			분양실적(모돈)		
	'08	'09	'10	'08	'09	'10	'08	'09	'10

○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 3. 사업계획

####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용자	자담	계
축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이상수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부장 권영웅 팀장 이일규	02-2080-6550 02-2080-6553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의 FTA체결 확대에 대응하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공급시장 육성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축시장에서 송아지 거래를 경매 실시하여 우량송아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하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과
- 우량송아지 출하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 받은 가축시장의 송아지 거래두수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추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부지표)		47.9	44.5	50.2	매년 1월중	당해연도 한우 등급 출현율(축산물등급판정소 자료 기준)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900	1,000	1,000	1,000
용 자	900	1,000	1,000	1,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조합”이라 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 및 송아지를 경매 실시하기 위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협조합

### 3.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자금, 건축비, 기반시설 조성비
- 지원시설 등 : 전자 경매시설·장비, 계류시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계근 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 사무실 건축비, 주차장 또는 기반시설 조성비

###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융자 100%(연리 3%,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사업기간 : 1년
- 지원 한도액 : 450백만원/개소
  - 지원 한도액 이외 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 우선 지원 축협조합
  - 기존 가축시장을 통폐합하여 신규로 가축시장을 개설을 희망하는 축협조합
  -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많고 가축개량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축협조합
  - '13년으로 송아지 경매시장이 필요한 지역(농협중앙회에서 결정)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사업총괄기관)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시달(지자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제출서류 포함)을 마련
- 농협중앙회는 사업시행 지침서와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축협조합에 시달, 교육 및 홍보 실시

### 축협조합(사업 대상자)

- 사업희망 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3.3.15일까지 농협중앙회(축산경영부)에 제출
- 축협조합은 사업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하고, 지자체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협중앙회(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서를 취합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 당해 연도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축협조합은 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
- 농협중앙회는 사업 대상자 평가를 지원 우선 축협조합과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조합을 선정
- 농협중앙회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해당 지자체 및 축협조합에 보고(통보)

## 3. 시행 단계

### 사업대상 축협조합 및 지자체

- 축협조합은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협조합은 사업 추진실적(완료) 및 자금 신청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보고
  - 사업추진 실적은 반기별로 보고, 자금신청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신청
- 축협조합은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자금집행 영수증, 등) 비치·보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지자체는 가축시장 개설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사업주관기관(농협중앙회)에서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금을 배정하면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 집행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 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지자체 및 사업주관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는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사업자 추진 및 지원 자금 사용의 적정성 등

#### 《제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추진결과를 기간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2차에 걸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 중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가축시장을 경매방식으로 거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의 사용할 때는 자금 회수 조치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 거래실적(농협중앙회) 등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2월말까지 산출

### 《만족도 조사》

- 만족도는 사업추진 및 사업의 정책성 등에 대하여 조사(세부 조사방법 및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마련·운영)
- 농협중앙회에서 사업대상 축협조합에 대하여 사업추진 점검 시 또는 사업추진 완료 이후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농협중앙회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대상 축협조합
- 평가절차 : 농협중앙회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평가 실시
  - \*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
- 평가시기 : '13. 12월말까지(농협중앙회는 '13.11월말까지 자체 평가실시)
- 평가내용 : 농협중앙회의 자체 평가기준, 사업진척,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발굴 등

###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침서 보완 또는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수요 조사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사업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준용하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실적 보고 (상/하반기, 완료)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 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A)	융자	자담	계(B)	융자	자담		
		○기반시설  ○경매시설 : ○경매시스템 : ○소독시설 : ○부대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이상수	044-201-2331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2
		서기관 박홍식	044-201-2336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8
		사무관 우만수	044-201-234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2.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 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주요축종(한우, 낙농, 한돈) 자조금 만족도(%)	농가만족도 (68.3%)	-	-	65	매년 1월초	축종별 무작위로 자조금 납부농가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농가만족도(%) : 거출금을 납부하는 농가(한우, 낙농, 한돈)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 '12년 실적은 목표치임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b>226,002</b>	49,620	42,792	42,792	42,792
국 고	<b>106,076</b>	24,810	21,396	21,396	21,396
자부담	<b>119,926</b>	24,810	21,396	21,396	21,396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2. 자조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지원형태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4.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축산단체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단체는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 자조금사업 추진계획 제출시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공동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제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 2. 사업 승인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물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축산단체

-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자조금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 의무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임의자조금은 “자조금위원회”를 구성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사업 전체를 총괄 조정·취합·보고·관리
-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조금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임의자조금위원회)”가 운용함
  - 자조금 사업은 농가 전체 및 산업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자조금 예산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는 자조금이 주최함을 명시
    - 사업시행단체(농협, 협회)는 주관기관으로 표시
  -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
  - 하나의 축산물에 2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 운영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축산업자의 거출금 및 축발기금 보조금 등을 입금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
  -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위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또한,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위원회의 보고·승인)을 얻어 공시

####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조금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교부결정통보에 따라 서류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 관리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동인의 금융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 자료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 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 확인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및 제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거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축산단체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계획대비 실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주요현안 및 사업진행상황, 자조금 입금현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게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농가, 관련단체 등과 적극 홍보 및 협조



- 자치단체장은 축산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육두수 조사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축산단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자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 및 제출(붙임1)

## 6. 성과측정단계

- 주요 축종(한우, 낙농, 한돈) 자조금 만족도 조사에 대해 매년 연말에 측정
  - 자조금 성과분석 연구용역에 만족도조사 병행 추진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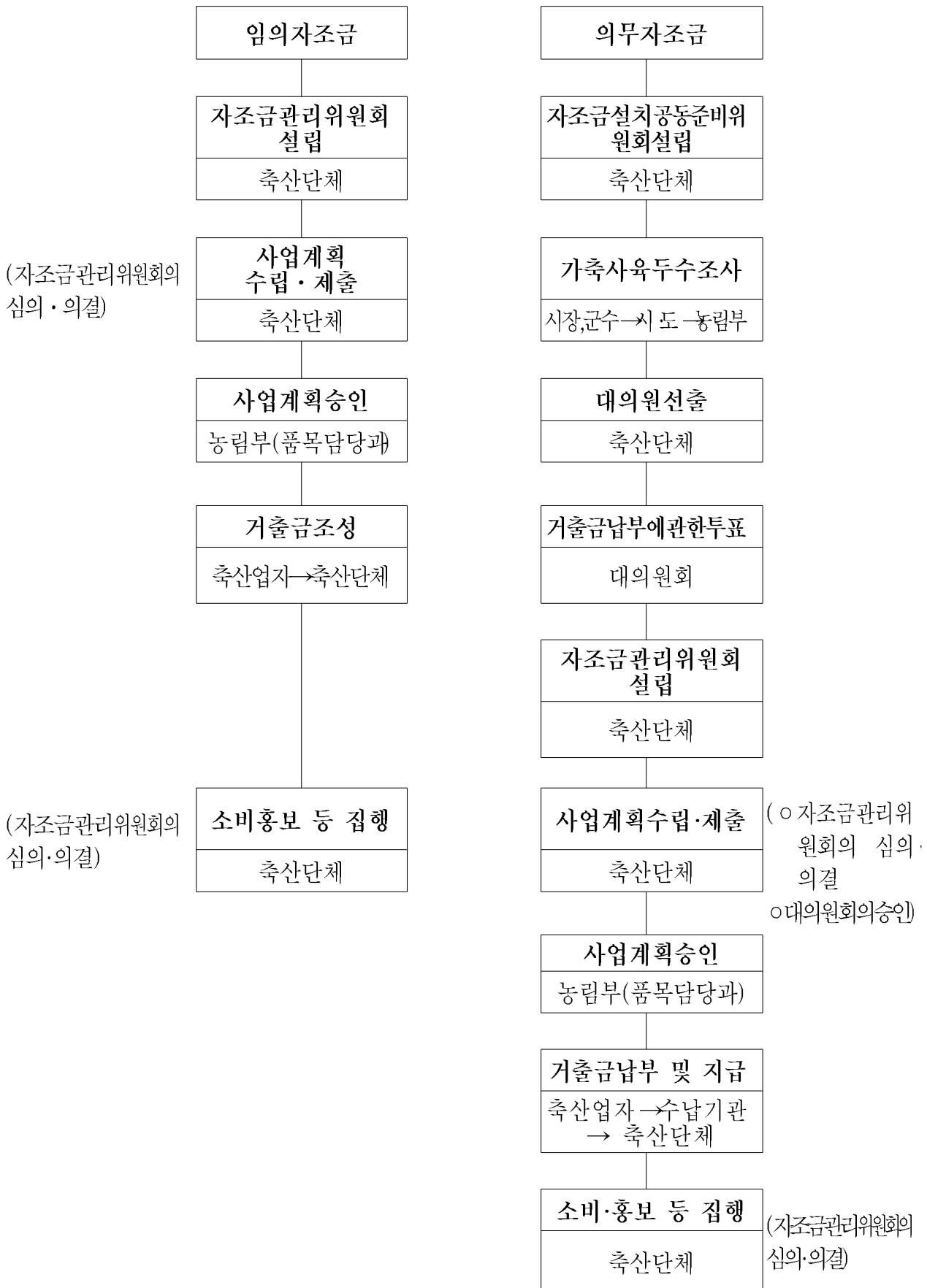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축산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되, 시행전 일부 지침 개정 가능

**【참고 : 사업추진절차】**



[붙임1]

## 축산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자조금 조성 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2012. . . ~ 2012. 12. 31.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2012년 자조금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2012 . . . .

(자조금관리위원장,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과장 최정록 사무관 이종광 주무관 전관용	044-201-2371 044-201-2372 044-201-2373

## I. 사업개요

### 1. 목 적

- 국제기준의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개보수 및 수출업체 등 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 \* GMP : 제조시설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으로부터 제조·포장·출하 등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유효성, 안전성 및 안정성 품질보장)
  - 축산농가에 우수 동물약품을 공급, 축산농가 사육·생산비 절감 및 수출 확대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0년까지 수출 100개국에 수출 5억불 달성
-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 20개소 설립을 통해 수출 확대기반 구축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증가율 (단위: %)</li> </ul>	139 백만\$ (P)	74 백만\$	105 백만\$	121 백만\$ (P)	다음해 연초 ('14년 1/4 분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따른 수출 증가율(%) : <math display="block">\frac{('13년\ 수출실적 - '12년\ 수출실적)}{('12년\ 수출실적)}</math></li> </ul>

\* 우수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완료되는 '14년 이후부터 수출 대폭 확대 예상

\* 자료 출처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총계	-	-	-	25,075	25,075
- 보조(농특회계)				300	300
- 용자(농특회계)	-	-	-	14,800	14,800
- 자부담	-	-	-	9,975	9,975
• 제조시설 신축	-	-	-	20,834	20,834
- 보조(농특회계)				-	-
- 용자(농특회계)	-	-	-	12,500 (60%)	12,500
- 자부담	-	-	-	8,334	8,334
• 제조시설 개보수	-	-	-	2,084	2,084
- 보조(농특회계)				-	-
- 용자(농특회계)	-	-	-	1,250 (60%)	1,250
- 자부담	-	-	-	834	834
• 수출업체 운영	-	-	-	1,750	1,750
- 보조(농특회계)				-	-
- 용자(농특회계)	-	-	-	1,050 (60%)	1,050
- 자부담	-	-	-	700	700
• 해외수출시장 개척	-	-	-	407	407
- 보조(농특회계)	-	-	-	300 (70~100%)	300
- 자부담	-	-	-	107	107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또는 관련단체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을 하려고 조건부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동물용의약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등)에 따라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 3. 지원대상

- 제조시설 신축자금
  -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GMP)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기존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개보수하려는 자
- 수출업체 운영자금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중 수출하고 있는 자
- 해외수출시장 개척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동물용의약품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가 이미지·신뢰도 및 수출업체 위상 제고하고자 하는 단체
  - 시장개척단 파견
    - 수출거래선 다변화로 지속적인 수출신장 도모, 거대시장의 진출을 통한 수출규모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
  - 수출촉진 현지지원
    - 한국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여 수출촉진 유도 및 국제 구호단체 등을 통한 약품공급을 통한 해외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
  -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한 국내산 동물약품과 축산식품의 위상 제고와 다각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동물용의약품 우수제조시설(GMP) 설치에 필요한 제조시설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7호)에 의한 시설 및 기구(별첨 1)
- 기존 제조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이 가능(별첨 1)

-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업체의 운영자금
  - 원료 구입 등 해외수출에 필요한 경영수지 개선
- 해외수출시장 개척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수출 유망지역 전시회(축산박람회 등)에 단체전시관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참가경비 등
  -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 파악 등을 위한 운용경비 및 컨설턴트 발골비 등
  - 수출촉진 현지지원
    - KOICA·대한수의사회·수의과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축산 현장 등에 방역기술 보급, 진료소 개설을 통한 교육 및 약품 사용방법 홍보 등
  -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 수출 대상국 인·허가 공무원을 초청하여 워크숍 개최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
- 사업기간 : 2013년~계속
- 지원기준 및 비율(%)

내역사업명	보조	용자	자부담	지원조건
· 우수제조시설 신축	-	60	4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 우수제조시설 개보수	-	60	40	
· 수출업체 운영 지원	-	60	40	1년 거치 일시상환, 연 3%
· 해외수출시장 개척	70 및 100	-	0 및 30	

- 사업내역

- 우수 제조시설(GMP) 신축 : 4개소, 12,500백만원(용자)
  - 백신 제조시설(3라인 기준) : 2개소 7,778백만원
    - \* 개소당(3,888.9백만원) : 12,963백만원 × 50%(1년차) × 60%(용자)
  - 주사제 제조시설(3라인 기준) : 2개소 4,722백만원
    - \* 개소당(2,361백만원) : 7,870백만원 × 50%(1년차) × 60%(용자)
- 우수 제조시설 개보수 : 3개소 1,250백만원
  - \* 개소당(417백만원) : 695백만원 × 60%(용자)
- 수출업체 운영 지원 : 3개소 1,050백만원
  - \* 개소당(349백만원) : 583백만원 × 60%(용자)
- 해외 수출시장 개척 : 300백만원
  - \* 해외전시회 참가 : 10백만원 × 22개소 × 70% = 154백만원
  - \* 시장개척단 파견 : 10백만원 × 7개소 × 70% = 49백만원
  - \* 수출촉진 현지지원 : 67백만원 × 1개국 × 70% = 47백만원
  - \* 국가간 네트워크 구축 : 50백만원 × 1회 × 100% = 50백만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에 설계비 및 공사 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 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건축비 및 시설 장비는 지원한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제조시설(시험시설 포함)은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 및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에 정한 제조시설을 최소한 갖추어야 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대상자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구청에 신청

#### 2. 세부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시·도(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18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확정

#### 3.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시·군)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신규·개보수·운영자금) : 시·군·구 추천 → 시·도지사 선정 추천

- 선정방식 : 전문가 구성·평가 또는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등) 등 종합적 검토

\* 제조시설(신규, 개보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안) : (별첨 2)

- 시·도는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2월말 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지침을 시·도에 시달('12.12월)
- 시·도 추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3월)
  - 선정방식 : 관련기관 및 협회 등 동물용의약품 관련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등) 등 종합적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시·군·구)에 통보(3월)

## 4. 사업시행

### 시·도(시·군), 감리기관

#### 가.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2회 유찰시 기존지원방식을 준용
  -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자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 나. 동물용의약품 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 착공 · 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용자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 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 가. 제조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축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을 완료한 경우, 관련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제조업허가사항 변경 신청

###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에게 토목·건축부문 등을 일괄 발주할 수 있음
  - 시공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 발생시 시공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시설·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준용)

### 다. 제조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건설한 시공 추진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 착공 · 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5. 자금배정단계

### 시·도(시·군)

####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제조시설의 경우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융자금의 20%수준은 제조시설의 준공 후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설의 준공 이후 시설장비 등이 부실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에는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 조치

##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신규 또는 개보수하는 제조시설
  - 사업대상자가 '13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제조 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융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계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4
	부터	까지		
○ 제조시설의 기계장비	2013	2023	○ 사업자는 해당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아니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제조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 10년,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20년)	2013	2023 (2033)		

## 《제 제》

### 시·도(시·군)

-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 사유와 변경코자 하는 계획을 제출 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7. 성과측정단계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수출실적 비율(%)을 분석을 통해 사업 평가
  - \* (참조) I. 3. 성과목표 및 지표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4년도의 사업 계획서에 시·군의 사업물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3. 4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4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3. 4월)

84	<b>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남태현 사무관 권우순	044-201-2311 044-201-2317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팀 장 박종균 차 장 박근하	02-2080-8526 02-2080-8528
시·도,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		

## I. 사업개요

### 1. 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축산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악성가축질병 및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고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등의 교육의무)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교육이수 실적(%)	80%	-	-	35,000	'14년 1월말	(교육 이수농가/ 대상농가114천명) ×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	-	2,209	7,017	19,823
국 고 자 담	-	-	2,209	4,400	14,263
○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 국 고	-	-	2,209	4,400	14,263
- 자부담				2,617	5,56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수행을 희망하는 기관
  - 교육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교육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운영기관(대학, 연수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품목단체 등)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교육주관기관(농협중앙회)
  - 전국단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대한 총괄관리
  - 교육관리 전산 시스템구축·운영 및 교육이력관리
- 나. 교육운영기관( 대학, 연수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품목단체등)
  - 축산농가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
  - 교육강사인력, 강의장 등 교육장 시설 확보가능기관
  - 교육전담인력 보유기관 등

### 3. 지원내용

- 교육주관기관 : 교육사업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인건비, 교육전산관리비 등
- 교육운영기관 : 교육비, 교육운영관리비(직·간접교육비의 10% 이내)
  - \* 축산관련 종사자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비 : 강사수당, 원고료, 여비, 교재비, 현수막제작비, 사무다과비등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비 정산)
- 교육운영비 : 교육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교육운영기관 수수료)
- 전산시스템 관리비 : 시스템 서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 5. 지원형태(보조)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
- 사업량 : 114,000명('13년 교육대상자)
- 사업비 : 7,017백만원( 국고보조 4,400백만원, 자부담 2,61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담
		계	보 조	용 자		
	7,018	7,018	4,400	-	-	2,618
교육비	6,710	6,710	4,092	-	-	2,618
교육운영홍보비등	308	308	308	-	-	

○ 지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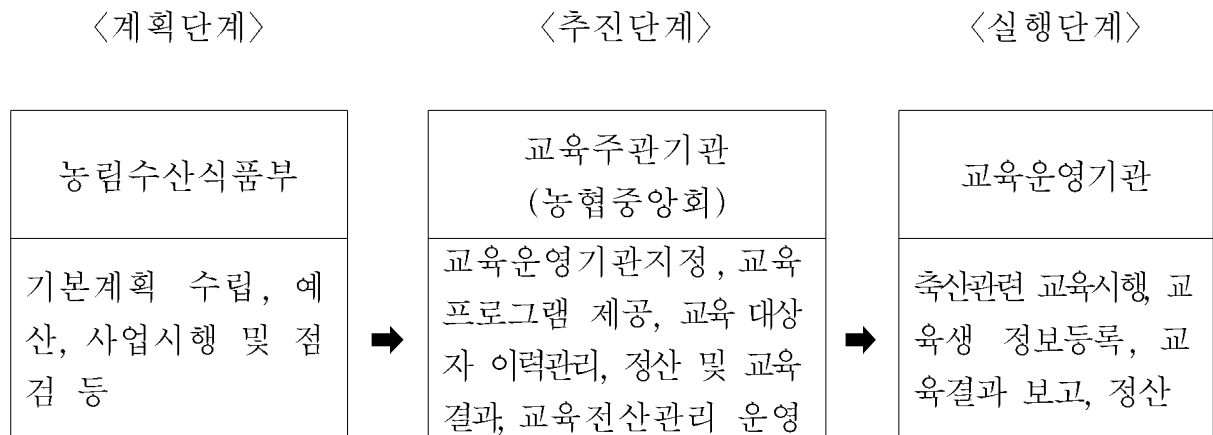
- 전업농가(국고 50%, 자부담 50%), 전업농 이하(국고 60%, 자부담 40%), 축산차량종사자(국고 70%, 자부담 30%)

○ 제출서류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 교육운영기관은 교육관련 증빙자료(교육이수자명단,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교육주관기관에 제출하면 정산 후 교육운영기관에 교육비 지급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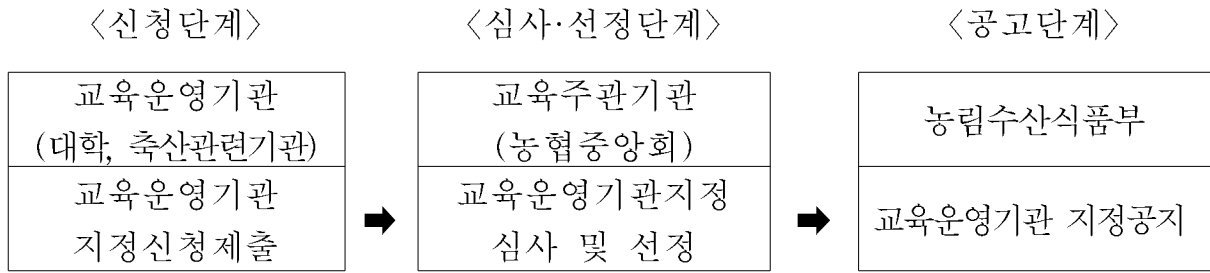
#### 1. 사업추진체계



#### 2.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주관기관에 시달
- 교육주관기관은 축산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선정기준을 공지하고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축산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공지) 및 심사
- 교육운영기관 :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 \*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정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에 제출





### 3. 사업자 선정단계

#### 교육운영기관 선정

○ 교육주관기관은 지정신청서의 교육시설 자체보유 여부, 교육계획 인원, 교육 전담인력 등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지정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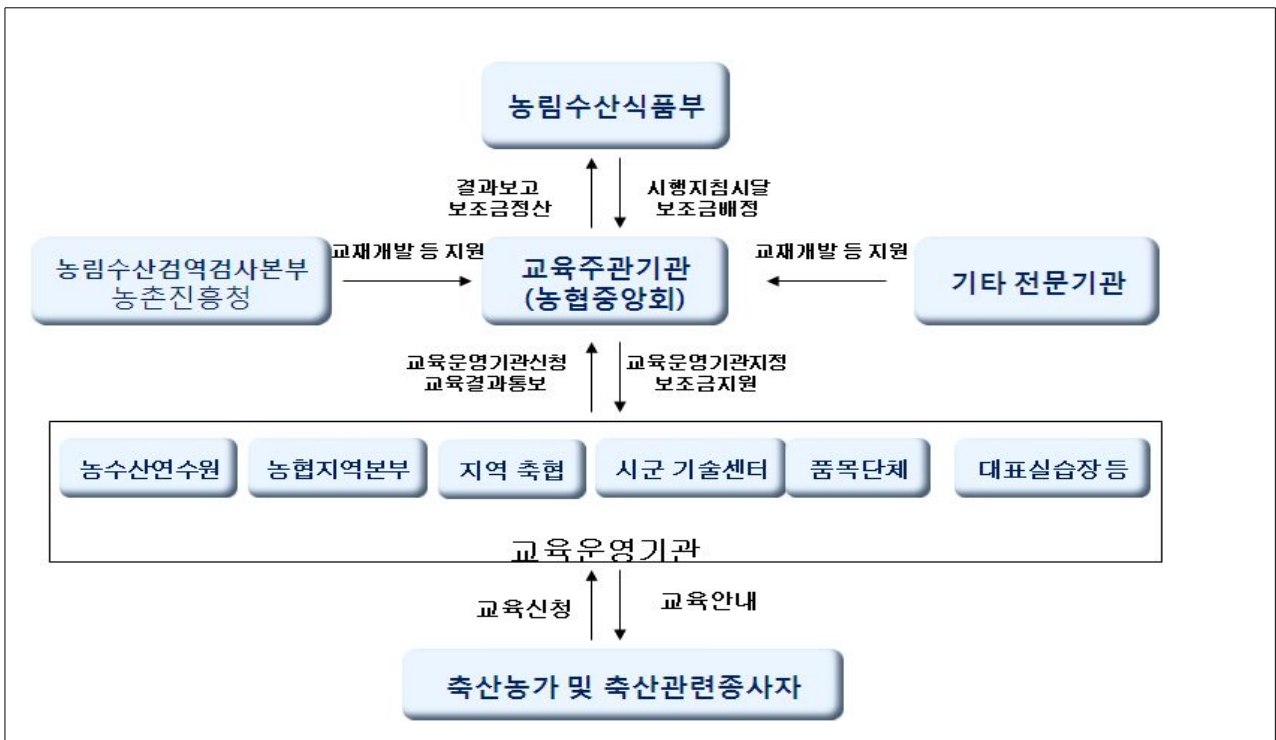
\* 교육운영기관 선정 시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및 지정결과 제출

###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추진 절차>

○ 사업지침 통보(농식품부 →지자체·교육기관) ⇒ 교육운영기관 지정신청서 제출(지자체, 대학, 연수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 ⇒ 농협중앙회) ⇒ 교육운영기관 지정심사(농협중앙회) ⇒ 교육운영기관 선정통보(농협중앙회→사업신청 기관) ⇒ 교육운영세부계획 통보(농협중앙회 → 교육운영기관) ⇒ 교육사업 시행(교육운영기관) ⇒ 결산·정산보고(교육운영기관→농협중앙회→농식품부) ⇒ 사후관리(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사업추진 체계>



### 농림수산식품부

- 교육주관기관에 축산관련종사자 시행지침 통보

교육대상	114,000명(전업농가, 준전업농가, 사육면적 50㎡ 이상인 농가) - 전업농 10,000명 - 사육면적 50㎡ 이상농가(준전업농 포함) 78,000명 - 축산차량종사자(가축거래상인 포함) 26,000명
교육과정	<공통교육>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 자율선택 <축종별교육> 개량, HACCP, 사양관리,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교육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 3년 미만 12시간, 신규 24시간 축산차량종사자(가축거래상인 포함) 6시간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교육운영기관에 통보

### 교육주관기관(농협중앙회)

-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 교육운영지침 통보
- 교육과정 개발, 교육홍보
- 교육대상자 교육이력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

### 교육운영기관(대학, 연수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축협 등)

- 교육실시계획 수립 및 교육대상자 모집
- 교육대상자 통보 및 교육실행, 교육결과보고
- 교육비 정산 및 교육이수 관리

## 5.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거 매월, 매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 농협중앙회(자금관리주체) : 교육운영기관의 교육실시결과 교육비 정산서를 검토 후 지급, 필요시 선급금지급
- 교육운영기관 : 교육실시 후 농협중앙회에 교육비 정산요청

##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적 점검(연 2회)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지침에 반영
- 농협중앙회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 《제 제》

- 농협중앙회 : 정산결과에 따라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 7.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 2013년 축산업 허가 및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 이수실적
  - 성과측정 산식 : (교육 이수농가/대상농가) × 100

### 《만족도 조사》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방법 : 설문지
  - 조사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교육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교육 목표인원 대비 교육 이행실적 평가

### 《평가결과 환류》

- 설문조사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사업평가 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기관)는 년중 수시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주관기관(농협중앙회)에 제출

##### **2. 2014년 사업신청 : '13년 대상자와 동일함**

##### **3. 신청기한 : 연중**

##### **4.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분야

## I . 생산기반 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장 이영직 사무관 김도순	044-201-2751 044-201-2761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 한계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제1항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수를 2015년에는 1,200개소까지 확대 유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재검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자율관리어업 참여율(%)	50	42	45	50	12월	자율관리어업참여어촌계수 /어촌계수*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이후
합 계	122,090	23,202	23,202	24,188	89,292
보 조	61,045	11,601	11,601	12,094	44,646
지방비	43,906	9,281	9,281	9,675	35,717
자부담	17,139	2,320	2,320	2,419	8,929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시·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체
  - 총 지원횟수 4회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6억 이상 공동체(신규 참여공동체 지원은 미포함)
  - 사업비 지원이 취소(반납)되거나, 포기 또는 부정수령이 확인된 공동체 중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체
  - 공동체별 전년도 수산관계법령 위반건수가 전체구성원의 10%를 초과하거나, 마을·양식어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2회 이상인 공동체
  - 전년도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공동체

###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년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275개 공동체 및 우수공동체 3개소
  - 선진공동체 2개소, 모범공동체 68개소, 협동공동체 147개소, 참여공동체 58개소 및 우수공동체(최우수·우수·장려) 3개소,

### 3. 지원대상

-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되나, 사업집행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 위판장, 어장진입갯벌로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폐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립 조성 등 자원 조성시설 및 사업
  -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포함), 공동체회관·컴퓨터 구입 등 교육시설, 기타 자원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
  -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 어선어업 공동체는 다음 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어구실명표식 및 친환경어구 구입
  - 어선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장비구입(단,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는 제외)
  -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 시설
  - 물량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안전 운반시설
  -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 포함)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에 사용
-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제외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공동체 주 활동어장, 항구 또는 마을앞 등에 자율관리어업 활동내용(면허·허가번호, 어장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알림판(예시:길이 180×150cm, 철판으로 제작하여 120cm 이상 높게 설치)을 설치하여야 함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모범공동체 중 상위 14%에 포함된 공동체 : 1.5억원
  - 모범공동체 중 상위 15~30%에 포함된 공동체 : 1억원
  - 협동공동체 중 상위 20%에 포함된 공동체 : 0.8억원
  - 참여공동체 중 상위 70%에 포함된 공동체 : 0.5억원
  - 선진공동체 : '13년 특별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 추가지원대상 공동체 : 2013년 우수공동체(3.5억원)
- 지원금액 가감(최우수공동체는 제외)
  - 구성원수가 2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50% 지원
  - 구성원수가 40명 미만인 공동체 : 기준액의 80% 지원
  - 예산배정액이 남을 경우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공동체는 기준액의 1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2013년 공동체 등급 및 우선순위 확정

##### 시·도, 시·군·구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지침에 의거 공동체 평가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육성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계획(지침)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달  
- 등급별, 유형별, 시도별 우수공동체 선정 기준

##### 시·도, 시·군·구

- 농림수산식품부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지침)에 따라 시·군별, 유형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
- 선정된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구별수산업 협동조합에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지방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적절한가를 검토(필요시 지방수산 사무소의 의견 수렴)
  - 설계서 작성은 2013년도 사업비 내시서에 의한 사업비단가를 기준하여 작성. 이 경우 2013년도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 사업시설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
-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상사업 가운데 2013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개별 수산사업의 관련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 다만,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당해사업의 준용지침 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검토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자율관리공동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를 첨부한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지방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상황을 감안,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부대비 등에 집행하며, 토지구입비, 근거당 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우수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전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우수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야 함
- 사업착수, 사업진행, 준공사항 처리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자율관리공동체 전담지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을 함
- 시·도는 당해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한 때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자금배정 요청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검정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지방수산사무소)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이 행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5년으로 하여 관리
- 당해연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우수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유지해야하며, 분기별 추진실적보고(별지3호서식)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중요재산 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준공계(별지4호서식)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우수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육성사업비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차량·장비, 기구, 어장관리선	5년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물과건축물	10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케 함

### 《제제》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적발시 지원금 중단, 올해 사업비 회수, 자격취소 및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후 3년 사업비 지원 배제

## 6. 성과측정단계

- 자율관리어업 누적 참여공동체수 성과 측정
  - 측정산식 : 당해연도말 누계 참여공동체수를 집계
  - 측정방법 : 각 시·도(지자체)에서 당해연도말까지 공동체 추가선정 및 포기 공동체수 집계
  - 근거자료 : 각 시·도(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한 공문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시 예산 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 《환 류》

- 평가결과, 차년도 육성사업비 배정시 시·도 참여공동체 기여에 따라 배정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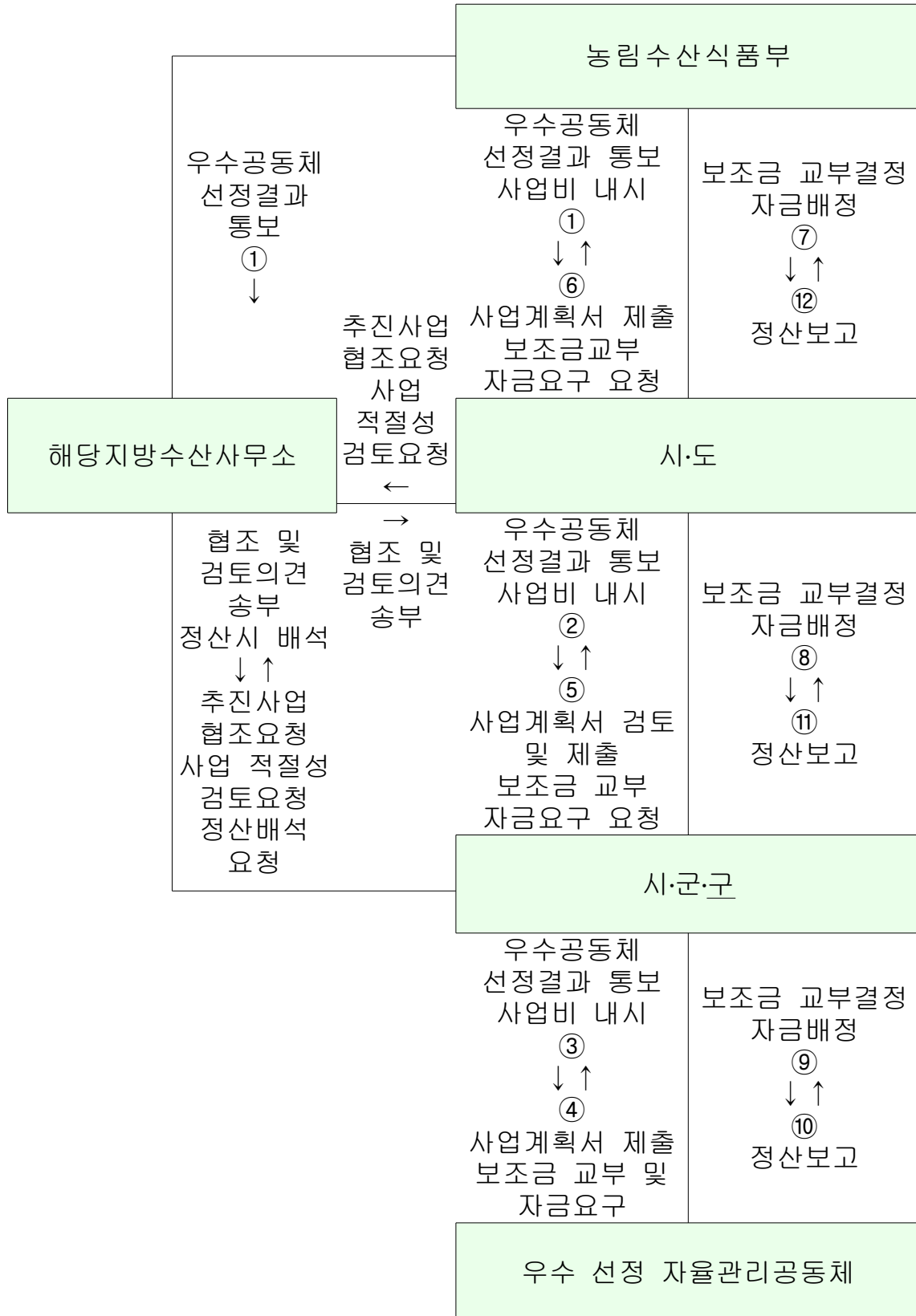
- 2012년 자율관리어업활동 실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결과 및 '14년 예산확보 등을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13.10예정)
  - 시·도에서 동 선정계획에 따라 2014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13.11예정)

【 별첨 】

< 사업 추진 체계 >





## 사업 신청서

신	공동체명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      ) -      )	
청 자	주소						
	공동체경력 (참여일)	년 (200. . .)	참여유형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사업규모		
	공동체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가구	호	구성원수	명	
신	사업명						
	사업예정지						
청 내	사업비 (천원)	계	정부지원(농특회계)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조 (      %)	융자 (      %)		
용	사업내용별 규모(량)						
자 기 자 급	조달시기						
	조달방법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 사업 계획서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사업자
- 사업내용(세부사업명, 장소, 금액, 추진일정 등)

-

-

### 2. 공동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자 산			부 채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 경비 부담자, 금액, 부담방법

구분	금액	부담자	방법

### 4. 보조사업 효과

세부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금액	추진효과	비고

### 5. 보조사업 수행후 연간 수지(명세)

수입			지출		
항목	금액	산출근거	항목	금액	산출근거

### 6. 사업비 산출 기초(수정 가능)

사업명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86	<b>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연안바다목장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이영직 서기관 차태황	044-201-2751 044-201-275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조성실	실 장 김호상	051-740-255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연안 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 개선하고, 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켜 풍요로운 어촌을 만듦.

###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수산자원조성사업)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연안(소규모) 바다 목장조성(개소)	4	17	4	5	2014.1	지원실적/목표(50개소×100 ※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 재정투입(억원)	210	508	170	190	2014.1	투입액/목표치×100 ※2020년까지 2,500억원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b>33,700</b>	17,000	17,000	19,000	21,000
국 고	<b>16,900</b>	8,500	8,500	9,500	10,500
지방비	<b>16,800</b>	8,500	8,500	9,500	10,500
○ 연안(소규모) 바다목장사업	<b>33,700</b>	17,000	17,000	19,000	21,000
- 국 고	<b>16,900</b>	8,500	8,500	9,500	10,500
- 지방비	<b>16,800</b>	8,500	8,500	9,500	10,5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수립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시행 전에 공단 전문가와 연안바다목장 조사지(적지 가능지)에 대한 실무 협의, 또한 관련 어업인, 수협 등 유관기관, 대학, 기타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실시계획에는 어장 및 자원조성을 위한 연도별 종합적인 계획과 바다목장 효과 측정을 위해 직접조사에 의한 현존 자원량 조사 및 향후 자원량 조사 계획이 반드시 반영
    - ※ 실시계획에는 연안바다목장 사업 조성 후 사후관리계획(예산확보방안 등)을 수립하여 포함
  -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저지형 및 서식생물 분포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지방비(50% 이상)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을 반영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후관리방안 마련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효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적정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

### 3. 지원대상

- 지자체
  - 시·도지사는 자체 예산으로 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후보지 심사 요청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조건 : 국비 50%와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50%이상 편성하여 공단에서 시행
  - ※ 지자체 형편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시 지방비 50% 이상 투입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예산을 연계하여 추진시 우선 선정
- 사업의무량 : 농림수산식품부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선정된 수역의 실시계획에 명시된 사업 내역
  - ※ 2013년부터 실시하는 연안바다목장사업의 체험형관광시설(체험관, 유료낚시터 등)을 위한 예산은 총사업비(국비, 지방비 포함)의 10% 범위 이내로 제한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년간 개소당 최소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 이상)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연안바다목장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를 시달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확보

#### 시·도(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자체비용으로 공단에 의뢰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수립
- 연안바다목장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사업추진 대상해역의 해양환경, 자원량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사업대상해역 범위, 연차별 자원조성시설 배치계획, 연차별 수산종묘방류 및 관광사업 등 사업

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시행계획 수립 및 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공단에 의뢰

- 수산자원조성 사업간 연계추진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능
- 수산자원의 조성이후 지속적 관리·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및 이용·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서를 첨부
- 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공단 자체 전문위원회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공단이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연안바다목장 사업추진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1부.
  - 공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의견서 1부.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1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에서는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한 자원조성 및 어장조성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자문하고, 각종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 공단은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 공단은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은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보고서와 기타자료를 검토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지자체에 송부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로 지방비 50%이상 투입계획과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사업단 전문위원회 기술검토서 등 검토 후 상정 여부 결정

- 육상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여건, 기술, 경영능력, 공동체의 사업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대상 선정·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안바다목장위원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사업지 선정에 투명성 확보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결정
- 사업지 선정시 우선순위 및 고려사항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공어초, 종묘방류 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역
  - 「수산자원관리수면관리이용규정안」을 마련하여 어업인 동의를 확보한 해역
  - 범정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해역
  - 전년도 사업신청 해역

#### 시·도(지자체)

- 사업예정지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장이 사업 후보지를 결정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시 참고사항
  -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공어초, 해중림, 종묘방류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규모를 확대(지방비 50%이상)할 수 있도록 계획 협조
  -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해당 어업인에 설명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협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 완비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개발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계획, 투자계획, 개발효과, 전망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실시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부한 연안바다목장사업매뉴얼을 참고하여, 개발유형(관광형, 체험형, 어로형 등)의 목적에 부합되고, 2개 이상의 개발유형을 추진할 경우 세부내역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연안바다목장 실시계획’ 용역결과를 공단 자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시 공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최하는 “연안바다목장위원회”에서 사업 시행계획 등 용역결과를 설명 및 발표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사업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 당해 연도 책정된 지방비(50%이상)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 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매년 초 수립된 ‘연안바다목장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수립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 50%의 민간자금보조 및 시·도지사에게는 50%의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 요청
-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조성해역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전
- 사업예산, 시설대상지, 시설물 배치·시공, 방류대상 품종 등 중요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4. 이행점검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자문회의 등에 농림수산식품부,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하여 점검 및 자문
  - 대상해역 어촌계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적정이용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 조사 평가

####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까지 연안바다목장 해역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동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요청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 5.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는 공단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공단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 시·도(지자체)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공단과 협의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 연안바다목장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 및 자문함
  - 공단은 지자체와 실시한 사후관리 방안 협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성과 및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기본지침을 마련
- 시·도지사는 공단에 차기 년도에 추진할 수역을 전년도에 추천
- 공단은 시·도 추천서 및 기반조사 등을 기초로 차기 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농수산식품부에 제출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도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수산분야

## II. 생산 및 유통개선



87	<b>친환경양식어업육성</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 장 박신철	044-201-2731
		사무관 최덕부	044-201-2736
		장귀표	044-201-2734
		주무관 김건효	044-201-2737
		정효정	044-201-2735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성 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보급

####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4조, 제86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대비 '15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20% 증대(매년 4% 증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양식수산물 (해수) 생산량	160만 톤	137만 톤	148만 톤	-	'14.2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 확인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4,950	14,150	26,600	17,467	174,670
국 고	10,700	5,020	11,700	9,400	94,000
지방비	14,250	9,130	15,900	9,400	94,000
자부담				2,667	26,667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종묘생산, 육성 등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를 받은 민간사업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묘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기반시설 확산을 위해 사업자로 선정된 자

### 3. 지원대상

- 산업적 가치가 높고 기술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목 및 친환경 기반시설  
- 참다랑어, 해수면 순치 송어, 갯지렁이, 해삼, 전복, 신품종 김, 미역 등 해조류, 갯벌참굴, 폐사어 처리시설 등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참다랑어 육상양식기반시설 및 부대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 친환경적으로 양식되고 있는 송어의 양식시설 건립 지원
  - 전복을 외해중층가두리방식으로 양식하기 위한 설계, 시설, 설치비 등
  - 신품종 슈퍼김 등 종자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 설계, 건립 등
  - 해삼 종묘배양 및 중간육성 시설, 설계, 시설비 등
  - 해조류 수출상담 및 연구 등을 위한 수산생명산업지원센터 설계 및 건립 등
  - 해조류, 패류 육종 융합 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등
  - 갯벌패류 연구센터 건립 설계비 등
  - 심해가두리 양식시범어장 개발 설계비 등
  - 폐사어 처리시설 증축을 위한 설계비, 시설비 등
  - 갯지렁이 종묘배양 및 양식시설 건립 지원
  - 수평망식 갯벌참굴 기반구축을 위한 설계, 시설, 설치비 등
- ※ 내역사업별 세부지침을 별도 마련하여 시달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 지자체 직접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자체가 민간에 보조사업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자부담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추가부담 가능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산 반납한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양식어업기반조성 중장기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양식기반조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개발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선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를 시달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수산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확보

### 시·도(지자체)

- 지자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부지확보, 환경보호,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연구를 수행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해당지자체에 사업 배정
- 사업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품목별로 사업수행에 최적인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업내시서와 함께 통보

### 시·도(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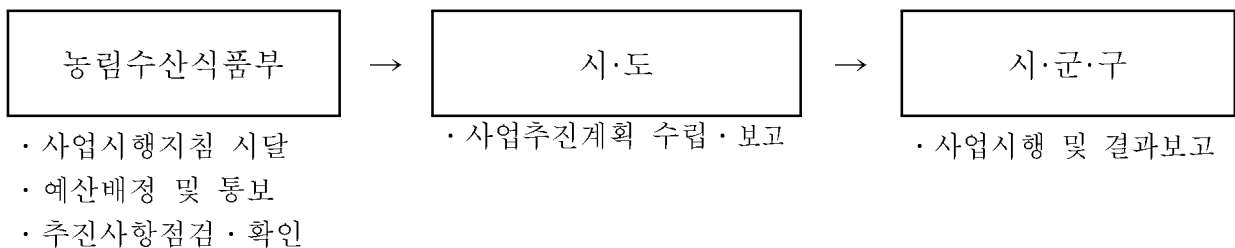
- 지자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역별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적임자를 선정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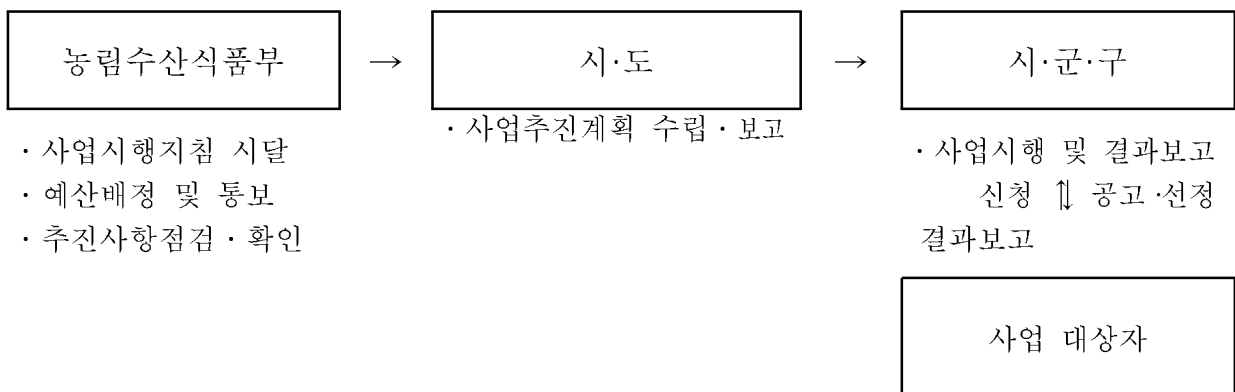
###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시행지침서와 세부사업집행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지자체 직접사업>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4. 자금배정단계

- 보조금의 배정 절차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금교부 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 신청시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보조금교부 결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등 관계규정
- 자금배정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1/4분기 내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완료

####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사업집행점검은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년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사업추진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업집행주체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재산 인수후	5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건축물	"	10년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통계청 발표 통계자료를 근거로 익년도 2월말까지 확인한다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 지 점검 평가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는 다음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불이익 부과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구)는 2014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4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대상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기 위해 2월말까지 예비조사를 실시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5.31까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과장 박신철 사무관 박형구	044-201-2731 044-201-2740

## I. 사업개요

### 1. 목 적

- WTO/DDA, FTA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 방지,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

###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연안 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량을 매년 10% 확대 추진
  - 배합사료 품질 개선 등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량을 최근 3년간 평균사용량 보다 10%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배합사료 사용 증 가율(%)	19	16.0	14.0	17(추 정)	'13.12	(배합사료 사용량 / 양식장 사료 총사용량)×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6,800	5,540	2,540	2,000	28,140
국 고	6,800	5,540	2,540	2,000	28,140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

※ 균특회계 제주계정 포함 : ('08)450백만원, ('09)450백만원, ('10)500백만원, ('11)500백만원, ('12)500백만원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자 자격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 사업자 제외대상

-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간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없음
-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2억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배합사료 지역활성화사업자(현행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는 제외함

### 3. 지원대상

#### ○ 대상양식장

-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모든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5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국내 양어용 배합사료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참다랑어나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이를 인정하는 양식품종과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품종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함. 이 경우 별도의 구획된 장소란 아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지원면적에 포함할 것)
- HACCP 등록양식장(단, 2013. 1. 1 현재 등록된 양식장에 한한다)으로서 배합사료를 5개월이상 100% 희망하는 양식장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돛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 지원범위 :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 등(단, 종묘는 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면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어가에 대해 지원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자의 의무(별지 제2호 서식의 급이계획서,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가 제출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업관리주체는 검토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허가(신고)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조식(축제식 등) 양식장 : 수면적 3,500㎡당 60,000천원
- 가두리양식장 : 면허면적 1ha당 60,000천원
  - 단, 숭어는 면허면적 1ha당 8,500천원
- 지원한도액 범위 : 양식어가당 60,000천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관리주체는 III.6. 성과측정단계의 배합사료급이실태 조사시 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7.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시·도

- 사업관리주체 : 시·도
  - ※ 「시·도」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수산정책과), 울산시(항만수산과) 및 그 외 시·도 소속의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 어업기술센터, 수산관리소, 수산기술사업소를 포함한다.
  - ※ 시도는 사업관리주체를 관할 양식수협에 위임할 수 있다.
- 공고시기 : 연 1회(2월)
  -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다만, 전체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HACCP 등록양식장은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시·도는 사업신청자 및 사료회사(또는 대리점) 관계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도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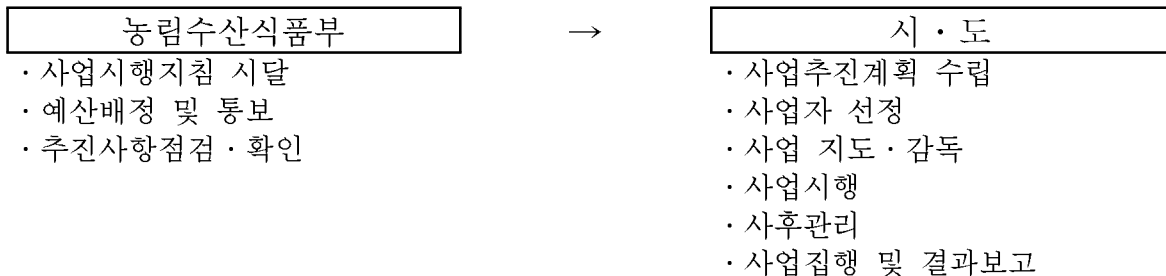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에서 선정
  - 심의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 연구소(양식사료연구센터 등), 수산학계, 수협 및 양식어업인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우선순위(넙치·조피볼락 우선)
  -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등록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양식장
  - ② 전년도 배합사료를 연간 100% 사용실적이 있는 양식장
  - ③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연간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
  - ④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시간 이상을 이수한 양식장
  - ⑤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 ⑥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 ⑦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인접 양식장
  - ⑧ 어장정화 실적이 있는 양식장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어촌계장 또는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승계를 인정
  - 시·도는 사업자가 중도포기 또는 자격 박탈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할 경우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정일 기준으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받아야 함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포함)
- 시·도는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내역을 대상사업자에게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3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13.1월
  - 시·도에 지침 통보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13.1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10일 이상 홍보 실시
- 사업설명회 실시(시·도) : '13.1~2월
  - 사업신청자, 사료회사(대리점)에 사업 설명
- 사업 추진체계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송금

#### 시·도

- 사업자 선정 : 연간 1회, 3월말까지
  - 예비사업자 소진시 상기“2.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재선정 가능
- 등록된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등록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3.12월말일까지
  - 계속등록업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2013.12월말일까지
  - ※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 당해연도 사업정산을 위해 적용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단축할 수 있음. 이 경우 단축된 기간(예: 12월20일까지 적용기간을 두었을 경우 12.21부터 12.31까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5개월 이상 사용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분기말(6, 9, 12월), 단, 사업관리주체가 예산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정산시점을 추가할 수 있음

※ 매 분기말 적용시 1월이 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사업정산 원료를 위해 12월로 정함

- 정산방법 : 대상어종 및 양식방법별 지원한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시·도에게 제출

- 시·도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시·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집행점검은 년 1회 이상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 시기와 방법, 점검항목 등을 자세하게 명시

- 실시시기 : 7월, 10월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 시·도

○ 시·도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는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병행 점검

- 시·도는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도는 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대상이 되지않는 사업자(Ⅲ.5.《제제》

○ 지급보조금 환수 등)가 당초 지원키로 된 지급예정액을 사업기간내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음을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시·도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자금이 발생될 경우 이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는 관할 구역내에서 사업자금을 전량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즉시 반납하여 다른 시·도에 재 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 또는 대리점 등)는 당해 시·도에 등록(“각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할 지역이외의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중 1개소 이상인 곳에 이행각서를 제출 하였으면, 타 시·도에서는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함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단, 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또는 동회사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리점(국내외 배합사료를 취급하는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이어야 함]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제제》

시·도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시·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 조치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 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집행주체가 인정된 사업자는 제외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도는 사업대상 어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시·도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추진실적 자료를 근거로 12월 중에 확인한다
  - 사업대상자 선정(변경·제외 등 포함) 및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보고

구 분	보고기한	보고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자 선정월(3월)의 익월 15일까지 *새로운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 후 15일이내	별지 제4호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
예산집행실적	정산시점 익월의 말까지 *단 12월은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

- 보고 주체 : 시·도 총괄부서에서 취합 보고
  - ※ 예) 총괄부서 : 전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경북 어업기술센터, 제주도 수산정책과 등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진척상황이 적정한 지 점검 평가

### 《환 류》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시·도에 시정 조치 및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별지 제1호 서식]

<b>배합사료 지원사업(변경) 신청서</b>				
업체(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양식방법	<input type="checkbox"/> 수조식육상 <input type="checkbox"/> 가두리			
품종명				
면허(신고) 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어촌계 <input type="checkbox"/> 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어장소재지	면허(신고) 번호	품종	시설면적 (ha)
대상어장				
사업규모	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도지사 귀하           </div>				
※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전원 동의서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b>89</b>	<b>친환경어구보급 지원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자원환경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과 장 강인구 사무관 임동규	044-201-2711 044-201-2715
	자원환경과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과 장 이영직 서기관 안치국	044-201-2751 044-201-2759
국립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	과 장 박성욱 담당자 김성훈	051-720-2560 051-720-2584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김현우 담당자 오종필	02-2240-3224 02-2240-3217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어구 생산 및 사용기반 마련
-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굴 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안오염 방지

###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 수산업법 제86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생분해성어구 사용 어선 척수	350척	250척	300척	350척	'13.12월	지자체 참여 어선척수
▪ 고밀도 부표 보급율	4.5%	5	4.5	4.5	'13.12월	지자체 고밀도부표 보급 실적
▪ 굴패각 자원화 지원율	12.5만톤	14만톤	12.5만톤	12.5만톤	'13.12월	지자체 굴패각 처리(운반)량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5,139	14,336	14,290	14,290	48,580
보 조	5,035	5,035	5,003	5,003	14,006
용 자	-	-	-	-	-
지방비	4,549	4,301	4,287	4,287	14,574
자부담	5,555	5,000	5,000	5,000	20,000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4,014	4,336	4,290	4,290	8,580
- 보 조	2,810	3,035	3,003	3,003	6,006
- 용 자	-	-	-	-	-
- 지방비	1,204	1,301	1,287	1,287	2,574
- 자부담	-	-	-	-	-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8,325	7,500	7,500	7,500	30,000
- 보 조	1,665	1,500	1,500	1,500	6,000
- 용 자	-	-	-	-	-
- 지방비	1,665	1,500	1,500	1,500	6,000
- 자부담	4,995	4,500	4,500	4,500	18,000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2,800	2,500	2,500	2,500	10,000
- 보 조	560	500	500	500	2,000
- 용 자	-	-	-	-	-
- 지방비	1,680	1,500	1,500	1,500	6,000
- 자부담	560	500	500	500	2,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중인 자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 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주체가 선정한 자

### 3. 지원대상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13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
    - \* 대게·참조기 자망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어구를 우선 지원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양식어업, 어장시설, 어선·어구\* 등에 부표를 어장관리법 상 어장부표의 규격(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는 자에 한함
    - \* 어선·어구의 경우에는 어장관리법상 어장부표의 규격을 준용함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연안지역에서 굴 양식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패각을 주 대상으로 하며, 굴 패각을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연안에 방치되고 있는 굴 패각을 자원화하고자 경우에는 자담을 부담할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생분해성 자망 또는 통발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어망 구매 보급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해변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어장부표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원
    -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발생된 굴 패각을 자원화(비료·사료·공업용원료 등)하기 위하여 굴 패각을 처리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원(다만, 자원화업체의 적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해양투기나 매립하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처리 지원이 가능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농특), 지방비 30%
  - 지원물량 : 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어구를 지원(척당)
    - \* 어구 규격은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규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20%, 자담 60%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20%(농특), 지방비 60%, 자담 2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중 기존어구 가격의 10% 추가 지원
    -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 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10%)
    -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조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
    -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계약은 공급업체의 요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협상 방식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통보한 기준단가 미만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14년도부터는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만 보조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사업지원 대상어장 또는 어선·어구에서 총사용할 수 있는 부표 물량 이하
  - 고밀도부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예 : 수산물 양식용 부자, KS M 3900)이어야 함
  - 사업집행으로 폐기되는 부표는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거처리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 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물량(개당)의 단가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또는 예산회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서 발생하는 굴 폐각에 한함
  - 사업비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보조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7.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 등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 인증서 교부
  - 그물실의 방사, 편광공정 기술이전 및 연구지원
-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생분해성어구로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발급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신청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공고시기 결정
  -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2월 중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와 관련 신청서류를 사업관리주체에게 제출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사업관리주체가 어업허가증 등 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한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사업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별지 제1~4호 서식 :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
-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자가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농림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결과 보고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및 연간 사업비내역을 사업대상자 및 관련기관에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①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 사업자 선정결과를 수협중앙회에 통보 : '13.2월
  - 수협중앙회(일선조합)에서 생분해성어구를 원활히 공급토록 조치
  - 생분해성어구 사업내용 교육·홍보 및 어구 공급시 검수 입회
- 수협중앙회
  -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을 관계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별 생분해성어구 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어업인 보급 및 설명·교육,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및 보고
  - 생분해성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납품을 받았을 때 공급 어구의 일부를 채취하여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여 확인하고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
- 공급업체
  - 업체의 자격은 자망 또는 통발 어망·어구 제조업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망지를 생산, 편망·열처리·포장·건조 및 보관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국산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 생분해 어구 공급업체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사업대상자(어업인)

- 시범사업 대상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해당 지자체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이 사업중도 포기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의 승인하에 공급된 어구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 할 수 있음

○ 국립수산물과학원

- 생분해성어구 검사규정에 따라 어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지체없이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인증서 발급
- 어업인 자부담 결정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표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통보(과학원→지자체, 수협→어업인)
- 기준단가 산정 및 통보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수협중앙회(일선조합)로부터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편망업계에서 생산 중인 생분해성어구의 성능조사 실시

**②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3.1월

- 관할 어업인, 부표 제조(공급)업체들에게 홍보 및 사업설명

**③ 굴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실시(시·군·구) : '13.1월

- 사업신청자, 어업인, 굴수하식수협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사업설명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13.2월까지

○ 시·도(시·군·구) :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13.1월까지

- \* 생분해성어구 공급이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물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 방지
- 보조금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패널티 부여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 반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결과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 추진결과 보고(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간 : 2013년 3월말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대개, 참조기 자망 등 향후 사용의무화가 예상되는 어구를 우선 지원 예정
  - '14년부터는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만 보조(인센티브로 지급하던 기존어구 가격 10% 지원은 폐지)
  - 수협중앙회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을 위해 공급업체와 조달가격 계약시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 가격협상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가조사기관에 의뢰, 최종 산정하여 제공한다.

<b>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b>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연안자망어업 <input type="checkbox"/> 근해자망어업 <input type="checkbox"/> 연안통발어업 <input type="checkbox"/>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허가번호)			톤수			
품 명	어 구 규 격	단 위	연간사용량	사업신청량	비 고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및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 귀하           </div>							
※ 구비서류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b>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b>						
<b>1. 어업의 종류 등</b>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번호		
어장 면적	건	ha		면허(허가)기간		
어업자 성명	어업자 주소					
어장의 위치						
어장총사용부표	종류		용량	리터	수량	개
<b>2. 신청사업 규모</b>						
부표종류	용량(ℓ)	수량(개)	지원단가(원)	비 고		
총계						
고밀도부표						
개량부표						
PVC						
<b>3. 사업비(총 사업비 : 원)</b>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원		
<b>4. 착공(착수) 예정일 :</b>						
<b>5. 준공(완료) 예정일 :</b>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및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div>						
※ 구비서류 : 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b>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b>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어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연안자망어업 <input type="checkbox"/> 근해자망어업 <input type="checkbox"/> 연안통발어업 <input type="checkbox"/> 근해통발어업					
선박제원	선명 (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명	부표규격			단위	수량	비고
<b>사업비(총 사업비 :                      원)</b>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b>착공(착수) 예정일 :</b>						
<b>준공(완료) 예정일 :</b>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및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귀하</p>						
※ 구비서류					수수료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없음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별지 제4호 서식]

<b>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b>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b>1. 굴 패각 발생량</b>				
사업장소재지				
알굴 생산량		종사자수		
패각 발생량 또는 발생예상량				
<b>2. 사업신청 및 처리계획</b>				
사업신청량	단가	금액	처리계획	
<b>3. 사업비(총 사업비 :            원)</b>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b>4. 착공(착수) 예정일 :</b>				
<b>5. 준공(완료) 예정일 :</b>				
<p style="margin: 0;">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및 굴패각 친환경 처리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 5px 0 0 20px;"><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 5px 0 0 20px;"><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 5px 0 0 20px;"><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신청인 ○○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b>※ 구비서류</b>				수수료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없음



<b>90</b>	<b>수산물시장시설개선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과장 김정희 서기관 강혜영	044-201-2611 044-201-2627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시장 시설개선 관련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73조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86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 위판장이 어업인의 판로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성과 지표로 어업인의 산지 위판장 이용 정도(수산물계통출하율)를 측정
  - (성과목표) '13년도 수산물계통출하율 53.3% 달성 목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신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수산물계통출하율(%)	53.3	51.3	54.9	-	'13. 4	(위 판량/생산량)×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78,172	41,884	7,984	10,697	5,730	11,877
보 조	34,299	22,058	3,750	3,209	1,719	3,563
지방비	22,323	11,437	2,395	3,209	1,719	3,563
자 담	21,550	8,389	1,839	4,279	2,292	4,751
○ 위판장 시설개선*	56,400	21,968	6,128	10,697	5,730	11,877
- 보 조(30%)	19,729	8,787	2,451	3,209	1,719	3,563
- 지방비(30%)	16,918	6,589	1,838	3,209	1,719	3,563
- 자 담(40%)	19,753	6,592	1,839	4,279	2,292	4,751
○ 공판장 시설개선	1,550	1,550	-	-	-	-
- 보 조(50%)	775	775	-	-	-	-
- 자 담(50%)	775	775	-	-	-	-
○ 유통센터 시설개선	1,800	1,800	-	-	-	-
- 보 조(50%)	900	900	-	-	-	-
- 지방비(50%)	900	900	-	-	-	-
○ 도매시장 시설개선	18,422	16,566	1,856	-	-	-
- 보 조(70%)	12,895	11,596	1,299	-	-	-
- 지방비(30%)	4,505	3,948	557	-	-	-
- 자 담	1,022	1,022	-	-	-	-

\* ('07) 국 70%, 자 30% → ('08~'11) 국 40, 지 30, 자 30 → ('12년이후) 국 30, 지 30, 자 4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시장(공판장 및 산지위판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 및 수협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3. 지원대상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 자담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수협 간에 협의를 통해 자담 일부를 지방비로 집행할 수 있음
  - 수산물 공판장 시설개선 : 보조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수협

- “산지위판장(이하 ‘공판장’ 포함)”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등 적정성을 검토,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시·도지사에게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기본여건 충족여부, 사업 적정성)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매년 3월 31일까지)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재원(자담) 확보 여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자체 및 수협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은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공판장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시·도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의 국고 보조금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4. 자금배정단계

###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개선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산 보고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당 사업자는 3년간 사업 중단

####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 장 비 ○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6. 성과측정단계**

- 시설개선을 통한 산지 위판장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 시·도지사)은 관내수협을 대상으로 위판장 시설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 필요사항 파악
- 수협중앙회는 산지위판장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지구수협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할 수 있도록 지도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다만,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b>91</b>	<b>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강혜영	044-201-2611 044-201-2627
수협중앙회	공판팀	팀 장 김병철 과 장 박정호	02-2240-2442 02-2240-2449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수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유통의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
  - 지게차·전동차·파렛트 등 지원을 통한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물류효율화 도모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수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등)된 상태로 출하한 하역기계화 정도를 측정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수산물 하역기계 화율	2.7	3.2	2.7	2.3	'13. 4	파렛트로 출하된 수산물량/전체수산물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	-	-	1,200	2,000
국 고	-	-	-	600	1,000
자부담	-	-	-	600	1,000
○ 물류기기 공동이용	-	-	-	1,200	2,000
- 국 고	-	-	-	600	1,000
- 자부담	-	-	-	600	1,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아 수산물공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수협 등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 지원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3. 지원대상

- 지게차·전동차·파렛트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민간경상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매년 1월말까지)
- 지게차·전동차·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게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
- 물류기기를 이용한 출하계획 및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자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에서 보고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예산안 통보

### 수협중앙회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평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게 보고
  - 다만, 재원(자담)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사업대상자 등에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자담 확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협중앙회에 통보

###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 수립 :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투자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집행절차 : 사업추진 내용, 임대 사용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임대사용회사와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사업자별 예산은 당해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수협중앙회

-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점검을 통해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중앙회 합동 또는 해당기관에서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보고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당 사업자는 3년간 사업 중단

#### 수협중앙회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6. 성과측정단계

-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도매시장 등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수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을 산정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별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협중앙회는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도매시장의 물류기기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고,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역기계화 등 물류효율화 촉진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수산분야

### Ⅲ. 기계화 및 인력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과장 강인구 사무관 윤영호	044-201-2711 044-201-2724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사무관 정철수 담당자 이창용	051-888-6783 051-888-6784
인천광역시	수 산 과	사무관 손시형 담당자 고경필	032-440-4862 032-440-4863
울산광역시	항만수산과	사무관 손성익 담당자 홍기영	052-229-2990 052-229-2992
경 기 도	해양수산과	사무관 박영일 담당자 황윤정	031-8008-4530 031-8008-4797
강 원 도	어업지원과	사무관 조규백 담당자 최석림	033-660-8352 033-660-8354
충 청 남 도	수 산 과	사무관 최동용 담당자 김종락	042-220-3531 042-220-3533
전 라 북 도	해양수산과	사무관 고대곤 담당자 김창곤	063-280-2678 063-280-4650
전 라 남 도	수산자원과	사무관 장병수 담당자 신규호	061-286-6933 061-286-6932
경 상 북 도	수산진흥과	사무관 이석철 담당자 김철호	053-950-2366 053-950-2533
경 상 남 도	어업진흥과	사무관 유재선 담당자 이유미	055-211-3812 055-211-3856
제 주 도	수산정책과	사무관 강경일 담당자 현길환	064-710-3216 064-710-3217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과장 백진기 대리 김나라	02-2240-3231 02-2240-3232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75조제1항제3호

## 3. 성과목표 및 지표

- '18년까지 어선어업분야 44,576CO<sub>2</sub> 톤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CO <sub>2</sub> 배출 저감 량(톤)	2,219	6,526	6,526	2,219	2월	척당 유류절감량(25,200ℓ)×톤당 탄소배출량(2.59톤)×유류절감장비 지원척수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b>31,380</b>	10,800	10,130	11,796	183,333
국 고	<b>9,414</b>	3,240	3,039	3,539	55,000
지방비	<b>9,414</b>	3,240	3,039	3,539	55,000
용 자	-	-	-	-	-
자부담	<b>12,552</b>	4,320	4,052	4,718	73,333
○ LED등 보급	<b>8,680</b>	<b>4,340</b>	<b>670</b>	<b>670</b>	<b>16,666</b>
- 국 고	2,604	1,302	201	201	5,000
- 지방비	2,604	1,302	201	201	5,000
- 용 자	-	-	-	-	-
- 자부담	3,472	1,736	268	268	6,666
○ 기관·장비개량	<b>22,700</b>	<b>6,460</b>	<b>9,460</b>	<b>11,126</b>	<b>166,666</b>
- 국 고	6,810	1,938	2,838	3,338	50,000
- 지방비	6,810	1,938	2,838	3,338	50,000
- 용 자	-	-	-	-	-
- 자부담	9,080	2,584	3,784	4,450	66,666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LED등(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 등을 포함. 이하 같다)과 어선의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 이하 같다)·장비(유류절감장치를 포함. 이하 같다)·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 다만, 전기추진장치는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검사기준 마련 후 지원가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3.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
- 자기 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의 기관 설치
- 어선 노후 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 장비·설비 설치
  -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 및 어업·항해 등에 사용되는 장비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설치·대체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LED등 사업의 경우, 자부담 40%중 20%까지는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LED등 34척, 기관·장비·설비(유류절감장치 포함) 556척
-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LED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관·장비·설비 설치사업의 세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음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설치비 포함)에 의한 실수요 사업비에서 보조지원율로 지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7. 유류절감장비의 성능검사 및 승인

-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 집어등 반사장치는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 국립수산과학원
    - \* LED등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한국LED보급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을 받아야 함
  - 유류절감장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고, 수협중앙회 통보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성능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승인기준 변경은 승인기관 주관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 승인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승인받은 제품도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는 재승인을 받아야 함.

## 8.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 (사)한국LED보급협회는 동 사업지침에 따른 LED등 승인제품에 대하여 매년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한국LED보급협회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및 사업집행주체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사)한국LED보급협회에서 자료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조식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시달

#####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3. 3. 1~5. 30
  - ※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가능한 모집 공고기간을 준수. 단, 사업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추가 모집

#####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어업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LED등 사업자 선정시, 갈치 채낚기어선에 LED 집어등 설치 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소유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함),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유류절감장치, 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소형어선 사업자(수협위판 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 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유류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관·장비·설비
  - \*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근거가 명확할 경우(근거서류 구비 등 시·도(시·군·구)가 인정)로 한정하며, 마력을 증가하여 기관을 대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법령 제·개정 등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노후선외기의 동일마력 이하 대체 포함)
  - 육상용 기관을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선외기추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시·도(시·군·구)는 사업희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3.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 수협중앙회(일선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2013.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 시·도(시·군·구)

- 2013. 1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교부금 지급

## 5. 이행 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기계·장비	2013	2017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제재》

####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6. 성과측정 단계

- 매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한 : 2013. 3. 31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와 동일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세부사업명 : \_\_\_\_\_ ) \* 사업별 관련사항만 기재

○ 설치어선(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수년월일	어업허가번호 (어선번호)	최종어선검사		설치 장비명	비 고
			일 자	종류		
					품 명: 기 종(규 격) 수 량	

- 설치어선 소유기간 (    년    월) :

- 기타 :

### 2. 사업계획

○ 설치기간 및 계획

업종(톤급, 선질) 품명(기종, 규격 등)	예정공기		사업내용	신청내용
	착공일	준공일		

\* 사업내용은 LED등, 유류절감장치, 기관, 장비·설비 설치를, 신청내용은 사업별 수량, 신규, 대체 등을 표시

- 어업인 후계자는 해당 여부 기재 :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 (방법) :

○ 기타(사업지원 효과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김종실 사무관 김주성	044-201-2631 044-201-2642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해양수산과 시·도수산사무소	사무분장규정에 따름	-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고가인 양식장비를 임대, 어업인 부담경감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양식장비 임대사업소 8개소 설치
- '15년까지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60개소 설치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양식장비 임대실적	118	130	99		익년 2월	총 임대 횟수 / 임대 사업 개소수
▪ 평균 수리건수 증가율 (%)	2				익년 2월	(당해연도 수리건수 전년도수리건수)전년 도 수리건수×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6,642	2,910	2,910	3,000	4,500
국 고	4,392	1,737	1,737	1,800	2,610
지방비	2,250	1,173	1,173	1,200	1,890
○양식장비임대	4,500	1,500	1,500	1,500	2,700
- 국 고	2,250	750	750	750	1,350
- 지방비	2,250	750	750	750	1,350
○이동수리소	2,142	1,410	1,410	1,500	1,800
- 국 고	2,142	987	987	1,050	1,260
- 지방비	-	423	423	450	54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양식장비임대 : 자치단체(시·군), 위탁관리자(수협 등), 수혜자(양식업자 등)
  - 개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위탁관리자가 될수 없음
  - \*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할수 없음
- 이동수리소 : 도서·벽지의 취약지역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양식장비임대
  - 지자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 능력이 있는 지자체(50%부담)
  - 위탁관리자 : 양식장비를 임대·관리할 수 있는 수협, 수산사무소, 농업기술센터
  - 수혜자 : 양식어업 면허를 득한 양식어업자(수협 포함)

### 3. 지원대상

- 양식장비임대
  - 양식장비 일체, 양식장관리선, 활어차운반선, 활어운반선, 어선형 해상크레인, 다목적 해상작업대(크레인 및 선별기 포함)
- 이동수리소
  -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 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장비임대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 임대장비 보관창고 설치 또는 리모델링
  -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등)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 위탁관리자는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시하여야 하며, 양식장비를 잘못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이동수리소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 정기점검 결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용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8만원 이하)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양식장비임대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단가 : 1,5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이동수리소
  - 사 업 량 : 50개소
  - 사업단가 : 3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양식장비임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이동수리소
  -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는 1인 1일(8시간 이내)에 13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0% 한도내에서 조정가능

-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
- 소규모 부품의 무상 교체비용은 1인당/1회/5만원 이하로 하되,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당해 연도에 1인당/2회/10만원 이내에서 부품 무상교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1월)

##### 시·군·구(수산사무소)

#### 《양식장비임대》

- 시·군·구는 양식장비 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양식장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 양식장비 구입(임대장비 선정, 수의 계약시 업체 선정 등),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

- 양식장비임대사업 계획은 반드시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양식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양식장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양식현황 및 양식장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양식장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별표1],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월)

### 《이동수리소》

- 수산사무소는 이동수리소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어업용 기자재 수요량 등을 조사한 후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월)
- 수산사무소장은 이동수리소 서비스 대상 어촌계를 선정함에 있어 이용 어업인수, 수요량, 육지로부터의 거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양식장비임대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 어가수, 양식량·면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양식어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이동수리소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서비스 대상 어촌계 선정의 적정성(취약지역 우선, 서비스 대상 규모 등)
- 점검·수리 대상 어업용 기자재 현황, 사업 추진 일정 등
- 소요예산(인건비, 관리비, 부품 교체비) 활용 및 점검·수리계획의 적정성, 그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 등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에 통보함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군·구(수산사무소)

#####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과 수산사무소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단,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양식장비 추가 구입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양식장비임대〉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어업인이 양식장비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임대양식장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양식장비를 임차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양식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임대기간은 지역여건에 맞게 장·단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임대신청 순위, 작업 우선순위, 장비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장비 임대 결정
- 임대료는 임대 양식장비 구입가격, 내용연수,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 양식장비를 재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 산정시 어업인, 어촌계, 수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임대 양식장비 구입은 수협중앙회의 어업용기자재 공급사업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격·성능 등을 비교하여 자체구매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 주요내용(임대 양식장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어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양식장비 임대시 필요한 경우 운전조작 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동수리소〉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을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2개 이상)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
- 수리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 약정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시행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약정승인 후, 농식품부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 추진중 이동 점검·수리지역 및 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음
- 수리업체는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가계약서)를 작성(3부)하고,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수리업체는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를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2월)

##### 시·도

-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2월)
- 농림수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2월)

##### 시·군·구(수산사무소)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2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장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 양식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수산사무소는 수리업체의 수리·점검 당일 담당공무원이 함께 수리현장에서



수리·점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점검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를 작성·관리

-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함
  -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임대양식장비 구입절차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점검 실시

#### 시·군·구(수산사무소)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양식장비 임대사업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은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목적외 사용, 양도·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 양식장비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양식장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 양식장비의 잘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임 대 장 비

이 장비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 규격 : 부착 장비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 재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장비에 직접 판서(板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용양식장비 (어선형포함)	○ 양식장비(일체), 활어운반차량(일체) : <b>8년</b> ○ 어장관리선, 활어차운반선, 활어운반선, 다목적해상작업대 : <b>25년</b> ○ 해상크레인(어선형) : <b>15년</b>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 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양 식장비는 계속 사용  ○ 양식장비 내용연수가 경과 하지 않아도 수리비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 기처분 가능
임대장비보관창고	○ 임대장비 보관창고 : <b>10년</b>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참조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양식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양식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점검사업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산사무소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양식장비임대사업 [별표2], 이동수리·점검사업 [별지 제8호 서식])를 당해연도 12.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시·군별 성과를 평가
  - 운영실적, 홍보노력, 제도개선 실적 등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3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수산사무소)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기한 : 2014.2.1~2.28까지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장비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사업물량 및 사업비	구 분	물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양식장비임대				
	이동수리·점검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양식장비임대	○ 구입장비 : 00장비, 00대			
	이동수리·점검	○ 어촌계수 : 00개, 점검·수리 기자재명 :			
임대장비 사후관리 방안					
임대장비 지침제정 여부		제정 ( ), 미제정 ( )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산장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자</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 (인) 수산사무소장(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b></p> <p>첨부서류 : 양식장비임대사업 계획서 1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점검사업 계획서 1부</p>					

수산분야

## IV. 소득보전



<b>94</b>	<b>어선원 및 어선 보험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과 장 김종실 서기관 김봉현	044-201-2631 044-201-2645
수협중앙회	정책보험팀	팀 장 최영택 과 장 유정호	02-2240-2980 02-2240-2981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어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 2.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제9조(업무의 위탁)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선원보험 가입률을 2016년까지 17% 수준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계획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15.4	13.1	14.3	14.5	연말	(어선원보험 가입어선 척수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 어선 척수)×100
▪ 어 선 재해보험 가입률(%)	11.8	9.7	11.9	10.7	연말	(어선보험 가입어선 척수 / 어선보험 가입대상 어선척수)×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 어선원 및 어선 보험사업	247,648	51,569	72,700	78,222	330,046
- 보조	247,648	51,569	72,700	78,222	330,046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49조에 의한 보험가입자  
※ 10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과 20톤 이상 어선은 부가보험료에 국한 지원

### 3. 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급여 재원
- 부가보험료 : 보험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순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순보험료(총 보험료의 80%)의 아래 비율 지원

구 분	10톤 미만	10~20톤 미만	10~30톤 미만	30~50톤 미만	50~100톤 미만
어선원 보험	70%	60%		30%	20%
어 선 보험	70%	60%	-	-	-

- 부가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20%)의 75% 지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 어선별 지원한도는 없음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보험의 설계 및 준비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규약의 작성 및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등 결정
  -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 보험요율 증감표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수협중앙회의 사업운영계획 검토 승인

##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지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그 밖에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보험상품 관리자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보험가입 접수 및 보험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지구별 조합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보험요율, 약관, 수지예산 등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 2. 보험의 가입단계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당연가입 대상)자는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임의가입대상)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신청서 작성과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서(신고서)에 의한 고지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하고 영업점에서는 보험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교부

## 보험가입자(어업인)

- 당연가입 대상 : 보험가입 대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임의가입 대상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신청서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납부

#### 수협중앙회(영업점)

-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 신청서 부분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 접수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에 제출하고 승인 또는 심사결정 통보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확인서(보험증권)를 교부

####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

-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내용 (고지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

### 3. 보험급여의 지급 단계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를 제출
- 영업점에서는 30일 이내(사고 사실 조사기간 제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어업인)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손해정도에 관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에 제출

#### 수협중앙회(영업점)

-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가 영업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결정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 사고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

### 수협중앙회

-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의 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 농림수산식품부

- 수협중앙회로부터 분기별 1회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

###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 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이후 보험료 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5.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영업점의 보험모집과 보험급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재정 부실화 및 부당집행 예방

## 수협중앙회

- 보험업무 취급자 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절차, 보험급여 내용 및 지급절차, 국고 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의 적정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험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가입 실태와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 사항 등을 반기 1회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보험료 징수실태 등

### 〈제제〉

- 수협중앙회는 보험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보험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 농림수산식품부

-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 조치

## 6. 성과 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 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만족도조사는 보험가입자 중 표본을 선출하여 어업인 간담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보험가입자
  - 조사방법 : 어업인간담회, 설문조사 등
  - 주 최 : 수협중앙회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가. 원 칙

-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기간 : '14. 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사업추진 실적 등

####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환 류〉

-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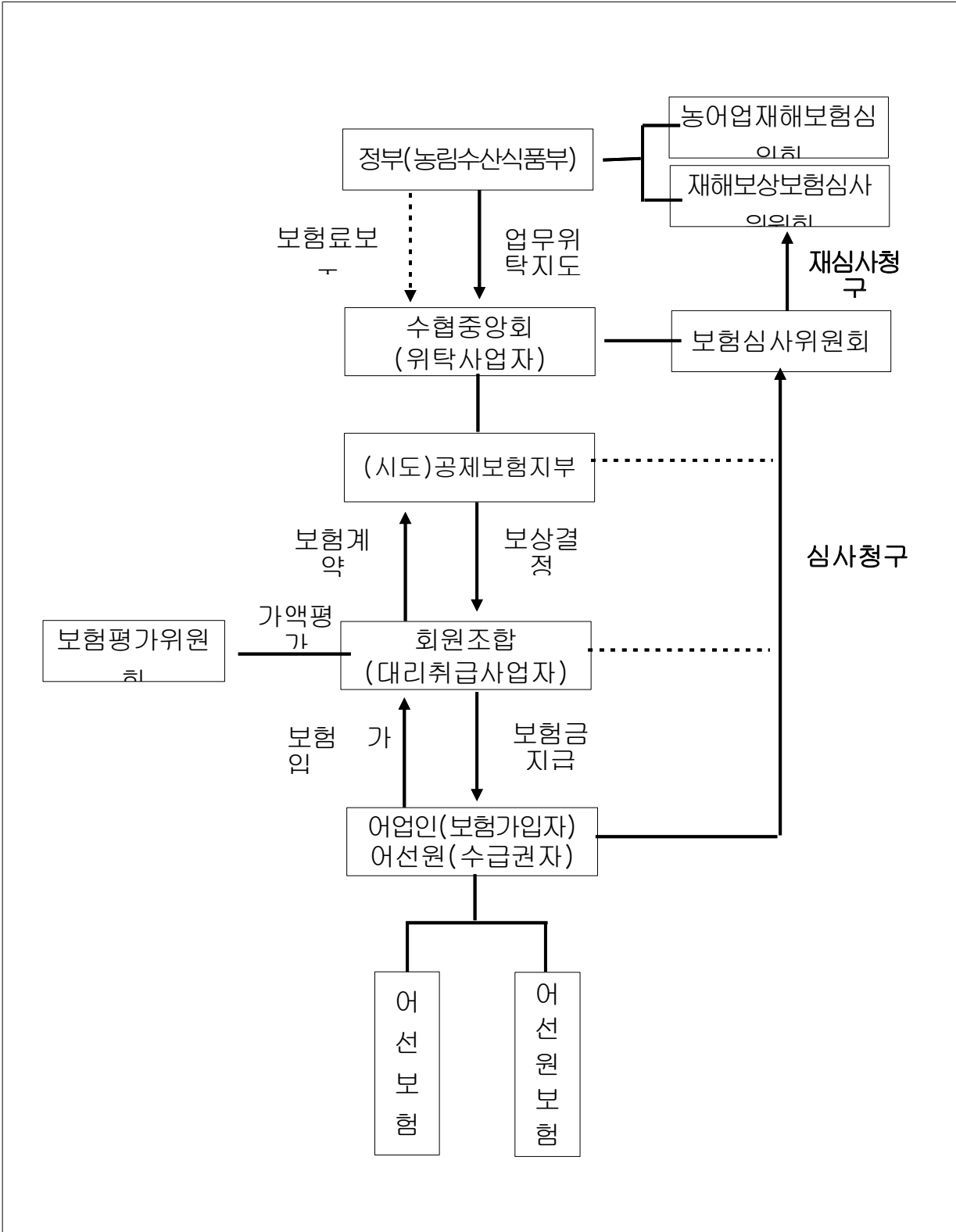
- 재해보험사업자는 2014년도 어업인정책보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 결과 및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도 예산요구 및 추가계획 수립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광특회계분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과장 신성암 서기관 조병임	044-201-1581 044-201-1586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8조, 제9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억원, 명, 개소)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	-	-	'13.1월	■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일자리 증가율(%)	-	-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431,338	486,954	406,190	454,346	계속
국고보조	715,669	243,477	203,095	227,173	계속
지방비· 자부담	715,669	243,477	203,095	227,173	계속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4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 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3. 지원대상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어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어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농공단지 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다만,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 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7. 포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포괄보조사업 시행 전 계속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시행지침을 적용
  - \* 계속사업 : 지구별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업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체)
  -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5.31일까지)
  -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가급적 공모제를 활용
  -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6개 사업유형)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 《제제 및 처벌내용》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지급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6. 성과측정단계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농어촌기업 매출액·참여농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실시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 농림수산식품부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REDIS에 제출한 평가자료에 기초하여 부처 자체평가평가를 실시

###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 계획에 기초하여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3.3.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 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지정,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 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 첨부 사업유형별 집행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4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6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6가지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 농어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 ① (사업유형 1) 시도단위 농어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어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지원내용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등

##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 ② (사업유형 2)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③ (사업유형 3)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 ○ 사업내용

-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④ (사업유형 4) 농수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 공동판매장은 농수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주말농원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지원기준 : 지구당 50~100억원,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㉔ 어촌·어항 관광개발

- 사업내용 :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등
  - 생태·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장, 어촌마을 정비, 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수산물 판매장, 해안 공원조성, 전망대, 낚시공원 조성, 상징조형물, 해상콘도, 주차장, 친수시설, 낚시터조성 등 관광기반시설

○ 지원내용 : 시설비

○ 사후관리 : 준공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부담비율 등에 따라 지분·공동 등기

\* 지원제외 : 식당·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

\*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 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장 김길영 사무관 김현수	044-201-1771 044-201-1778
	수산개발과	사무관 배길중	044-201-2637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덕부	044-201-2736
	"	사무관 박형구	044-201-2740
	"	사무관 김종모	044-201-2744
	자원환경과	사무관 주두만	044-201-2752
	"	서기관 안치국	044-201-2759
	"	서기관 차태황	044-201-2757
	"	사무관 김평진	044-201-2764
	종자원 종자유통과	주무관 배은희	031-467-0133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농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확충

###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법률의 적용 배제) 등
-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종자산업법 제121조(품종 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 수산업법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b>합 계</b>	<b>354,880</b>	<b>365,489</b>	<b>375,711</b>	<b>363,314</b>	<b>계속</b>
국 고	283,904	292,391	300,569	290,651	계속
지방비 등	70,976	73,098	75,142	72,663	계속

\* 2010년부터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4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 시행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3. 지원대상

####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한 밭기반정비, 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용수개발, 농로개설, 배수여건 개선 등 추진

#### (2) 어항기반시설 지원

- 어촌·어항법 제2조 3호에 의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준설 등 기본시설과,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인양 및 평시 어업지원을 위한 소형어선인양기,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안전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 등 편익제공을 위한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3) 수산자원 회복사업

- 연안어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양식어장관리사업
  - 인공어초, 어초어장관리 등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 민간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묘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하기 위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및 지역특화품종 양식단지조성에 필요한 내수면 어업생산시설 등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관련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4) 종자관리

-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와 정부 감자 종자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종자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공통분야】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조 별표)에 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의2) 사업
- 광특회계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 법령상 보조제외,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 사전 절차 미 이행 사업, 타 부처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농어업기반정비 사업관련】

- [붙임]“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예시]“ 참조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 계속사업 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지구를 말함,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정액지원사업 또는 통합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 7.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지침을 적용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농어업기반정비) 계획 수립
  - 시·군·구(한국농어촌공사 포함)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 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대상인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45호, 시행 2011.3.31) 등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 시·도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이행

##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반기 1회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시·도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농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을 농식품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 관리토록 함

##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13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 '13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3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 i)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ii)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 iii)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4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4년도 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5.31까지)

[붙임]

##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기존계속사업 예시)

### (1) 농업생산기반 정비

#### □ 밭기반정비

- 목 적 :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구축
- 지원 요건 : 조사된 대상지 중 밭 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30ha 미만지구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소요액을 집행
  - ※ 마을도로 위주 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 제외
  - ※ 경사지 밭지대의 경우 집중호우시 토양유실로 인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토양유실 저감시설 병행 추진을 고려

#### □ 대구획경지정리

- 목 적 : 규모화,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 지원 요건 : 대상지로 조사된 지구 중 50ha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50ha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조사 후 사업시행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소요액을 집행
  - ※ 환지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의거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환지비 산출요령”[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13(2012.10.22)호]을 참고하여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시·도별 지역여건 및 사업의 종류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환지소요품(인력 및 작업일수)

▶ 환지요원 1조 : 2인 ( 환지사1인, 보조원1인 )

▶ 환지소요품 산식

- 내업 일수 = 2.45(기본)+0.2524x1+0.0209x2+0.0096x3+0.0286x4

- 외업 일수 = 14.49(기본)+0.1631x1+0.0484x2+0.0047x3+0.0054x4

(범례: x1=면적, x2=종전 필지수, x3=환지 필지수, x4=종전 소유자 수)

\* 환지업무비중 : 일시이용지 30%, 본환지 70%

\* 환지소요품 산식은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환지비 산출요령”[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13(2012.10.22)호]의 업무량 산출표(참고2)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지역여건 및 환지업무 난이도에 따라 업무량 산출표(참고2)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지소요품 산식을 조정할 수 있음

## □ 논의 밭작물재배기반 지원사업

- 목 적 : 규모화, 집단화 된 논 지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을 통해 국제곡물가 상승 대비 및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
- 지원 요건 : 곡물·사료·특용·원예작물 등 밭작물 재배지역이 규모화, 집단화가 되었거나 가능한 논 지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규모화, 집단화 된 논지역을 대상으로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을 위한 송수관로, 농로개설, 암거배수 시설 등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

- 목 적 :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시·군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 지원 요건 :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준설 등 시·군 관할 수리시설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노후, 손괴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할 소규모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준설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집행

## (2) 어항기반시설 지원

### □ 지방관리 어항기반시설 건설

- 목 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조성
- 지원요건
  -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가 완료되고, 동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어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방과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목 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형어선인양기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보강)

###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사업

- 목 적 : 조수간만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 지원요건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보강)

### (3) 수산자원 회복사업

#### □ 양식어장관리사업

-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을 조성
- 지원 요건 : 공유수면에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어장 및 인근 수역, 패류 생산해역 등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퇴적물 수거·처리, 객토, 저질준설, 수로개설, 어장재배치, 해적생물 구제 등 어장정화·정비
  - 패류생산해역의 경계표시, 바다공중화장실, 항포구 화장실 등 위생관리 시설 설치
- ※ 어장정화사업의 지원단가는 전문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 적용
  - \* 생태기반조사 부적합, 내수면어업생산시설 사업부지 구입비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원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단,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거나 어장오염으로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 인공어초사업

- 목 적 :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하고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로 갯녹음 회복
- 지원 요건 : 인공어초시설 예정 해역에 대한 사전적지조사(생태기반조사 등)를

실시하였거나 갯녹음이 심화되어 복원이 필요한 해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자체의 인공어초시설, 어초어장관리

\* 유의사항 : 시험어초로 2년 이상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검증된 일반어초를 사전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사업추진

□ 수산종묘관리사업

○ 목 적 : 해면과 내수면 수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지원 요건 : 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이 필요한 연안해역 및 내수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종묘방류 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

\* 유의사항 : 종묘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묘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묘만을 방류

□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어린물고기 배양시설 건립으로 치어보급 및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 지원 요건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인공부화장시설 건립을 통한 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 종묘배양장, 연구동, 친환경양식시설, 전시실 등

\* 유의사항 :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부지를 선정·확보한 지자체에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이득섭 서기관 박종훈 사무관 안완기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6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 2. 사업 추진방향

- 단위(마을, 권역, 읍·면, 인근도시)별로 특성에 맞게 지역개발 추진
- 기존의 계속사업지구(기계화경작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

### 3.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0	'11	'12		
○ 주민만족도(%)	80.0	77.9	78.7	79.0	'13.1월(매년말기준)	■ 리서치 전문기관활용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	100	118	100	100	'13.1월(매년말기준)	■ 시군별 목표 및 실적

##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안)
합 계	1,390,927	1,330,283	1,329,210	1,316,504	1,316,504
보 조	973,649	931,198	930,447	918,246	918,246
지방비 등	417,278	496,214	398,763	398,258	398,258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자

- 일반농산어촌 117개 시장·군수(붙임3 참조)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2. 지원 자격·대상·자금의 용도

-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에 우선권 부여
  - \* 수산분야는 농업경영체 등록 미 실시 하므로 미등록 불이익 배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2(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참조

### 3.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 지원기준
  - 계속사업('09이전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 : 종전 보조율 적용
  - 신규사업(기간 1년 사업 포함)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지역소득 증대사업의 수익자(주민) 부담 기준
  - 소득 기반시설 : 20% 자부담(국비 56%, 지방비 24%, 자부담 20%)

###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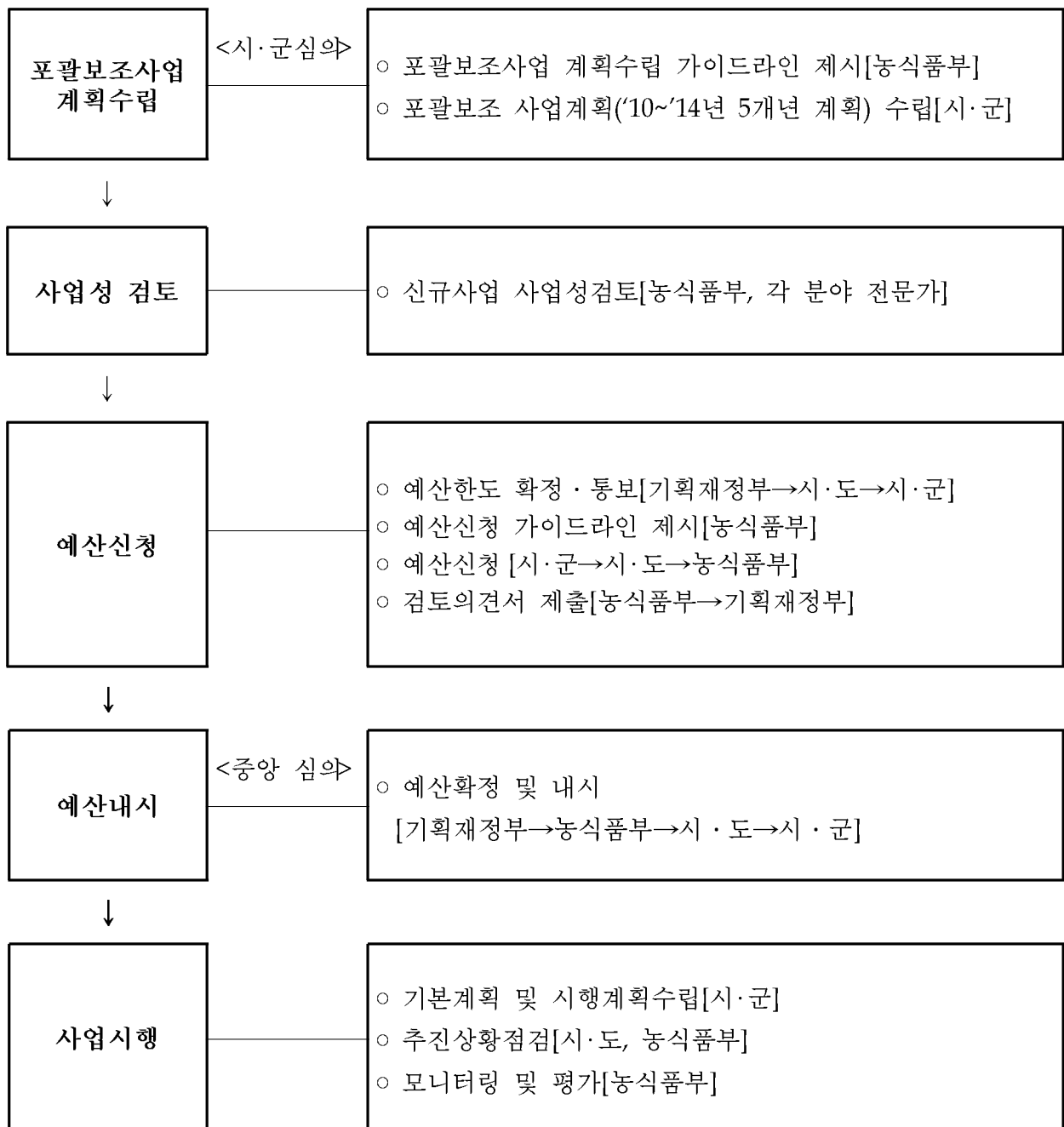
사업 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마을공동 소득창출	마을공동 문화조성
	읍소재지	면소재지					
지원한도 (억원)	100	70	50	30	실소요액	5	2
사업기간 (년)	3	3	3~5	단계별 설정	1	2	2

### 5.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 계속사업의 추진은 사업추진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시·도(시·군)

- 시·군은 신청한 사업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시·군에 배정된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시·군)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시·군)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

## 3.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도(시·군)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단위사업내 기능별(4개기능) 총 사업비(국고기준)의
      - 20%미만 :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조정
      - 20~ 50%미만 : 시·도화 협의 후 변경
      - 50%이상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 내역사업간 투자 예산액 조정은 협의대상 아님
  - \* 단위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 4개기능 :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사업시행 전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조치내용 등을 사전 공지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월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도(시·군)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필요시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원
- 시·도(시·군)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 《제재》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제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의 사용자 등은 제제조치(붙임2 참조)

####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측정계획 추후 별도 통보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별도 통보
  - 지역발전위원회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시에는 별도 통보 생략
- 시·도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방식에 의해 성과 평가를 실시

#####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 부여방안 강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군에 포괄보조금이 배분되면 즉시 예산신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 신규사업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절차를 거쳐 신청
  - 시장·군수는 공간정보시스템에 신규사업계획서 입력('13. 01. 20까지)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2월 25일까지 검토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 : 2월 26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 사업성 검토 : 4월 20일까지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시장·군수)는 수요조사, 사업안내 등을 미리 실시하여 사업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
- 사업신청시 참고사항
  -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읍소재지 : 이미 지원받은 읍(행안부에서 소도읍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은 지원제한. (단,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기 지원한 경우도 필요에 따라 지원검토)
  -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 중 면소재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 마을공동체, 기타아이디어사업] : 시·군당 유형별 각 1개 이내에서 지원(단, 신규마을은 추가가능)
  - 시·군 역량강화사업 : 시·군당 각 1개내 지원

####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 유형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창의아이디어	시군역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읍 [동]	면					
지원한도 (억원)	100이하	70이하	50내외	36이하	20이하	0.5이하	실소요액
사업기간 (년)	4	4	3~5	1~3	2~3	1	1

### 3. 기 타

-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매뉴얼”에 따른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내용

### 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목 적

-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원기준

- 사업비 : 3년간 10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
- 경관개선계획에 따른 사유시설물은 시설비의 20%를 수혜자가 부담
- 역량강화 사업은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시행가능(기본계획비·세부설계비는 10%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도시계획도로, 공용주차장, 주거환경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레포츠시설, 근린공원조성, 체육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재래시장 현대화, 향토시장 정비 등
경관개선	도시경관	경관계획수립, 가로경관정비, 간판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주민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 지역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지역축제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문화·복지·시설물관리 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 2. 권역단위 종합정비

○ 목 적

-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 지원기준

- 사업비 : 3~5년간 50억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은 전액보조(주택, 관공서 청사는 지원제외)
-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 시설비 총액의 20%는 수익자

- 부담(참여가구 전체가 공동 부담하여야 하며, 1인이 30%이상 부담 금지)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가 부담(농어업기반시설은 제외)
  - 사업기간

총사업비	30억원 미만	30억원~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사업기간	3년	4년	5년

- 사업비 한도 산출 :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권역규모	1	2	3	4	5
사업비(억원)	70억원	55억원	45억원	35억원	25억원
행정리	6개 이상	5개	4개	3개	2개이상
가구수	500가구 이상	400가구	300가구	200가구	100가구 이상

※ 아파트 거주가구는 총사업비 산정시 제외

○ 사업 세부내용

기능별사업	세부사업	세부내용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 상수도, 마을 하수도 등
	재해대비	세천정비, 사방시설, 옹벽설치, 안전휀스,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정비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향토자원 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정자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가공시설, 공동판매장, 공동 저온창고 등
	체험관광	마을조형물,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정비,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 설치, 간판 집단정비, 시장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교육훈련, 교육장비지원, 마을사무장·해설사·리더 양성, 선진지 경학 등
	마을홍보	마을홍보, 마케팅, 주민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홈페이지 구축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 3. 신규마을 조성

-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 등 농촌유입 촉진
- 사업내용 : 마을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공원·녹지포함), 마을회관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부문 : 마을정비구역지정 이후 소요되는 세부설계비, 마을기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비표조사비는 국고지원 대상 아님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20~29호 12억원이내, 30~49호 18억원이내, 50~74호 24억원이내, 75~99호 30억원이내, 100호이상 36억원이내
- 사업후보지 선정 요건
  - 사업부지가 사전에 확보된 지역
    - 최소 20,000제곱미터 이상
    - 사업예정 부지 100%
    - 농림지역 50%이내이고, 타법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부지확보 기준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토지 신탁 등 사업부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 경우  
- 다만,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된 마을정비조합원의 자격(사업예정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세대주)을 갖추어야 함

- 입주자가 사전에 확보된 지역
  - 최소 20세대 이상
  - 입주계획 세대수의 80% 이상
  - 도시민 50% 이상
    - \* 도시민 : 사업신청일, 입주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 마을정비조합이 구성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공공기관과 입주예정자간 협약이 체결된 지역

### 4.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 <농촌생활환경정비>

- 목 적 : 일반농산어촌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

- 사업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빈집철거정비포함),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등 주민편의시설, 환경보전시설 등(기존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포함)
  - \* 마을회관등 설치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5호이상 19호미만의 기반시설 설치(대상지역, 지원내용 등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준용)

#### <개발촉진지구>

- 사업내용 : 개촉지구로 지정된 낙후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부문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작지(논, 밭)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간 농로
  -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도로는 제외
-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지표수 보강>

- 사업내용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용수개발) 수혜면적 50ha 미만  
(지표수보강개발) 가뭄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여 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의 수리시설

※ 기타 세부사항 및 서식 등은 사업추진 매뉴얼 등 참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 등 집행기준

### 1. 적용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자부담)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위원회, 법인, 단체, 업체, 위원장 등

###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 ①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비(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 다만, 축사는 마을경관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화 시킨 공동축사의 경우는 지원가능(축사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② 마트·슈퍼 등 판매시설의 설치·관리비
  - \* 다만, 해당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하지 않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 ③ 숙박시설·식당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관리비
  - \*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의 설치비는 허용(체험·관광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한 영업용으로 이용시는 지원 불가)
- ④ 농기계·장비·선박·자동차 등 구입비
  - \* 다만, 장비는 시설에 부착된 설비성격의 장비는 허용
- ⑤ 농림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농약·비료·종자·부직포·파이프·비닐 등) 구입비
- ⑥ 정미소·미곡종합처리장·산지유통센터·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관리비
- ⑦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장비 구입비

- ⑧ 보조금으로 지원한 건축물의 관리기간 내 철거 및 리모델링비(신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임의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도 지원 제외)
  - \* 다만, 시·군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승인한 경우는 가능
- ⑨ 부지조성비(측량·분할·관련 세금 등) 및 토지구입비
  -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 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 (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회관 등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합시설의 용지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2014년부터는 지원 제외)
- ⑩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이외의 비용 및 마을기금 조성비
- ⑪ 마을조성(신규, 재개발, 분산마을정비 등)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주택 건축비, 신규 마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 ⑫ 타 부처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예 : 마을기업 등)인 경우 동일 항목의 사업비(홍보비, 교육비, 컨설팅비, 홈페이지 구축비,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 등) 전체

#### 4. 별도계정의 설정

- 사업비는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계정(별도 통장, 별도 회계)으로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단체일 경우는 단체대표자 명의로 개설
-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카드는 법인명이나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사업비 지급은 카드 사용을 원칙(카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계좌입금)

#### 5. 사업비의 집행원칙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잠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 6. 계약

-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시·군은 계약·구매 등을 위하여 사업자나 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그 계약 절차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7. 자부담금의 집행

-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자부담 금액의 1/2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량이 1/2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라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 시·군은 자부담금의 집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추진된 사업인 경우 투입된 사업자금은 공동(보조금, 자부담)으로 투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정 품목·사업에 자부담을 선택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자부담금을 초과 투입한 경우도 동일)

## 8.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9. 사업 점검

-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연 1회 이상, 시·군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 10.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약정 해지,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1.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 12.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법인(단체)이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임차나 지상권·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 토지 등기는 시장·군수, 법인(단체) 명의여야 하며, 개인 명의를 지원 제외

## 13.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승용차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14. 검사**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5.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6.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7.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일반농산어촌지역(117개 시·군) 현황**

구 분	해당시·군
경 기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 원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 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 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군, 연기군, 홍성군, 태안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 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 남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영암군,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 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 남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 주	제주시, 서귀포시

\* ( )는 성장촉진지역임

## 기능별 세부사업 내용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세부 내용	비 고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재해대비	하천(세천)정비, 옹벽설치, 안전휀스, 기타 안전시설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 재개발·재정비, 신규마을조성, 전원주거단지 등	
	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시골장터정비, 향토자원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설치, 원두막, 심신단련장 등	
지역 소득 증 대	농업기반	기계화경작로, 소규모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농기계창고 등	
	소득기반	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저온저장고, 다목적창고 등 *토지구입비 지원대상 아님	*자부담 20%
	체험관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장승설치, 방앗간복원, 간이천문대, 야영장설치, 생태학습장, 폐교 리모델링등을 통한 농어촌 체험시설 설치 등 *체험관광 등을 통한 수익창출 목적의 토지구입비, 공공목적 아닌 시설의 토지구입비는 지원대상 아님	
지역 경 관 개 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보호수정비, 생울타리조성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조성,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도시경관	테마가로정비, 안내간판설치, 집단적인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 재래(5일)시장정비 등	
지역 역 량 강 화	교육·훈련	지역주민 교육훈련,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마을해설사양성, 마을사무장양성, 마을리더양성, 국내외 선진지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마케팅, 인구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구축, 정보화교육, 공동이용 전산기기, 귀농프로그램 등	
	부대비용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세부설계비 등 *신규마을조성은 세부설계, 재해영향 평가부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입니다.

###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 김경미 주무관 조안태	044-201-2181 044-201-2185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역농수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 육성

###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단 100개소 육성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핵심농산업 육성을 통해 사업단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제고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사업단 매출액 증가율(%)	-	-	-	-	익년2월	■ 참여업체의 장부상 매출액 직접 조사
▪ 영업이익 후자사업단 비율(%)	-	-	-	-	익년2월	■ 경영성과 조사 결과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204,680	64,350	55,510	36,440	29,680
보 조	103,450	32,350	27,910	18,380	15,000
지방비	101,230	32,000	27,600	18,060	14,680
자부담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법인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본 지침에서는 사업단으로 일원화)

- 구성범위 :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사단법인 권장)
- 역할 : 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단에는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단에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사업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 위원회에는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의사 결정을 하도록 사업단 정관에 명시
- 지역농협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 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 농어가 계열화, H/W이용 제품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 권장

### 3. 지원대상

-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H/W)

— < 지원 배 제 > —

- 부지매입비, 농어가 및 작목반의 개별소유시설,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비
  - 단, 음식점은 농·축협 또는 사업단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생산되는 제품(타 사업단 제품 포함)을 판매할 경우에 한하여 부분인정
- 생산기반정비사업
  - 농가 단위 생산재 투입(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밭소 생산, 정액지원 등)
  - 생산시설현대화(관정, 축사환경개선, 조사료 생산 장비, 퇴비제조시설 등)
- 타 농림수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
  - APC(거점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DSC(건조저장시설), 농기계임대, 가축수송 특장차량,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등
  - 브랜드경영체사업(농산물, 축산 등)에서 기 지원(시설, 운영지원 등) 받은 경우
- 동일한 목적일지라도 타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물, 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 장비 등
  - 단, 사업단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건물 및 시설장비는 제외
- 생산하고 연계되지 않고 단순히 식품업체가 참여업체로만 구성된 사업단, 좌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
- 행사, 홍보, 마케팅 등 추진시 주체로서 공동참여는 가능하나, 지원 등을 통한 간접참여는 배제
  - ※ 예시)지역특산물 축제시 주체로서 참여가능. 다만, 단순 예산지원 등은 배제
-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순홍보관, 박물관 등은 타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 연구개발 사업은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용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등 시설물은 부지확보(부지사용 승락서), 용도변경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사항(검토의견)을 확인하여 1년차에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제외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분야
  - 지역 내 개별 농어업 경영체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산·학·연·관 결집체를 육성하여 농수산업 혁신체계 구축

사업내용	세부내역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참여 농어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사업단 사업계획·추진방향 등 컨설팅 및 평가

○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림수산물 개발과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및 마케팅 추진

사업내용	세부내역	
S/W	브랜드 개발 육성	브랜드 개발(브랜드경영체사업과 중복은 제외) 및 관리
	R&D 지원	현장애로 기술지원, 상품개발 기술지원 등
	홍보 및 공동 마케팅	홍보프로그램 운영, 유통전문 조직 구축, 공동 마케팅 등
H/W	공동이용시설	체험관, 전문판매장, 제조가공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등 공동이용시설

\* H/W분야는 지원조건을 강화하여 타 농림사업과의 불균형 최소화

- 지원분야 : 해당 품목 등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로써, 건립 기간이 2년 이내인 공동이용시설로 전체사업비(국비기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 검수(단, 지자체에서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진)
- 사업단은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 기계·장비·물품 구입시 시장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실거래가격, 시장물가정보지 등 산정근거 확보)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준수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공사 등을 의뢰하여 추진 / 지자체는 정책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강화
- 홍보 추진시 여비, 식비 등의 간접경비는 40%이내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편성사업)
- 지원기간 : 5년 지원('14년 사업단부터 적용)
  - \* 매년 평가를 통해 기본점수에 미달하거나 부당집행 적발시 사업중단 조치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 부과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단별 5년간 평균 30억원(국고) 내외
  - \* '14년 신규사업부터는 국고지원 연부액 변경 : 6억원(1년차), 10억원(2년차), 6억원(3년차), 4억원(4년차), 4억원(5년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전년도 8~9월

#### 시·도(지자체)

- 사업계획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농식품부에 제출
  - \* 신청제외 사업단 : 1차 농산물 원물만 유통하는 사업단(농가로부터 수탁·매수하여 판매 대행하는 경우), 가공식품 생산이 없는 사업단, 사업 종료후 해체 가능성이 높거나 자립운영이 불가능한 사업단 등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 사업단

- 신청 사업단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별지1호」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참조)
  - 복수 시·군 범위 사업단 : 거점 시·군 또는 시·도에 신청
  - 광역 범위 사업단 : 해당 시·도에 신청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1~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 사업부서 사전검토 : 농식품부 정책방향과의 일치 여부, 기존 농림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별도 통보)
-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전년도 12월
  - 전문평가단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평가 심의회에 상정, 사업대상 예비선정
- 사업대상 예비선정 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통보된 사업에 대해 시·도에서는 사업단에 전달하고, 사업단이 작성한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실행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전년도 4월~12월)
  - 사업단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 시·도(지자체)

- 사업단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단

-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 주관기관(시·도,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세부사업비의 30%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로 자금을 배부하고 시·도는 사업단으로 자금을 교부

###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사업단)가 아닌 당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농·축협 등에서는 보조금집행 불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사업의 이월을 한 경우 이월명세서(사업별 금액 및 사유 등)를 작성하여 3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지자체, 기타 법인, 개인에 한하여 교부하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집행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담당부서, 사업단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받은 사업단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 여부를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의거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사업단**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서식 별도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중 지상권 등기가 가능한 시설물은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하고 사용계약을 체결(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지분에 따라 공동등기 가능)
    - 기존의 시설물의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공동등기 가능
  - 지상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사업단 소유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단에서 관리
    - \* 당해 보조사업으로 기 취득(2005년 이후)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사업단 또는 지자체 소유로 소급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1)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2) 당해 사업으로 기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은 선정당시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을 수시로 실시

## 6. 성과측정단계

-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농수산기업체의 장부상 품목 매출액을 토대로 익년 1월까지 도출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모니터링 》

#### 시·도(지자체)

- 사업단은 년도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사업단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 《 사업평가 》

####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사업단별 ”전년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서식 별도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 ‘14년도 지원 사업단의 경우는 ’15년도에 작성하여 제출
- \* ‘11년도 지원 사업단의 경우는 ’14~’15년도 추가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서식 별도 통보)

###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2012.10월부터 2014년도 사업대상 선정 절차 기 진행 중)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청서**

(단위: 백만원)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사업단	사업단명칭	주소						
		총괄책임자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명	전화	Fax	
	참여기관 (총계)	産	농협, 영농법인, 식품기업 등						
學		대학							
研		연구소							
官		지자체							
신청내역	사업명								
	사업유형	해당사항 없음							
	사업목표								
	주요사업내용								
	연차별 투·융자계획	구분		'14	'15	'16	'17	'18	계
		보조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천원)									
분야별 투·융자계획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단(법인의 경우)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과장 신성암 사무관 이동홍	044-201-1581 044-201-1584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 \* 향토산업이란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김포 인삼쌀맥주관광사업, 고흥 유자를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 등)
- \*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 무형의 특산제품 기술 문화 등 지역 부존자원을 말함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촌정비법 제72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화 지원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참여업체 매출액 증가율 (%)	-	-	-	-	2013.1	■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일자리 증가율 (%)	-	-	-	-	2013.1	■ 시·군별 목표 및 실적누계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52,596	81,200	81,800	87,600	527,200
국 고	76,298	40,600	40,900	43,800	263,600
지방비·자부담	76,298	40,600	40,900	43,800	263,6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농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 농어업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3.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
-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관련 사업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 전통농어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 전통전래양식의 상품화
  - 농·수·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 지원분야별 사용용도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 지원배제 사항 >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예 :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의 운영비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으로의 사용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지방비 부담의 경우, 부담액의 일부를 사업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 (예시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14년 신규사업부터는 자부담율 최소 20%이상)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3년
  - \* '14년 신규사업부터는 지원기간 4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연차별 국고지원: 3(1년차), 5(2년차), 7(3년차))
  - \* '14년 신규사업부터는 국고지원 연부액 변경 : 4(1년차), 6(2년차), 3(3년차), 2(4년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도에 시달 : 전전년도 7~8월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별지 제1호 서식] 작성·제출 : 전전년도 9~10월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부실 또는 부적절한 사업계획은 제외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심사·평가 : 전전년도 11~12월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 사업계획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별도 통보)
- 지원대상 예비선정 : 전전년도 12월

- 전문평가단 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심의회에 상정, 사업대상 예비선정
- 사업대상 예비선정 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군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전년도 4월~12월)
  -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실시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확정
- 시·군은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신청
  - 시·도는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결과가 지원 목적, 관련 법령·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 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비치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비 집행실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함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함(서식 별도 통보)
  - \* 사업검정 및 정산시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 등)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6. 성과측정단계

- 농촌지역의 부존 향토자원을 지역전략 핵심산업으로 발굴·육성한 실적 등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모니터링(사업추진 중간단계 평가)》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반기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8월말, 익년 2월말(서식 별도 통보)
  - 시·도는 시·군의 자료를 확인·검토하고,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취합, 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등 측면 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정 등을 해당 지자체 요구

## 《 성과평가(사업완료 후 평가) 》

### 시·도, 시·군 (지자체)

- 시·군은 사업추진 완료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 (서식 별도 통보)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 익년도 1월까지
- 시·도는 시·군 사업결과보고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식에 의해 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서”를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서식 별도 통보)

## 《 환 류 》

-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가점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사업 부진시에는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특히, 모니터링, 성과평가결과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 조치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사항 없음(“2012.10월부터 2014년도 사업대상 선정 절차 기 진행 중)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사항 없음

### 3. 2015년도 이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년 신규사업부터 광역사업(2개시군이상 연계사업)은 연차별로 확대하고,

시군단위사업은 단계별로 축소('17년 신규사업부터는 광역사업만 시행)

○ 2015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지구 선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 ('14년 신규사업지구까지) 시·군·구의 사업 신청, 시·도의 예비검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세부실행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및 검토·조정 → ('15년 신규사업지구부터)시·군·구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도에서 최종 선정, 시·도에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및 검토·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성과 환류를 통한 시도별 예산지원 한도를 조정



[별지 제1호 서식]

##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안)

### I. 사업개요

####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사업 필요성·목적 등

#### 2. 향토자원 현황

가. 향토자원의 성격

나. 산업화 가능성

#### 3. 사업목표(성과목표)

#### 4. 성과지표

#### 5. 추진전략

#### 6. 중장기 투자계획

### II. 사업추진 체계

- 사업추진단, 지원조직, 외부자문단 구성·운영 등

### III. 세부실행계획

#### 1. 사업내용

#### 2. 사업기간

#### 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 4. 기대효과

#### 5. 연차별·보조사업별 투자계획

#### 6. 단위사업별 설명자료

< 붙임 > : 연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사업단·참여기관 협약서, 각종 증빙  
자료 등

※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은 사업대상 선정절차 추진시 지자체에 별도 통보

<b>99</b>	<b>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강거영	044-201-2611 044-201-2622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지역별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거점단지 조성
-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통하여 생산어업인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도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단지 조성율(%)	20.0	-	4.0	-	'14.2월	(완료단지 개소수/계획단지 개소수)*100
▪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가율(%)	105	-	-	-	'14.2월	거점단지 완공지역의(평가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평가 전년도 수산가공품생산량)*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22,512	17,518	28,720	33,500	30,800	73,894
보 조	11,256	8,759	14,360	16,750	15,400	36,947
지방비	10,859	8,359	13,960	15,750	14,697	36,947
자부담	397	400	400	1,000	703	-
○ 부산	1,000	2,300	-	-	-	-
- 보 조(50%)	500	1,150	-	-	-	-
- 지방비(50%)	500	1,150	-	-	-	-
○ 부안	1,000	2,000	2,000	4,900	-	-
- 보 조(50%)	500	1,000	1,000	2,450	-	-
- 지방비(50%)	500	1,000	1,000	2,450	-	-
○ 고창	-	500	3,520	2,000	2,200	6,780
- 보 조(50%)	-	250	1,760	1,000	1,100	3,390
- 지방비(50%)	-	250	1,760	1,000	1,100	3,390
○ 군산	-	-	-	600	8,968	9,932
- 보 조(50%)	-	-	-	300	4,484	4,966
- 지방비(50%)	-	-	-	300	4,484	4,966
○ 목포	9,544	2,000	10,700	-	-	-
- 보 조(50%)	4,772	1,000	5,350	-	-	-
- 지방비(50%)	4,772	1,000	5,350	-	-	-
○ 여수	3,968	4,000	4,000	10,000	7,032	-
- 보 조(50%)	1,984	2,000	2,000	5,000	3,516	-
- 지방비(40%)	1,587	1,600	1,600	4,000	2,813	-
- 자부담(10%)	397	400	400	1,000	703	-
○ 영광	1,000	2,000	2,000	3,000	2,000	-
- 보 조(50%)	500	1,000	1,000	1,500	1,000	-
- 지방비(50%)	500	1,000	1,000	1,500	1,000	-
○ 포항	6,000	4,718	6,000	4,000	4,200	13,082
- 보 조(50%)	3,000	2,359	3,000	2,000	2,100	6,541
- 지방비(50%)	3,000	2,359	3,000	2,000	2,100	6,541
○ 영덕	-	-	500	9,000	5,000	10,500
- 보 조(50%)	-	-	250	4,500	2,500	5,250
- 지방비(50%)	-	-	250	4,500	2,500	5,250
○ 울진	-	-	-	-	600	16,400
- 보 조(50%)	-	-	-	-	300	8,200
- 지방비(50%)	-	-	-	-	300	8,200
○ 충북	-	-	-	-	800	17,200
- 보 조(50%)	-	-	-	-	400	8,600
- 지방비(50%)	-	-	-	-	400	8,6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협
- 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단, 충북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사업시행기관은 충청북도임

###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가공, 유통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자체 및 수협

### 3. 지원대상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시설 신축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190억원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20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사업기간 : 3년(201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 사업비는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수 협

- 사업을 희망하는 수협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2.28일까지>
  - 신규사업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
  - 계속사업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공정율 자료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등
- 시·도는 시·군·구(또는 시·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증빙서류를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 신규사업 :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기본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기존 수산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운영방안 등
  - 계속사업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검토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실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사업계획 평가기준 :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투자효율성 등(별도 통보)
-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시·군·구) 및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시·군·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시·군·구) 「수산조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시·군·구는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절차
  - 시·군·구는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구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거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장비 ○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반기 익월 10일까지>

**6. 성과측정단계**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총 계획단지 25개소)의 조성률 측정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개발되는 수산가공품 및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과 취급물량 변화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사업공정율,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전문평가단의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년도 사업 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수요를 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b>100</b>	<b>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강거영	044-201-2611 044-201-2622
소속기관/단체	지자체 수산관련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으로 수출 및 내수제품 안전성 확보
- 수산물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및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위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수산가공업체 HACCP 신규등록업체수(개소)	47	27	29	-	'14.2월	09년부터 지업업체 중 HACCP 신규등록 업체수
▪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 가율(%)	105	95.6	103	-	'14.2월	('13년도 수산가공품 생 산량/12년도 수산가공품 생산량)×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322,909	81,793	71,317	84,780	392,156
보 조	113,292	26,138	25,855	29,246	145,647
지방비	106,093	25,718	24,555	27,660	135,647
자부담	103,524	29,937	20,907	27,874	110,862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98,701	73,793	49,017	65,720	252,156
- 보 조(30%)	60,518	22,138	14,705	19,716	75,647
- 지방비(30%)	59,189	22,138	14,705	19,716	75,647
- 자부담(40%)	78,994	29,517	19,607	26,288	100,862
○수산물처리저장시설	76,800	4,200	13,000	15,860	100,000
- 보 조(50%)	33,850	2,100	6,500	7,930	50,000
- 지방비(40%)	27,980	1,680	5,200	6,344	40,000
- 자부담(10%)	14,970	420	1,300	1,586	10,000
○굴박신장공장 시설	22,400	-	-	-	-
- 보 조(30%)	6,720	-	-	-	-
- 지방비(30%)	6,720	-	-	-	-
- 자부담(40%)	8,960	-	-	-	-
○젓갈타운조성	19,286	-	-	-	-
- 보 조(50%)	9,643	-	-	-	-
- 지방비(50%)	9,643	-	-	-	-
○전북진주산업센터	2,222	-	-	-	-
- 보 조(50%)	1,111	-	-	-	-
- 지방비(50%)	1,111	-	-	-	-
○김가공공장현대화사업	3,000	-	-	-	-
- 보 조(40%)	1,200	-	-	-	-
- 지방비(40%)	1,200	-	-	-	-
- 자부담(20%)	600	-	-	-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500	3,800	9,300	3,200	40,000
- 보 조(50%)	250	1,900	4,650	1,600	20,000
- 지방비(50%)	250	1,900	4,650	1,600	20,0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장·군수·구청장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 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미제출
- 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설립 후 식품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른 사업신청서,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단, 수협은 제외(2014년도 사업부터 시행).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3년도 사업부터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3.1.1 이후 위반업자부터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3년도 사업부터 시행)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 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미제출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수산사업지원신청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3년도 사업부터 시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3.1.1 이후 위반업자부터 적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3년도 사업부터 시행)

####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시설부지를 확보한 지자체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 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
- 지원 제한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2013년도 사업부터 시행)

### 3. 지원대상

####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존 시설에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
  -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교체하는 가공기계류 구입 및 설치장소 시설·보완

####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냉동·냉장시설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 \* 다만,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물부과 협의하여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 미만으로 설비할 수 있음

#### 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수산물 공동가공을 위해 필요한 가공시설 및 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의 신축 및 현대화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구 분	사업량(개소)
○ 수산물산지가공시설(97)	부산시(2), 인천시(1), 경기도(1), 강원도(4), 충청남도(8), 전북도(3), 전남도(56), 경북도(4), 경남도(12), 제주도(4)
- 에너지절감 시설 도입(25)	전남도(25) : 고흥군(5), 장흥군(3), 해남군(12), 진도군(2), 완도군(3)
○ 수산물처리·저장시설(11)	인천시(1), 강원도(1), 충청남도(4), 경남도(1), 제주도(4)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사업(2)	강원도(2)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 내 한함.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시·군·구

- 시·군·구는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적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사업 신청인

-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군·구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를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2.28일까지>

- 시·군·구는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에 제출하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예시 : 공동가공시설 > 성장유망 경영체\*\* 시설 > HACCP시설 > 기타

\*\* 성장유망 경영체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국가인증 수산식품(품질인증, 친환경, 지리적표시, 식품명인, 이력추적 관리) 생산업체, 식품제조 관련 특허 등 신기술 인증 업체 등

##### 시·도

-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검토(기본요건 충족여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의 적정성)하고,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지역간 과잉·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산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농림

수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종합사업계획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필요시 공개발표 평가 병행 또는 대체) 실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사업계획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별도 통보)
-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에 따라 지방비 확보
-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당해연도 예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시행 당해연도 4월 10일까지>
  - 시·군·구별 확정된 사업량 및 예산안을 토대로 사업신청시 시·도에 제출한 우선순위 선순위자부터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시행 당해연도 5.31일까지>
-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려는 경우 사업포기서를 시·군·구에 제출<사업시행 당해연도 5.31일까지>

###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사업신청시 시·도에 제출한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후순위 사업자 추가 선정<사업시행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 다만, 후순위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공장 설립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지역(시·군·구)에서의 국고 보조금액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 송금 요청
  -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5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시설등록 현황 파악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전문평가단의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변상문 주무관 정순일	044-201-2223 044-201-2224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유통기획팀	팀 장 이한준 차 장 신형민	02-6300-1471 02-6300-1472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팀 장 현종철 차 장 서성권	02-2080-6351 02-2080-6357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팀입니다.(문의처 02-6300-1472)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 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산지유통센터 380개소 건립을 목표로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센터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원예농산물 취급비중(%)	23.0	16.1	17.9	20.5	2014.4	(APC 처리액 / 원예 농산물 생산액)×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2010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이후
사업량(개소)	380	318	12	15	7	28
사업비(억원)	995,077	580,936	55,359	65,662	58,624	234,496
- 국 고	402,997	268,736	17,120	21,141	19,200	76,800
- 지방비	294,760	170,575	17,136	19,699	17,470	69,880
- 자부담	297,320	141,625	21,103	24,822	21,954	87,816

\* 사업량은 신규지원 개소수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 산지유통종합계획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

#### 나. 지원대상 사업자

##### (1) 기본요건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 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2) 사업규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 (3) 시설규모

- 보완시설(보완) : 최근년도 가동율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15억원 이상인 시설
  - \* 가동율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의 증축 및 보완
  - \* 에그릭스 시스템에 등록('13년 3월 31일 기준) 되었고, APC 역량평가 보고서의 보완요청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 APC 역량평가 : 실시기관이 해당 분야의 평가결과 보고서를 주관기관(농협중앙회)과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2개 분야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실시기관. ①시설·공정 분야 : 한국수확 후 관리협회 등
  - ②위생·안전 분야 :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등
- 실시기관은 해당분야에 대한 세부점검사항 및 보고서 양식 등을 사전 aT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 비용 : 부문별 각 100만원(국고 50%, 자부담 50)
- 평가절차 : 사업자(주관기관에 평가신청 및 비용납부) → 주관기관(평가대상 확정 및 평가요청) → 실시기관(평가수행 및 보고서 작성 등) → 주관기관(평가결과 취합 및 제출, 비용지원 등) → aT(APC 선정 반영)
- 신규시설(신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이 각각 660㎡ 이상
  - \*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1,650㎡ 이상이면 가능
  -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산지유통시설(330㎡ 이상)이 없는 경우
  -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공통 :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다. 별도요건

-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5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이 5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
    - \* 단, 2014년 사업신청자부터는 총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요건 강화 예정
    -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3월 31일 기준임
    -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사후 관리기간 동안도 충족하여야 함)
    -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합사업단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연결 인정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 제한 기준**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중단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 시설 지원 가능
    -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율 10개월 이상
    - ③ 취급액 100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④ 영업이익률 5% 이상
- \* 대형 APC : 거점APC, 원예브랜드,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지역은 향후 5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5년간 지원제한(11년 사업자부터 적용)
- 공공유형은 지원 제한(단, 공공유형을 일반유형으로 보완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사업자 및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년부터 적용)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포기년도	제한기간	비고
충북	보은	(주)속리산유통	2011	2014	사업자
전남	나주	남평농협	2012	2015	사업자
전남	장성	학사농장영농법인	2011	2014	사업자
경남	밀양	얼음골유통영농법인	2010	2013	사업자
경남	의령	의령농협	2011	2014	사업자
제주	제주	제주친환경영농법인	2010	2013	사업자
제주	제주	인성영농법인	2012	2015	사업자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13.1.1 현재 위반사업자부터 적용)

시도	시군	사업자	위반년도	제한기간	비고
대구	달성	달성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춘천	감자바우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평창	재산영농법인	2012	2015	
강원	정선	그림바위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공주	통천포과수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논산	참후레쉬	2012	2015	
충남	보령	백제농산영농법인	2012	2015	
충남	아산	엽작배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무안	등대영농법인	2012	2015	
전남	무안	매봉농업회사법인	2012	2015	
전남	영암	누우리영농법인	2012	2015	

시도	시군	사업자	위반년도	제한기간	비고
전남	함평	친환경영농법인	2012	2015	
경북	김천	김천유통영농법인	2012	2015	
경남	합천	덕곡영농법인	2012	2015	
제주	제주	크린영농법인	2012	2015	

-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12년 예산은 2년, ‘13년 예산부터는 5년 적용)

시도	시군	미 확보년도	제한기간	비고
전남	무안	2012	2014	
전남	신안	2012	2014	
전남	함평	2012	2014	

- 사업추진 부진 지역은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 매년 3/4분기에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결정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호, 5호, 6호)
  - \* 임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급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책임감리비,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및 부대설비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집하·선별·포장장 등과 저온시설은 각각 660㎡ 이상이어야 함. 단, 품목에 따라 저온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 총 규모가 1,650㎡ 이상이면 가능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저온저장고는 가급적 ①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 ②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③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
- \* 원활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의 3배 정도 설계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 선별기 등은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총사업비 15% 이내 제한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등),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및 보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제1항(별표3의6)에 의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5. 지원형태

- 재원(국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단, 신설(신규시설)은 보조 70%(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1년
  - \* 단,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지연되어 조기 완료할 수 없는 경우 2년 사업으로

추진가능(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50%, 2년차 5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 : 신규시설 6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이상), 보완시설 40억원 내외(최소 15억원 이상)
  -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료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 신규시설은 APC가 없는 지역 및 품목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선정

#### 농수산물유통공사(aT)

####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및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부 보고 및 각 시·도에 통보(전년 1월)
  - \* 평가 및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결정(전년 1월초)

#### 나. 평가추진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 4월)
  - 사업자 선정은 평가단계별 통과기준<sup>①</sup> 이상시 선정하고 가중치<sup>②</sup>에 따른 종합점수 결과로 순위 선정
  - 서면평가(①70점, ②40%) → 공개평가(①80점, ②60%) → 대상 시·군 선정 및 순위 결정

####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 2단계 : 서면평가 >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대한 서면평가
  - 주 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단, 전년도 물가안정 우수 시·군은 서면평가 면제)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및 종합계획 참여 사업자
  - 평가내용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계열화, 산지유통시설 통합운영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예비대상자로 선정

**다. 선정 및 결과통보**

- 산·학·연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우선순위 등을 최종 검토 후 종합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통보(전년 4월말)
  - \* 선정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임의로 변경금지, 참여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및 투융자 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보완 평가 시행(서면평가 면제, 공개평가 실시)

**시·군**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 각 시·군은 산지유통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3.15까지)
  - \* 시·군을 중심으로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내 산지유통조직간 협의를 통해 향후 5개년간 지역내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및 유통 시설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협조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http://www.at.or.kr)에 게시

**< 시·군 단계별 진행방법 >**

구 분	추 진 내 용
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청 사전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청 담당은 산지유통시설, 산지유통조직, 기타 현황파악 후 통합조직 기획</li> </ul> </li> <li>○ 부문별 전문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대상조직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가를 협의회 참석</li> <li>- 운영방안, 시설도입 등에 대한 자문단 역할 수행</li> </ul> </li> </ul>
기본방향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 합의점 도출 후 합의된 사항을 문서화</li> <li>- 조직구성 및 운영, 시설도입 규모 및 범위, 사업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도출</li> <li>-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있는 참여조직 최종 선정</li> <li>○ <b>통합마케팅조직 선정시 가급적 농협과 법인(유통형)은 분리 추진</b></li> </ul>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사업계획 수립</li> <li>○ 최종 수립된 사업계획서는 협의회 검토를 거쳐 제출</li> </ul>
사업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된 시·군은 협의회를 통한 사업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통합 및 계열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존 마케팅 대행조직(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에 나머지 조직이 참여하는 방안 모색</li> <li>2. 통합조직이 없는 시·군은 신규통합조직 구성</li> </ol> </li> <li>- 출자 및 운영 : <b>가급적</b> 1개 참여조직이 전체 출자 지분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단, 참여조직이 3개 이하일 경우 1개 조직이 <b>가급적</b> 50%이상을 넘지 않도록 조정)</li> <li>- 시설도입 : 사업의 컨셉을 설정하고 향후 5년 사업방향에 맞게 도입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시설·장비 도입</li> </ul> </li> <li>○ 초기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통합 및 시설도입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불일치될 경우 ①시·군청을 통해 조정하고 ②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의하여 결정(단, 산지유통시설 지원 원칙에 어긋날 경우 사업비 회수조치 등 강한 페널티 부여)</li> </ul> </li> </ul>

**시·도**

-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 신청
  - 각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산지유통종합계획서에 대해 자체 검토(협조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를 실시하여 적정한 사업계획에 한해 aT에 제출(전년 3.31까지)

**2. 사업신청단계(개별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신규 및 보완)

**사 업 자**

- 예비 사업 신청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전년 1.31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를 통과한 사업자는 APC 역량평가 실시기관에 평가를 신청(4.10까지)
- 사업신청서 제출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역량평가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 6.5까지)
  -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중앙회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APC역량평가(보완사업에 해당) 및 농정심의회, 투융자심의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서 구비서류(A4 제본) >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법인조직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건립 의제),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10종)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http://www.at.or.kr)에 게시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 사업신청단계(6월15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30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2.10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와 지방비 투융자심의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에그릭스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전년 6.10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전년 2.15까지)
  - aT의 사업신청 기본요건 진단결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신청 자격 부여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 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를 에그릭스 시스템에서 검토하여 시·도 마감처리하고, aT에 제출(전년 6.15까지)

###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차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취급액 30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5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운영실적이 5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
  - 신청철회 및 포기경력, 허위서류제출 사업자와 시군은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의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에그릭스 시스템 등록('13.3.31 기준) 및 APC 역량평가 통과 여부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제외

## 3. 사업자 선정단계(개별사업자 평가·선정)

### 농수산물유통공사(aT)

####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중앙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중앙회로 통보(3.31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실시(전년 6~7월)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sup>①</sup> 및 가중치<sup>②</sup>에 따라 선정
  - 서면평가(①70점, ②40%) → 공개발표평가(①80점, ②60%) → 우선순위 및

예산범위내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

**< 2단계 : 서면평가 >**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공개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공개발표 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발표 평가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전년 7월말)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전년 9월초)
  - 주 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는 자부담 추진(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사업비 심의 시,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통한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기본조사설계 미 실시 사업자는 선정 제외
  - 사업신청년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완료 사업자에 한해 사업비 확정 및 지원

####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 10.15 전후)
  - 사업부지 및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비 가내시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별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 사업부지 및 자부담, 지방비가 미 확보된 경우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비 확정에서 제외

##### 사업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 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aT 심의·통보)”의 대분류 항목(①설계 및 가설공사 ~ ⑨위생설비) 기준으로 15% 이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 단 15%를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향후 5년간 해당 시군 및 사업자는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수확후 관



리기술 전문교육과정(aT 유통교육원 등)을 이수해야 함

###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상세한 APC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방법은 유통정책과-3400호 (2012.08.20) 참조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기 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유통정책과-3400호(2012.08.20) 참조)
  - (원칙1) 복합시설(집하·선별·세척·전처리·포장·가공·예냉·저장 및 출하 등)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1순위자 우선 협상방식의 경쟁입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으로 추진
    - 단, 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 소규모 시공분야는 최저가 입찰방식 추진
  - (원칙2)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①시·도 지역제한, ②제안서, ③농업분야 시설 경험, ④최근 3년 시공 경력 등)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분야는 신속한 사후관리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역제한(시·도)을 실시하여 각 지역별로 전문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 \* 사업자와 시·군 홈페이지[공고-유관기관]에 최소 10일 이상 입찰공고 게시
  - \* 수의계약 및 위탁시행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군(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 후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참조)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 실시
  - 단,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등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후 농수산물유통공사(산·학·연 전문심사단)의 설계적격 심사를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합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는 검증장비 구매
      - \* 사후관리를 위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구매하여야 함
    - 비파괴 선별기(당도, 산도, 색상 등)는 업체별 표준모델에 대해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판정된 모델만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함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승인 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시행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시행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등 변경 : 시·군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aT의 승인 후 시행
  - 시·군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에 보고
- 세부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비 조정 승인은 시·군은 30% 이내, 시·도는 50% 이내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으나, 50%를 초과 조정할 경우에는 aT의 승인 필요
  - \* 실시설계 시, 당초 사업비가 예정사업비의 65~135% 범위 이내일 경우 세부 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유통정책과-2988호(2012.07.19) 참조)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aT에 제출
  - \* 향후 5년간 해당 시군 및 사업자는 신청 및 지원제한

## 5. 자금배정 단계

###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나. 감 리

## 사업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저장시설 중 기계설비는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 또는 공조냉동기계설비 전문업체(기술사 보유)가 건축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설계·감리 수행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설치 시 전문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수확후관리협회 등)의 기술검토(자문 등)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 다. 준공검사

## 지자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 준공된 시설은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 \* 상담 및 기술자문은 수확후관리기술 홈페이지([www.postharvest.or.kr](http://www.postharvest.or.kr)) 활용가능

## 6. 이행점검단계

### < 사후관리 >

##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참조
-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6.30까지)
- 사후관리 해제 전에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거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항 참조)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을 달리할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aI에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11.1) 적용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8조 요건에 맞게 사후관리 실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점검반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로 구성
-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 다음연도부터 매년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종합계획 미 이행 시, 재평가 또는 선정 취소 등 조치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사업대상자 선정 3년 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자의 경영성과를 평가 (산지유통종합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설명회 개최 후 확정(4월)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만족도 조사>**

- 산지유통시설 운영실태, 운영상의 문제점, 경영성과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2월중(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조사대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책임자 등 관련 종사자 약 3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설문지 배포 등을 활용하여 조사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협조)

##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 산지유통종합평가 >

#### 가. 원칙

- 매년 정부로부터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 나. 2012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대상 : 농림수산물부에서 지정·관리중인 산지유통센터
  - \* 신규사업자는 APC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1~2월
- 평가기준 : 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대상기간 : 전년도 1.1~12.31(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

#### 다. 평가결과 환류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시 별도 평가없이 동 평가결과 활용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APC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3. 12월 ~ '14. 1월경
  - 주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3.1월초)
- 개별사업(APC)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3.1.31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3.2.10까지)
  - 시·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3.2.15까지)
  - aT : 기본요건 사전검토 후 안내(협조 : 농협중앙회, '13.3월말)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신청('13.3월말)
  - 시·군 : 시·도에 제출('13.3.15까지)
  - 시·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3.3.31까지)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평가('13.4월)
  - 기본요건 검토(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4월 초순)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전문평가단, '13.4월말)
- 지자체 및 품목별 산지유통종합계획 선정·통보('13.4월말)
- 개별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3.6.5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3.6.10까지)
  - 시·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3.6.15까지)
- 개별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6월말)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전문평가단, '13.7월 중순)
- 예비대상자 선정(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7월말)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13.9월초)
- 사업비 가내시(농림수산식품부, '13.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수산식품부, '14.1월 초순)
  -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http://www.at.or.kr)에 게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 장 김정희 서기관 강혜영	044-201-2611 044-201-2627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관련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산지위판장·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3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

###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의 유통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처리물량의 규모화가 중요하므로, 산지 위판장 출하액을 성과지표로 구성
  - (성과목표) '13년도 산지위판장 출하액 31,738억원

(단위 : 억원)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산지위판장 출하액 (억원)	31,738	31,648	35,614	-	'13. 4	어업생산통계(통계청) 확인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136,554	29,653	26,914	21,833	44,160
보 조	56,543	12,734	12,598	10,240	19,630
지방비	45,647	11,291	11,121	9,826	16,740
자부담	34,364	6,628	3,195	1,767	7,790
○ 수산물 위판장	54,550	12,925	5,925	1,500	22,500
- 보 조(40%)	21,820	5,170	2,370	600	9,000
- 지방비(30%)	16,364	3,877	1,777	450	6,750
- 자부담(30%)	16,901	3,878	1,778	450	6,750
○ 수산물 직매장	30,394	4,000	1,333	2,633	1,000
- 보 조(30%)	9,118	1,200	400	790	300
- 지방비(20%)	6,078	800	266	526	200
- 자부담(50%)	15,198	2,000	667	1,317	500
○ 해양수산물복합공간	24,016	5,928	7,856	1,100	800
- 보 조(50%)	12,008	2,964	3,928	550	400
- 지방비(50%)	12,008	2,964	3,928	550	400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14,202	3,800	8,800	16,600	17,700
- 보 조(50%)	7,101	1,900	4,400	8,300	8,850
- 지방비(50%)	7,101	1,900	4,400	8,300	8,850
○ 입자전장포엿명성복원	1,000	-	-	-	-
- 보 조(50%)	500	-	-	-	-
- 지방비(50%)	500	-	-	-	-
○ 친환경김물류기지	1,050	-	-	-	-
- 보 조(50%)	525	-	-	-	-
- 지방비 또는 자담(50%)	525	-	-	-	-
○ 전북일류화상품개발기지	6,840	3,000	3,000	-	2,160
- 보 조(50%)	3,420	1,500	1,500	-	1,080
- 지방비(25%)	1,710	750	750	-	540
- 자부담(25%)	1,710	750	750	-	540
○ 친환경일류수산물공급센터	2,000	-	-	-	-
- 보 조(50%)	1,000	-	-	-	-
- 지방비(25%)	500	-	-	-	-
- 자부담(25%)	500	-	-	-	-
○ 전통발효식품용기현대화	400	-	-	-	-
- 보 조(50%)	200	-	-	-	-
- 지방비(30%)	120	-	-	-	-
- 자부담(20%)	80	-	-	-	-
○ 소형저온저장고설치	1,102	-	-	-	-
- 보 조(50%)	551	-	-	-	-
- 지방비(40%)	441	-	-	-	-
- 자부담(10%)	110	-	-	-	-
○ 수산물도소매장조성	1,000	-	-	-	-
- 보 조(30%)	300	-	-	-	-
- 지방비(30%)	300	-	-	-	-
- 자부담(40%)	400	-	-	-	-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수산물위판장 : 수협
- 수산물직매장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및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지자체
- 전북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산물유통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및 지자체
  - 공통요건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 수협 등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별도요건 : 사업자가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도 4]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이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 구성원의 부적격자 여부 등
- 지원제한 기준
  - 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별도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3.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건립 : 양륙·선별·경매·저장시설 등 위판 중심 시설
- 직매장 시설 : 신축·구입, 부대시설 설치비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 경매·보관·판매 등 위판기능과 판매기능을 갖춘 시설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판매기능, 수산물 홍보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
- 전북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생산·판매·가공·수출기능 등 제품개발 중심 시설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수산물 위판장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수산물 직매장	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보조 50%, 지방비 50%
전북일류화상품개발기지	보조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예: 수산물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지방비 50% 중 10% 수협 자부담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
  -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 지자체

- 시장·군수는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부지확보 여부 및 사업타당성 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매년 2월 28일까지)
  - 다만,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 미첨부 등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별도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다만,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토지등기부 등본 미첨부 등 기본요건 미달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별도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 함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부지확보 확인을 위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자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 지자체 및 수협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수협 등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자체 및 수협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된 수협에서는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수협 또는 시·군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의 국고 보조금의 변경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4. 자금배정단계

## 지자체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필요시)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및 수협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산 보고

###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당 사업자는 3년간 사업 중단

####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 장비 ○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산지위판장 등의 취급물량 변화 측정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취급물량, 계통출하율,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관내 어업인,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유통 시설건립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시·군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파악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수협 등이 있는 경우와 시·군에서 직접 유통시설건립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매년 1월 20일까지)

###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주관 기관(시장·군수)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과장 김정희 서기관 강혜영	044-201-2611 044-201-2626
지자체(시·도, 시·군)	수산시장 관련 사업부서(수산과 등)		
수협	수협중앙회 유통기획부		

## I. 사업개요

### 1. 목 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서 생산자 중심의 강력한 마케팅 주체로서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를 육성  
- (중단기) 중규모 FPC → (장기) 거점 FPC 육성으로 단계적 시설투자 규모화  
\* 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 FPC의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5년까지 FPC 30개소 육성으로 주요 수산물 생산량의 30% 취급 목표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주요 수산물 생산량 취급 비중(%)	1%	'12~'13년 신규사업(2개년)			'14. 2	(FPC 처리량/주요 수산물 생 산량)×100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사업량		30	2	3	4	4	17
사업비	합 계	435,000	18,000	21,000	30,000	30,000	336,000
	보 조	174,000	7,200	8,400	12,000	12,000	134,400
	지방비	130,500	5,400	6,300	9,000	9,000	100,800
	자 담	130,500	5,400	6,300	9,000	9,000	100,800

## II.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공동투자법인 등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신청년도 이전 3개년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사업 실적이 있어야 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 지원대상 지자체

- 지자체 및 품목단위에서 지자체의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계획안에 FPC 육성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14년 사업부터 적용)
  - \* 지자체의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는 지역내 수산물 유통시설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통 효율화 방안, 지역단위 마케팅 지원체계 등 포함

#### 나. 지원대상 사업자

- 지자체의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 지역내 수산물 유통의 거점기능을 하는 사업자
  - 다만,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철회·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3. 지원내용

- 기존 시설의 보완시설, 신규시설 신설 해당
  - 기존시설 보완은 정부, 지자체,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시설의 증축·보완 등 해당
  - 다만, 생산량 증대 없는 기존시설의 단순 리모델링, 설비·장비류 교체 등 제외
- 상품화 시설 및 설비,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원
  - \* 상품화 계획에 따라 시설 및 설비 내용을 탄력적으로 인정
- 상품화 프로세스를 감안, 총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비 포함 지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선별·전처리 가공·포장·냉동·냉장시설, 오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휴게실 등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 상품화 프로세스를 감안, 총사업비의 20%내에서 위판장 시설개보수 등에 투자 가능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 FPC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설치 가능
  -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 5. 지원형태

- 재원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60억원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년
  - \* 사업비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없음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시·도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14년 사업부터 적용)

#####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의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전년 1월초)

##### 지자체

- 시·도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전년 1월 중순)
  - 시·군으로부터 시·군단위 수산물 유통계획을 제출받아 시·도 단위에서 전체적인 방향 정립
  - \* 지역내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신규시설 도입방안, 산지 거점 마케팅 주체 육성방안 등

## 2. 사업신청단계

### 사업자

####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시·도의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전년 4.15까지)
  - \* 사업희망자가 수협인 경우, 사업계획서를 수협중앙회에도 제출
  - \* 신청서 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

####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FPC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료수산물 조달실적, 가동율 등)
  -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만 작성

### 수협중앙회

#### ○ 사업계획서 검토

- 수협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자부담 가능성, FPC 필요성, 과투자 여부, 원물확보 등)을 해당 시·도에 제출(사업자가 시·군에 사업계획서 신청시부터 5일 이내)

### 시·군

#### ○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군 수산물 유통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등 이상이 없을 경우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 4.20까지)

### 시·도

####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의 부합여부,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전년 4.30까지)

##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구성, 서면·공개발표·현장심사 등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에 따라 선정
  - 서면평가(70점) → 공개발표평가(80점) → 현장심사(80점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1단계 : 서면평가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관련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 선정
-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 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계획의 구체성 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공개발표 평가대상으로 선정

### < 2단계 : 공개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 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계획의 구체성, 사업자의 추진의지,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 여부 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종합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현장심사 평가대상으로 선정

### < 3단계 : 현장심사 >

- 공개발표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현장심사 실시
  - 평가내용 : 마케팅 전담조직 구축여부, 사업자의 경영마인드, 지역내 유사 관련업종과의 협력관계 등 점검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종합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 4. 사업비 심의·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감안,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통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운영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평가대상자의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5.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중)

###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6. 자금집행단계**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사업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라. 기타사항

### 지자체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7. 이행점검단계

### 가. 사후관리

#### 사업자

-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 장비 ○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

- 사후관리기간 해제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신규로 발급하여 시·군에 제출

####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5년부터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매년 시설 운영실적 등을 평가
- 평가결과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심사기준으로 활용

## IV.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FPC 사업 설명회 개최
  - 참가대상 : 지자체 공무원, 전국 수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FPC 육성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 시기 : 2013년 3월중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 : 수협중앙회

### 2. 2014년도 사업자 선정 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13.4.15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13.4.20까지)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3.4.30까지)
  - 사업자 평가(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학·연 전문평가단)
    - 기본요건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13.5월 초)
    - 서면, 공개발표, 현장심사 : 산·학·연 전문평가단('13.5월 중순)
  - 사업자 선정 : 산·학·연 전문평가단('13.5월 하순)
  - 사업비 심의·조정 : 산·학·연 전문평가단('13.6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 : 농림수산식품부('13.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 : 농림수산식품부('14.1월 초순)
- ※ 상세일정은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